연구보고서 2023-23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김세진
김혜수·이선희·채주석·강은나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채주석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선임연구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3-23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에코디자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77-5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23

발|간|사

2000년대 이후 1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2000년대 이후 1인 가구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이후 정부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 같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사회정책의 상당수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마련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보편화된 가족 형태인 핵가족을 표준모델로 개발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많은 사회정책 및 관련 법제들은 개인이 아닌 가족(다인 가구)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현재까지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한 개선의 필요성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향후 1인 가구의 증가는 중장년층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사회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

그동안의 중고령자 1인 가구는 독거노인 중심의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비혼·이혼의 증가에 따라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그동안 취약계층 중심의 1인 가구 구성에 더해져 취약집단과 그 외 집단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처럼 1인 가구 내의 이질성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들은 취약계층으로서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미래 노년층으로 진입할 현재의 중장년 1인 가구는 빈곤 같은 전통적인 취약 개념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1인 가구의 보편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서 중고령 1인 가구를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구형태 중 하나인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정책적 개선방안과 함께, 1인 가구의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김세진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의 강은나 연구위원, 이선희 부연구위원, 김혜수 연구원과 함께 원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채주석 박사가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원내의 주보혜 부연구위원, 원외의 동의대학교 이민홍 교수와 연구 진행 과정에서 소중한 자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론 ····· 5

제1절 연구의 배경 ·····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1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15

제1절 1인 가구의 정의 및 유형 ····· 17

제2절 1인 가구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4

제3절 소결 ····· 34

제3장 중고령 1인 가구의 규모와 특성 ····· 37

제1절 분석 내용 및 분석 방법 ····· 39

제2절 중고령 1인 가구의 규모 및 일반적 특성 변화 ····· 42

제3절 중고령 1인 가구의 다차원적 특성 변화 ····· 58

제4절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과정과 생활 ····· 103

제5절 소결 ····· 125

제4장 미래 중고령 1인 가구의 삶의 모습과 욕구 ····· 137

제1절 조사 개요 및 분석 방법 ····· 139

제2절 중장년 1인 가구의 형성 및 적응 과정 ····· 147

제3절 중장년 1인 가구의 현재 삶의 모습과 욕구 ····· 167

제4절 중장년 1인 가구의 미래 삶의 모습과 욕구 ····· 191
제5절 소결 ····· 211

제5장 중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법적·제도적 쟁점 분석 ····· 217
제1절 중고령 1인 가구 관련 법적 쟁점 분석 ····· 219
제2절 중고령 1인 가구 지원 정책 쟁점 분석 ····· 252
제3절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 277

제6장 결론 ····· 301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 303
제2절 미래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 317

참고문헌 ····· 333

부록 ····· 351
[부록 1] 개별인터뷰 사전 설문 조사표 ····· 351

표 목차

〈표 1-1〉 연령군별 인구수 및 1인 가구(2023~2050) 추계 ····· 7
〈표 2-1〉 법적 기준에서의 가구의 정의 ····· 18
〈표 2-2〉 법적 기준에서의 세대의 정의 ····· 19
〈표 2-3〉 법적 기준에서의 가족의 정의 ····· 20
〈표 2-4〉 가구·세대·가족의 정의 ····· 20
〈표 2-5〉 기존 연구에서의 1인 가구 정의 ····· 21
〈표 2-6〉 1인 가구 구성의 이질성 ····· 24
〈표 2-7〉 연령층별 1인 가구 형성 원인 및 특성 ····· 27
〈표 2-8〉 도시 거주 1인 가구 유형 ····· 28
〈표 2-9〉 1인 가구 유형 및 특성 ····· 29
〈표 2-10〉 1인 가구의 특성 분석 주요 변수 ····· 30
〈표 3-1〉 중고령 1인 가구의 변화 추이와 전망 분석 내용 및 자료 ····· 39
〈표 3-2〉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 변화 분석 내용 및 자료 ····· 40
〈표 3-3〉 코호트 및 연령 구분 ····· 41
〈표 3-4〉 분석방법 ····· 42
〈표 3-5〉 연령군별 인구수 및 1인 가구(2023~2050) 추계 ····· 43
〈표 3-6〉 연령군별 인구수와 1인 가구 비율 ····· 48
〈표 3-7〉 연령군별 * 성별 무배우 1인 가구 비율 ····· 49
〈표 3-8〉 연령군별 * 지역별 무배우 1인 가구 비율 ····· 51
〈표 3-9〉 무배우 1인 가구의 연령군별 혼인상태 ····· 54
〈표 3-10〉 무배우 1인 가구의 연령군별 교육수준 ····· 56
〈표 3-11〉 무배우 1인 가구의 연령군별 경제활동상태 ····· 57
〈표 3-12〉 무배우 1인 가구의 연령군별 주거점유형태 ····· 58
〈표 3-13〉 코호트별 연령 범위 ····· 59
〈표 3-14〉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 ····· 61
〈표 3-15〉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연평균 지출 ····· 63
〈표 3-16〉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연평균 자산 ····· 65

〈표 3-17〉 중고령 1인 가구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및 방법 ····· 67
〈표 3-18〉 코호트별 연령 범위 ····· 70
〈표 3-19〉 코호트별 1인 가구의 경제활동 ····· 71
〈표 3-20〉 코호트별 1인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 72
〈표 3-21〉 코호트별 1인 가구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 ····· 73
〈표 3-22〉 코호트별 1인 가구 중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계속 근로 가능자 비율 ····· 74
〈표 3-23〉 코호트별 연령 범위 ····· 76
〈표 3-24〉 주관적 건강인지 ····· 77
〈표 3-25〉 일상생활 제한 및 우울 ····· 78
〈표 3-26〉 예방적 건강행위 ····· 79
〈표 3-27〉 일상생활 속 건강행위 ····· 81
〈표 3-28〉 코호트별 연령 범위 ····· 82
〈표 3-29〉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_가사 도움 ····· 83
〈표 3-30〉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_자금차입 도움 요청 ····· 84
〈표 3-31〉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_대화상대 도움 요청 ····· 85
〈표 3-32〉 코호트별 연령 범위 ····· 87
〈표 3-33〉 코호트별 1인 가구 현황 ····· 88
〈표 3-34〉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자가 보유 및 자가 점유 비율 ····· 89
〈표 3-35〉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 90
〈표 3-36〉 중고령 1인 가구의 주택 유형 ····· 90
〈표 3-37〉 코호트별 1인 가구 주택 유형 ····· 91
〈표 3-38〉 코호트별 1인 가구 주거 위치 ····· 93
〈표 3-39〉 코호트별 1인 가구의 현재 주택 거주기간 ····· 94
〈표 3-40〉 코호트별 1인 가구 주택의 면적 및 최저기준 미달 비율 ····· 95
〈표 3-41〉 중고령 1인 가구 주택의 필수설비 기준 미달 비율 ····· 95
〈표 3-42〉 코호트별 1인 가구 주택의 필수설비 기준 미달 비율 ····· 96
〈표 3-43〉 코호트별 1인 가구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 비율 ····· 98

〈표 3-44〉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 99
〈표 3-45〉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주택가격 및 임대료 ····· 100
〈표 3-46〉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 101
〈표 3-47〉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및 주거관리비 ····· 102
〈표 3-48〉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주택 만족 및 주거환경 만족 ····· 103
〈표 3-49〉 중고령 1인 가구 비율 및 유지 의향 ····· 105
〈표 3-50〉 중고령 1인 가구 거주 기간 ····· 107
〈표 3-51〉 중고령 1인 가구 형성 이유 ····· 110
〈표 3-52〉 중고령 1인 가구의 1인 가구 형성 직전 동거가족 ····· 111
〈표 3-53〉 중고령 1인 가구의 의미 있는 타자 ····· 113
〈표 3-54〉 현재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 ····· 115
〈표 3-55〉 향후 계속 1인 가구로 거주 시 걱정되는 부분 ····· 118
〈표 3-56〉 중고령 1인 가구의 정책 욕구 ····· 121
〈표 3-57〉 노후에 지내고 싶은 곳 ····· 124
〈표 3-58〉 중고령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변화 요약 ····· 127
〈표 3-59〉 중고령 1인 가구의 다차원적 특성 변화 요약 ····· 133
〈표 4-1〉 사전 설문 내용 ····· 142
〈표 4-2〉 개별인터뷰 개요 ····· 143
〈표 4-3〉 개별인터뷰 주요 질문 구성 ····· 144
〈표 4-4〉 개별인터뷰 참여자 일반특성 ····· 146
〈표 4-5〉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형성 이유 ····· 150
〈표 4-6〉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신체 건강 변화 ····· 153
〈표 4-7〉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정서적 상태 변화 ····· 155
〈표 4-8〉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주거 환경 변화 ····· 157
〈표 4-9〉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경제상태(소득수준) 변화 ····· 160
〈표 4-10〉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 162
〈표 4-11〉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사회적 관계 및 사회활동 만족도 변화 · 164

〈표 4-12〉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안전에 관한 변화 ····· 166
〈표 4-13〉 사전 설문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 169
〈표 4-14〉 개별인터뷰 참여자의 주거형태 및 점유형태 ····· 172
〈표 4-15〉 개별인터뷰 참여자의 경제활동 및 소득수준 ····· 175
〈표 4-16〉 개별인터뷰 참여자의 가족구성 ····· 179
〈표 4-17〉 사전 설문 결과: 사회적 고립감 ····· 179
〈표 4-18〉 사전 설문 결과: 걱정되거나 힘든 생활영역 ····· 181
〈표 4-19〉 사전 설문 결과: 향후 1인 가구 지속 의향 ····· 193
〈표 4-20〉 사전 설문 결과: 노후준비 인식 및 현재 준비 여부 ····· 200
〈표 4-21〉 사전 설문 결과: 건강 영역 노후준비 정도 ····· 202
〈표 4-22〉 사전 설문 결과: 경제 영역 노후준비 정도(복수 응답) ····· 202
〈표 4-23〉 사전 설문 결과: 대인관계 영역 노후준비 정도 ····· 205
〈표 4-24〉 사전 설문 결과: 여가 영역 노후준비 정도 ····· 206
〈표 5-1〉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기준 및 주택공급 방법 구분 ····· 220
〈표 5-2〉 민영주택 청약가점 ····· 221
〈표 5-3〉 특별공급제도 및 대상 ····· 222
〈표 5-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세대 관련 정의 ····· 224
〈표 5-5〉 주민등록법 제7조 및 양기대 의원 개정(안) ····· 225
〈표 5-6〉 주거기본법 내 주거의 질 측면에 대한 조항 ····· 227
〈표 5-7〉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동의 원칙 ····· 229
〈표 5-8〉 의료법 제24조의 2 개정 발의안 ····· 230
〈표 5-9〉 유형별 후견사건 접수 누적 건수(2014~2021) ····· 235
〈표 5-10〉 후견인의 임무 ····· 235
〈표 5-11〉 연명의료결정법 내 환자의 의사 확인 조항(제17조, 제18조) ····· 238
〈표 5-1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 전후 비교 ····· 242
〈표 5-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 연고자의 정의 ····· 242
〈표 5-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244

〈표 5-15〉 민법 내 상속 관련 법령 ····· 246
〈표 5-16〉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 254
〈표 5-17〉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중 1인 가구 지원 내용 ·· 256
〈표 5-18〉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예시) ····· 257
〈표 5-19〉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중 1인 가구 지원 내용 ····· 260
〈표 5-20〉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중 중장년층 지원 내용 ····· 262
〈표 5-21〉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 및 2023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요약) ····· 265
〈표 5-22〉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의 법제도 개선 주요 내용 ····· 266
〈표 5-23〉 광역 지자체 1인 가구 조례 ····· 269
〈표 5-24〉 광역 지자체 중장년 지원 조례 ····· 271
〈표 5-25〉 중앙정부 및 광역 지자체의 중고령 1인 가구 지원 정책(요약) ····· 274
〈표 5-26〉 '함께, 서로를 위해' 프로젝트의 목표 ····· 289
〈표 5-27〉 비자발적 외로움으로 인한 고독에 대처하기 위한 스웨덴의 노력 ····· 292
〈표 5-28〉 1인 가구 세부 유형별 지급 시나리오 ····· 293
〈표 6-1〉 호주 빅토리아 주 관계법 내 돌봄관계 ····· 32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체계도 ····· 13
[그림 3-1] 중고령 1인 가구 비율 변화 ····· 44
[그림 3-2] 연령군별 * 성별 무배우 1인 가구 변화 ····· 50
[그림 3-3] 연령군별 * 지역별 무배우 1인 가구 변화 ····· 53
[그림 3-4] 코호트별 소득 비교 ····· 62
[그림 3-5] 코호트별 총지출 비교 ····· 64
[그림 3-6] 코호트별 자산 비교 ····· 66
[그림 3-7] 자가 보유율 및 점유율 ····· 89
[그림 3-8] 코호트별 1인 가구 주택유형 ····· 92
[그림 3-9]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 99
[그림 4-1] 미래 중고령 1인 가구 삶의 모습과 욕구 파악을 위한 분석 틀 ····· 140
[그림 4-2]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신체 건강 변화(그래프) ····· 153
[그림 4-3]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정서적 상태 변화(그래프) ····· 155
[그림 4-4]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주거 환경 변화(그래프) ····· 158
[그림 4-5]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경제상태(소득수준) 변화(그래프) ····· 160
[그림 4-6]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그래프) ····· 162
[그림 4-7]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사회적 관계 및 사회활동 만족도 변화(그래프) ····· 164
[그림 4-8]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안전에 관한 변화(그래프) ····· 166
[그림 4-9] 사전 설문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그래프) ····· 169
[그림 4-10] 개별인터뷰 분석 결과 개요 ····· 216
[그림 5-1] 가족센터의 사업운영 및 사업 영역 ····· 259
[그림 5-2] 스톨플뤼크칸 내부 지도(좌)와 페르드그네펜 입구 평면도(우) ····· 286

Abstract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nd Policy Tasks
- Focusing on single-person households

Project Head: Sejin Kim

This study aims to move away from the perspective of viewing middle-aged and older individuals living in single-person households as a vulnerable class. Instead, it seeks improvement in social policy measure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and older individuals as a common household type, reflecting their heterogeneity.

To achieve this, the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single-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t also explored the specific needs of these households and scrutinized legal and policy issues pertinent to them. Subsequently, social policy enhancement measures were derived to promote the stability of life for individuals in these households.

This research proposes specific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future single-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and older individuals. First, there is a need for recognition of the universali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 restructuring of social policies. Second, there should be an adjustment in the direction of social security policy design to account for tradi-

Co-Researchers: Hyesoo Kim · Sunhee Lee · Joosuk Chae · Eunna Kang

tional household types. Third, there is a call for institutional recognition of couples living in informal unions. Fourth, a preventive perspective should guide interventions for middle-aged individuals. Fifth, there is a recommendation for policy establishment that appreciates the diversity within the single-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and older individuals. Sixth, specific alternatives for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a dignified old age were presented.

Furthermore, the study delineated detaile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housing, medical care and caregiving, emotional support, and funeral support. This comprehensive approach aims to address the multifaceted needs of single-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offering a well-rounded set of solutions for a more inclusive and supportive social framework.

Keyword : single-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social policy, the universali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e heterogeneity within single-person households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1인 가구의 보편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서 중고령 1인 가구를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구형태 중 하나인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미래 노인 1인 가구와 현재 노인 1인 가구의 특성 비교를 위해 현재의 중장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의 특성을 비교하고, 중장년 1인 가구의 욕구를 살펴보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쟁점 검토를 바탕으로 중고령 1인 가구의 안정된 삶을 위한 사회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과정-현재의 삶-미래의 삶의 모습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은 혼인상태(미혼/별거·이혼·사별)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였으며, 다양한 이유와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현재의 중고령 1인 가구는 과거 중고령 1인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한 특성을 보였다. 코호트 간 비교에서도 생활영역별로 각각의 연령집단(50대, 60대)에서 긍·부정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과거와 현재의 중고령 1인 가구의 이질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중고령 1인 가구는 향후에도 1인 가구로 생활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향후 1인 가구 생활 유지 시 질병 악화에 따른 돌봄에 대한 걱정,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로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나.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법·제도적 쟁점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법·제도적 쟁점은 첫째, 보편적 가구형태로서의 1인 가구에 대한 인정, 둘째, 전통적 가구형태에 기반한 대상자 선정의 한계, 셋째, 1인 가구의 다양성(생애주기별 다양성, 동일 출생코호트 내 다양성)에 대한 고려의 부족 등이다. 또한, 주요 영역별 쟁점을 주거, 의료 및 돌봄, 정서, 생애말기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첫째, 주거공급 및 주거의 질 측면에서의 정책적 사각지대 문제, 둘째, 비공식적 돌봄체계의 부재에 따른 돌봄 공백과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서 작성 문제, 셋째, 고독사 예방 정책 외 정서적 지원체계의 부재 문제, 넷째, 생애말기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1인 가구의 보편성에 대한 인정 및 사회정책의 재구조화, 둘째, 전통적 가구형태에 기반한 기존 사회보장정책의 설계 방향 조정, 셋째, 약한 결합 관계로서의 생활동반자에 대한 제도적 인정, 넷째, 예방적 관점에서의 중장년층에 대한 개입, 다섯째, 중고령 1인 가구의 집단 내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여섯째, 존엄한 노후를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부 정책별로는 주거정책, 의료 및 돌봄정책, 정서 지원정책, 장사정책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 중고령 1인 가구, 법·제도 개선, 1인 가구의 보편성, 1인 가구 내 이질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지난 10여 년간 1인 가구의 절대 수는 급증하였으며, 특히 50~60대 중장년 가구의 1인 가구 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3년 중장년 1인 가구인 40~50대 1인 가구는 2,050천 가구(40~50대 전체 가구 수의 22.8%)이며, 2010년 1,236천 가구(40~50대 전체 가구 수의 14.8%)에 비해 약 80천 가구가 증가하였다. 비혼·만혼·이혼 등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의 중장년 이후 세대에서의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연령군별 인구수 및 1인 가구(2023~2050) 추계

(단위: 천 가구, 천 명)

구분	2010			2023			2030		
	가구 수	인구 수	1인 가구 수	가구 수	인구 수	1인 가구 수	가구 수	인구 수	1인 가구 수
전 연령	17,495	49,554	4,174	21,834	51,558	7,341	23,180	51,199	8,255
40대	4,556	8,578	646	4,153	7,977	941	3,667	7,074	916
50대	3,768	6,752	590	4,852	8,578	1,109	4,655	8,167	1,161
60대	2,328	4,090	519	4,311	7,526	1,250	4,757	8,237	1,478
70대	1,457	2,565	517	2,332	3,884	809	3,543	5,885	1,242
80대 이상	401	923	204	1,287	2,343	607	1,802	3,144	867

구분	2040			2050		
	가구 수	인구 수	1인 가구 수	가구 수	인구 수	1인 가구 수
전 연령	23,866	50,193	9,055	22,849	47,359	9,054
40대	3,636	6,963	1,024	2,619	5,075	808
50대	4,010	7,059	1,104	4,047	6,975	1,207
60대	4,675	7,949	1,563	4,092	6,917	1,446
70대	4,659	7,635	1,658	4,658	7,490	1,664
80대 이상	3,191	5,439	1,522	4,532	7,804	2,217

자료: 1) 통계청(2022). 장래가구추계: 가구주의 연령/가구원 수별 추계가구_시도의 내용을 활용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6&conn_path=I3에서 2023. 2. 6. 인출.
2) 통계청(2021a).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의 내용을 활용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3. 2. 6. 인출.

약 10년 뒤인 2030년 현재의 중장년층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50~60대 1인 가구는 2,639천 가구(50~60대 전체 가구 수의 28.0%), 20년 뒤인 2040년 60~70대 1인 가구는 3,221천 가구(60~70대 전체 가구 수의 34.5%)로 그 절대 수 및 전체 가구 대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의 중장년 1인 가구가 노인이 되었을 때 1인 가구는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변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중고령 1인 가구를 '취약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인 가구와 1인 가구의 비교를 통해 다인 가구 대비 취약한 1인 가구의 특성을 제시하며 취약집단으로서 1인 가구에 대한 개입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논하였다(변미리, 2015; 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함선유, 한겨례, 2021). 특히 김석호(2021)는 전반적으로 1인 가구는 나홀로 생계를 꾸려가는 특성으로 인해 가구 소득의 대부분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구성되며, 은퇴, 실업, 고령 등의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소득의 감소에 직면할 때 다른 가구원의 소득으로 보충될 수 없다는 불안과 불확

실성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민보경, 2023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의들이 축적된 결과로 정부에서는 2020년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여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 형태인 1인 가구를 위한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5대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은 1인 가구 대상 지원을 삶의 질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장을 확대한 의미 있는 시도이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기존 1인 가구에 대한 관점에 따라 취약한 1인 가구 중심으로 지원 방안이 구성되어 있어 1인 가구를 전통적 취약집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보편적 가구형태로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 세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향후 1인 가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할 중장년 1인 가구가 노년기에 진입한 이후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1인 가구를 취약집단으로 접근하는 대표적 정책은 '노인복지 정책'이다. 현재의 노인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들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방문요양과 돌봄 서비스 등 '독거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한 서비스 내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노인 1인 가구(독거노인)는 '취약계층'이라는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2차 독거노인 종합대책(2018~2022)은 이러한 관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방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약계층 중심의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접근은 현재의 노인과는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중장년 1인 가구가 노인이 된 이후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다양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윤경, 김세진, 남궁은하, 임정미, 김혜수(2021)에 따르면, 10년 후 한국의 노인상은 1, 2차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진입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비대면·디지털 기반 일상생활 증가로, 현재 노인에 비해 노인 집단 내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며, 활동적 노화와 웰에이징 같은 긍정적 노인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의 노인들에 비해 노후준비(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수준이 증가하며, 건강상태 역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노인 1인 가구와 중장년 1인 가구는 1인 가구라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 내 이질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 중장년 세대의 경우 1인 가구가 단순한 취약집단이기보다는 하나의 삶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금까지 노인 1인 가구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욕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이들의 노년기 진입을 고려하여 선제적 차원에서 기존 독거노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기존 논의는 생애주기와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그 외의 특성에 따른 욕구와 정책적 개입방안에 대한 논의는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주로 취약계층 중심의 1인 가구에 대한 접근, 다인 가구와의 비교, 청년-중년-노년이라는 세대 구분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고령 1인 가구는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과 장애요소가 존재하며, 이는 빈곤 같은 전통적인 취약 개념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법과 정책은 기존의 전통적 가족구조(부모와 자녀 세대로 구성된 가정, 또는 자녀·부모 등의 직계혈족이 있는 가정)를 전제로 구성된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법 개정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근본적 문제는 산재해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민법상(제974조)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기타 친족 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호자'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정의는 '아동복지법'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상속제도 및 임종

후의 사후처리, 의료기관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기존의 가족 중심의 법적·제도적 한계가 남아 있다. 따라서 중고령 1인 가구가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보편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 사회정책의 구조적 측면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1인 가구의 보편화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으로서 중고령 1인 가구를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구형태 중 하나인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중고령 1인 가구 내에서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래 노인과 현재 노인의 특성 비교를 위해 현재의 중장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의 특성을 비교하고, 중장년 1인 가구의 욕구를 살펴보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법·제도적 개선 방안과 중고령 1인 가구 내 이질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미래 보편적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할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중고령자는 50대 이상이며, 중장년층은 40~50대로 정의하였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55세 미만으로 정의되며(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사전적 의미로는 50대 이상의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을 중고령층으로 정의한다(Levkoff, Cleary & Wetle, 1987).

또한,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어, 다양한 연구 및 정책의 목적에 따라 중고령자의 연령 기준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연령 기준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는 50세 이상의 연령으로 정의하며, 미래 중고령자는 현재의 중장년층인 40~64세 현재의 노인 연령 기준 이하의 자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1인 가구에 대한 정의를 위해 가구·가족·세대를 정의하였으며, 1인 가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1인 가구를 정의하고, 나아가 정책적 관점에서 개입이 요구되는 1인 가구를 재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1인 가구의 이질성을 살펴보고, 1인 가구 연구를 위한 주요 검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중고령 1인 가구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인구주택총조사와 장래가구추계,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중고령 1인 가구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을 과거 중장년 세대와 현재의 중장년, 과거 노인과 현재 노인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해 출생코호트별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가족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 사회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패널 등 영역별 대표성이 있는 다양한 분석자료들을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삶에 대한 다차원적 측면에서 특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장년(40~64세) 1인 가구 대상 개별 인터뷰를 통해 미래 중고령(현재 중장년) 1인 가구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중고령 1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한 법적·제도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중장년 및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법제 현황 및 쟁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보편적 가구로 자리잡을 경우 요구되는 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주거와 의료, 상속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현재의 중장년 및 노인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보편적 가구로 자리 잡을 경우 요구되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를 특정하지 않은 기존 정책 중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경향을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할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중고령 1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한 각국의 사례들을 법제 및 정책 현황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래 보편적 가구형태로 자리 잡을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법제적·제도적 측면과 정책 개선 방안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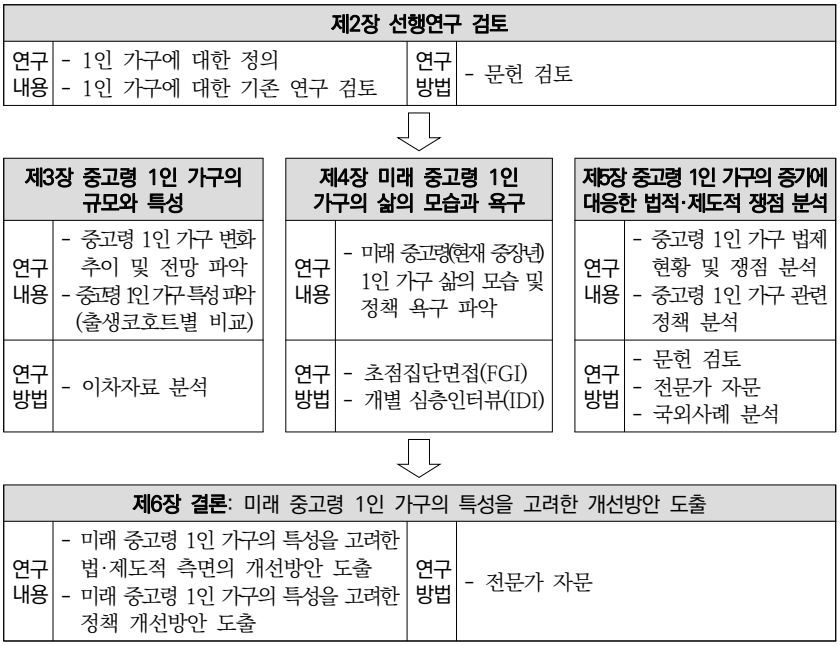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1인 가구의 정의 및 유형
제2절 1인 가구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소결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1인 가구의 정의 및 유형

이 절에서는 1인 가구를 정의함에 앞서, 법적 개념에서의 1인 가구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주요 개념인 '가구'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와 유사 개념인 '가족'과 '세대'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법·정책적 측면에서 1인 가구의 정의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1인 가구의 정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1. 가구·가족·세대의 정의

가구(家口)는 주거 및 생계를 공동으로 하는 생활단위로서, 세대 구성에 따라 친족가구와 비친족가구, 단독가구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이준우, 장민선, 2014).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 따르면 가구는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 ·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는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개별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역 군인, 60일을 초과한 국외 체류자, 수용자, 시설거주자, 실종자, 1개월 이상의 행방불명자 등과 같이 생계를 함께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개별 가구의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즉, '가구'란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계를 함께 영위하는 가구 구성원의 집합 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

〈표 2-1〉 법적 기준에서의 가구의 정의

법령	개념
인구주택 총조사 규칙 제2조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가구"라 함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8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30.〉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개정 2015. 4. 20., 2015. 12. 31.〉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4. 20., 2016. 11. 29., 2022. 6. 21.〉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전문개정 2011. 9. 8.]

자료: 이준우, 장민선(2014). pp. 19-28을 바탕으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최근 조항의 내용을 연구진이 검토하여 재구성함.

세대(世帶)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등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단위'로서(장민선, 2016) 1세대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의미한다(국세청, n.d.). 세대는 세대주, 가족인 세대원,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어 가구와는 차이가 있으며, 가족이 아닌 세대원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세대는 가족보다 넓은 의미이다(장민선, 2016).

〈표 2-2〉 법적 기준에서의 세대의 정의

법령	정의
주민등록법 제7조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자료: 이준우, 장민선(2014). pp. 19-28을 바탕으로 「주민등록법」의 최근 조항의 내용을 연구진이 검토하여 재구성함.

「민법」에서 정의하는 '가족(家族)'은 혈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형태를 전제하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다만,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즉, '직계혈족과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가족'으로 간주하며, 그 외 인척은 '생계를 함께 영위'해야 가족의 범위에 해당된다. 최근에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까지로 확대하여 민법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가족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가족은 혈연 또는 혼인, 입양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함께 또는 따로 떨어져 살 수도 있으므로 동일한 가구나 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표 2-3〉 법적 기준에서의 가족의 정의

법령	개념
민법 제779조[1]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강가정 기본법 제3조[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6.〉 1. "가족"이라 함은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 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자료: 1) 이준우, 장민선(2014). pp. 19-28을 바탕으로 「민법」의 최근 조항의 내용을 연구진이 검토하여 재구성함.
2)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2020).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해보면, 가구, 세대, 가족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은 '생계를 함께 영위하는가?'와 '혼인, 혈연, 입양 관계'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표 2-4〉 가구·세대·가족의 정의

구분	정의
가구	-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계를 함께 영위하는 가구 구성원의 집합 단위 - 친족가구, 비친족가구, 단독가구 등
세대	-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등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단위 - 세대주, 가족인 세대원, 가족이 아닌 동거원 모두 포함
가족	-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생활단위

자료: 앞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2. 1인 가구의 정의 및 유형

가. 1인 가구의 정의

통계청의 통계용어 정의에 따르면, 1인 가구(One-person household)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통계청, 2020a, p. 155). 이는 2005년에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양한 조사와 연구들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후 2018년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건강가정기본법 내에 1인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였고, 이를 통해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상당수가 통계청의 정의에 준하여 1인 가구를 정의하고 있다. 각각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핵심이 되는 주요 용어(key word)는 '혼자서', '생계유지', '독립적' 세 가지이며, 그 외 '혼인 여부', '독립된 주거', '세대분리' 등도 일부 연구에서 핵심 용어로 활용하고 있다.

〈표 2-5〉 기존 연구에서의 1인 가구 정의

연구자	연도	정의
통계청	2005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차경욱	2006	- 성인 한 명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것
김혜영	2007	-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배우자 없이 생활하고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2008	- 혼자 사는 사람들,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사람
한지희, 정소이, 박준영	2011	- 통계청의 표준정의에 따라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연구자	연도	정의
이성은, 박홍주, 유정민	2012	-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무배우자로서 주민등록상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
정경희 외	2012	-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으로 1인 가구 거주자라는 표현을 사용함
배건이, 정극원	2013	- 현재 법적, 사실적으로 무배우자로서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김혜영	2014	-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혼자 생활하거나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생활하는 가구
이병호	2014	- 법적 배우자가 없이 홀로 사는 독신가구와 비슷한 개념으로 간주
이준우, 장민선	2014	- 주거가 독립되고, 동거인이 없으며,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최현수 외	2016	- 법적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홀로 주거와 생계를 책임지는 생활 단위
박미선 외	2017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홍승아, 성민정, 최진희, 김진욱, 김수진	2017	-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김은정	2018	- 단독으로 독립된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단위
서울연구원	2022	-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자료: 이민홍, 전용호, 김영선, 강은나(2015). p. 41. 〈표 2-2〉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추가 구성함.

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1인 가구의 전제조건

1인 가구는 앞에서 논의한 '가구'의 한 유형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2조 2에 따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가족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이혼, 별거, 사별 등 가족의 해체로 인해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고, 1인 가구가 혼인, 입양 등의 이유로 가족을 구성할 수도 있다(이상명, 2017). 1인 가구 구성에 대한 자의성 여부에 따라 자신의 의지로 1인 가구 생활을 선택한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기에 원하지 않음에도 1인 가구가 되는 경우(자의적-비자의적)가 있을 수 있으며, 1인

가구로 지내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반대로 1인 가구로 지내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지속적-한시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강덕구, 2022).

이처럼 1인 가구는 발생 원인, 지속기간, 원가족과의 관계, 혼인 여부 등에 따라 생활 모습이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전제로 1인 가구를 정의한다면, 건강가정기본법상에 제시된 1인 가구 기준보다 좀 더 구체화된 정의가 필요하다. 즉, 단순히 '독립된 주거에서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정의할 것인지, '혼인이나 혈연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거나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단독생활을 하는 1인'의 측면을 강조하는지 등 1인 가구의 정체성을 무엇에 둘 것인가에 따라(김은정, 2018) 정책적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일부 연구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1인 가구의 핵심요소를 추가로 제시하기도 한다. 배건이, 정극원(2013)은 1인 가구를 정의하는 핵심요소를 ① 실제 주소 및 거소를 갖는 단독 생활자, ② 비혼으로 이혼·사별 또는 결혼하지 않은 싱글, ③ 피부양자의 경제적 조력 없이 개인의 직업과 소득을 통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단독세대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준우, 장민선(2014)은 1인 가구란 주거가 독립되고, 동거인이 없으며, 혼자 생계를 유지할 것이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현재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서 과거에 혼인을 했으나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적 보호 또는 지원 대상으로서 1인 가구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따로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정책적 지원 및 개입이 필요한 1인 가구는 실제 주소지에서 1인 거주, 법적·실질적 무배우, 독립적 생계유지, 1인 가구의 지속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제2절 1인 가구 관련 선행연구 검토

지난 2010년 이후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집단 내 이질성이 매우 큰 집단으로, 이들의 특성에 대한 세분화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 절에서는 1인 가구의 특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1인 가구의 이질성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1인 가구의 실태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검토하였던 다양한 특성 변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3장에서 진행될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1. 1인 가구 구성의 이질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 가구는 집단 내 이질성이 매우 강한 집단이다. 1인 가구의 특성은 ① 발생원인, ② 지속기간, ③ 혼인경험, ④ 자녀여부, ⑤ 원가족과의 교류 같은 '가구' 구성과 관련된 특성과 1인 가구가 갖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⑥ 연령(세대), ⑦ 성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표 2-6〉 1인 가구 구성의 이질성

구분	내용
(기준 1) 발생 원인	자발적 vs 비자발적
(기준 2) 지속 기간	한시적 vs 지속적
(기준 3) 혼인 경험	배우자 있음 vs 이혼, 사별, 별거 vs 비혼, 미혼
(기준 4) 자녀 여부	유자녀 vs 무자녀
(기준 5) 원가족과의 교류	교류 있음 vs 교류 없음
(기준 6) 세대	청년세대 vs 중장년세대 vs 노년세대
(기준 7) 성별	남성 vs 여성

자료: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먼저 1인 가구의 발생 원인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자발적 1인 가구는 비혼, 미혼 등과 같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1인 가구가 형성된 가구이며, 비자발적 1인 가구는 이혼, 실업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형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들 두 집단 간에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중년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그간 우리 사회가 형성한 사회정책적 지원체계와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김은정, 2018).

두 번째 특성인 지속 기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이혼·사별·비(미)혼 등으로 계속해서 1인 가구로 유지되는 지속적 1인 가구와 취업·학업·자녀의 군입대 등과 같은 한시적 1인 가구의 형태가 있다.

세 번째 특성은 혼인 경험에 따른 것이다. 혼인상태는 1인 가구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 사별, 그리고 배우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 1인 가구가 되며, 최근 미혼으로 인한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다(박미선 외, 2017). 즉, 이혼·사별로 인하여 결혼 후 원가족이 해체되면서 발생된 1인 가구와 혼인 경험이 없는 1인 가구는 상이한 특성을 보이며, 최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로 혼인 경험에 따른 1인 가구의 차이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 특성은 자녀 여부, 다섯 번째 특성은 원가족과의 교류(부모님, 형제자매 등) 여부로 일차인 안전망 역할을 하는 가족지지치계와 관련된 특성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없는 경우는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의 인구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원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 번째 특성은 연령(또는 세대)에 따른 차이이다. 1인 가구는 연령계층에 따라 경제상태, 생활영역이나 관심의 대상, 라이프 스타일 등이 다르기 때문에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세대별 성격이 매우 다르며, 혼자서 생활한다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하는 집단인 1인 가구를 하나의 집단

으로 규정하여 접근하기보다는 특성별 세크먼트화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유현정, 이아름, 홍유진, 안혜리, 2017). 1인 가구의 발생 원인도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청년층은 진학·취업을 통한 가족과의 분리·독립과 미혼·만혼·비혼주의 확산에 따른 1인 가구의 형성이 주된 원인이라면, 중장년층은 비혼주의 확산, 이혼, 맞벌이·자녀 교육을 위한 기러기 부부 증가 등 여러 요인이 혼재하며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은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탈락이 주원인이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6. 25.). 또한 1인 가구의 특성도 세대별로 그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7〉에서 제시한 정경희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은 직장 또는 학업문제 등으로 1인 가구로 생활하며, 생애과정 중 한시적 1인 가구라는 특성을 보인다. 1인 가구로서의 어려운 점을 느끼는 비율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지만, 좋은 점을 느끼는 비율은 91.1%로 가장 높고,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하며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1인 가구의 삶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장년층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지만,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1인 가구 형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40~50대까지 혼자 사는 중장년 1인 가구의 비중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8; 김은정, 2018에서 재인용). 즉, 중장년의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도 1인 가구 특성별 이질성이 매우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기존의 1인 가구 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던 독거노인의 특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1인 가구는 연령(또는 세대별)별로 매우 상이한 특성을 보이며, 연령군에 따른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 특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이다.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 취약성을 보이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 1인 가구는 여성 1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 관계적, 정서적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김은정, 2018). 그 외에도 안전에 대한 인식 차이 등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7〉 연령층별 1인 가구 형성 원인 및 특성

구분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형성 원인	가족관계	분리·독립	가족 해체	가족구성원 탈락
	직접적 원인	비혼·만혼	비혼, 이혼, 기러기	사별
	구조적 변화	결혼 가치관 변화	경제능력, 자녀교육	고령화, 기대여명 차이
특성	교육수준	(전문)대학 이상	고등학교 이상	초등학교 이하
	주거	보증금 월세(46.9%)	자가(34.4%)	자가(66.5%)
	경제상황	약 절반이 소득의 30% 이상 저축	약 30%가 소득의 30% 이상 저축	대다수가 저축할 여유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율 높음
		다수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	지금과 비슷 또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	지금과 비슷 또는 나빠질 것으로 전망
	경제활동	상용직 비율이 높음	상용직 비율이 높음	상용직 비율이 낮음
	독거기간	66.6개월	120.1개월	142.6개월
	주요 독거이유	직장 또는 학업문제	자유롭게 살기 위해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
	힘든 점	(힘든 점 있음) 63.8% (이유) 가사일 등 일상생활 처리	(힘든 점 있음) 64.8% (이유)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 없음	(힘든 점 있음) 72.2% (이유)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 없음
	좋은 점	(좋은 점 있음) 91.1% (이유) 자유로움	(좋은 점 있음) 85.1% (이유) 자유로움	(좋은 점 있음) 61.4% (이유) 자유로움
	독거생활에 중요한 요소	경제적 능력	가까운 친구	본인의 건강
	걱정거리	생계비 마련 및 주택 구입 등 경제적인 준비	나의 건강 (나의 노후 준비)	나의 건강 (가족에 대한 염려)
	대표적인 결혼상태	미혼	이혼	사별
	비 1인 가구와 비교한 공통 특성	- 거주의 불안정성과 빈번한 거주지 변동 - 사회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질병률 및 우울도 높음 - 삶의 만족도가 비 1인 가구보다 약간 낮음 - 사회적 지원체계 규모는 큰 차이가 없으나 내용상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의존도 높음. 또한 중년층의 경우 형제·자매의 의미가 큼 -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음		

자료: 1) 관계부처 합동(2020. 6. 25.). p. 2.
2) 정경희 외(2012). pp. 346-347. 〈표 8-3〉의 내용을 연구진이 일부 발췌함.

변미리(2015)는 1인 가구의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서울시 거주 1인 가구를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먼저 골드세대는 가부장적 가치의 완화와 긍정적 싱글 이미지로 대변되는 1인 가구로 전문직, 화이트칼러 중심의 30~40대로 볼 수 있다. 산업예비군 집단은 대학가나 고시촌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20대 중심의 집단으로,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이거나 기존의 취업시장에서 후퇴하여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는 계층이다. 불안한 독신자 집단은 30대 후반과 40~50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혼자 사는 독신자들로 이혼, 기러기 가족, 중년 실업문제가 중첩된 1인 가구이다. 이들 내부는 다른 1인 가구 집단에 비해 좀 더 이질적이며 다양한 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버세대 역시도 집단 내 이질성이 큰 집단이다. 주로 독거노인이라는 전통적 정책보호 대상과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 1인 가구가 공존하는 집단이다(변미리, 2015).

〈표 2-8〉 도시 거주 1인 가구 유형

구분	골드세대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
가치관	- 개인주의 - 개성과 다양성 존중	- 3D 업종 기피 - 풍요롭게 성장한 세대의 가치 담지자	- 가족가치 약화	- 대가족제 약화영향
경제환경	-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 청년실업	- 중장년 실업	- 낮은 경제능력
사회문화적 환경	- 가부장적 가치의 완화 - 긍정적 싱글 이미지	- 사회 부유 층화 가능성	- 기러기 가족 - 이혼율 증가	- 고령화사회의 중심세력

자료: 변미리(2015). p. 566.

최근의 연구로는 민보경(2023)의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만 15세 이상의 1인 가구를 유형화하였으며, 7개의 집단을 도출하였다. 집단을 구분하는 주요 요인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미혼의 젊은 여성과 남성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도 높고, 사회적 지원 가능 대상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매우 긍정적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년 이혼 1인 가구는 소득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사회적 지원 가능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행복감과 만족도도 낮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 중년 이혼 남성 1인 가구는 전반적 행복감, 대인관계, 안정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을 수 있는 집단이다.

〈표 2-9〉 1인 가구 유형 및 특성

구분	노년 사별 여성	노년 사별 남성	기러기형 중년	중년 이혼 여성	중년 이혼 남성	미혼 젊은 여성	미혼 젊은 남성
성별	여성 100%	남성 100%	여성 59.8%	여성 100%	남성 100%	여성 100%	남성 100%
평균연령	72.6세	68.3세	57.8세	56.9세	56.0세	38.1세	37.7세
혼인상태	사별 100%	사별 100%	기혼 86.9% 별거 13.1%	이혼 100%	이혼 100%	미혼 100%	미혼 100%
소득수준	가장 낮음	낮은 수준	약간 높음. 다양한 분포	1인가구 평균	높은 수준	약간 높음	높은 수준
사회적 지원 가능 대상							
금전	81.1	79.3	88.2	80.9	77.1	91.0	89.4
도구	95.3	88.7	95.7	87.6	78.9	96.3	93.2
정서	91.0	85.1	95.1	97.9	89.2	98.4	97.5
행복감과 만족도							
전반적 행복감	6.17	5.57	6.15	5.93	5.43	6.43	6.36
생활수준	5.36	5.47	5.34	5.28	5.28	5.89	5.92
건강	5.18	5.28	5.71	5.93	5.92	6.62	6.74
대인관계	6.04	6.04	6.01	5.84	5.71	6.22	6.30
안정감	5.76	5.76	5.94	5.47	5.33	6.04	6.00
공동체 소속감	5.25	5.39	5.64	5.23	5.42	5.83	6.01

자료: 민보경(2023). pp. 12-15. 〈표 2〉~〈표 4〉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구성함.

2. 1인 가구의 특성 분석 주요 연구별 분석 내용

1인 가구의 전반적 특성을 분석한 대표적 연구들로는 정경희 외(2012), 이민홍 외(2015), 홍승아 외(2017), 이원진 외(2021)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경제활동, 경제상태, 주거, 여가 및 사회참여, 건강 및 돌봄, 사회적 관계망 등과 같은 실태를 다인 가구와 비교하거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 가구의 삶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1인 가구를 특화하여 1인 가구로서의 삶의 모습 및 1인 가구로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장단점, 정책적 욕구 등을 다음과 같이 살펴봄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한 생활 세계를 제시하였다.

〈표 2-10〉 1인 가구의 특성 분석 주요 변수

구분		정경희 외 (2012)	이민홍 외 (2015)	홍승아 외 (2017)	이원진 외 (2021)
일반 특성	성별	○	○	○	○
	연령	○	○	○	○
	교육수준	○	○	○	○
	지역	○	○	○	○
	결혼상태	○	○	○	○
경제 활동	취업률	○	○	○	○
	종사상 지위	○	○		○
	실업률				○
	직종		○		○
	근로시간 형태		○		
	주 소득원 외 추가 소득활동			○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주로 하는 일			○	
	일자리 만족도			○	
	출퇴근 소요시간			○	
	정기휴무			○	
	임금				○
	시간당 임금				○

구분		정경희 외 (2012)	이민홍 외 (2015)	홍승아 외 (2017)	이원진 외 (2021)
경제 활동	노인일자리사업 경험률				○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경험률				○
	근로 및 가사노동시간			○	
경제 상태	가구소득	○	○	○	○
	근로소득	○		○	○
	근로소득 외 소득	○		○	○
	월간 총 가계지출	○	○	○	
	1인 가구의 가계수지			○	
	총재산액	○			○
	총부채액	○		○	○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			○
	저축실태	○		○	
	경제상태 전망	○		○	
	생활비 마련 방식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도움 교환 여부 및 금액			○	
	실제 생활비 및 이상 생활비			○	
	빈곤율				○
	전반적 생활수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
	퇴직연금 가입률		○		
	개인연금 가입률		○		
	고용보험 가입률		○		
	국민연금 수급률(가입률)		○		○
	아동 관련 급여				○
	장애 관련 급여				○
	근로, 자녀 장려금				○
	기타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수급률		○		○
주거	주택점유형태	○	○	○	○
	주택유형	○		○	○
	주거 위치				○
	주택 면적				○
	주택가격 및 임대료				○

구분		정경희 외 (2012)	이민홍 외 (2015)	홍승아 외 (2017)	이원진 외 (2021)
주거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				○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
	주거관리비 지출				○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		○
	주택의 필수설비				○
	주택 방범상태				○
	최저주거기준 미달				○
	주택 만족				○
	주거환경 만족(편의시설접근성, 이동교통 편의성, 지역사회 방범, 환경 쾌적성 등)				○
	주거환경 전반적 만족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 및 이용 비율				○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률		○		
	1년 전 거주지 변동	○			
	거주층	○			
	타지주택 소유여부	○			
	주택비용 마련 방법(구입, 임대)		○	○	○
여가 및 사회 참여	사회활동 참여율	○			
	여가시간, 만족도, 하는 일, 여가활동 동반자, 수면시간			○	
건강 및 돌봄	만성질환율	○	○		
	주관적 건강상태	○	○		○
	장애 여부		○		
	우울	○			○
	자아존중감	○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	○		
	주 이용 의료기관	○			
	외래진료 경험률		○		
	외래진료 횟수		○		
	입원율		○		
	입원 횟수		○		
	입원 일수		○		

구분		정경희 외 (2012)	이민홍 외 (2015)	홍승아 외 (2017)	이원진 외 (2021)
건강 및 돌봄	정신문제 상담률				○
	필요 의료서비스 미충족 경험 사유				○
	건강보험 가입실태	○	○		
	의료급여 수급률		○		○
	흡연율		○		○
	음주율		○		○
	영양관리		○		○
	신체기능상태		○		○
	인지기능상태		○		
	노인돌봄 수급시간(공식/비공식)				○
	낙상 경험률		○		
	자살생각		○		
	자살계획		○		
	자살시도		○		
사회적 관계망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	○		○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종류	○		○	
	만남, 전화, 문자 연락 빈도			○	
1인 가구 생활 실태	식사생활(횟수, 동반자, 장소)			○	○
	일과 개인생활 간 우선도			○	
	주요 관심사			○	
	독거기간	○			
	혼자 사는 이유	○		○	
	혼자 사는 것의 힘든 점	○		○	
	혼자 사는 것의 좋은 점	○		○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점	○			
	여유시간 시 우선시하는 활동	○			
	가장 큰 걱정거리	○			
	1인 가구 우선 필요사항			○	
	1인 가구 생활시간 분석			○	
	1인 가구 유지 의향	○		○	
	향후 1인 가구 유지 기간			○	
	결혼, 이혼, 재혼, 자녀에 대한 태도			○	
	결혼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			○	
	결혼할 계획			○	

구분		정경희 외 (2012)	이민홍 외 (2015)	홍승아 외 (2017)	이원진 외 (2021)
1인 가구 생활 실태	동거 고려 경험 및 이유			○	
	동거 경험 유무			○	
	성생활 태도 및 성관계			○	
	1인 가구 범죄 노출에 대한 생각			○	
	여성 1인 가구 범죄 노출에 대한 생각			○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		○	
	1인 가구 생활 만족도	○			
노후 계획	노후계획, 전망, 준비			○	
정책	1인 가구에 필요한 항목, 지원정책			○	

주: 정경희 외(2012)와 홍승아 외(2017)는 2차 자료와 조사자료를 모두 활용하였으며, 이민홍 외(2015)는 2차 자료 분석 진행
자료: 1) 정경희 외(2012), 2) 이민홍 외(2015), 3) 홍승아 외(2017), 4) 이원진 외(2021).

제3절 소결

이 장에서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1인 가구를 정의하는 핵심용어는 '혼자', '생계유지', '독립적'이다. 즉,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1인 가구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서 제시한 1인 가구가 갖는 보편적 욕구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이러한 광의적 의미로 1인 가구를 조작적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1인 가구는 그 이질성이 매우 큰 집단으로 집중적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집단의 경우 배건이, 정극원(2013)과 이준우, 장민선(2014)에서 제시한 정책적 접근을 고려하여 1인 가구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결혼에 대한 사회적 변화 양상을 고려한 1인 가구의 정의도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 가구 중 미혼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40대(1980년대 이후

출생자) 이후 세대는 출산율이 2.0 내외인 시기에 태어난 집단으로 형제자매가 많지 않은 세대이다. 이에 미래 중고령층은 결혼으로 인한 자녀의 부재와 원가족이 부재할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1인 가구를 정의하고, 그 조건으로 '무배우'로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개념을 필요에 따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을 모두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광의의 1인 가구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협의의 1인 가구는 '독립된 주거지에서 계속적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무배우 가구'로 정의하였다.

제3장

중고령 1인 가구의 규모와 특성

제1절 분석 내용 및 분석 방법
제2절 중고령 1인 가구의 규모 및 일반적 특성 변화
제3절 중고령 1인 가구의 다차원적 특성 변화
제4절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과정과 생활
제5절 소결

제 3 장 중고령 1인 가구의 규모와 특성

제1절 분석 내용 및 분석 방법

1. 중고령 1인 가구의 변화 추이와 전망

중고령 1인 가구의 변화 추이는 1인 가구 규모의 변화와 중고령 1인 가구의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1인 가구의 규모 변화는 장래가구추계를 기반으로 연령별로 가구 수 분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중고령 1인 가구의 현황은 본 연구에서 규정한 1인 가구의 정의를 기반으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표 3-1〉 중고령 1인 가구의 변화 추이와 전망 분석 내용 및 자료

구분	내용	자료
중고령 1인 가구 규모	- 1인 가구 변화 추계(2023~2050) -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변화	장래가구추계
중고령 1인 가구 현황	- 1인 가구 규모 • 연령·성별·지역별 인구수와 1인 가구 비율(무배우) -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 혼인상태 • 교육수준 • 경제활동 상태 • 주거점유 형태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연구진 작성

2.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 변화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 변화는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과정과 생활, 중고령 1인 가구의 다차원적 특성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과정과 생활은 1인 가구의 형성 과정, 1인 가구로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의미 있는 타자, 1인 가구의 정책 욕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중고령 1인 가구의 다차원적 특성은 경제수준, 건강, 경제활동, 주거, 사회적 관계망 측면에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영역별 중고령 1인 가구의 연령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대표적 자료들을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표 3-2〉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 변화 분석 내용 및 자료

구분	내용	자료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과정과 생활	- 1인 가구의 형성 • 중고령 1인 가구 비율 및 향후 유지 의향 • 중고령 1인 가구 거주 기간 • 중고령 1인 가구 형성 이유 • 중고령 1인 가구의 1인 가구 형성 직전 동거가족 - 1인 가구의 삶의 어려움과 지지처 • 현재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 • 향후 계속 1인 가구로 거주 시 걱정되는 부분 • 중고령 1인 가구의 의미 있는 타자 - 1인 가구의 정책 욕구 • 중고령 1인 가구의 정책 욕구 • 노후에 지내고 싶은 곳	가족실태조사 (2020)
중고령 1인 가구의 다차원적 특성	- 경제수준 • 소득, 지출, 자산 •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2021), 가족실태조사 (2020)
	- 건강 •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인지, 일상생활 제한, 우울) • 예방적 건강행위(예방접종, 건강검진, 암검진) • 일상생활 속 건강행위(폭음, 흡연, 외식)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2021)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여부 • 경제활동의 질(종사상 지위, 시간제 근로,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	
	- 주거 • 자가보유율 및 점유 비율 • 주택 점유 형태 • 주택 유형 • 주거 위치 • 주택 거주 기간 • 최저주거기준 • 필수설비 기준 •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기준 • 주택가격 및 임대료 • RIR 비율 • 생활비 및 주거관리비 • 주거 및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실태조사 (2012, 2021)

구분	내용	자료
중고령 1인 가구의 다차원적 특성	- 사회적 관계망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지원 대상자 여부 및 인원 •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지원 가능 대상자 여부 및 인원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대상자 여부 및 인원	사회조사 (2011, 2021)

자료: 연구진 작성

분석 방법은 코호트 비교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주된 연구가설은 '현재의 중고령 1인 가구와 미래의 중고령 1인 가구의 모습은 다를 것이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코호트 비교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1940년대 코호트, 1950년대 코호트, 1960년대 코호트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3〉 코호트 및 연령 구분

구분	2010년	비교	2020년
1960년대 코호트 (1960~1969년)	40대 (41~50세)		50대 (51~60세)
1950년대 코호트 (1950~1959년)	50대 (51~60세)		60대 (61~70세)
1940년대 코호트 (1940~1949년)	60대 (61~70세)		70대 (71~80세)

자료: 연구진 작성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령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노화에 따른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시계열 비교를 통해 1960년대생의 2010년 1인 가구(50대) 특성과 2020년 1인 가구(60대)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코호트 집단별 특성을 비교하였다. 즉, 현재의 중장년 1인 가구의 현황을 현재 노인 가구의 중장년 1인 가구 시절과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의 50대 1인 가구(1950년대생)와 2020년의 50대 1인 가구(1960년대생) / 2010년의 60대 1인 가구와 2020년의 60대 1인 가구를 비교하였다. 또한, 성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에 대해서는 성별 비교도 진행하였다.

〈표 3-4〉 분석방법

구분	내용
1단계	- 노화에 따른 특성 변화 • 시계열 비교 • 예) 시계열 비교를 통해 1960년대생의 2010년 1인 가구(40대) 특성과 2020년 1인 가구(50대)의 특성을 비교
2단계	- 코호트에 따른 특성 차이 • 코호트 비교 • 예) 2010년의 50대 1인 가구(1950년대생)와 2020년의 50대 1인 가구(1960년대생) / 2010년의 60대 1인 가구와 2020년의 60대 1인 가구 비교

자료: 연구진 작성

그러나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경우 1인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가 2020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므로,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은 단년도 분석으로만 진행하였다.

제2절 중고령 1인 가구의 규모 및 일반적 특성 변화

이 절에서는 1인 가구의 규모 및 일반적 특성의 변화 추이를 연령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구주택총조사와 장래가구추계, 장래인구추계 데이터 및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중고령 1인 가구의 규모 변화

중고령 1인 가구의 규모는 장래인구추계와 장래가구추계에서 발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하였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4,174천 가구(2010)에서 7,341천 가구(2023)로 1.7배가량 증가하여, 지난 10여 년간 1인 가구의 절대 수가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증가 폭이 가장 큰 연령군은 80대로 204천 가구(2010)에서 607천 가구(2023)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60대 519천 가구(2010)에서 1,250천 가구(2023), 50대 590천 가구(2010)에서 1,109천 가구(2023)도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1인 가구는 2040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30년을 기점으로 40~60대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연령군의 1인 가구 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40~60대의 전체 가구 구성에서 1인 가구는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잡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5〉 연령군별 인구수 및 1인 가구(2023~2050) 추계

(단위: 천 가구, 천 명)

구분		전연령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2010	가구 수	17,495	4,556	3,768	2,328	1,457	401
	인구수	49,554	8,578	6,752	4,090	2,565	923
	1인 가구 수	4,174	646	590	519	517	204
2023	가구 수	21,834	4,153	4,852	4,311	2,332	1,287
	인구수	51,558	7,977	8,578	7,526	3,884	2,343
	1인 가구 수	7,341	941	1,109	1,250	809	607
2030	가구 수	23,180	3,667	4,655	4,757	3,543	1,802
	인구수	51,199	7,074	8,167	8,237	5,885	3,144
	1인 가구 수	8,255	916	1,161	1,478	1,242	867
2040	가구 수	23,866	3,636	4,010	4,675	4,659	3,191
	인구수	50,193	6,963	7,059	7,949	7,635	5,439
	1인 가구 수	9,055	1,024	1,104	1,563	1,658	1,522

구분		전연령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2050	가구 수	22,849	2,619	4,047	4,092	4,658	4,532
	인구수	47,359	5,075	6,975	6,917	7,490	7,804
	1인 가구 수	9,054	808	1,207	1,446	1,664	2,217

자료: 1) 통계청(2022). 장래가구추계: 가구주의 연령/가구원 수별 추계가구_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6&conn_path=I3에서 2023. 2. 6. 인출.
2) 통계청(2021a).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3. 2. 6. 인출.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2023년 전체 가구의 33.6%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며, 80대 이상은 45% 이상이 1인 가구로 이미 1인 가구가 주도적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군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수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모든 연령군에서 증가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40~60대는 계속적 증가 경향을 보이는 반면, 70대와 80대 이상은 2023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아 중장년층의 1인 가구 특성에 대한 집중이 필요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1] 중고령 1인 가구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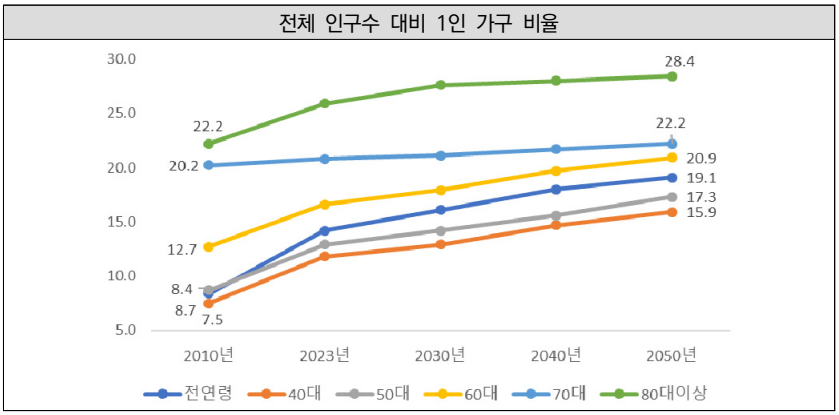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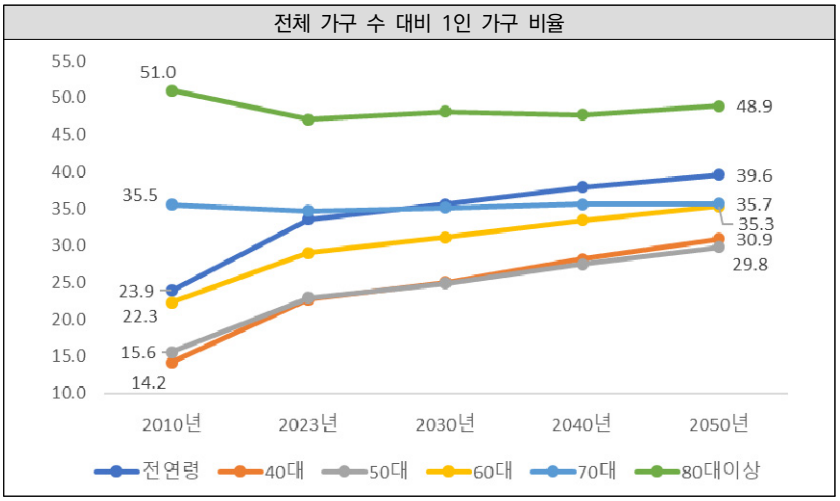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2022). 장래가구추계: 가구주의 연령/가구원 수별 추계가구_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6&conn_path=I3에서 2023. 2. 6. 인출.
2) 통계청(2021a).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3. 2. 6. 인출.

2. 중고령 1인 가구 현황

1) 분석 대상 및 방법

1인 가구의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전수 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표본 부문은 20%에 해당하는 표본에 대한 조사로 진행한다(통계청, 2020b). 가장 최근에 실시된 표본단위 조사는 2020년 인구총조사이며, 매 5년 단위로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과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마이크로데이터를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구데이터와 인구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데이터와 인구데이터를 병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병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구원 수(2020년은 가구구분 코드), 혼인상태를 활용하여 1인 가구를 추출하였다. 먼저 전체 대상자 중 1인 가구를 1차로 추출(가중치 적용 값 2010년 4,210,225명(9.0%), 2020년 7,330,616명(15.0%))하였다. 다음으로 이 중 미혼 또는 이혼/사별인 1인 가구를 추출하였다(가중치 적용 값 2010년 3,658,320명, 2020년 6,341,308명). 마지막으로 만연령 변수를 활용하여 연령별 1인 가구 비율을 살펴보았다.

2) 1인 가구의 규모

1인 가구의 특성은 전체 1인 가구와 무배우 1인 가구의 성별, 지역별 분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2010년 전체 1인 가구는 4,210천 명(전체 인구의 9.0%)이며, 2020년은 7,331천 명(전체 인구의 15.0%)으로 3,121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율도 6%p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혼·미혼·이혼가구의 증가로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는 2010년 3,658천 명에서 2020년 6,341천 명으로 2,683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비율도 5.1%p 증가하였다. 즉,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배우 1인 가구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배우 1인 가구는 앞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무배우 1인 가구의 증가는 향후 1인 가구 정책에서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연령군별 1인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군은 2010년과 2020년 모두 80대 이상이며, 지난 10년간의 증가 폭도

가장 컸다. 80대 이상은 무배우 1인 가구의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80대 이상은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1인 가구로 생활하는 비율이 높으며, 기존의 독거노인의 관점에서 개입해야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연령군은 60대와 50대이다.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는 40~50대의 1인 가구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민영(2016. 9. 28.)은 이들이 1인 가구의 증가를 견인하며, 이들을 고려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5년이 지난 2020년 시점에서 이들의 일부는 50~60대로 진입하였으며, 여전히 이들 집단의 1인 가구 수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군별 또 다른 특성으로는 40대 이하의 1인 가구 증가이다. 40대 이하 연령군의 경우 인구수는 감소한 것에 비해, 1인 가구 수는 증가하였으며, 무배우 1인 가구의 증가는 40대 미만에서 910천 명 증가하여 타 연령군에 비해 절대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즉, 전체적으로 1인 가구 절대 수의 증가는 40대 이하의 연령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0대 이하 1인 가구는 청년층으로 만혼으로 인한 일시적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고,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에 향후 삶의 모습이 다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중고령 1인 가구의 경우 향후 1인 가구로서의 삶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은퇴·이혼·사별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노화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와 함께 부모와 자신의 죽음이 가시적 범위로 들어오는 세대로,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기회가 축소될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 즉, 1인 가구의 증가는 40대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견인되고 있지만, 사회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주요 집단은 중고령층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6〉 연령군별 인구수와 1인 가구 비율

(단위: 천 명, %)

구분	2010년				
	전체 인구수 (A)	1인 가구		무배우 1인 가구	
		수(B)	비율 (B/A*100)	수(C)	비율 (C/A*100)
전체	46,651	4,210	9.0	3,658	7.8
연령					
40대 미만	24,498	1,607	6.6	1,517	6.2
40대	8,167	633	7.8	487	6.0
50대	6,531	602	9.2	434	6.6
60대	3,969	546	13.8	451	11.3
70대	2,595	581	22.4	537	20.7
80대 이상	891	241	27.0	232	26.1
구분	2020년				
	전체 인구수	1인 가구		무배우 1인 가구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49,029	7,331	15.0	6,341	12.9
연령					
40대 미만	21,184	2,525	11.9	2,427	11.5
40대	7,934	1,013	12.8	835	10.5
50대	8,287	1,188	14.3	870	10.5
60대	6,424	1,170	18.2	906	14.1
70대	3,514	858	24.4	760	21.6
80대 이상	1,685	576	34.2	542	32.2

주: 1) 인구가중치를 사용하여 산출
2) 비율은 각각의 값을 활용하여 연구자 별도 계산
자료: 통계청(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통계청(2020c).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무배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무배우 1인 가구 중 남성은 2010년 1,602천 명(7.0%)에서 2020년 3,021천 명(12.5%)으로 약 5.5%p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2010년 2.057천 명(8.6%)에서 2020년 3,320천 명(13.4%)으로 4.8%p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무배우 1인 가구 수와 비율이 높았다.

〈표 3-7〉 연령군별 * 성별 무배우 1인 가구 비율

(단위: 천 명, %)

구분	2010년					
	남성			여성		
	전체 인구수(A)	무배우 1인가구 수(B)	비율 (B/A*100)	전체 인구수(A)	무배우 1인가구 수(B)	비율 (B/A*100)
전체	22,819	1,602	7.0	23,832	2,057	8.6
연령						
40대 미만	12,344	891	7.2	12,154	626	5.1
40대	4,057	282	6.9	4,109	205	5.0
50대	3,216	197	6.1	3,315	237	7.2
60대	1,865	115	6.2	2,104	335	15.9
70대	1,070	85	8.0	1,525	452	29.7
80대 이상	266	31	11.7	625	201	32.1
구분	2020년					
	남성			여성		
	전체 인구수(A)	무배우 1인가구 수(B)	비율 (B/A*100)	전체 인구수(A)	무배우 1인가구 수(B)	비율 (B/A*100)
전체	24,202	3,021	12.5	24,826	3,320	13.4
연령						
40대 미만	10,818	1,400	12.9	10,367	1,027	9.9
40대	3,967	524	13.2	3,967	311	7.8
50대	4,107	481	11.7	4,181	389	9.3
60대	3,111	351	11.3	3,314	555	16.7
70대	1,590	175	11.0	1,924	584	30.4
80대 이상	610	89	14.6	1,074	453	42.2

주: 1) 인구가중치를 사용하여 산출
2) 비율은 각각의 값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별도 계산
자료: 통계청(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통계청(2020).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연령군별 * 성별 1인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40대 미만의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절대 수는 적었다. 그러나 전체 인구수 대비 1인 가구 수의 경우 남성은 80대 미만까지는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60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50대를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거나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60대부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는 80대 이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난 10년간의 증가 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성 1인 가구의 증가 폭이 여성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40대 이상의 중고령 연령층의 1인 가구 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60대의 경우 변화율이 205%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도 80대 이상, 50대의 변화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군에서 60% 정도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70대는 29%로 타 연령군에 비해서 낮았다. 반면 80대 이상은 125%로 높은 변화율을 보였다. 즉, 80대 이상의 초고령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50~60대 중장년층의 1인 가구 증가율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2〕 연령군별 * 성별 무배우 1인 가구 변화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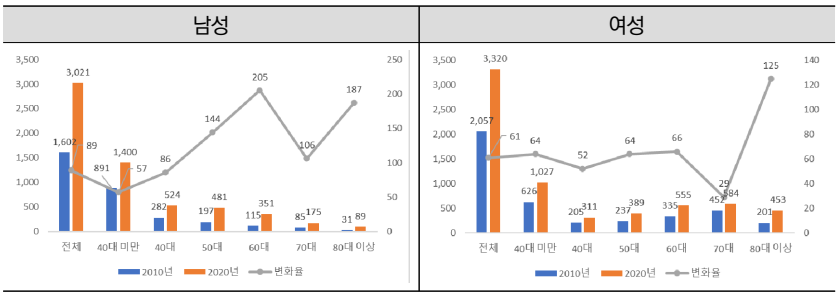

주: 변화율 = (2020년-2010년)/2010년*100
자료: 통계청(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통계청(2020c).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1인 가구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는 무배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무배우 1인 가구 중 동부 거주자는 2010년 2,839천 명(7.5%)에서

2020년 5,117천 명(12.7%)으로 약 5.2%p 증가하였으며, 읍면부 거주자는 2010년 820천 명(9.4%)에서 2020년 1,225천 명(13.8%)으로 4.4%p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동부에 거주하는 무배우 1인 가구 수와 비율이 높았다.

〈표 3-8〉 연령군별 * 지역별 무배우 1인 가구 비율

(단위: 천 명, %)

구분	2010년					
	동부			읍면부		
	전체 인구수(A)	무배우 1인가구 수(B)	비율 (B/A*100)	전체 인구수(A)	무배우 1인가구 수(B)	비율 (B/A*100)
전체	37,899	2,839	7.5	8,752	820	9.4
연령						
40대 미만	20,795	1,365	6.6	3,703	152	4.1
40대	6,823	417	6.1	1,344	71	5.2
50대	5,228	345	6.6	1,303	89	6.9
60대	2,894	309	10.7	1,075	142	13.2
70대	1,627	294	18.1	969	243	25.1
80대 이상	532	109	20.6	359	123	34.1
구분	2020년					
	동부			읍면부		
	전체 인구수(A)	무배우 1인가구 수(B)	비율 (B/A*100)	전체 인구수(A)	무배우 1인가구 수(B)	비율 (B/A*100)
전체	40,132	5,117	12.7	8,896	1,225	13.8
연령						
40대 미만	18,060	2,138	11.8	3,124	289	9.3
40대	6,661	705	10.6	1,273	131	10.3
50대	6,755	704	10.4	1,533	167	10.9
60대	4,972	713	14.3	1,453	193	13.3
70대	2,575	539	20.9	939	221	23.5
80대 이상	1,110	318	28.7	575	224	39.0

주: 1) 인구가중치를 사용하여 산출
2) 비율은 각각의 값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별도 계산
자료: 통계청(2020c).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연령군별 * 지역별 무배우 1인 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동부는 40대 미만의 무배우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적었다. 반면, 읍면부의 경우 2010년은 70대의 절대 수가 가장 많았으나, 2020년은 40대 미만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40대 이후로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1인 가구의 절대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인구수 대비 무배우 1인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50대 이하에서는 동부와 읍면부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40대 미만은 읍면부의 무배우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반면, 2010년 60대, 2020년은 70대 이상의 집단에서 읍면부의 무배우 1인 가구 비율이 동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그러나 2010년에 비해 2020년의 차이는 크게 감소하였다(동부와 읍면부 차이: 80대 이상-2010년 13.5%p, 2020년 10.3%p / 70대-2010년 7.0%p, 2020년 2.6%).

지난 10년간의 증가 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동부 거주자의 무배우 1인 가구 증가 폭이 읍면부 거주자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변화율 자체도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부 거주 무배우 1인 가구의 수는 80대 이상의 변화율이 192%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60대, 50대의 변화율이 높았다. 반면, 70대는 타 중고령 연령군에 비해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읍면부 거주 무배우 1인 가구의 변화율은 동부와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집단은 40대 미만이며, 40대와 50대의 증가율도 높았다. 반면, 70대는 오히려 무배우 1인 가구 수가 감소하였으며, 60대도 36%로 타 연령군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즉, 동부와 읍면부 모두 80대 이상의 무배우 1인 가구 증가율이 높고, 70대의 증가율이 타 연령군에 비해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읍면부의 40대 이하 1인 가구의 증가 폭이 동부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 연령군별 * 지역별 무배우 1인 가구 변화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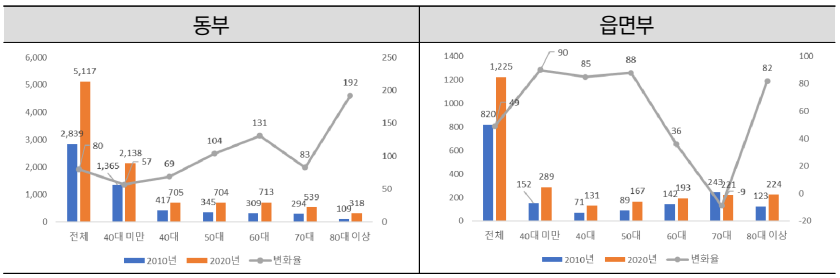

주: 변화율 = (2020년-2010년)/2010년*100
자료: 통계청(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통계청(2020c).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3)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무배우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혼인상태, 교육수준, 근로 여부,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보았으며, 연령군별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가) 혼인상태

무배우 1인 가구는 미혼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별, 이혼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의 비율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사별의 비율이 높다. 다만, 이혼의 경우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2020년은 미혼과 이혼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사별은 감소하였다. 연령군별로 시계열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40대의 경우 미혼의 비율이 17.8%p 증가한 반면, 이혼은 14.2%p 감소하여, 2010년 대비 큰 변화를 보였다. 이

러한 경향은 50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2010년 무배우 1인 가구 50대의 혼인상태는 이혼(47.4%), 사별(28.7%), 미혼(23.8%) 순이었던 반면, 2020년은 이혼(49.7%), 미혼(39.0%), 사별(11.3%)로 혼인상태가 많이 변화되었다. 즉, 40대와 50대는 2010년 대비 이혼의 비율은 유사하지만, 미혼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무배우 1인 가구 60대의 결혼상태는 2010년 사별(74.3%), 이혼(19.7%), 미혼(6.0%) 순에서 2020년 이혼(44.1%), 사별(41.7%), 미혼(14.3%)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즉, 사별의 비율은 급감하고, 이혼과 미혼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이들 집단은 2010년 50대였던 집단으로 당시의 혼인상태에서 일부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배우 1인 가구 70대도 2010년은 사별의 비율이 93.7%로 대부분이었으나, 2020년은 79.5%로 감소한 반면, 이혼은 11.3%p 증가하였다. 반면, 80대 이상은 크게 특성이 변화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표 3-9〉 무배우 1인 가구의 연령군별 혼인상태

(단위: %)

구분	2010년			2020년		
	미혼	사별	이혼	미혼	사별	이혼
전체	51.5	33.2	15.3	55.5	25.4	19.1
연령						
40대 미만	96.2	0.1	3.6	97.9	0.1	2.1
40대	58.3	4.6	37.1	76.1	1.1	22.9
50대	23.8	28.7	47.4	39.0	11.3	49.7
60대	6.0	74.3	19.7	14.3	41.7	44.1
70대	1.6	93.7	4.8	4.4	79.5	16.1
80대 이상	0.8	97.6	1.6	1.3	95.6	3.2

주: 인구가중치를 사용하여 산출
자료: 통계청(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통계청(2020c).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2010년에 비해 2020년 무배우 1인 가구의 혼인상태가 크게 변동되었으며, 연령군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40대와 50대는 미혼의 비율이 급증하고, 60대와 70대는 이혼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나) 교육수준

무배우 1인 가구의 교육수준은 2010년 중학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0년은 대학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이 적을수록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중학교 이하의 비율이 높았으나, 고등학교는 2010년은 40대, 2020년은 50대의 비율이 높았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0대의 경우 대학 이상의 비율이 22.2%p 증가한 반면, 중학교 이하와 고등학교는 급감하여, 교육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며, 고학력자가 증가한 연령군이다. 50대의 경우는 2010년 절반 이상이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보였으나, 2020년은 2010년에 비해 중학교 이하의 비율이 36.9%p 감소하였고, 대학 이상 비율이 14.8%p, 고등학교 비율이 22.1%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아졌다. 60대는 역시 50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고등학교 비율이 29.9%p 증가하여 대학 이상의 증가율은 50대보다 낮은 특성을 보인다. 70대와 80대 이상도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증가한 경향을 보이지만, 40~60대의 교육수준 변화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3-10〉 무배우 1인 가구의 연령군별 교육수준

(단위: %)

구분	2010년			2020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전체	38.3	24.9	36.8	25.8	29.5	44.8
연령						
40대 미만	2.1	26.2	71.7	0.7	18.7	80.6
40대	17.8	50.8	31.4	3.6	42.8	53.6
50대	52.7	33.7	13.6	15.8	55.8	28.4
60대	79.1	15.3	5.7	42.1	45.2	12.7
70대	89.5	7.2	3.3	77.5	15.8	6.8
80대 이상	93.7	4.4	1.9	88.0	8.0	4.0

주: 1) 인구가중치를 사용하여 산출
2) 졸업, 재학, 중퇴 포함
자료: 통계청(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통계청(2020c).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다) 경제활동 상태

무배우 1인 가구는 50%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의 경제활동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이후로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활동 비율이 낮았다. 평생 일한 적이 없는 비율은 4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으며, 80대 이상은 90% 이상이 평생 일한 적이 없었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2020년 57.9%로 2010년에 비해 5%p 높아졌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와 60대의 증가율이 타 연령군에 비해 높았다.

〈표 3-11〉 무배우 1인 가구의 연령군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구분	2010년			2020년		
	일하고 있음	현재 휴직 중	일한 적 없음	일하고 있음	현재 휴직 중	일한 적 없음
전체	52.9	1.9	45.2	57.9	1.9	40.3
연령						
40대 미만	69.0	2.3	28.8	75.4	2.0	22.6
40대	71.9	3.3	24.8	78.4	3.3	18.4
50대	58.4	2.3	39.2	67.1	2.7	30.2
60대	35.1	1.4	63.5	43.6	1.4	54.9
70대	20.3	0.6	79.1	21.2	0.4	78.4
80대 이상	7.2	0.3	92.5	8.4	0.2	91.4

주: 인구가중치를 사용하여 산출
자료: 통계청(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통계청(2020c).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라) 주거점유형태

무배우 1인 가구는 월세 및 무상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가, 전세 순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의 비율이 높았으며, 전세, 월세 및 무상의 비율은 낮았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가의 비율은 0.2%p 증가, 전세는 1.7%p 감소한 반면, 월세 및 무상은 1.4%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무배우 1인 가구의 주거점유형태는 불안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40대 미만(2.2%p)과 40대(6.1%p)는 자가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50대 이상은 월세 및 무상 거주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60대의 경우 자가의 비율이 11.4%p 감소하여 타 연령군에 비해 주거점유형태가 매우 악화된 특성을 보인다.

〈표 3-12〉 무배우 1인 가구의 연령군별 주거점유형태

(단위: %)

구분	2010년			2020년		
	자가	전세	월세 및 무상	자가	전세	월세 및 무상
전체	32.8	19.9	47.3	33.0	18.2	48.7
연령						
40대 미만	10.6	25.4	64.1	12.8	26.1	61.1
40대	22.3	21.1	56.5	28.4	18.9	52.7
50대	35.2	17.5	47.4	34.0	14.0	52.0
60대	57.4	14.6	28.1	46.0	12.3	41.7
70대	67.5	12.9	19.6	61.9	10.5	27.5
80대 이상	67.8	13.0	19.3	67.1	9.2	23.8

주: 인구가중치를 사용하여 산출
자료: 통계청(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통계청(2020c).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제3절 중고령 1인 가구의 다차원적 특성 변화

1. 경제상태

가. 분석 대상 및 방법

중고령 1인 가구의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도 및 2021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10년 동안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2011년과 2021년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2년부터 소득원 조사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분석 대상자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시된 가구원 수, 혼인상태, 만연령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1인 가구를 추출하였다. 먼저 전체 대상자 중 1인 가구를 1차로 추출(가중치 미적용 값 2012년 3,560명(18.0%), 2021년 4,967명(27.3%))하였다. 다음으로 이 중에서 미혼 또는 이혼/사별인 1인 가구를 추출하였다(가중치 미적용 값 2012년 5,557명, 2021년 4,917명). 마지막으로 만연령 변수를 활용하여 코호트별로 1인 가구를 분류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생년월일 변수를 제공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만연령을 기준으로 코호트를 별도로 산출하였다. 최종 분석자료는 2012년 1,708명(1940년대 코호트 745명, 1950년대 코호트 525명, 1960년대 코호트 428명), 2021년 2,884명(1940년대 코호트 1,089명, 1950년대 코호트 1,002명, 1960년대 코호트 793명)이다.

〈표 3-13〉 코호트별 연령 범위

구분	2010년	2012년	2021년
1940~1949년	61~70세	63~72세	72~81세
1950~1959년	51~60세	53~62세	62~71세
1960~1969년	41~50세	43~52세	52~61세

자료: 연구진 작성

소득 및 지출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그 가치가 상이하므로 2012년과 2021년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데이터 중 가장 최근 시점인 2021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산출하였으며, 그 기준은 통계청(n.d.)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화폐가치 변화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9년부터 금융·복지 조사표를 일원화하였으며, 2018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비소비 지출 및 처분가능소득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및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자료를

보완한 결과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16년 이전 통계조사 결과는 조사자료로 작성되었기에 2018년 이전 자료와 이후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10년간의 경향성 변화 검토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시점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 파악을 위해 앞에서 분석하였던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을 검토하였다.

나. 분석 결과

1) 소득

1인 가구의 연평균 총소득은 2012년에 비해 2021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먼저 코호트 집단 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총소득 수준이 증가하였다. 특히나 1940년대 코호트는 총소득액이 438.20만 원 증가하여 247.3만 원(1950년대), 103.8만 원(1960년대)이 증가한 타 코호트에 비해 소득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세부 소득별로 살펴보면, 세 코호트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한 반면,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1940년대 코호트는 413.7만 원, 1950년대 코호트는 556.5만 원, 1960년대 코호트는 262.0만 원이 증가하여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분석 대상의 소득수준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14년 이후 급격히 확대된 기초연금과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성숙 등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4〉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2012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총소득	1,066.6	1,736.9	2,605.1	1,504.8	1,984.2	2,708.9
남성 총소득	1,436.5	2,005.0	2,834.2	1,631.9	2,058.1	2,877.0
여성 총소득	954.5	1,558.8	2,340.0	1,469.9	1,945.1	2,550.8
세부소득						
근로소득	248.0	748.1	1,629.1	166.4	591.4	1,499.6
사업소득	181.9	533.7	698.3	86.2	242.9	621.3
재산소득	108.1	107.2	106.5	266.0	205.0	143.1
공적이전소득	304.1	193.2	75.6	717.8	749.7	337.6
사적이전소득	224.5	154.8	95.6	268.3	195.1	107.3

주: 1) 가중치: 2012년 공통가중치 / 2021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2) 기준연도 대비 2021년 실질물가를 적용. 2012년은 2011년 소득을, 2021년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므로, 2011년과 2020년 대비 2021년 기준의 실질물가를 반영함.
자료: 통계청(2012, 2021b).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코호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현재의 60대인 1950년대생의 2021년 총소득은 1,984.2만 원이며, 과거의 60대인 1940년대생의 2012년 총소득은 1,066.6만 원으로 10년 전의 60대에 비해 현재의 60대의 소득수준이 917.6만 원 더 많았다. 세부 소득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전체 소득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공적이전소득은 445.6만 원이 증가하여 그 증가 폭이 매우 컸다.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50대의 코호트 비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현재의 50대인 1960년대생의 2021년 총소득은 2,708.9만 원으로 2012년 50대인 1950년대생의 2012년 총소득인 1,736.9만 원에 비해 972.0만 원 많았다. 두 집단의 총소득 차이는 근로소득이 견인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 소득 차이 중 근로소득 차이가 751.5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유일하게 감소하였으며, 60대에 비해 감소 폭이 더 컸다.

〔그림 3-4〕 코호트별 소득 비교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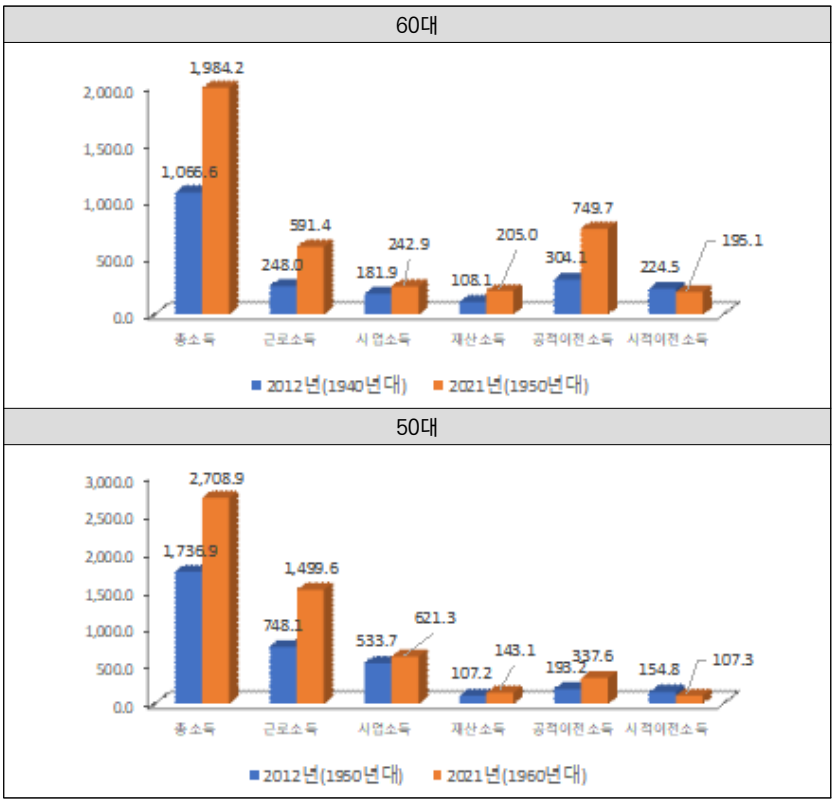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 2021b).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2) 지출

1인 가구의 연평균 총지출은 2012년에 비해 2021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먼저 코호트 집단 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총지출 수준이 증가하였다. 특히 1940년대 코호트는 총지출액이 177.2만 원 증가하여 47.3만 원(1950년대), 145.8만 원(1960년대)이 증가한 타 코호트에 비해 소득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40년대

코호트의 소득이 급증한 것과 연관되어 해석할 수 있다. 반면, 1960년대 코호트의 경우 소득의 증가액은 타 코호트에 비해 가장 적지만, 지출액은 145.8만 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비소비 지출과 소비 지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40년대 코호트는 비소비 지출이 증가한 반면, 1950년대 코호트와 1960년대 코호트는 감소하였다. 반면, 소비 지출은 모든 코호트에서 증가하였다.

〈표 3-15〉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연평균 지출

(단위: 만 원)

구분	2012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총지출	904.8	1,350.1	1,806.7	1,082.0	1,397.4	1,952.5
남성 총지출	1,168.7	1,350.8	2,009.6	1,207.4	1,471.3	2,053.5
여성 총지출	817.8	1,349.6	1,568.4	1,047.5	1,358.2	1,857.4
세부지출						
비소비 지출	108.8	274.4	526.6	153.4	218.0	485.0
소비 지출	732.0	1,006.7	1,359.0	928.6	1,179.4	1,467.5

주: 1) 가중치: 2012년 공통가중치 / 2021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2) 기준연도 대비 2021년 실질물가를 적용. 2012년은 2011년 지출을, 2021년은 2020년 지출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므로, 2011년과 2020년 대비 2021년 기준의 실질물가를 반영함.
자료: 통계청(2012, 2021b).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코호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현재의 60대인 1950년대생의 2021년 총지출은 1,397.4만 원이며, 과거의 60대인 1940년대생의 2012년 총지출은 904.8만 원으로 10년 전의 60대에 비해 현재의 60대의 지출액이 492.6만 원 더 많았다. 비소비 지출과 소비 지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소비 지출은 109.2만 원, 소비 지출은 447.4만 원 증가하였다. 50대의 코호트 비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현재의 50대인 1960년대생의 2021년 총지출은 1,952.5만 원으로 2012년 50대인 1950년대생의 2012년 총지출인 1,350.1만 원에 비해 602.4만 원 많았다.

〔그림 3-5〕 코호트별 총지출 비교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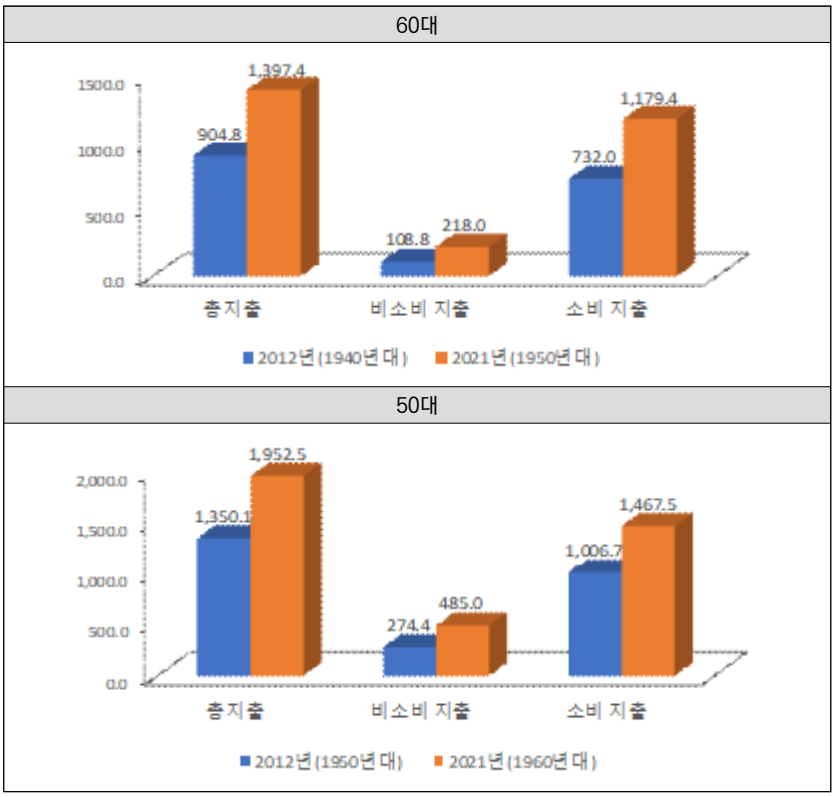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 2021b).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3) 자산

1인 가구의 자산은 자산,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세 가지를 살펴본 결과 자산, 부채, 순자산 모두 증가하였다.

먼저 자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산의 총액과 증가액 모두 1940년대 코호트가 가장 많은 반면, 부채는 1960년대 코호트가 가장 많고, 증가액도 가장 많았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021년 기준 1940년대

코호트가 22,063.6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960년대 코호트는 17,004.8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3-16〉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연평균 자산

(단위: 만 원)

구분	2012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총 자산	13,776.0	16,384.6	14,956.6	23,808.5	22,452.7	21,448.9
총 부채	1,624.2	2,219.7	3,280.9	1,745.0	2,380.7	4,444.1
총 순자산	12,151.8	14,164.9	11,675.7	22,063.6	20,072.0	17,004.8

주: 1) 가중치: 2012년 공통가중치 / 2021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2) 기준연도 대비 2021년 실질물가를 적용하였으며, 자산 및 부채는 조사연도 기준의 자산 및 부채로 2012년은 2012년 대비 2021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 2021년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2012, 2021b).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코호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현재의 60대인 1950년대생의 2021년 총자산은 22,452.7만 원이며, 과거의 60대인 1940년대생의 2012년 총자산은 13,776.0만 원으로 10년 전의 60대에 비해 현재의 60대의 자산액이 8,676.7만 원 더 많았다. 반면 부채 역시도 2021년 60대가 더 많았으나, 자산의 증가액이 더 많아 순자산 역시 현재의 60대가 20,072.0만 원으로 2012년에 비해 756.5만 원 많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50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50대의 경우 2012년의 50대에 비해 2021년의 50대는 총부채의 증가액이 2,224.4만 원으로 60대에 비해 증가액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순자산이 증가하였음에도 실제 증가액은 2,839.9만 원 수준으로 60대 증가액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현재의 50대인 1960년대 코호트의 경우 자산 측면에서는 타 연령군에 비해 열악한 상황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3-6〕 코호트별 자산 비교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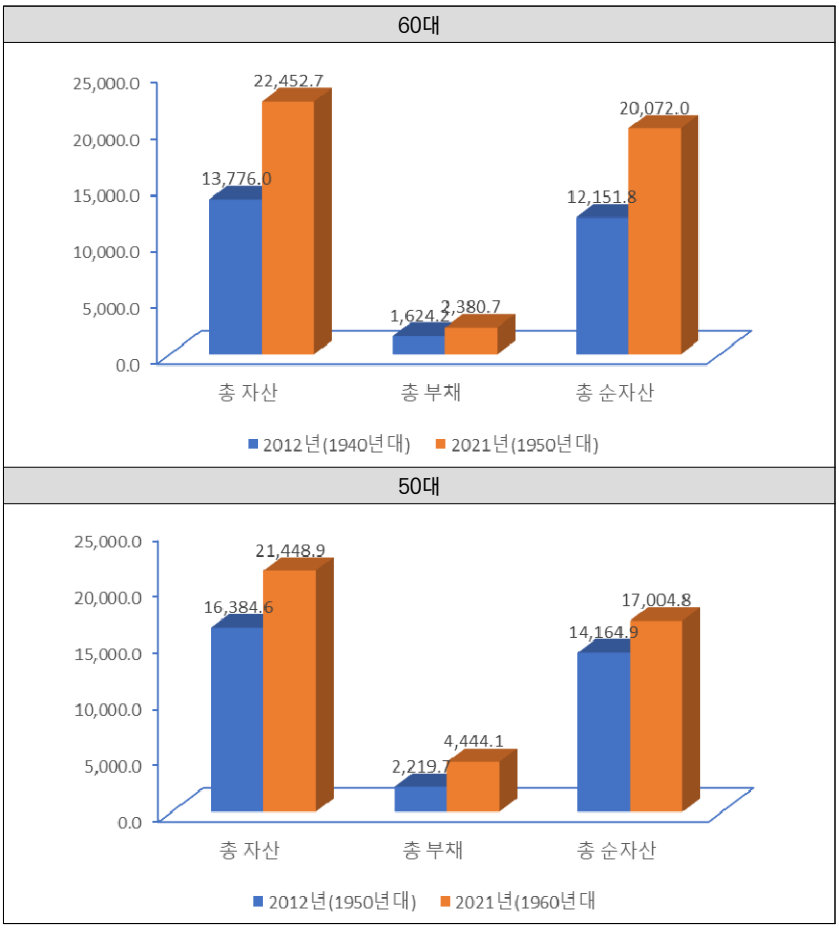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 2021b).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4)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

중고령 1인 가구의 47.1%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비율이 높았다. 특히 50대의 경우 60.2%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80대 이상은 25.2%만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어 연령군별로 차이를 보였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의 경제적 노후준비 비율이 53.0%로 가장 높았으며, 사별은 44.5%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비율이 높았으며, 대학 이상은 73.7%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61.5%),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이(53.3%)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한 비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도 경제적 노후준비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300만 원 이상인 1인 가구는 80% 이상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100만 원 미만은 27.0%만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64.4%로 가장 많았고, 예금 및 적금 41.2%, 개인연금 23.3% 등의 순이었다. 연령이 적을수록 국민연금, 개인연금, 예금 및 적금 등 다양한 준비 방법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연령이 많은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국민 및 개인연금을 통한 준비는 낮고 부동산 운용의 비율이 높았다. 그 외에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3-17〉 중고령 1인 가구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및 방법

(단위: %)

구분	경제적 준비	준비 방법[3]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인연금	퇴직금/연금	예금 및 적금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기타
전체	47.1	64.4	6.7	23.3	4.7	41.2	12.6	2.5	3.5
성별									
남자	46.0	69.2	7.2	21.1	5.9	39.6	7.5	5.7	4.2
여자	47.6	62.1	6.4	24.4	4.0	42.0	15.0	0.9	3.1

구분	경제적 준비	준비 방법[3]							
		국민 연금	특수직 역연금	개인 연금	퇴직금 /연금	예금 및 적금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기타
연령									
50대	60.2	78.7	2.1	35.1	6.3	46.3	6.3	4.2	0.7
60대	56.1	68.4	8.4	20.9	3.4	39.3	10.9	2.2	2.0
70대	40.6	50.8	8.5	15.1	5.2	38.8	20.3	0.9	6.3
80대 이상	25.2	38.9	10.2	15.9	3.2	38.9	19.3	2.5	10.3
혼인상태									
미혼	53.0	63.2	6.6	38.1	9.7	49.1	3.8	5.8	0.6
별거·이혼	49.2	71.6	3.9	25.7	4.9	38.8	12.1	2.6	2.9
사별	44.5	59.6	8.7	17.9	3.2	40.9	15.1	1.6	4.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9	57.1	5.6	16.5	3.0	39.4	12.8	0.1	4.1
고등학교	55.5	76.4	3.6	25.8	5.3	39.9	9.9	4.6	2.4
대학 이상	73.7	61.2	13.8	34.4	7.3	47.3	16.4	4.4	3.8
근로 여부									
미근로	38.2	55.1	10.6	19.2	4.2	36.1	16.8	1.5	5.2
근로	61.5	73.8	2.7	27.4	5.1	46.4	8.4	3.6	1.7
자가									
비자가	41.3	66.8	3.4	26.4	3.6	40.7	3.8	2.7	3.1
자가	53.3	62.5	9.4	20.8	5.6	41.7	19.9	2.4	3.8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27.0	61.4	2.3	17.4	2.7	33.4	10.2	1.2	6.4
100~200만 원 미만	62.7	60.8	6.3	19.0	2.3	39.7	12.7	1.2	3.0
200~300만 원 미만	76.8	73.4	10.0	27.7	10.0	51.4	4.3	2.5	0.0
300~400만 원 미만	81.7	70.6	16.3	48.3	8.0	53.0	19.6	8.6	3.5
400~500만 원 미만	87.3	71.4	24.6	36.8	4.7	64.2	49.9	3.4	6.8
500만 원 이상	89.3	67.5	0.6	42.9	12.9	35.8	40.6	15.5	0.0

주: 1) 중복응답으로 계가 100.0%를 초과할 수 있음.
2) 가구가중치 적용
3) 경제적 노후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 경제활동

가. 분석 대상 및 방법

중고령 1인 가구의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중 2011년과 2021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패널 자료이며, 저소득층을 과대표집(여유진 외, 2020)하였기 때문에 해당 대상의 모수를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활용방안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였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가구원 수 변수를 제공하지 않아 1인 가구를 별도로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한계를 인정하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중고령 무배우 1인 가구의 분석 대상자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제시된 가구원 수, 혼인상태, 출생연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1인 가구를 추출하였다. 먼저 전체 대상자 중 1인 가구를 1차로 추출(가중치 미적용 값 2011년 1,457명(가중치 적용 6.1%), 2021년 2,172명(가중치 적용 9.8%))하였다. 다음으로 이 중 미혼 또는 이혼/사별인 1인 가구를 추출하였다(가중치 미적용 값 2011년 1,406명(가중치 적용 5.7%), 2021년 2,128명(가중치 적용 9.6%)). 마지막으로 출생연도 변수를 활용하여 코호트별로 1인 가구를 분류하였다. 최종 분석자료는 2011년 519명(1940년대 코호트 139명, 1950년대 코호트 125명, 1960년대 코호트 77명), 2021년 1,161명(1940년대 코호트 674명, 1950년대 코호트 344명, 1960년대 코호트 143명)이다.

〈표 3-18〉 코호트별 연령 범위

구분	2011년	2021년
1940~1949년	62~71세	72~81세
1950~1959년	52~61세	62~71세
1960~1969년	42~51세	52~61세

자료: 연구진 작성

한국복지패널은 2012년에 신규 표본 1,800가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은 횡단분석표본가중을 활용하였으며, 2021년은 횡단분석표본가중(통합)을 활용하였다. 1인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은 경제활동 참여율과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일자리 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나. 분석 결과

1) 경제활동 참여율

코호트별 1인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자 비율은 모든 코호트에서 2011년 대비 2021년에 감소하였으며,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은퇴 경험 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11년과 2021년 모두 연령이 많은 코호트에서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낮았다. 가장 감소율이 큰 코호트는 1940년대 코호트의 남자이며, 약 30%p 감소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코호트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1940년대와 1960년대 코호트는 남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반면, 1950년대 코호트는 두 시점 모두 여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았다.

2011년에 60대인 1940년대 코호트에 비해 2021년에 60대인 1950년대 코호트는 경제활동인구가 약간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감소하고 여성은 증가하였다. 50대인 2011년 1950년대 코호트와 2021년 1960년대 코호트는

이와 반대로 남성은 증가하고 여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1950년대 코호트의 경우 시계열 비교 및 코호트 비교 모두에서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2021년 기준 60대의 경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과거 60대에 비해서도 경제활동의 의지가 있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3-19〉 코호트별 1인 가구의 경제활동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비경제활동인구	62.3	43.2	19.7	73.7	56.3	41.0
남자	42.4	50.0	17.1	74.0	54.9	40.0
여자	68.9	38.7	22.9	73.6	56.6	42.0
경제활동인구	37.7	56.8	77.6	25.9	38.4	58.3
남자	57.6	50.0	78.0	26.0	36.6	60.0
여자	31.1	61.3	77.1	25.8	39.6	56.5
실업인구	0.0	0.0	2.6	0.4	5.3	0.7
남자	0.0	0.0	4.9	0.0	8.5	0.0
여자	0.0	0.0	0.0	0.6	3.8	1.4

주: 가중치: 2021년 횡단분석표본가중치 / 2021년 횡단분석표본가중(통합)을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2011, 2021).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2) 경제활동 참여상태

코호트별 1인 가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다음과 같다. 모든 연령군에서 2011년에 비해 2021년 상용직과 일용직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임시직은 1950년대 코호트만 증가하였다. 또한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특히나 1940년대 코호트의 비율이 급증하였으며, 이는 60세 또는 65세 이상부터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량이 계속적

으로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1960년대 코호트는 2011년에 비해 2021년 자영업과 고용주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1950년대 코호트 역시 자영업자의 비율이 2배 가장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중고령 1인 가구의 은퇴 후 종사상 지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코호트별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2021년 60대인 1950년대 코호트는 2011년 60대인 1940년대 코호트에 비해 상용직과 임시직의 비율이 높았으며, 일용직의 비율이 낮았다. 또한 공공형 일자리의 비율도 1940년대 코호트에 비해 1950년대 코호트의 비율이(1940년대 코호트 2011년 5.7%, 1950년대 코호트 2021년 13.7%) 높았다. 이는 과거의 60대 무배우 1인 가구에 비해 현재의 60대 무배우 1인 가구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공공의 의존도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대 연령군의 코호트 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50대인 1960년대 코호트는 2011년 50대인 1950년대 코호트에 비해 고용주와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다. 즉, 50대의 경우 은퇴 이후 자영업 종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0〉 코호트별 1인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상용직 임금근로자	1.9	21.1	22.0	1.7	7.8	17.6
임시직 임금근로자	18.9	35.2	32.2	11.9	43.1	27.1
일용직 임금근로자	30.2	26.8	30.5	6.8	12.7	18.8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5.7	2.8	1.7	49.2	13.7	7.1
고용주	0.0	1.4	1.7	0.0	0.0	5.9
자영업자	43.4	12.7	11.9	30.5	22.5	23.5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0.0	0.0

주: 1) 가중치: 2021년 횡단분석표본가중치 / 2021년 횡단분석표본가중(통합)을 적용하여 분석
2)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 참여자 중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2011, 2021).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다음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2011년에 비해 2021년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1940년대 코호트와 1950년대 코호트에서는 증가하였으며, 1960년대 코호트는 감소하였다. 특히 1940년대 코호트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16.7%에서 82.5%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60대에서 70대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은퇴 이후 비정규적 일자리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940년대 코호트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50%p 이상 급증하였으며, 1950년대 코호트도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1960년대 코호트는 남자는 시간제 비율이 증가한 반면, 여자는 감소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즉, 60대 이후는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급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코호트별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 60대인 1940년대 코호트에 비해 2021년 60대인 1950년대 코호트의 시간제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50대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즉, 60대는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21〉 코호트별 1인 가구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시간제	16.7	19.7	17.6	82.5	38.5	15.3
남자	0.0	8.3	7.4	57.1	17.4	9.4
여자	29.4	29.7	26.1	85.3	47.3	22.2

주: 1) 가중치: 2021년 횡단분석표본가중치 / 2021년 횡단분석표본가중(통합)을 적용하여 분석
2)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임금근로자 중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2011, 2021).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1년 대비 2021년은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감소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는 앞의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증가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1960년대 코호트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감소하여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계속 근로 가능자의 비율은 감소하여 근로계약 측면에서는 취약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의 감소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코호트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2011년 50대와 60대에 비해 2021년 50대와 60대의 근로 계속 가능자 비율이 감소하였다. 6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한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여자는 감소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 근로 지속성 측면에서 60대 여자 임금근로자의 취약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표 3-22〉 코호트별 1인 가구 중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계속 근로 가능자 비율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지속 가능한 고용상태	30.0	41.0	49.0	12.2	19.2	32.2
남자	23.1	37.5	48.1	14.3	26.1	29.0
여자	33.3	43.2	50.0	11.8	16.1	35.7

주: 1) 가중치: 2021년 횡단분석표본가중치 / 2021년 횡단분석표본가중(통합)을 적용하여 분석
2)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임금근로자 중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2011, 2021).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3.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가. 분석 대상 및 방법

중고령 1인 가구의 건강상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년도 및 2021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1인 가구 정의[1)]에 부합하는 분석 대상 추출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는 가구원 수와 가구 유형, 혼인 여부 및 혼인상태, 만연령 변수를 활용하였다. 가구원 수가 1명인 대상은 455명이며(가구 가중치 적용 시 전체 대상자 중 6.5%), 이 중 무배우(이혼 및 별거, 사별)는 399명(가구 가중치 적용 시 전체 대상의 5.7%)을 추출하였다. 이후 출생연도 변수를 활용하여 코호트별(1940~1949년, 1950~1959년, 1960~1969년)로 1인 가구를 분류하였다.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도 2011년과 동일하게 가구원 수와 가구 유형, 혼인 여부 및 혼인상태, 만연령 변수를 활용하였다. 가구원 수가 1명인 대상은 958명이며(가구 가중치 적용 시 전체 대상자 중 13.2%), 이 중 무배우(이혼 및 별거, 사별)는 855명(가구 가중치 적용 시 전체 대상의 11.8%)을 추출하였다. 이후 출생연도 변수를 활용하여 코호트별(1940~1949년, 1950~1959년, 1960~1969년)로 1인 가구를 분류하였다.

연도별 및 코호트별 연령 범위를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1940년대 출생자는 63~72세, 1950년대 출생자는 53~62세, 1960년대 출생자는 43~52세로 구성된다. 다만, 국민건강영양조사는 80세 이상의 경우 사례 수가 적어 개인정보 추정이 가능할 것을 고려하여 80세 이상부터는 만연령을 80세로 제한다. 이에 본 연구의 기준으로 코호트를 제시할 경우 1940년대 코호트는 81세까지 포함되어야 하나, 원자료의 한계로 2021년 자료는 79세까지만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 독립된 주거지에서 계속적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무배우 가구

〈표 3-23〉 코호트별 연령 범위

구분	2011년	2021년
1942~1949년	62~69세	72~79세[1)]
1950~1959년	52~61세	62~71세
1960~1969년	42~51세	52~61세

주: 1) 국민건강영양조사는 80세 이상의 경우 사례 수가 적어 개인정보 추정이 가능할 것을 고려하여 80세 이상부터는 만연령을 80세로 제시. 본 연구의 기준으로 코호트를 제시할 경우 1940년대 코호트는 81세까지 포함되어야 하나, 원자료의 한계로 79세까지만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연구진 작성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조사부문별로(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가중치를 부여하며, 조사항목별 대상자 수 또는 참여자 수 고려가 필요한 경우 조사항목별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복합표본설계로 진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합표본분석방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 분석 결과

1) 건강상태

중고령 1인 가구의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인지,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한 경험, 우울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중고령 1인 가구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지는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1940년대 코호트만이 증가하였을 뿐 다른 두 코호트는 감소하였으며,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40년대 코호트만 감소하고 다른 두 코호트는 증가하여, 1940년대 코호트만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코호트의 경우 긍정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인지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급감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11년 51.4%, 2021년 28.0%).

다음으로, 코호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2011년 60대인 1940년대 코호트(매우 좋음+좋음 14.3%)가 2021년 60대인 1950년대 코호트(매우 좋음+좋음 21.6%)에 비해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더 낮아 과거에 비해 현재의 60대가 주관적 건강을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50대인 1950년대 코호트(매우 좋음+좋음 27.7%)는 2021년 50대인 1960년대 코호트(매우 좋음+좋음 28.0%)는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24〉 주관적 건강인지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매우 좋음	4.5	-	11.4	5.2	1.3	9.0
좋음	9.8	27.7	40.0	14.4	20.3	19.0
보통	36.7	47.4	33.5	41.2	46.3	45.8
나쁨	37.3	11.0	15.1	25.3	20.0	18.9
매우 나쁨	11.7	13.9	-	14.0	12.0	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건강설문, 검진 가중치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2011, 2021).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먼저 중고령 1인 가구의 건강,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한 경험에 대해 1940년대 코호트와 1950년대 코호트는 2011년 대비 2021년에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1960년대 코호트는 증가하였다. 이는 앞의 주관적 건강인지의 변화에서 1960년대 코호트가 타 코호트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급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코호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2011년 60대인 1940년대 코호트의 일상생활 제한 경험률은 34.6%인 것에 비해 2021년 60대인 1950년대 코호트의 일상생활 제한 경험률은 17.0%로 나타나 절반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50대 연령군(2011년 1950년대 코호트, 2021년 1960년대 코호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동일한 연령군에서 10년 전에 비해 일상 및 사회활동 제한 경험률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2주 이상의 우울감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동일 코호트 내에서는 2011년 대비 2021년 우울감 경험률이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1950년대 코호트의 경우 2011년 33.0%에서 2021년 19.7%로 급감하였다.

다음으로 코호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2011년 60대인 1940년대 코호트의 2주 이상의 우울감 경험률은 17.7%인 것에 비해 2021년 60대인 1950년대 코호트의 2주 이상의 우울감 경험률은 19.7%로 일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1년 50대인 1950년대 코호트의 2주 이상 우울 경험률은 33.0%인 반면, 2021년 50대인 1960년대 코호트의 2주 이상 우울 경험률은 15.7%로 적었다.

〈표 3-25〉 일상생활 제한 및 우울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일상 및 사회활동 제한 경험	34.6	21.7	10.7	17.6	17.0	17.0
2주 이상 우울감 경험	17.7	33.0	22.4	16.3	19.7	15.7

주: 건강설문, 검진 가중치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2011, 2021).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2) 건강행위

건강행위는 예방적 건강행위와 일상생활 속 건강행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예방적 건강행위는 독감 예방접종, 건강검진, 암검진과 같이 의료적

측면의 건강행위를 살펴보았으며, 일상생활 속 건강행위는 음주, 흡연, 외식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예방적 건강행위와 관련해서 독감 예방접종률, 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진율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코호트가 2011년 대비 2021년 모두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1940년대 코호트는 건강검진(0.6%p)과 암검진(9.8%p)이 일부 감소하였다. 이는 2021년이 코로나19 시기로 전반적으로 고연령 노인의 건강검진 비율이 감소한 기존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코호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2011년 60대인 1940년대 코호트에 비해 2021년 60대인 1950년대 코호트는 세 가지 예방적 건강행위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2011년 50대인 1950년대 코호트에 비해 2021년 50대인 1960년대 코호트는 건강검진과 암검진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독감예방접종 비율은 4.0%p 감소하였다. 특히나 50대의 경우 독감예방접종 비율이 매우 낮은데, 이는 정책의 지원 여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만 65세 이상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 60대 이상의 경우 높은 접종률을 보이지만, 50대는 낮게 나타났다.

〈표 3-26〉 예방적 건강행위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독감 예방접종	72.2	29.9	12.5	81.9	76.9	25.9
건강검진	67.9	50.7	61.3	67.3	75.9	65.3
암검진	69.4	44.0	47.1	59.6	72.0	59.9

주: 건강설문, 검진 가중치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2011, 2021).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일상생활 속 건강행위는 행위별로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먼저 폭음의 경우 2011년 대비 2021년에 모든 코호트에서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2011년 60대(1940년대 코호트)와 50대(1950년대

코호트)에 비해 2021년 60대(1950년대 코호트)와 50대(1960년대 코호트) 모두 폭음 비율이 증가하여 과거 중고령 1인 가구 남성에 비해 현재 중고령 1인 가구 남성의 폭음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흡연의 경우 1940년대 코호트와 1950년대 코호트 모두 감소하였으나, 1960년대 코호트만 2011년 대비 2021년 증가하였다. 1960년대 코호트의 흡연율 증가는 남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코호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60대의 경우 2011년(1940년대 코호트)에 비해 2021년(1950년대 코호트) 흡연율이 남녀 모두 증가한 반면, 50대는 2011년(1950년대 코호트)에 비해 2021년(1960년대 코호트)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남성은 79.4%에서 46.0%로 급감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식 빈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외식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2011년 대비 2021년 모두 감소하였으며, 남녀 간에 차이가 있었다. 1940년대의 경우 여자는 주 1회 이상 외식 비율이 감소한 반면, 남자는 증가하였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 코호트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남자의 경우 2011년 1950년대 코호트와 1960년대 코호트는 90% 이상이 주 1회 이상 외식을 하였으나, 2021년에 감소하였다. 이 두 코호트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직장에서의 식사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코호트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2011년 60대와 50대에 비해 2021년 60대와 50대의 외식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60대는 남자는 증가하고, 여자는 감소한 반면, 50대는 남자는 감소하고 여자는 증가하여 반대의 경향성을 보였다.

〈표 3-27〉 일상생활 속 건강행위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폭음[2]	-	-	-	4.5	24.4	35.5
남자	25.3	44.9	65.8	7.2	39.6	46.9
여자	13.8	16.1	22.6	3.4	10.4	14.4
현재 흡연 여부	18.7	36.5	22.6	2.9	21.1	30.9
남자	40.1	79.4	27.3	12.0	46.5	46.0
여자	6.8	12.4	10.9	0.4	8.6	5.1
주 1회 이상 외식[3]	39.3	54.6	85.1	31.3	40.3	67.0
남자	42.3	99.4	90.1	51.7	53.8	68.5
여자	37.7	30.9	61.6	25.9	34.2	64.1

주: 1) 건강설문, 검진 가중치 적용 / 외식 경험은 영양가중치 적용
2) 2011년 폭음은 남성은 한 번에 7잔 이상, 여성은 한 번에 5잔 이상을 마시는 행위로 정의. 남, 녀를 별도로 질문하였으므로 전체 비율은 산출 불가
2021년 폭음은 한 번에 7잔 이상 마시는 행위이며, 주 1회 이상 하는 비율로 산정함.
3) 최근 1년간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 외의 음식 섭취(주 1회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2011, 2021).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4. 사회적 관계망

가. 분석 대상 및 방법

중고령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11년과 2021년 사회조사를 활용하였다. 사회조사의 분석 대상자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회조사에서 제시된 가구원 수, 혼인상태, 만연령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1인 가구를 추출하였다. 먼저 전체 대상자 중 1인 가구를 1차로 추출하였으며, 2011년 3,897명(가중치 적용 전체 가구원의 9.6%), 2021년 6,525명(가중치 적용 전체 가구원의 13.8%)을 1인 가구로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이 중에서 미혼 또는 이혼/사별인 1인 가구를 추출하였으며,

2011년 3,447명(가중치 적용 전체 가구원의 8.4%), 2021년 5,470명(가중치 적용 전체 가구원의 12.3%)을 무배우 1인 가구로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연령 변수를 활용하여 코호트별 1인 가구를 분류하였다. 사회조사는 생년월일을 조사하나 공개된 데이터에서는 생년월일 변수를 제공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만연령을 기준으로 코호트를 별도로 산출하였다. 1940년생~1969년생까지 반영한 최종 분석자료는 2011년 1,387명(가중치 적용 전체 가구원의 3.1%), 2021년 2,636명(가중치 적용 전체 가구원의 5.2%)이다.

〈표 3-28〉 코호트별 연령 범위

구분	2011년	2021년
1940~1949년	62~71세	72~81세
1950~1959년	52~61세	62~71세
1960~1969년	42~51세	52~61세

자료: 연구진 작성

나. 분석 결과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은 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②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③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세 가지 상황에서의 관계망 존재 여부와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에 대해 검토하였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경우는 모든 코호트에서 2011년 대비 2021년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2011년과 2021년 모두 연령이 많은 코호트에서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모든 연령군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비율이 높았다.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모든 코호트에서 2011년 대비 2021년에 감소하였으며,

1960년대 코호트는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대상자 여부와 달리 가사 도움이 가능한 대상자 수는 1960년대 코호트에서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대부분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 1960년대 코호트는 남자가 2.4명, 여자가 2.0명으로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남자가 더 많았다.

다음으로 코호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 60대인 1940년대 코호트에 비해 2021년에 60대인 1950년대 코호트는 가사 도움 대상이 약간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50대인 2011년에 1950년대 코호트와 2021년에 1960년대 코호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과거의 60대 1인 가구에 비해 현재의 60대 1인 가구는 가사일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규모가 작아졌으며, 50대 1인 가구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29〉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_가사 도움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가사 도움 대상 여부	57.4	51.2	46.3	63.2	58.5	52.5
남자	45.8	42.7	45.3	49.9	51.1	49.4
여자	61.1	56.3	48.1	66.4	63.9	56.5
가사 도움 인원	2.0	2.0	2.5	1.9	1.9	2.2
남자	1.8	1.7	1.9	1.8	1.8	2.4
여자	2.0	2.1	2.6	1.9	2.0	2.0

주: 가구원 가중치 활용
자료: 통계청(2011, 2021c). 사회조사 원자료.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빌릴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경우는 모든 코호트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나 은퇴 이후 70대로 접어든 1940년대 코호트에서 감소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

으나, 2011년과 2021년 모두 1950년대 코호트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도움 가능 인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1960년대 코호트의 도움 가능 인원이 타 코호트에 비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대부분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960년대 코호트는 2011년과 2021년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았다.

다음으로 코호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2011년 60대인 1940년대 코호트에 비해 2021년 60대인 1950년대 코호트는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규모가 작았다. 그러나 50대인 2011년 1950년대 코호트에 비해 2021년 1960년대 코호트는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았다. 즉, 과거의 60대 1인 가구에 비해 현재의 60대 1인 가구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감소한 반면, 50대 1인 가구는 증가하였다.

〈표 3-30〉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_자금차입 도움 요청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자금차입 도움 대상 여부	30.9	28.9	30.7	26.0	25.3	30.0
남자	21.9	20.7	31.6	18.6	22.4	26.3
여자	33.7	33.8	29.2	27.7	27.5	34.5
자금차입 도움 인원	2.0	1.9	2.5	1.9	1.8	2.0
남자	1.8	1.8	2.7	1.8	1.6	2.1
여자	2.1	1.9	2.4	1.9	1.9	1.9

주: 가구원 가중치 활용
자료: 통계청(2011, 2021c). 사회조사 원자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경우는 모든 코호트에서 2011년 대비 2021년에 증가하였으며,

1960년대 코호트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11년은 연령이 많은 코호트에서 비율이 높은 반면, 2021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모든 연령군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비율이 높았다. 특히 1940년대생은 2011년 타 연령군에 비해 남자의 경우 비율이 매우 적었으며, 여자는 2011년 대비 2021년 약간 증가하였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원은 모든 코호트에서 2011년 대비 2021년 감소하였다. 1960년대 코호트는 2011년 대상자 여부의 비율은 모든 코호트 중 가장 낮았지만, 대화 가능한 대상자 수는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은 대상자 여부 비율과 대화 가능 대상자 수 모두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2011년은 1950년대 코호트와 1960년대 코호트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대화 가능 대상자 수가 많은 반면, 2021년은 1960년대 코호트만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50대 이후 은퇴를 경험하면서 남자의 경우 대화 대상이 감소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코호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 60대인 1940년대 코호트에 비해 2021년에 60대인 1950년대 코호트는 대화 상대의 비율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규모는 감소하였다. 반면, 50대인 2011년 1950년대 코호트와 2021년 1960년대 코호트는 대화 상대의 비율과 규모 모두 증가하여 과거 50대 1인 가구에 비해 현재의 50대 1인 가구가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31〉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_대화상대 도움 요청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대화상대 도움 대상 여부	63.5	61.1	58.1	65.6	65.1	66.4
남자	39.9	51.0	50.6	48.8	54.1	59.5
여자	71.0	67.1	70.1	69.6	73.1	75.0

구분	2011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대화상대 도움 인원	2.3	2.4	2.8	2.2	2.1	2.5
남자	2.3	2.6	2.9	2.1	2.0	2.7
여자	2.3	2.2	2.7	2.3	2.2	2.4

주: 가구원 가중치 활용
자료: 통계청(2011, 2021c). 사회조사 원자료.

5. 주거상태

가. 분석 대상 및 방법

중고령 1인 가구의 주거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2년도 및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1인 가구 정의[2]에 부합하는 분석 대상 추출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서는 가구주 변수,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주의 혼인상태, 출생연도 변수를 활용하여 가구주이면서 가구원 수가 1명인 1인 가구 5,178명(가중치 적용 시, 15.1%)을 추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미혼 또는 이혼/사별인 1인 가구주 5,090명(가중치 적용 시, 전체 가구의 14.8%)을 추출하였다. 이후 출생연도 변수를 활용하여 코호트별(1940~1949년, 1950~1959년, 1960~1969년)로 1인 가구를 분류하였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서는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가 없어 1인 가구 추출은 가구주,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현황(가구주와의 관계 변수), 출생연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가구주이면서 가구원 수가 1명인 1인 가구(13,639명) 중에서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3]로 13,568명(가중치 적용 시, 전체

2) 독립된 주거지에서 계속적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무배우 가구
3) 가구 현황(2021년 주거실태조사 조사표, 문46) 문항 중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가구주의 배우자'로 응답한 사례(69명) 제외

가구의 31.5%)을 추출하였다. 이후 출생연도 변수를 활용하여 코호트별(1940~1949년, 1950~1959년, 1960~1969년)로 1인 가구를 분류하였다.

연도별 및 코호트별 연령 범위를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1940년대 출생자는 63~72세, 1950년대 출생자는 53~62세, 1960년대 출생자는 43~52세로 구성된다.

〈표 3-32〉 코호트별 연령 범위

구분	2010년	2012년	2021년
1940~1949년	61~70세	63~72세	72~81세
1950~1959년	51~60세	53~62세	62~71세
1960~1969년	41~50세	43~52세	52~61세

자료: 연구진 작성

2012년의 1인 가구 비율은 14.8%[4]이며, 2021년은 31.5%로 집계되었다. 2012년의 경우, 1940년대(63~72세) 1인 가구 비율이 18.2%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21년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1.5%였으며, 1940년대(72~81세) 1인 가구 비율이 40.4%로 가장 높았다. 특이할 점은 여성의 1인 가구의 비율이 70.2%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주거실태조사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의 가구주 조사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며, 여성 가구주인 경우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에 1940년대(72~81세)인 여성 가구주 중의 80.8%는 1인 가구였으며, 1950년대(62~71세)인 여성 가구주의 71.7%, 1960년대(52~61세)인 여성 가구주의 51.9%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원진 외(2021)는 2012년 주거실태조사의 1인 가구 비중(15.1%)이 인구총조사(2010년 기준, 1인 가구 비중 23.9%)나 장래가구추계(2012년 기준, 25.2%)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언급함. 이는 주거실태조사 표본 특성상 1인 가구를 직접 만나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2014년부터는 사후가중치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규모를 반영하여 자료를 공표함(강미나 외, 2014; 이원진 외, 2021, p. 237에서 재인용). 본 분석에서 사용한 201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는 가구 규모(1인 가구 포함)를 반영하지 않은 가중치로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유의가 필요함.

〈표 3-33〉 코호트별 1인 가구 현황

(단위: %)

구분	2012년				2021년			
	전체 응답자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전체 응답자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인 가구	14.8	18.2	8.1	5.5	31.5	40.0	27.5	19.6
남자	6.1	4.6	4.0	3.3	19.7	13.4	13.1	12.5
여자	49.0	57.8	30.8	18.5	70.2	80.8	71.7	51.9

주: 전체 응답자는 해당 연도 주거실태조사에 응답한 전체 가구(연령 무관)를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나. 분석 결과

1) 일반적인 주거 현황

자가 보유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본인의 소유이거나 또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2년에 비해 2021년의 중고령 1인 가구의 자가 보유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1940년대생은 2012년 50.1%에서 2021년 66.7%로, 1950년대생은 2012년 35.2%에서 2021년 54.7%로, 1960년대생은 2012년 21.0%에서 2021년 42.1%로 증가하였다.

1인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1940년대생은 2012년 47.2%에서 2021년 64.7%로 증가하였으며, 1950년대생은 2012년 31.2%에서 2021년 51.2%로, 1960년대생은 2012년 14.2%에서 2021년 3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자가 보유와 자가 점유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자가 보유율과 자가 점유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특성은 조사시점에 관계없이 그리고 코호트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 3-34〉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자가 보유 및 자가 점유 비율

(단위: %)

구분	2012년[1]			2021년[2]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자가 보유	50.1	35.2	21.0	66.7	54.7	42.1
남성	38.0	28.3	21.5	54.7	44.8	36.2
여성	52.9	40.1	20.4	68.8	60.2	60.5
자가 점유	47.2	31.2	14.2	64.7	51.2	33.1
남성	34.9	22.0	10.7	50.8	40.3	24.2
여성	50.1	37.7	18.1	68.3	57.3	42.6

주: 1) 보유: 현재 주택을 포함하여 가족 명의로 된 주택 소유 여부
2) 보유: 현재 거주하는 주택 포함(자가 점유) 비율과 지금 사는 곳 이외에 가구주나 가구원의 이름으로 보유한 주택이 있는 비율을 합한 값임.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그림 3-7] 자가 보유율 및 점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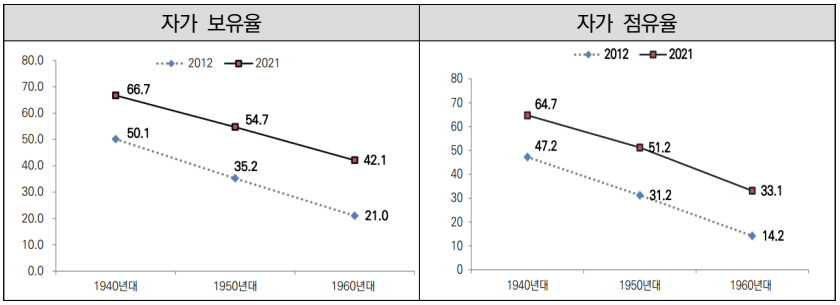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2012년과 2021년의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자가 비율과 무상 비율은 증가한 반면, 전세와 월세 비율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코호트별로 자가 비율이 20%p가량 증가하였으며, 전세 비율은 1940년대 코호트와 1960년대 코호트에서 각각 7.9%p와 9.7%p가 감소하였으며, 월세 비율은 전반적으로 13~18%p가량 감소하였다. 이러한 자가 점유율의 증가는 중고령기에 40대에서 50대로, 50대는 60대로, 60대는 70대로

전환되면서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 노력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생(2021년 기준 52~61세) 1인 가구의 월세 거주율과 무상 거주 비율이 2012년과 2021년 모두 타 코호트에 높다는 점은 1960년대 출생 집단에 대한 면밀한 특성 분석과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3-35〉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구분	2012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자가	47.2	31.2	14.2	64.7	51.2	33.1
전세	15.3	12.9	19.2	7.2	9.8	9.5
월세[1]	33.6	51.9	61.5	20.2	33.1	48.5
무상	4.0	4.0	5.2	7.9	5.9	7.5

주: 1)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를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중고령 1인 가구의 주택 유형 변화를 보면, 일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2012년 32.5%에서 2021년 18.7%로 급감한 대신,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012년 29.3%에서 2021년 35.9%로 크게 증가하고,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도 3.0%에서 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중고령 1인 가구의 주택 유형

(단위: %)

구분	2012년	2021년
일반 단독주택	32.5	18.7
아파트	35.2	35.9
다가구·다세대주택[1]	29.3	35.9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2]	3.0	9.5

주: 1) 다가구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영업 겸용 단독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을 포함
2) 상가, 공장, 여관 내 주택, 고시원, 판잣집, 컨테이너 등을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감소한 것이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1940년대생은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다른 코호트에 비해 주택 유형의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1950년생은 일반 단독주택 거주 비율 감소 폭이 가장 크며(2012년 33.1% → 2021년 17.3%),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 비율과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거주 비율이 각각 5.0%p, 6.4%p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일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의 감소분이 다가구·다세대주택과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생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36.9%에서 29.7%로 감소한 반면,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거주 비율이 급격히 증가(1.8% → 14.5%)하였다. 즉, 다른 코호트에 비해 1960년대생의 주택 유형이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코호트별 1인 가구 주택 유형

(단위: %)

구분	2012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일반 단독주택	40.0	33.1	14.2	30.3	17.3	10.6
아파트	34.4	35.2	36.9	38.8	39.8	29.7
다가구·다세대주택[1]	22.0	28.9	47.1	27.0	33.9	45.2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2]	3.6	2.7	1.8	3.9	9.1	14.5

주: 1) 다가구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영업 겸용 단독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을 포함
2) 상가, 공장, 여관 내 주택, 고시원, 판잣집, 컨테이너 등을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그림 3-8〕 코호트별 1인 가구 주택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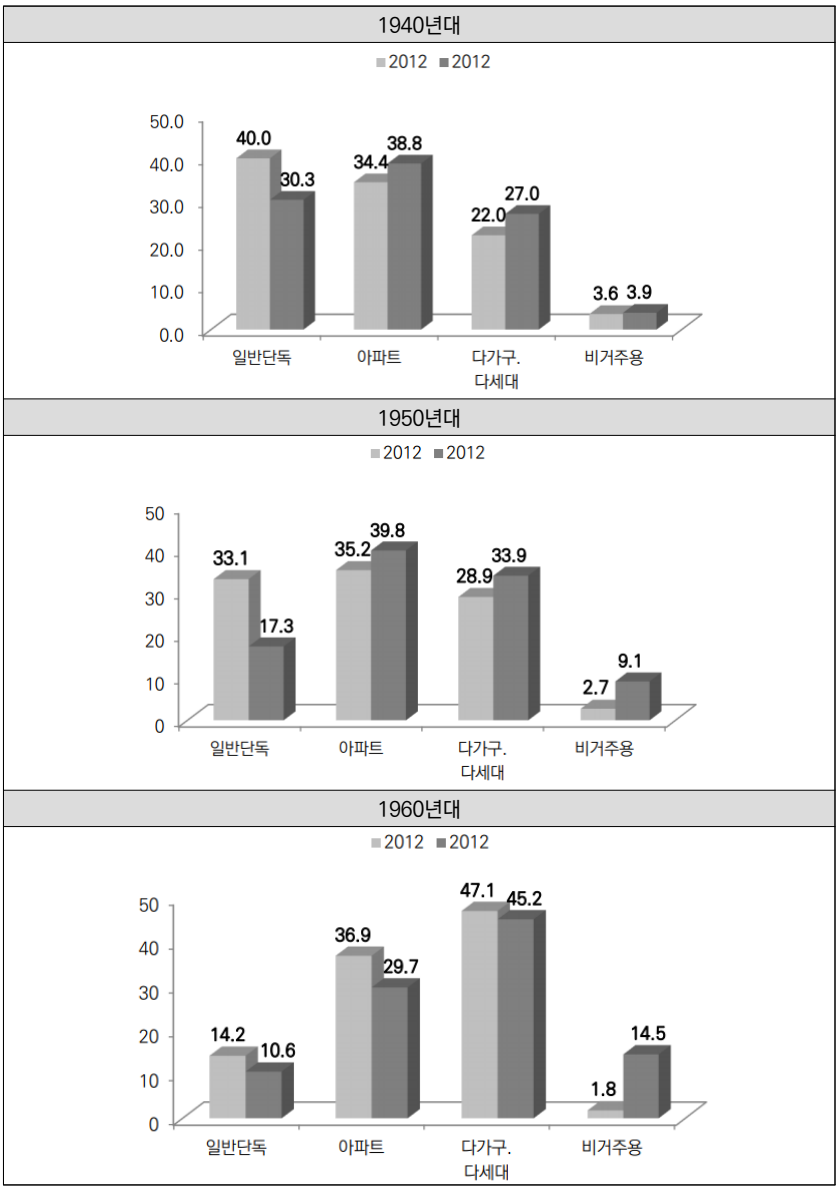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중고령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위치를 보면, 2012년의 경우 비지상층(반지하, 지하, 옥상)에 거주하는 비율이 3.3~3.9%였지만, 2021년에는 비지상층(반지하, 지하, 옥상)에 거주하는 비율이 1.3~2.9%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생의 경우, 비지상층 거주율이 2021년에도 2.9%로 다른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38〉 코호트별 1인 가구 주거 위치

(단위: %)

구분	2012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지상	96.7	96.1	96.4	98.6	97.5	97.1
비지상	3.3	3.9	3.6	1.3	2.5	2.9
반지하	1.4	2.3	1.5	1.2	2.3	2.3
지하	1.9	1.6	1.5	0.1	0.2	0.6
옥상(옥탑)	0.0	0.0	0.6	-	-	-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2012년 1인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11.2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균 5.3년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1인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4년으로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11.4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균 5.6년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재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긴 것을 볼 수 있으며, 1960년대생의 경우, 임차나 무상 등인 주택에 거주기간이 다른 코호트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코호트별 1인 가구의 현재 주택 거주기간

(단위: 년)

구분	2012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거주기간	9.4	6.4	4.0	11.4	8.6	5.8
자가	12.0	9.9	8.0	13.5	11.1	8.9
비자가[1]	6.9	4.9	3.4	7.8	6.1	4.3

주: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가 아닌 임차, 무상 등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2) 최저주거기준

1940~1969년에 출생한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평균 면적은 2012년 57.5m^2, 2021년 53.4m^{2}로 지난 10년간 1인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6]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최저 주거면적은 14m^{2}로 1940~1969년에 출생한 1인 가구 중 최저 주거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2012년 0.9%에서 2021년 5.2%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최저 주거면적 미달 비율은 모든 코호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0년대생의 최저 주거면적 미달 비율은 2012년 1.0%에서 2021년 1.6%로 증가하였으며, 1950년대생은 0.9%에서 5.1%로, 1960년대생은 0.5%에서 8.2%로 급증하였다.

5) 1인당 주택 면적은 매년 증가하여 2012년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1.7m^2, 2021년 33.9m^{2}로 나타남(국토교통부, 2012, 2021).

6)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 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부엌)	14
2	부부	1 DK(식사실 겸 부엌)	26
3	부부+자녀1	2 DK(식사실 겸 부엌)	36
4	부부+자녀2	3 DK(식사실 겸 부엌)	43
5	부부+자녀3	3 DK(식사실 겸 부엌)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식사실 겸 부엌)	55

〈표 3-40〉 코호트별 1인 가구 주택의 면적 및 최저기준 미달 비율

(단위: m^2, %)

구분	2012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주택 면적(m^2)[1]	64.1	52.5	48.4	60.8	54.9	45.8
주택 면적 최저 기준 미달(%)	1.0	0.9	0.5	1.6	5.1	8.2

주: 1) 실제 사용 면적을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최저주거기준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에 의하면, 주택의 필수적인 설비로 ①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②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 부엌, ③ 전용 수세식 화장실, ④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필수설비 미달은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측정하였다. 중고령 1인 가구의 필수설비 최저기준 미달 비율은 2012년 9.5%, 2021년 8.4%로 분석되었다. 하위 항목별 미달 비율을 보면, 2012년 1인 가구 주택의 부엌 미달 비율은 2.5%, 화장실 미달 6.7%, 목욕시설 미달 6.7%로 분석되었으며, 2021년은 부엌 미달 6.7%, 화장실 미달 6.4%, 목욕시설 미달 5.7%로 나타났다.

〈표 3-41〉 중고령 1인 가구 주택의 필수설비 기준 미달 비율

(단위: %)

구분	2012년	2021년
필수설비 기준 미달[1]	9.5	8.4
부엌 미달	2.5	6.7
화장실 미달	6.7	6.4
목욕시설 미달	6.7	5.7

주: 1)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코호트별 필수설비 기준 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1950년대생의 주택의 필수설비 기준 미달이 가장 높았으나, 2021년에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즉 1960년대생인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필수설비 기준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42〉 코호트별 1인 가구 주택의 필수설비 기준 미달 비율

(단위: %)

구분	2012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필수설비 기준 미달[1]	9.3	11.6	7.6	3.3	7.7	13.3
부엌 미달	2.1	3.4	2.3	1.9	6.2	11.0
화장실 미달	6.4	8.8	4.9	2.4	6.2	10.0
목욕시설 미달	6.9	8.7	3.6	2.4	5.6	8.3

주: 1)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기준[7]으로 2012년과 2021년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에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과 유사한 항목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2012년 주거실태조사 항목에서는 집의 구조물(견고, 균열 상태 등), 방수, 환기, 소음, 재난이나 재해 안전성, 그리고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불량, 보통, 양호'로 질문하였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집의

7) 최저주거기준 제4조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조물(견고, 균열 상태 등), 방수, 난방, 환기, 채광, 소음, 재난이나 재해 안전성, 그리고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등 8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2021년 조사에서는 '불량, 조금 불량, 조금 양호, 양호'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본 분석에서는 '불량'으로 응답한 경우 최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2012년의 6문항, 2021년의 8문항에 대한 응답 중 '불량'이 하나 이상인 경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이 미달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2012년 1인 가구의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미달 비율은 38.4%로, 1950년대 코호트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미달 비율이 43.0%로 가장 높았다. 2012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미달 비율은 2014년 1인 가구 중 구조·성능·환경 미달 비율인 17.8%(이원진 외, 2021, p. 266)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2012년도 1인 가구 주택의 구조·성능·환경 항목별 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방음 상태에서의 불량 비율이 23.9%로 높아 전체적으로 기준 미달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8)]

2021년의 1인 가구의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미달 비율은 11.9%로 2012년(38.4%)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코호트별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미달 비율을 보면, 1940년대생 10.5%, 1950년대생 12.2%, 1960년대생 12.6%로, 2012년과 2021년 모두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이 거주하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8) 2012년 및 2021년 기준, 1인 가구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항목별 '불량' 응답 비율(%)

구분	집의 구조물	방수 상태	난방 및 단열	환기	채광	소음 (내부)	소음 (외부)	재난, 재해	화재 안전성
2012	10.9	17.0	-	13.1	-	23.9	-	8.5	9.6
2021	2.1	2.9	3.5	3.2	3.8	3.4	4.0	1.9	2.1

〈표 3-43〉 코호트별 1인 가구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 비율

(단위: %)

구분	2012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	37.6	43.0	34.2	10.5	12.2	12.6

주: 2012년은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관련 6개 항목 중 1개 이상에서 '불량'인 비율, 2021년은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관련 8개 항목 중 1개 이상에서 '불량'인 비율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주택 면적 기준, 필수설비 기준, 그리고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2012년 1940~1969년생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40.8%, 2021년은 18.3%로 나타났다.[9] 코호트별로는 2012년은 1950년대생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45.3%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은 1960년대생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23.4%로 다른 코호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에서 성별 차이를 보면, 2021년 결과에서 1인 가구 여성보다는 1인 가구 남성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자가인 주택보다는 임차, 무상 등으로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2012년과 2021년 모두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9)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총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012년 7.2%, 2021년 4.5%임(국가지표체계, 2023a).

〈표 3-44〉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단위: %)

구분	2012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최저주거기준 미달	39.8	45.3	37.6	12.7	17.7	23.4
남성	39.8	45.3	37.6	16.5	27.6	30.7
여성	38.3	42.9	38.9	11.8	12.1	15.4
자가	37.9	35.6	21.7	10.6	10.1	13.1
비자가	41.5	59.7	40.2	16.6	25.6	28.5

주: 면적,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 미달하는 비율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그림 3-9〕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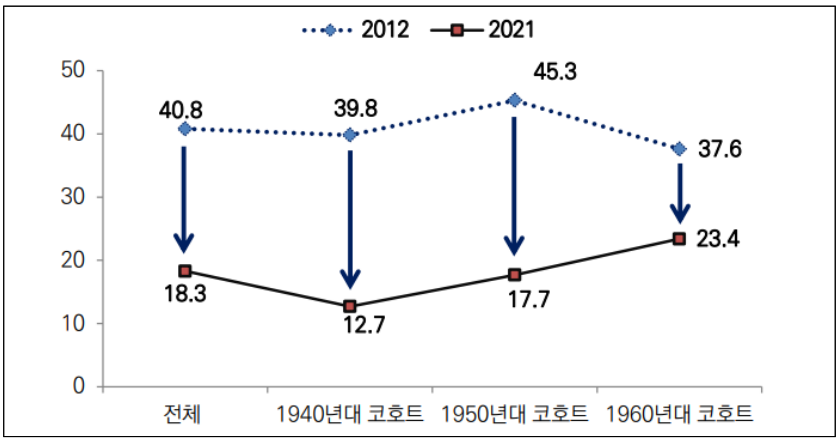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3) 주택가격 및 주거비 부담

중고령 1인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에 따른 주택가격과 임대료를 분석하였다. 주택 점유상태가 자가인 경우 평균 주택가격은 2012년 1억 5,475만 원으로 1940년대생이 거주하는 주택가격이 1950년대생과 1960년대

생의 주택가격보다 높았다. 2021년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은 2억 5,866만 원으로 코호트별 주택가격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2012년에 비해 1940년대생의 주택가격이 다른 코호트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중고령 1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보면, 2012년에 비해 2021년의 전세보증금이 약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1960년대생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인 주택에 거주하는 중고령 1인 가구의 경우, 1940년대생의 보증금 금액이 2012년과 2021년 모두 높으며, 1960년대생의 보증금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등)는 2012년 평균 약 18만 원에서 2021년 약 25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3-45〉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주택가격 및 임대료

(단위: 만 원)

구분	2012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자가 주택 가격[1]	17,270	11,912	11,668	24,992	27.351	24.955
전세보증금	5,333	5,691	5,527	10,547	10,211	9,981
보증금월세						
보증금	1,036	876	970	1,472	1,127	1,094
월세	49	17	60	19	21	27
월세[2]	15	18	24	18	23	27

주: 1) 2012년의 경우, 2012년 5월 말 시가 기준이며, 2021년은 2021년 6월 셋째 주 기준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임.
2)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를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2012년 기준으로 1940~1969년생인 1인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은 평균 28.0%였으며, RIR 30% 초과인 비율은 29.0%로 1940년대 44.9%, 1950년대 28.2%, 1960년대 11.5%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1940~1969년생인 1인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은 평균 26.1%, RIR 30% 초과인 비율은 29.4% 분석되었다. 코호트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높았으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아 주거비 과부담인 상태인 1인 가구 비율은 1940년대생 47.5%, 1950년대생 34.8%, 1960년대생 18.9%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상태는 2012년과 2021년 사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거비 과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6〉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단위: %)

구분	2012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RIR 평균	34.9	26.6	21.4	32.4	29.1	21.7
RIR 30% 초과	44.9	28.2	11.5	47.5	34.8	18.9

주: 전월세 전환율은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자료를 적용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N0010에서 2023. 5. 31. 인출.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중고령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를 보면, 1940년대생은 2012년과 2021년 사이의 큰 변화는 없지만 1950년생과 1960년대생의 경우 2012년보다 2021년의 월평균 생활비가 20만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주거관리비(월세를 제외한 난방비, 전기료 등)는 2012년에 비해 2021년에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월평균 생활비 대비 주거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3-47〉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및 주거관리비

(단위: 만 원, %)

구분	2012년			2021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월평균 생활비[1] (=A)	73.4	78.1	99.0	78.1	99.6	122.7
월평균 주거관리비[2] (=B)	24.8	14.9	17.1	11.5	11.5	10.8
B/A*100	33.8	19.1	17.3	14.7	11.6	8.8

주: 1) 식비, 주거관리비, 의류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
2) 월세를 제외한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 유지비, 일반관리, 화재보험료 등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4) 주거 및 주거환경 만족

2012년과 2021년의 중고령 1인 가구의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2012년은 5점 척도, 2021년은 4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므로 2012년 결과와 2021년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012년의 중고령 1인 가구의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3점 초·중반대로 나타나, '보통'보다는 높지만 만족스러운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자가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중고령 1인 가구가 자가가 아닌 주택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비해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의 경우,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수준이 4점 만점을 기준으로 2.9점 안팎으로 '대체로 만족'에 가까운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코호트별 만족도 수준을 보면, 1960년대에 출생한 인구집단의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2년의 경우, 자가 상태의 집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 및 주거환경 만족도가 비자가인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2021년에는 자가 점유 여부에 따른 주택 만족도나 주거환경 만족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8〉 코호트별 1인 가구의 주택 만족 및 주거환경 만족

(단위: 점)

구분	2012년(5점 기준)			2021년(4점 기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주택 만족도	3.43	3.29	3.19	2.86	2.85	2.84
자가	3.54	3.46	3.54	2.87	2.92	2.94
비자가	3.33	3.21	3.13	2.84	2.79	2.79
주거환경 만족도	3.40	3.49	3.27	2.86	2.90	2.84
자가	3.43	3.51	3.59	2.86	2.94	2.88
비자가	3.37	3.36	3.22	2.88	2.86	2.82

주: 2012년은 5점 척도, 2021년은 4점 척도(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대체로 만족, ④ 매우 만족)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

제4절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과정과 생활

1. 분석 대상 및 방법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실태조사는 2018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조사부터 1인 가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1인 가구의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 내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내용은 ① 1인 가구가 된 기간 및 사유, ② 생활비와 주거 마련 방법, ③ 생활상의 어려움, ④ 사회적 지지망 여부, ⑤ 정책지원 수요 등이다. 1인 가구 관련 조사는 2020년이 첫 조사로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 단년도 분석만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2020년 단년도의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1인 가구 실태를 파악하였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제시된 1인 가구 여부, 혼인상태, 만연령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를 하였던 1인 가구를 추출하였다. 먼저 전체 대상자 중 1인 가구를 1차로 추출(가중치 미적용 값 3,405명)하였다. 다음으로 무배우자 추출을 위해 미혼 또는 이혼/사별인 1인 가구를 추출하였다(가중치 미적용 값 3,113명). 마지막으로 만연령 변수를 활용하여 50대 이상의 무배우 1인 가구를 추출하였다(가중치 미적용 값 1,959명).

2.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중에서 무배우 1인 가구의 비율은 17.2%이며, 일반특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 내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66.3%로 남성의 약 2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27.6%, 50대 23.7%, 80대 이상 18.5% 순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이 53.8%로 많았으며, 별거 및 이혼 34.8%, 미혼 11.4%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58.2%가 중학교 이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비율이 낮았다.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의 38.2%가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48.0%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월평균 소득수준은 52.4%가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였으며, 100~200만 원 미만 29.4%로 80% 이상이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 중 비동거 가족이 있는 비율은 23.0%로 매우 낮았으며, 비자발적 이유로 1인 가구를 형성한 비율은 77.5%로 매우 높았다. 마지막으로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 중 87.6%는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인 가구 생활 유지 의향이 있는 대상자의 세부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90.0%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60대가 91.6%로 가장 많고, 50대가

81.4%로 가장 적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사별이 89.4%로 향후 1인 가구 생활 유지 의향 비율이 높았으며, 미혼이 83.8%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특성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3-49〉 중고령 1인 가구 비율 및 유지 의향

(단위: %)

구분	1인 가구 구성	향후 1인 가구 생활 유지 의향
전체	17.2	87.6
성별		
남자	33.7	82.9
여자	66.3	90.0
연령		
50대	23.7	81.4
60대	30.3	91.6
70대	27.5	88.0
80대 이상	18.5	88.3
혼인상태		
미혼	11.4	83.8
별거·이혼	34.8	86.0
사별	53.8	89.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8.2	90.0
고등학교	28.4	85.5
대학 이상	13.3	81.6
근로 여부		
미근로	61.8	89.1
근로	38.2	85.1
자가		
비자가	52.0	87.2
자가	48.0	88.0

구분	1인 가구 구성	향후 1인 가구 생활 유지 의향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52.4	89.8
100~200만 원 미만	29.4	87.9
200~300만 원 미만	11.2	81.1
300~400만 원 미만	4.0	77.5
400~500만 원 미만	1.1	86.4
500만 원 이상	1.8	83.0
비동거가족 유무		
없음	77.0	88.9
있음	23.0	83.3
1인 가구 형성 이유		
자발	17.6	87.3
비자발	77.5	87.7
기타	4.9	87.4
향후 혼자 살 의향		
없음	12.4	-
있음	87.6	-

주: 1) '전체 1인 가구 비율'은 50대 이상 전체 조사 대상 중 무배우 1인 가구의 비율이며, 하단의 특성은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 내 특성임.
2) '향후 1인 가구 생활 유지 의향'은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 중 향후 1인 가구 생활을 유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임.
3)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중 무배우 1인 가구의 1인 가구 유지기간은 평균 13.1년이었다. 20년 이상 1인 가구로 생활한 비율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1~5년 21.0%, 10~15년 19.8% 등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13.7년으로 여성보다 길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1인 가구 유지 기간이 길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일 경우 20.8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사별은 11.6년으로 가장 짧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기간이 길었지만,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9.3년으로 400~500만 원 미만보다 길었다. 또한 비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

1인 가구 기간은 13.9년으로 비동거 가족이 있는 대상자보다 1인 가구 기간이 길었으며, 자발적 의지로 1인 가구가 된 경우가 비자발적 1인 가구보다 기간이 길었다. 또한 향후 혼자 살 의향이 있는 경우 1인 가구 기간은 13.3년으로 향후 혼자 살 의향이 없는 집단에 비해 길었다.

〈표 3-50〉 중고령 1인 가구 거주 기간

(단위: %, 년)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평균
전체	4.7	21.0	16.2	19.8	9.7	28.5	100.0	13.1
성별								
남자	4.8	18.9	15.6	20.7	10.2	29.8	100.0	13.7
여자	4.6	22.1	16.6	19.4	9.5	27.9	100.0	12.9
연령								
50대	6.3	21.4	17.2	20.0	9.7	25.4	100.0	11.9
60대	6.1	21.0	14.9	20.4	8.5	29.1	100.0	12.9
70대	3.3	21.0	17.9	21.0	10.7	26.1	100.0	13.3
80대 이상	2.2	20.5	14.8	16.7	10.5	35.3	100.0	14.9
혼인상태								
미혼	3.3	9.7	8.7	15.3	7.4	55.6	100.0	20.8
별거·이혼	4.8	19.1	15.3	21.5	10.9	28.5	100.0	13.0
사별	4.9	24.6	18.5	19.7	9.5	22.8	100.0	11.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	20.1	15.8	20.6	10.7	29.2	100.0	13.5
고등학교	6.5	20.6	15.9	19.0	9.1	28.9	100.0	13.0
대학 이상	5.5	25.8	18.8	18.0	7.0	25.0	100.0	11.7
근로 여부								
미근로	4.1	20.1	16.2	19.2	9.2	31.3	100.0	13.8
근로	5.7	22.5	16.3	20.8	10.6	24.1	100.0	12.0
자가								
비자가	4.0	18.4	15.2	19.4	10.6	32.4	100.0	14.5
자가	5.5	23.8	17.3	20.3	8.8	24.3	100.0	11.7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평균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4.1	18.3	15.6	20.3	9.2	32.5	100.0	14.3
100~200만 원 미만	5.2	23.3	15.5	19.3	10.2	26.4	100.0	12.3
200~300만 원 미만	1.6	23.8	19.8	20.1	12.8	21.8	100.0	12.3
300~400만 원 미만	9.7	18.2	21.0	23.1	4.8	23.1	100.0	10.5
400~500만 원 미만	16.0	46.4	19.6	8.2	6.9	2.9	100.0	5.4
500만 원 이상	14.0	33.9	12.5	10.3	12.4	16.9	100.0	9.3
비동거가족 유무								
없음	3.6	19.6	15.5	20.2	9.6	31.4	100.0	13.9
있음	8.3	25.7	18.7	18.4	10.1	18.8	100.0	10.4
1인 가구 형성 이유								
자발	2.4	16.8	16.1	19.6	8.3	36.8	100.0	15.9
비자발	4.6	20.8	16.4	20.2	10.4	27.5	100.0	12.8
기타	13.8	39.1	13.3	14.7	3.7	15.4	100.0	8.7
향후 혼자 살 의향								
없음	4.7	24.5	19.3	16.2	10.8	24.5	100.0	12.0
있음	4.7	20.5	15.8	20.3	9.6	29.1	100.0	13.3

주: 1) '전체 1인 가구 비율'은 50대 이상 전체 조사 대상 중 무배우 1인 가구의 비율이며, 하단의 특성은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 내 특성임.
2)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의 1인 가구 형성 이유는 17.7%가 자발적이며, 77.4%는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이유로는 혼자 살고 싶어서가 11.2%로 가장 높았으며, 비자발적 이유로는 배우자의 사망이 41.7%, 본인의 이혼이 24.1%로 혼인상태의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형성의 비율이 높았다.

세부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발적 이유로 1인 가구를 형성한 이유는 남자(22.7%)가 여자(15.0%)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비자발적 이유에서도 남자는 본인의 이혼에 따른 비율이 41.6%로 가장 높은 반면, 여자는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비율이 52.6%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도 1인 가구 형성 이유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연령이 적을수록 자발적 이유로 1인 가구를 형성한 비율이 높다. 특히 50대의 18.1%는 혼자 살고 싶어서 1인 가구를 형성하였다. 비자발적 이유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1인 가구 형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본인의 이혼으로 인한 1인 가구 형성 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1인 가구 형성 이유가 상이하였다. 미혼의 경우 자발적 이유로 1인 가구를 형성하였다는 비율이 64.7%로 매우 높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혼자 살고 싶어서가 42.1%로 타 집단과 매우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에서도 부모의 사망에 따른 1인 가구 형성의 비율이 30.8%로 매우 높았다. 그 외 별거 및 이혼, 사별의 경우 해당 사건의 발생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하였다는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비동거 가족 유무에 따라서는 비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한 비율이 23.4%로 높았다.

〈표 3-51〉 중고령 1인 가구 형성 이유

(단위: %)

구분	자발적 이유				비자발적 이유								기타	계
	혼자 살고 싶어서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소계	배우자의 사망으로	본인의 이혼으로	배우자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부모나 자녀의 사망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의 직장(취업)으로	소계		
전체	11.2	3.7	2.8	17.7	41.7	24.1	0.0	7.2	4.3	0.0	0.1	77.4	4.9	100.0
성별														
남자	12.4	4.5	5.8	22.7	20.3	41.6	0.1	4.6	7.4	0.1	0.0	74.1	3.1	100.0
여자	10.6	3.2	1.2	15.0	52.6	15.2	0.0	8.5	2.8	0.0	0.1	79.2	5.8	100.0
연령														
50대	18.1	4.4	7.2	29.7	8.3	40.8	0.1	6.4	7.1	0.0	0.3	63.0	7.3	100.0
60대	9.6	3.5	2.8	15.9	28.3	34.9	0.0	9.3	5.9	0.0	0.0	78.4	5.7	100.0
70대	11.1	3.1	0.8	15.0	62.6	10.6	0.0	6.1	2.5	0.1	0.0	81.9	3.1	100.0
80대 이상	5.1	3.9	0.0	9.0	75.5	5.0	0.0	6.4	1.1	0.0	0.0	88.0	3.0	100.0
혼인상태														
미혼	42.1	6.8	15.8	64.7	0.0	0.0	0.0	0.0	30.8	0.0	0.6	31.4	4.0	100.0
별거·이혼	7.9	4.5	1.4	13.8	0.8	69.1	0.1	9.5	1.0	0.1	0.0	80.6	5.8	100.0
사별	6.8	2.5	0.9	10.2	77.0	0.1	0.0	7.3	0.9	0.0	0.0	85.3	4.5	100.0
비동거가족 유무														
없음	10.5	3.5	1.9	15.9	48.5	20.4	0.0	4.5	5.4	0.0	0.0	78.8	5.2	100.0
있음	13.6	4.2	5.6	23.4	18.9	36.5	0.0	16.1	0.8	0.0	0.3	72.6	3.9	100.0

주: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의 직전 동거가족은 배우자 65.4%,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41.5%,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14.7% 등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남자는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한 비율이 23.7%로 여자 10.1%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배우자와 동거한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한 비율이 높았다. 70대 이상 대부분은 1인 가구 직전 배우자와 동거한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에서 따라서는 미혼인 경우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비율이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별거 및 이혼과 사별은 배우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별거 및 이혼의 경우는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와의 동거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3-52〉 중고령 1인 가구의 1인 가구 형성 직전 동거가족

(단위: %)

구분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전체	65.4	41.5	14.7	0.5	2.2	0.5	2.1
성별							
남자	62.2	40.8	23.7	0.3	3.3	0.4	4.2
여자	67.0	41.8	10.1	0.5	1.6	0.6	1.0
연령							
50대	48.7	49.6	29.0	0.7	4.9	0.5	4.3
60대	60.1	47.6	15.3	0.0	2.1	0.5	2.7
70대	76.4	33.5	8.7	0.5	1.1	0.9	0.7
80대 이상	79.2	32.8	4.1	0.8	0.4	0.0	0.2
혼인상태							
미혼	0.0	2.1	83.6	0.9	15.1	1.2	7.1
별거·이혼	68.0	63.4	7.8	0.8	1.4	0.1	3.4
사별	77.6	35.7	4.5	0.1	0.0	0.7	0.1

주: 1) 다중응답분석으로 전체 합이 100을 초과할 수 있음.
2)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의 81.6%는 평소 본인의 문제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자가 있었다. 의미 있는 타자는 자녀가 4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친구 19.6%, 형제자매 12.7% 등의 순이었다.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자는 69.2%만이 의미 있는 타자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87.8%가 응답하여 남자의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여자는 자녀가 57.6%로 자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자는 친구 29.4%, 자녀 27.7%, 형제자매 16.9%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에서 의미 있는 타자가 있다는 비율이 89.0%로 가장 높았다.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와 이웃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적을수록 형제자매, 친구, 동료의 비율이 높다. 특히나 70대 이상에서는 자녀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자녀에게 집중된 형태를 보였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사별자의 의미 있는 타자 존재 비율이 88.2%로 높았으며, 별거·이혼은 73.4%로 가장 낮았다. 사별의 경우 의미 있는 타자는 66.7%가 자녀로 일부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혼은 자녀가 없는 대신 친구 38.5%, 형제자매 30.3%로 분산된 특성을 보인다.

1인 가구 유지 기간 1년 미만을 제외하면, 1인 가구로 살아온 기간이 길수록 의미 있는 타자가 있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의미 있는 타자 중 자녀의 분포와 유사하다. 즉, 1년 미만을 제외하면, 1인 가구 유지 기간이 증가할수록 의미 있는 타자 중 자녀의 비율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20년 이상의 경우 친구의 비율이 23.9%로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3-53〉 중고령 1인 가구의 의미 있는 타자

(단위: %)

구분	유무	의미 있는 타자[2]										계
		부모	배우자	자녀	연인	형제자매	친구	동료	이웃	전문상담가·사회복지사	기타	
전체	81.6	3.0	0.7	49.1	1.3	12.7	19.6	3.0	6.1	1.4	3.1	100.0
성별												
남자	69.2	4.8	0.9	27.7	3.8	16.9	29.4	7.0	5.1	1.7	2.7	100.0
여자	87.8	2.3	0.7	57.6	0.3	11.1	15.6	1.4	6.4	1.3	3.3	100.0
연령												
50대	80.3	8.6	0.5	23.4	3.0	19.9	30.0	7.4	3.2	0.6	3.4	100.0
60대	76.6	1.8	0.7	39.6	0.7	18.9	25.5	4.0	5.0	0.4	3.5	100.0
70대	83.1	1.0	0.4	63.8	1.5	7.2	14.6	0.7	6.3	2.0	2.4	100.0
80대 이상	89.0	0.8	1.5	71.8	0.0	3.3	6.0	0.0	10.6	2.9	3.0	100.0
혼인상태												
미혼	74.9	8.4	0.0	0.0	2.1	30.3	38.5	6.6	8.7	1.3	4.1	100.0
별거·이혼	73.4	4.5	0.9	32.7	2.8	17.6	27.4	6.8	2.2	1.1	4.0	100.0
사별	88.2	1.2	0.8	66.7	0.4	7.0	12.0	0.4	7.6	1.6	2.4	100.0
1인가구 유지 기간												
1년 미만	83.8	9.1	0.0	48.3	0.0	8.6	14.7	3.4	13.3	0.0	2.6	100.0
1~5년	86.6	2.5	1.1	57.1	0.4	11.0	19.3	2.7	3.2	0.5	2.2	100.0
5~10년	85.5	2.5	1.5	52.6	0.7	12.1	19.7	1.7	3.7	1.9	3.6	100.0
10~15년	81.1	3.5	0.3	49.1	2.0	13.1	15.7	2.7	8.9	1.3	3.4	100.0
15~20년	75.0	0.6	0.7	47.8	3.0	12.5	18.1	7.2	6.6	1.6	1.9	100.0
20년 이상	77.7	3.0	0.5	40.9	1.7	15.0	23.9	2.9	6.3	2.1	3.7	100.0

주: 1)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2) 의미 있는 타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3. 1인 가구의 삶의 어려움

현재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것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분석 결과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는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아플 때 대처, 가사활동(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 등), 경제적 불안, 고립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성별 어려움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더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균형 잡힌 식사와 가사 활동의 어려움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특성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점수가 높았으나,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50·60대가 70·80대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점수가 높았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 별거·이혼은 균형 잡힌 식사, 아플 때 대처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점수가 높았으나, 사별은 이 둘이 동일한 점수를 보였다. 또한 별거·이혼의 경우 경제적 불안에 따른 어려움 점수가 타 혼인상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점수가 높았으며, 주거환경, 경제적 불안, 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따른 어려움은 고등학교 학력자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 자가 거주자의 경우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의 경우 어려움을 느끼는 점수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다. 비동거 가족 여부에 따른 특성에서는 비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 균형 잡힌 식사와 아플 때 대처, 사회적 고립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형성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어려움 수준을 살펴보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한 경우, 향후 1인 가구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1인 가구로 살아온 기간별 특성을 보면, 1년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 1인 가구로 살아온 집단은 1~10년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점수가 높았으며, 10년 이상의 경우 1인 가구로 살아온 기간이 길수록 대부분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점수가 높았다. 특히나 20년 이상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4〉 현재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

(단위: 점)

구분	고립되어 외로움	아플 때 대처 어려움	균형식사 어려움	가사 어려움	주거 환경 비안전	범죄 비안전	경제적 불안	부정적 시각
전체	2.6	3.1	3.2	2.8	2.3	2.2	2.7	2.3
성별								
남자	2.8	3.2	3.4	3.1	2.5	2.2	2.9	2.5
여자	2.5	3.0	3.0	2.6	2.2	2.2	2.6	2.2
연령								
50대	2.4	2.8	3.0	2.6	2.3	2.2	2.8	2.5
60대	2.7	3.1	3.2	2.7	2.3	2.2	2.8	2.5
70대	2.6	3.1	3.2	2.8	2.2	2.1	2.6	2.2
80대 이상	2.8	3.4	3.4	3.2	2.3	2.2	2.6	2.2
혼인상태								
미혼	2.6	3.0	3.3	2.8	2.4	2.2	2.8	2.4
별거·이혼	2.7	3.0	3.2	2.7	2.4	2.3	3.0	2.6
사별	2.6	3.1	3.1	2.8	2.2	2.2	2.5	2.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	3.2	3.2	2.9	2.3	2.2	2.7	2.3
고등학교	2.6	3.0	3.2	2.8	2.4	2.2	2.8	2.5
대학 이상	2.3	2.8	2.8	2.5	2.1	2.1	2.4	2.2
근로 여부								
미근로	2.8	3.2	3.3	3.0	2.3	2.2	2.8	2.4
근로	2.4	2.9	3.0	2.5	2.3	2.2	2.6	2.3
자가								
비자가	2.7	3.2	3.3	2.9	2.4	2.3	3.0	2.6
자가	2.5	3.0	3.0	2.7	2.1	2.1	2.4	2.1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2.9	3.3	3.4	3.0	2.4	2.3	3.0	2.4
100~200만 원 미만	2.5	2.9	3.0	2.6	2.2	2.1	2.6	2.3
200~300만 원 미만	2.3	2.6	2.8	2.4	2.1	2.1	2.4	2.3
300~400만 원 미만	2.2	2.5	2.6	2.4	2.0	2.0	2.2	2.0
400~500만 원 미만	2.0	2.7	2.7	2.6	1.7	1.6	1.5	2.1
500만 원 이상	2.1	2.7	2.8	2.7	2.0	2.4	2.0	2.2

구분	고립되어 외로움	아플 때 대처 어려움	균형식사 어려움	가사 어려움	주거 환경 비안전	범죄 비안전	경제적 불안	부정적 시각
비동거가족 유무								
없음	2.7	3.1	3.2	2.8	2.3	2.2	2.7	2.3
있음	2.5	2.9	3.2	2.7	2.3	2.2	2.8	2.4
1인 가구 형성 이유								
자발	2.4	2.9	3.0	2.6	2.3	2.2	2.6	2.3
비자발	2.7	3.1	3.2	2.9	2.3	2.2	2.7	2.4
기타	2.3	2.8	3.0	2.6	2.1	2.0	2.6	2.2
향후 혼자 살 의향								
없음	2.7	3.1	3.3	2.9	2.4	2.2	2.8	2.4
있음	2.6	3.1	3.1	2.8	2.3	2.2	2.7	2.3
1인 가구 유지 기간								
1년 미만	2.4	3.0	3.2	2.8	2.2	2.2	2.7	2.3
1~5년	2.4	2.9	3.0	2.7	2.2	2.1	2.5	2.2
5~10년	2.7	3.0	3.1	2.7	2.3	2.2	2.6	2.2
10~15년	2.6	3.1	3.2	2.8	2.3	2.2	2.7	2.4
15~20년	2.7	3.1	3.2	2.9	2.4	2.2	2.8	2.3
20년 이상	2.8	3.2	3.3	2.9	2.4	2.3	2.9	2.5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많이 느낌(최소 1점~최대 5점).
2)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향후 혼자 계속 1인 가구로 살아갈 의향이 있는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가 1인 가구로 계속 살아갈 경우 예상되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어려움 35.8%, 심리적 외로움 8.4%, 가사 등 일상적 자기 돌봄의 어려움 5.0%의 순으로 대부분 돌봄과 경제적 측면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40.1%로 가장 높은 반면, 여자는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에 대한 걱정이 44.3%로 가장 높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에 대한 걱정 비율이 높은 많은 반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 비율은 낮았다. 또한 80대 이상은 타 집단에 비해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 돌봄의 어려움에 대한 비율도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도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미혼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에 대한 걱정이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 별거·이혼은 경제적 어려움이 51.6%로 가장 높고, 사별은 질병·건강 악화 시 돌봄이 49.4%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에 대한 걱정이 43.7%로 가장 높았으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 38.3%,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 36.3%로 유사하였으며,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도 10.4%로 높았다. 주거점유형태에 따라서는 자가인 경우는 돌봄에 대한 걱정 비율이 높은 반면, 비자가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 비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500만 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걱정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심리적 외로움은 400만 원 이상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걱정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또한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18.4%로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비동거가족 여부에 따라서는 비동거가족이 있을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 비율이 46.6%로 가장 높은 반면, 비동거 가족이 없는 집단에서는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에 대한 걱정이 44.7%로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형성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예상되는 걱정 내용을 살펴보면, 1인 가구 형성 이유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1인 가구 유지 기간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20년 이상 1인 가구를 유지한 경우 향후 1인 가구로 살아갈 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3-55〉 향후 계속 1인 가구로 거주 시 걱정되는 부분

(단위: %)

구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로움	사회적 편견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 돌봄의 어려움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	장례, 제사 등 사후 처리	기타	어려움 없음	계
전체	35.8	8.4	0.5	5.0	41.0	2.0	0.1	7.3	100.0
성별									
남자	40.1	9.0	0.8	5.6	34.0	2.4	0.0	8.1	100.0
여자	33.8	8.1	0.3	4.7	44.3	1.8	0.1	6.9	100.0
연령									
50대	52.3	8.2	1.1	3.7	24.1	2.1	0.0	8.4	100.0
60대	40.6	9.3	0.3	3.4	37.5	1.3	0.0	7.6	100.0
70대	27.3	8.4	0.4	4.9	48.4	2.0	0.3	8.3	100.0
80대 이상	20.9	6.9	0.2	9.2	55.9	3.0	0.0	4.0	100.0
혼인상태									
미혼	36.6	7.6	1.2	3.9	37.9	4.2	0.0	8.6	100.0
별거·이혼	51.6	8.0	0.7	2.7	28.5	1.5	0.1	7.0	100.0
사별	25.9	8.7	0.2	6.6	49.4	1.9	0.1	7.3	10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2.6	7.6	0.2	5.9	44.4	2.1	0.1	7.2	100.0
고등학교	45.2	9.3	0.2	4.1	32.7	1.9	0.0	6.6	100.0
대학 이상	30.7	10.1	2.4	2.5	42.9	1.9	0.0	9.6	100.0
근로 여부									
미근로	34.4	7.9	0.6	5.7	43.7	2.1	0.1	5.5	100.0
근로	38.3	9.1	0.3	3.7	36.3	1.8	0.1	10.4	100.0
자가									
비자가	48.3	7.7	0.6	4.7	33.2	1.3	0.0	4.3	100.0
자가	22.5	9.1	0.3	5.2	49.4	2.7	0.2	10.6	100.0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38.3	6.5	0.3	5.7	41.5	2.5	0.1	5.0	100.0
100~200만 원 미만	35.5	9.2	0.5	4.0	39.9	1.0	0.1	9.7	100.0
200~300만 원 미만	34.1	7.5	1.0	4.7	42.6	0.7	0.0	9.3	100.0
300~400만 원 미만	23.3	16.6	0.0	2.9	43.9	2.1	0.0	11.3	100.0
400~500만 원 미만	9.1	34.2	0.0	4.0	42.6	3.4	0.0	6.6	100.0
500만 원 이상	19.9	22.7	2.5	3.4	25.5	7.6	0.0	18.4	100.0
비동거가족 유무									
없음	32.8	7.8	0.5	5.2	44.7	2.3	0.1	6.6	100.0
있음	46.6	10.4	0.3	4.2	27.8	0.9	0.0	9.8	100.0

구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로움	사회적 편견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 돌봄의 어려움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	장례, 제사 등 사후 처리	기타	어려움 없음	계
1인 가구 형성 이유									
자발	34.1	7.6	0.8	3.9	42.0	3.3	0.0	8.3	100.0
비자발	36.2	8.7	0.4	5.3	40.8	1.8	0.1	6.6	100.0
기타	36.2	5.2	0.0	3.8	39.4	0.0	0.0	15.4	100.0
1인 가구 유지 기간									
1년 미만	35.0	13.3	0.0	10.8	32.7	0.0	0.9	7.2	100.0
1~5년	35.5	9.1	0.0	3.5	40.2	2.2	0.0	9.6	100.0
5~10년	28.2	8.8	1.0	3.8	49.9	0.6	0.0	7.6	100.0
10~15년	34.6	10.2	0.7	7.0	38.0	2.1	0.2	7.3	100.0
15~20년	36.1	8.6	0.0	6.3	38.0	2.4	0.0	8.6	100.0
20년 이상	41.1	5.5	0.6	3.8	41.1	2.7	0.0	5.2	100.0

주: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4. 1인 가구의 정책 욕구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의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 욕구는 주택 안정지원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돌봄 서비스 지원 21.9%, 건강증진 지원 13.8%, 가사서비스 지원 9.4%,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8.2% 등의 순이었다.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는 주택 안정 지원 욕구가 47.6%로 가장 높은 반면, 여자는 돌봄 서비스 지원 27.1%, 주택 안정 지원 26.5%로 주된 욕구에서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돌봄서비스 지원 및 가사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주택 안정 지원은 낮았다. 특히나 50대의 경우 60.4%가 주택 안정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해당 연령군의 주거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과 별거·이혼은 50% 이상이 주택 안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별은 돌봄서비스(32.0%)와 건강증진지원(16.4%)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에서도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에서는 주택 안정 지원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교 이하는 돌봄서비스(29.2%)와 주택 안정 지원(24.4%)의 비율이 높았다.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주택 안정 지원의 욕구가 43.7%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돌봄 서비스 지원과 주택 안정 지원이 각각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거점유형태에 따라서는 자가인 경우 돌봄서비스 지원(30.3%)과 건강증진지원(20.4%)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자가는 주택 안정 지원이 55.7%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비동거가족 유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비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는 주택 안정 지원이 50.4%로 높은 반면, 없는 경우는 돌봄 서비스 지원(24.7%)과 주택 안정 지원(28.6%)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1인 가구 형성과 관련된 특성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한 집단은 주택 안정 지원 욕구가 37.0%로 비자발 집단보다 높았으나, 가사서비스 지원,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비자발 집단이 자발 집단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향후 혼자 살 의향과 1인 가구 유지기간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3-56〉 중고령 1인 가구의 정책 욕구

(단위: %)

구분	주택 안정 지원	안전한 주거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돌봄 서비스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건강 증진 지원	고독사 및 장례에 대한 지원	계
전체	33.6	5.2	21.9	9.4	8.2	1.9	3.5	13.8	2.3	100.0
성별										
남자	47.6	5.5	11.8	8.9	7.4	2.6	2.8	10.5	2.9	100.0
여자	26.5	5.0	27.1	9.6	8.7	1.6	3.9	15.5	2.0	100.0
연령										
50대	60.4	8.3	7.0	3.7	5.7	2.6	3.2	7.5	1.5	100.0
60대	36.7	5.4	14.5	8.3	9.4	2.5	2.9	18.3	2.1	100.0
70대	20.3	4.3	28.6	12.2	8.4	1.9	5.3	16.6	2.3	100.0
80대 이상	14.1	2.1	43.4	14.3	9.4	.2	2.4	10.4	3.7	100.0
혼인상태										
미혼	52.0	10.9	8.8	4.2	6.6	3.9	3.1	6.0	4.4	100.0
별거·이혼	53.4	5.8	10.7	5.1	6.8	1.6	1.5	12.5	2.6	100.0
사별	16.9	3.6	32.0	13.3	9.5	1.7	5.0	16.4	1.7	10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4	3.4	29.2	11.3	9.0	1.8	2.7	15.7	2.5	100.0
고등학교	45.6	7.2	10.6	7.4	8.3	1.9	5.1	11.9	2.1	100.0
대학 이상	48.4	8.5	14.1	5.1	5.0	2.7	3.9	10.1	2.1	100.0

구분	주택 안정 지원	안전한 주거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돌봄 서비스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건강 증진 지원	고독사 및 장례에 대한 지원	계
근로 여부										
미근로	27.4	4.6	27.6	11.4	8.8	1.5	3.2	13.3	2.2	100.0
근로	43.7	6.1	12.8	6.1	7.4	2.7	4.1	14.8	2.5	100.0
자가										
비자가	55.7	4.3	14.2	6.4	6.2	1.9	1.1	7.8	2.5	100.0
자가	9.7	6.1	30.3	12.6	10.4	2.0	6.3	20.4	2.1	100.0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28.1	3.8	27.8	10.5	9.9	1.0	2.3	14.0	2.5	100.0
100~200만 원 미만	38.1	5.9	16.9	10.1	5.7	3.0	4.3	13.7	2.2	100.0
200~300만 원 미만	47.7	9.3	9.8	3.1	7.4	3.6	5.3	12.5	1.2	100.0
300~400만 원 미만	31.6	8.2	16.3	8.3	6.0	0.0	5.7	19.5	4.4	100.0
400~500만 원 미만	31.9	0.0	28.7	9.4	9.5	3.5	0.0	17.0	0.0	100.0
500만 원 이상	36.8	6.0	18.9	7.3	9.8	4.7	11.8	4.7	0.0	100.0
비동거가족 유무										
없음	28.6	5.7	24.7	10.0	9.0	2.0	3.8	14.0	2.3	100.0
있음	50.4	3.5	12.7	7.3	5.6	1.8	2.7	13.5	2.5	100.0
1인 가구 형성 이유										
자발	37.0	6.1	22.0	6.6	4.9	3.1	4.5	12.8	3.1	100.0
비자발	32.3	5.1	22.1	10.5	9.1	1.8	3.5	13.4	2.3	100.0
기타	41.8	4.1	19.7	2.1	6.4	0.0	1.5	24.3	0.0	100.0

구분	주택 안정 지원	안전한 주거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돌봄 서비스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건강 증진 지원	고독사 및 장례에 대한 지원	계
향후 혼자 살 의향										
없음	37.9	3.9	20.5	8.8	7.4	1.7	2.7	14.3	2.8	100.0
있음	33.0	5.4	22.1	9.5	8.4	2.0	3.7	13.8	2.2	100.0
1인 가구 유지 기간										
1년 미만	49.5	2.3	14.1	4.3	8.9	0.0	3.4	16.6	.8	100.0
1~5년	31.3	3.9	19.0	11.2	8.0	2.3	5.3	17.5	1.6	100.0
5~10년	27.5	5.9	28.0	11.3	4.6	2.2	4.8	13.9	1.8	100.0
10~15년	35.0	5.5	22.5	9.8	9.3	1.0	3.0	11.7	2.3	100.0
15~20년	34.0	7.2	19.2	10.7	9.3	1.3	2.9	12.7	2.7	100.0
20년 이상	35.1	5.3	22.5	7.1	9.3	2.8	2.2	12.6	3.2	100.0

주: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의 82.7%는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특성별 비율은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즉,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비율이 높으며, 80대 이상의 고연령 1인 가구와 사별한 1인 가구에서 해당 비율이 높았다. 별거·이혼 집단은 상대적으로 시설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높았으며, 자가 거주자에 비해 비자가 거주자가 시설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3-57〉 노후에 지내고 싶은 곳

(단위: %)

구분	집	실버타운 등 서비스형 주택, 노인복지시설 등
전체	82.7	17.3
성별		
남자	76.3	23.7
여자	86.0	14.0
연령		
50대	85.1	14.9
60대	80.1	19.9
70대	79.6	20.4
80대 이상	88.5	11.5
혼인상태		
미혼	81.8	18.2
별거·이혼	77.4	22.6
사별	86.3	1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3.1	16.9
고등학교	82.5	17.5
대학 이상	81.6	18.4
자가		
비자가	79.2	20.8
자가	86.5	13.5

구분	집	실버타운 등 서비스형 주택, 노인복지시설 등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82.6	17.4
100~200만 원 미만	82.1	17.9
200~300만 원 미만	84.4	15.6
300~400만 원 미만	84.3	15.7
400~500만 원 미만	84.4	15.6
500만 원 이상	82.1	17.9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현재의 중고령 1인 가구와 미래의 중고령 1인 가구의 모습은 다를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장래가구추계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하여 중고령 1인 가구의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영역별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 1인 가구의 다차원적 특성을 연령군별 특성 및 코호트 특성에 따라 검토하였다. 셋째, 중고령 1인 가구의 삶의 모습을 검토하였다. 먼저 이러한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1인 가구의 규모 및 일반적 특성 변화

지난 10년간 한국의 1인 가구는 급증하였으며, 향후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 무배우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변화를 실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군별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40~60대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여, 중장년층 중심의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 2015년

40~50대(현재 50~60대) 연령군에서 무배우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70~80대 노인의 경우 이미 1인 가구가 해당 연령군의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의 증가율은 타 연령군에 비해서 더욱 증가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중고령 1인 가구의 보편화 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무배우 1인 가구의 수와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지만, 연령군별로 차이를 보인다. 50대 이하의 경우 전체 가구 중 무배우 1인 가구의 비율이 남성이 많거나 여성과 유사한 반면, 60대부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80대 이상에서 그 차이가 가장 컸다. 지난 10년간의 변화에서는 50~60대 남성 중장년 1인 가구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의 무배우 1인 가구 비율이 동부에 비해 높고, 이는 70대 이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10년간의 변화에서는 전반적으로 동부 거주자의 무배우 1인 가구 증가 폭이 읍면부 거주자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80대 이상 동부 거주자의 무배우 1인 가구 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컸다. 이는 초고령 독거노인이 주로 읍면부에 거주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는 다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중고령 1인 가구 중 무배우자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혼인상태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별 비율이 높으며, 50대는 타 연령과 상이하게 이혼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혼인상태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40~50대는 무배우 1인 가구는 미혼 비율이 증가한 반면, 60~70대는 이혼 비율이 증가하고, 사별 비율은 감소하였다. 즉, 비혼자와 이혼률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1인 가구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교육수준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40대의 경우 고학력자의 비율이 2010년 대비 급증하였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50% 이상이며, 연

령이 높을수록 참여율은 낮았다. 지난 10년간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하였으며, 50~60대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거 점유상태를 살펴보면, 월세 및 무상 〉 자가 〉 전세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변화에서는 50대 이상의 주거불안정성이 높아진 특성을 보였다. 즉, 40대 이하의 경우 자가 비율이 증가한 반면, 60대는 자가 비율이 감소하였고, 50대는 월세 및 무상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3-58〉 중고령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변화 요약

구분	특성
연령	- 40~60대 1인 가구 비율 증가 - 현재 50~60대의 무배우 1인 가구의 비율이 타 연령군에 비해 높음 - 8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 증가율 높음
성	- 여성 무배우 1인 가구 수와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 연령군별로 성별에 따른 무배우 1인 가구 분포 상이 - 50~60대 남성 중장년 1인 가구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음
지역	- 동부의 무배우 1인 가구 수(비율)가 많으나, 읍면부는 고연령에서 무배우 1인 가구 비율 높음 - 동부 거주 8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 증가 폭이 매우 크며, 50~60대의 증가 폭도 높았음
혼인상태	- 무배우 1인 가구 계속적 증가 - (연령)연령이 낮을수록 미혼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별 비율 높음 - (시계열) 40대와 50대는 미혼 비율 증가. 60대와 70대는 이혼 비율 증가
교육수준	-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수준 낮음 - (시계열) 전반적으로 중고령 1인 가구의 교육수준은 증가하였으며, 40대 고학력자의 비율이 2010년 대비 급증
경제활동	- (연령) 50% 이상 경제활동 참여.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은 낮음 - (시계열)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50~60대 두드러짐)
주거점유	-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비율 높음 - (시계열) 주거 점유상태의 불안정 증가

자료: 본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2. 중고령 1인 가구의 다차원적 특성 변화

중고령 1인 가구의 다차원적 특성은 경제상태, 경제활동,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사회적 관계망, 주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각 영역에 대해 1940년대 코호트, 1950년대 코호트, 1960년대 코호트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코호트 집단 내에서의 변화(연령 증가)와 코호트 집단 간 변화(동일 연령군의 시점별 비교-2021년 50대와 2011년의 50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경제상태

먼저 소득수준의 변화이다. 2012년과 2021년 전반적으로 모든 코호트에서 총소득수준은 증가하였으며, 근로 및 사업소득은 감소하고, 재산소득,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이 증가하였다. 특히나, 공적이전소득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 이후 급격히 확대된 기초연금과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코호트 집단 간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60대와 50대 모두 10년 전에 비해 현재의 소득수준이 증가하였으며, 60대는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50대는 근로소득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지출수준의 변화이다. 코호트 집단 내에서 과거에 비해 지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코호트 간 비교에서도 현재 50·60대 모두 과거의 50·60대에 비해 지출액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자산수준의 변화이다. 자산 및 순자산의 총액과 증가액 모두 1940년대 코호트가 가장 많은 반면, 부채는 1960년대 코호트가 가장 많았다. 집단 간 차이에서는 현재 중고령 50·60대의 순자산이 과거에 비해 많았으나, 현재 50대인 1960년대 코호트는 증가액이 타 코호트에 비

해 낮아, 자산 측면에서 타 연령군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중고령 1인 가구의 47.1%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나. 경제활동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1년 대비 모든 코호트에서 감소하였으며,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증가하였다. 코호트별로는 50·60대 모두 과거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다. 다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60대는 남성의 참여율이 감소하고, 여성의 참여율은 증가한 반면, 50대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60대는 경제활동의 의지가 있는 인구인 실업인구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경제활동 참여자의 종사상 지위는 전반적으로 상용직 비율은 감소하고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 비율이 급증하였다. 특히나 코호트별 차이를 보이는데, 1940년대 코호트는 공공형의 비율이 급증한 반면, 1950년대·1960년대 코호트는 자영업 비율이 증가하였다. 코호트 간 종사상 지위를 비교한 결과 60대는 과거에 비해 상용직과 임시직의 비율이 높았으며, 공공형 비율도 높아, 경제활동 상태가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공공의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50대는 은퇴 후 자영업 종사 선택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시간제 근무자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40년대 코호트의 비율은 급증하였다. 그러나 코호트 간 비교 결과 60대만 과거 60대에 비해 시간제 비율이 증가하였고, 50대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지속 가능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은 모든 코호트에서 감소하였으며, 과거 50·60대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즉, 고용의 지속 가능성 담보가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다.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중고령 1인 가구의 건강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노화 과정으로 인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정적 인지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다만, 1940년대 코호트는 노화에 따른 건강상태에 대한 적응 등을 이미 겪은 세대이기에 타 코호트와 달리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21년에 더 높았다. 반면, 1960년대 코호트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한 경험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타 연령군에 비해 1960년대 코호트는 2011년에 비해 2021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한 경험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코호트 집단 간 비교 결과에서는 과거에 50·60대 무배우 1인 가구에 비해 현재가 건강상태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한 경험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울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건강행위는 코호트,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예방적 건강행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과거의 50·60대에 비해 현재의 50·60대가 예방적 건강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하였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과 일부 정책(독감예방접종 무료 접종 연령군 제한) 등으로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상생활 속 건강행위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폭음의 경우 남성은 과거의 50·60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흡연은 1960년대 코호트만 2011년에 비해 흡연율이 증가하였으며, 코호트별로는 60대는 흡연율이 증가하고, 50대는 감소하였다. 또한 외식 빈도는 전체적으로 2011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코호트 집단 간 비교 시 과거 50·60대에 비해 현재 50·60대의 외식 비율이 증가하였다.

라. 사회적 관계망

몸이 아플 때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비율은 모든 코호트에서 증가하였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감소하였다. 코호트 간 비교 시에는 대상자 존재 비율은 과거 50·60대와 현재가 비슷하지만, 도움 가능자의 수는 60대는 유사하고, 50대는 현재가 더 많았다.

큰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대상이 있는 비율과 인원 모두 모든 코호트에서 감소하였으며, 1940년대 코호트에서 감소 비율이 매우 컸다. 코호트 간 비교 시에는 현재의 60대가 과거에 비해 대상의 비율 및 인원 모두 적은 반면, 50대는 현재의 50대가 더 많았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의 존재 비율은 모든 코호트에서 증가하였으나, 인원은 감소하였다. 다만, 코호트와 성별에 따라 대화상대의 규모가 달랐으며, 50대 이후 은퇴를 경험하며 남자는 대화상대가 많이 감소할 우려가 있었다. 코호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60대는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인원은 감소한 반면, 50대는 모두 증가하였다.

마. 주거상태

코호트 내에서의 변화와 코호트 간 변화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2년에 비해 2021년 중고령 1인 가구의 모든 코호트에서 자가보유율 및 점유율이 증가하였으며, 비지상층(옥탑, 지하, 반지하 등) 거주 비율은 감소하고, 주택의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 비율과 최저 주거기준 미달 비율도 모두 감소하였으며, 주택 비용과 관련된 RIR 비율, 생활비 중 주거관리비 비율도 감소하였다. 한편, 평균

주거면적은 감소하였으며, 최저 주거면적 미달 비율은 증가하여, 주거 면적에서 더욱 열악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의 50·60대와 현재의 50·60대를 비교하였을 때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필수설비 미달 비율은 코호트 내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과거 50·60대와 비교 시 현재 미달 비율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상태에서 발견된 또 다른 특성은 1960년대 코호트의 특성이다. 1960년대 코호트는 타 코호트에 비해 자가 비율이 낮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으며, 월세·무상 점유형태의 비율이 높고,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거주 비율이 높다.

바. 종합정리

중고령 1인 가구의 다차원적 특성 변화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호트 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령의 증가 차원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동일한 코호트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 경제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연령의 증가로 경제활동 참여율은 감소하고, 종사상 지위 역시 불안정해졌으며,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노화의 과정에 따라 건강상태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건강행위는 일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존재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규모는 감소하고, 금전적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는 관계망은 감소하였다. 주거상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평균 주거면적과 최저 주거면적 미달 비율은 증가하여, 주거의 질 측면은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10년의 간격을 두고 코호트 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비교 가능한 대상은 1940년대 코호트, 1950년대 코호트와 1960년대 코호트로, 2010년 당시 60대인 1940년대 코호트와 2020년 60대인 1950년대 코호트를 비교하였고, 2010년 당시 50대인 1950년대

코호트와 2020년 50대인 1960년대 코호트를 비교하였다. 과거의 2010년의 50·60대에 비해 현재의 50·60대는 경제적으로 총소득, 지출, 순자산 모두 증가하였다. 경제활동 참여 인구도 증가하였으나, 과거 50·60대에 비해 고용의 지속 가능성 담보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50대와 60대의 고용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50대는 과거에 비해 자영업 종사 비율이 증가한 반면, 60대는 공공일자리 의존도가 높아졌다.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나, 건강행위도 일부 항목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다만 두 연령대 모두 외식은 증가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존재 유무 및 규모는 연령대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50대는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금전적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관계망의 존재 유무와 규모가 모두 과거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향을 보이지만, 60대는 관계망의 규모가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주거상태에서는 과거에 비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50·60대 모두 과거 50·60대에 비해 평균 주거면적이 감소하고, 최저 주거면적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필수설비 미달 비율이 감소하여, 주거의 질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9〉 중고령 1인 가구의 다차원적 특성 변화 요약

구분		특성
경제상태	코호트 내	- 총소득, 지출, 순자산 모두 증가
	코호트 간	- 총소득, 지출, 순자산 모두 과거 50·60대에 비해 증가
경제활동 참여상태	코호트 내	- 경제활동 참여율 감소,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율 증가 - 상용직 비율은 감소하고, 공공형일자리 참여자 비율 급증(1940년대 공공형, 1960년대 자영업과 고용주 비율 증가) - 시간제 근로자 비율 증가(1940년대 코호트 급증) - 지속 가능한 고용상태의 비율 감소
	코호트 간	- 50·60대 모두 경제활동인구 증가, 60대는 과거에 비해 실업률도 증가 - 60대는 과거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공공의존도 높아졌으며, 50대는 은퇴 후 자영업 종사 선택 비율 증가 - 과거 60대에 비해 시간제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50대는 감소 - 과거 50·60대에 비해 고용의 지속 가능성 담보 어려워짐

구분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코호트 내	- (건강상태)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화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나, 주관적 인지 수준은 1940년대 코호트는 오히려 증가하고 1960년대 코호트가 증가 - (건강행위) 예방적 건강행위 모두 증가, 일상생활 속 건강행위는 증가하고 있으나, 연령군, 성별 차이를 보임
	코호트 간	- (건강상태) 과거 50·60대 무배우 1인 가구에 비해 현재가 건강상태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 (건강행위) 60대는 과거에 비해 예방적 건강행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폭음은 감소하였으나, 흡연율과 외식 증가. 50대는 독감예방접종 외 예방적 건강행위, 흡연, 폭음 긍정적으로 변화. 단, 외식은 증가
사회적 관계망	코호트 내	-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존재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의 존재 비율 증가, 인원 감소 - 큰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대상의 존재 비율과 인원 모두 모든 코호트에서 감소
	코호트 간	-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존재 비율은 과거와 유사하였으나, 인원은 60대는 유사하고, 50대는 현재가 더 규모가 큼 - 큰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존재의 비율과 규모 모두 60대는 현재가 대상이 적은 반면, 50대는 더 많음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의 존재 비율은 과거 60대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규모는 감소. 50대는 모두 증가
주거상태	코호트 내	- (긍정적) 자가 보유율 및 점유율 증가, 비지상층 거주 비율 감소, 필수설비 미달 비율 일부 코호트 감소, 주택의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 비율과 최저 주거기준 미달 비율 모두 감소, RIR 비율, 생활비 중 주거관리비 비율 감소 - (부정적) 평균 주거면적 감소, 최저 주거면적 미달 비율 증가
	코호트 간	- (긍정적) 과거에 비해 50·60대의 자가 보유율 및 점유율 증가, 비지상층 거주 비율 감소, 주택의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 비율과 최저 주거기준 미달 비율 모두 감소, RIR 비율, 생활비 중 주거관리비 비율 감소 - (부정적) 평균 주거면적 감소, 최저 주거면적 미달 비율 증가, 필수설비 미달 비율 증가

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3.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과정과 생활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과정과 생활은 ① 형성 이유 ② 직전 동거가족 및 비동거 동거가족 여부, ③ 의미 있는 타자 여부, ④ 1인 가구로 생활하

면서 느끼는 어려움, ⑤ 향후 1인 가구 유지 의향 및 1인 가구 지속 시 걱정되는 부분, ⑥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정책 욕구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중고령 1인 가구의 77.4%는 비자발적 사유로 1인 가구를 형성하였으며, 가장 큰 원인은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1인 가구 형성의 주된 요인은 혼인상태의 변화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직전 동거가족은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나,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비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는 23.0%로 낮은 비율을 보여, 향후 가족 외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중고령 1인 가구의 81.6%는 의미 있는 타자가 있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 비율이 약 20%p 낮아 남성 중고령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의미 있는 타자 중 자녀의 비율이 57.6%로 자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친구, 자녀 형제자매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연령별로는 50·60대는 자녀, 친구, 형제자매 등으로 의미 있는 타자의 분포가 다양한 반면, 70·80대는 자녀의 비중이 높아 성·연령에 따라 의미 있는 타자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중고령 1인 가구가 1인 가구로 생활하며 느끼는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어려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플 때 대처, 가사활동, 경제적 불안, 고립 등의 순이었다. 어려움을 느끼는 수준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균형 잡힌 식사 및 가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에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다만,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은 50·60대가 70·80대보다 높아 연령군별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별거·이혼 상태인 경우 경제적 불안이 타 혼인상태에 비해 높았으며, 비동거가족이

없는 경우는 균형 잡힌 식사와 아플 때 대처 어려움에 대한 어려움 비율이 높아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이 다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어려움이 적은 반면, 비자발적으로 가구형성을 하였거나, 향후 1인 가구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유지 기간별 차이에서는 기간이 너무 짧거나(1년 미만), 너무 길어도(20년 이상)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1인 가구 중 87.6%는 향후 계속 1인 가구로 살기를 희망하였다. 이들이 1인 가구를 유지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은 질병 악화 시 돌봄에 대한 걱정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질병 악화 시 돌봄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 비율이 가장 높아, 이 두 가지는 1인 가구로 노후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욕구로는 주택안정 지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돌봄서비스 지원, 건강증진 지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나, 50대의 경우 주택안정 지원이 타 연령군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 서비스 지원의 비율이 높았다. 비동거가족이 없는 경우는 주택안정 지원의 욕구가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돌봄서비스 지원과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비율이 높았다. 이는 비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한정될 위험이 높아 향후 고립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음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제4장

미래 중고령 1인 가구의 삶의 모습과 욕구

제1절 조사 개요 및 분석 방법
제2절 중장년 1인 가구의 형성 및 적응 과정
제3절 중장년 1인 가구의 현재 삶의 모습과 욕구
제4절 중장년 1인 가구의 미래 삶의 모습과 욕구
제5절 소결

제4장 미래 중고령 1인 가구의 삶의 모습과 욕구

제1절 조사 개요 및 분석 방법

1. 조사 개요

본 연구는 중고령 1인 가구에 관한 현행 제도와 정책이 빈곤 같은 전통적 취약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다변화될 중고령 1인 가구의 삶의 모습과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앞의 제3장에서 코호트 분석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 차이를 확인했다면, 본 장에서는 미래의 중고령 1인 가구가 현재와는 또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래에 중고령층이 되는 '현재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수행하여 이들의 특성과 욕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 노인 1인 가구 집단을 개별인터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논의에는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접근이 주를 이루어,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향후 중고령 1인 가구가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을 시점에 대비하여 현행 사회정책의 구조적 측면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파악된 현재 노년층의 욕구에 더하여 현재 중장년층의 욕구를 새로이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본 장의 일차적인 목적은 머지않은 미래에 장년(長年)[10]을 거쳐 노년에 진입할 현재 중장년 1인 가구 집단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들이

10) 본 연구에서 장년(長年, 나이가 많은 사람)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는 청·장년층을 일컬을 때의 장년(壯年, 한창 활동하는 사람)과는 다른 용어임.

어떠한 경로로 1인 가구가 되었고, 현재 삶의 모습과 정책 욕구는 어떠하며, 미래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향후 어떠한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첫째, 향후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에 있어 현재의 취약계층 중심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중고령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향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구형태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장애 요소나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현재 중장년 1인 가구의 개별적인 취약성을 파악하여 현재와 미래의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 활용한 분석 틀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1〕 미래 중고령 1인 가구 삶의 모습과 욕구 파악을 위한 분석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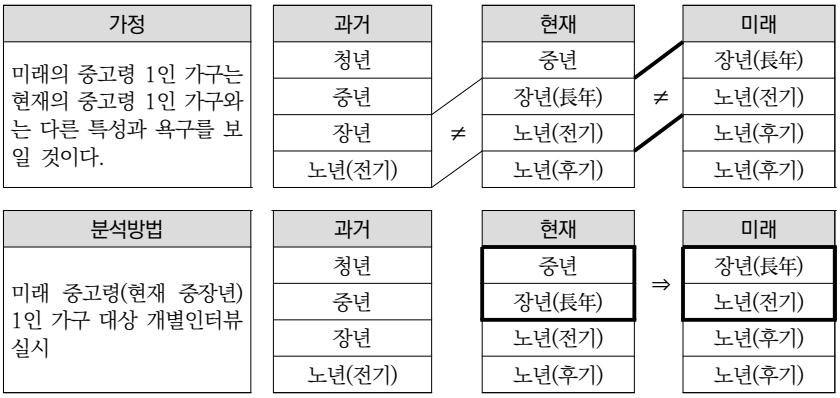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가. 개별인터뷰 질문항목 도출을 위한 FGI

개별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사전 이해를 넓히고 질문항목을 구상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FGI는 2023년 4월 28일에 실시하였고, 40~50대 10명을 대상으로 남성

그룹 5명, 여성 그룹 5명으로 나누어 그룹당 2시간가량 진행하였다. FGI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으며(IRB 승인번호 제2023-025호), 주로 1인 가구로 살게 된 배경, 1인 가구 전환 이후 생활의 변화, 1인 가구 생활의 장단점, 원가족과의 관계,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노후준비, 안정된 노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FGI 결과,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안정된 노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참여자 다수가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부분으로 막연하게 여기는 특성이 있었다. 이에 중장년 1인 가구의 미래 삶에 관한 욕구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5년 이내에 노년기로 진입하는 60~64세 집단을 개별인터뷰 참여자 대상에 포함하였다. FGI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개별인터뷰의 핵심 주제는 크게 1) 1인 가구 형성 배경 및 적응 과정, 2) 현재 삶의 경험 및 욕구, 3) 미래 삶의 모습 및 욕구로 구조화하였다.

나. 개별인터뷰의 사전 설문조사

개별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터뷰 참여자의 1인 가구 생활에 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조사는 첫째, 설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인터뷰를 이어감으로써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고, 둘째,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인터뷰 참여자의 생활실태와 인식을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질적 분석 방법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FGI와 마찬가지로, 개별인터뷰의 진행방식과 사전 설문 및 개별인터뷰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IRB 승인번호 제2023-040호).

사전 설문은 FGI를 통해 도출한 세 가지 핵심 주제에 맞게 연구진 논의와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하였다. 총 8개 문항으로, 응답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사전 설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1〉 사전 설문 내용

구분	내용	비고
1인 가구 형성 배경 및 생활 변화	- 1인 가구 형성 이유	2020년도 가족실태조사 가구대표용 조사표 참고
	- 1인 가구 직전 1년과 직후 1년의 생활 비교 - 1인 가구 직후 1년과 최근 1년의 생활 비교 (생활영역: ① 신체 건강상태, ② 신체 건강관리, ③ 주거 환경, ④ 경제상태(소득수준), ⑤ 정서적 상태, ⑥ 가족관계 만족도, ⑦ 사회적 관계 만족도, ⑧ 사회활동 만족도, ⑨ 안전)	연구진 작성
현재 삶의 경험 및 인식	- 걱정되거나 힘든 생활영역 및 순위 (① 경제, ② 건강, ③ 주거, ④ 정서 및 관계, ⑤ 안전)	정인, 강서진(2019). p. 21 참고
	-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주연(2021)에서 활용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문항 일부 발췌
	- 타인과의 관계(사회적 고립감)	안선영(2021)에서 활용한 사회적 고립감 척도
미래 삶의 모습에 대한 인식	- 향후 1인 가구 지속 의향	연구진 작성
	-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영역 (① 경제(재무), ② 건강, ③ 대인관계, ④ 여가(교육 포함))	2019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조사표 참고
	- 영역별 노후준비 여부 및 정도	경제적 노후준비: 2020년도 가족실태조사 가구대표용 조사표 참고 그 외 영역: 김수미(2016)에서 활용한 노후준비 문항 일부 발췌

자료: 1) 여성가족부, 통계청(2020). 2020년도 가족실태조사 가구대표용 조사표.
2) 정인, 강서진(2019).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3) 유주연(2021). 1인 가구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밀키트 선택속성에 대한 기대불일치, 만족, 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4) 안선영(2021). 자살 사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고립감의 매개효과.
5) 황남희 외(2019).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 및 2019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6) 김수미(2016).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과 노후준비.

다. 개별인터뷰

개별인터뷰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조사 대상은 만 40~64세 중장년 1인 가구 12명이고, 인터뷰 참여자 섭외는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중장년 1인 가구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고르게 고려되도록 참여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참여자로 최종 확정하였다. 섭외 시 고려한 요소는 성별, 연령대, 결혼상태, 거주지역, 경제활동 여부, 1인 가구 유지기간, 소득수준이었다.

개별인터뷰는 연구진 2인이 1:1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참여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15일 중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엠브레인리서치 좌담회실 또는 인터뷰 참여자의 자택에서 진행되었고, 사전 설문 응답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 4-2〉 개별인터뷰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만 40~64세 중장년 1인 가구 12명
참여자 선정	- 참여자 섭외는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하여 수행 - 참여자 선정 조건 • 성별 • 연령대: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 결혼상태: 미혼(비혼), 이혼(유자녀), 이혼(무자녀), 사별 • 거주지역: 도시, 농촌 • 경제활동: 경제활동 미참여자(경제활동 중단 1년 이상) 2명 필수 포함 • 1인 가구 생활 기간: '2~5년 이내' 2명, '10년 이내' 2명 필수 포함 • 소득수준: 100만 원 미만(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200만 원 내외, 400만 원 이상 2명씩 필수 포함
조사 방법	사전 설문 후 개별 심층인터뷰(IDI) 실시 (1시간~1시간 30분 소요)
조사 기간	2023년 5월 30일 ~ 6월 15일 (총 4일에 걸쳐 진행)

자료: 연구진 작성

개별인터뷰의 주요 질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GI 이후 도출한 핵심 주제에 따라 마련하였다. 1인 가구의 형성 배경 및 적응 과정, 현재 삶의 경험 및 욕구, 미래 삶의 모습 및 욕구의 큰 틀을 따르되, 세부 질문은 인터뷰 참여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참여자에게 인터뷰의 목적을 설명한 뒤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질문 중 답변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아도 되며, 참여자의 관련 정보는 익명화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참여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4-3〉 개별인터뷰 주요 질문 구성

구분	내용
1인 가구 형성 배경 및 적응 과정	- 1인 가구의 형성 이유, 형성 과정,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 - 1인 가구로 전환한 이후 현재 삶에 적응하기까지의 과정 - 1인 가구 전환 전후의 생활 비교 - 1인 가구의 생활 초기와 현재의 생활 비교 등
현재 삶의 경험 및 욕구	- 현재 일상생활(생활패턴) - 현재 생활의 장단점 - 가족/지인과의 교류 정도(만남 빈도, 연락 빈도, 일상 공유 정도) - 응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인(인근 거주자) - 원가족(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과의 관계 - 원가족 사망, 단절 시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 현재 삶의 만족도 - 1인 가구 생활 중 보호자가 필요했던 경험 - 1인 가구 생활 중 힘들거나 걱정되거나 불안했던 경험 - 1인 가구 생활 중 현행법, 제도에서의 사회적 규제로 인해 어려웠던 경험 -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 상황이나 순간 - 현재 1인 가구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
미래 삶의 모습 및 욕구	- 1인 가구 지속 희망 여부, 희망/비희망 이유, 희망 기간 - 1인 가구를 유지하여 노년기에 진입하였을 때, 꿈꾸는 노년의 모습 - 현재 노후준비 정도 - 노년기에 1인 가구로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준비 - 꿈꾸는 노년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 생애 말기의 순간을 상상할 때, 본인의 장례, 재산처리에 대한 의사결정, 사후 본인 의사의 존중과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 미래 1인 가구 증가에 맞추어 우리 사회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

자료: 연구진 작성

개별인터뷰에 참여한 중장년 1인 가구 12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4〉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6명, 남성이 6명이었고, 연령대[11]는 40대가 6명(40~44세 4명, 45~49세 2명), 50대가 4명(50~54세 3명, 55~59세 1명), 60대(60~64세)가 2명이었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년 미만이 2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명, 20년 이상이 3명이었다.

1인 가구로 생활하기 전의 가구형태는 2인 가구 6명, 3인 가구 2명, 4인 가구 4명이었고, 혼인상태는 미혼(비혼) 6명, 이혼 3명, 사별 3명이었다. 또한, 혼인 경험이 있는 인터뷰 참여자 6명 중에서 4명은 자녀가 있었고, 2명은 자녀가 없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참여자 12명 중 10명이 서울 또는 경기 지역에 거주하였고, 2명은 충남 부여군의 면 지역에 거주하였다. 인터뷰 섭외 및 진행 시점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는 9명이었고, 3명은 경제활동을 중단한 지 1년이 넘은 상태였다. 경제활동 중인 참여자 9명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100만 원 미만 2명,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명,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명, 400만 원 이상 2명이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참여자 3명 중 2명은 예·적금으로, 1명은 자녀의 용돈과 1년에 2번 정도 받는 품삯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2. 분석 방법

인터뷰 녹음파일에 대한 1차 전사 작업은 ㈜엠브레인리서치에서 수행하였으며, 연구진은 1차 전사자료를 전달받은 후 개별인터뷰 참여자 12인의 녹음파일을 다시 들으면서 전사자료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자료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요 질문과 관련된 진술을 추려내었고, 자료 정리 및 분석 과정에서 질적자료분석 소프트웨어인 MAXQDA를 활용하였다.

11) 개별인터뷰를 진행한 시점은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2023년 6월 28일 시행)이 시행되기 전으로(법제처, 2022. 12. 27.), 인터뷰 참여자가 본인의 나이를 만 나이보다는 세는 나이 기준으로 해당 연령대에 속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분석함.

〈표 4-4〉 개별인터뷰 참여자 일반특성

구분	성별	세는 나이	만 나이	1인 가구 기간	이전 가구형태	혼인상태	자녀 유무	거주지역	경제활동 여부	월평균 소득수준
A	여	41	40	5년	3인 가구 (어머니, 여동생)	미혼(비혼)	X	도시 (서울 종로구)	O	400만 원 이상
B	여	42	41	9년	4인 가구 (부모님, 남동생)	미혼(비혼)	X	도시 (경기 성남시)	X	- (예·적금)
C	여	42	41	10년	2인 가구 (전 배우자)	이혼	X	도시 (서울 관악구)	O	100만 원~ 200만 원
D	여	47	45	13년	2인 가구 (친구)	미혼(비혼)	X	도시 (경기 안산시)	O	100만 원 미만
E	여	55	54	6년	4인 가구 (자녀 3명)	사별	O (3명)	도시 (경기 부천시)	O	300만 원~ 400만 원
F	여	61	60	3년	2인 가구 (어머니)	사별	O (2명)	농촌 (충남 부여군)	X	- (용돈, 품삯)
G	남	42	40	6년	4인 가구 (부모님, 남동생)	미혼(비혼)	X	도시 (서울 은평구)	X	- (예·적금)
H	남	45	44	7년	3인 가구 (아내(사망), 딸)	사별	O (1명)	도시 (서울 성북구)	O	200만 원~ 300만 원
I	남	51	49	3년	2인 가구 (딸)	이혼	O (1명)	도시 (경기 성남시)	O	200만 원~ 300만 원
J	남	51	50	20년	2인 가구 (전 배우자)	이혼	X	도시 (서울 용산구)	O	100만 원 미만
K	남	53	52	28년	4인 가구 (부모님, 누나)	미혼(비혼)	X	도시 (경기 안양시)	O	400만 원 이상
L	남	62	60	30년	2인 가구 (어머니)	미혼(비혼)	X	농촌 (충남 부여군)	O	200만 원~ 300만 원

주: 세는 나이는 출생연도부터 1세로 계산한 나이이며, 만 나이는 인터뷰 당일 기준임.
자료: 연구진 작성

제2절 중장년 1인 가구의 형성 및 적응 과정

1. 중장년 1인 가구의 형성

중장년 1인 가구의 형성 배경과 과정은 개인이 겪어온 삶에 따라 다르지만,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결혼 경험의 여부와 자녀의 유무에 따라 1인 가구 형성 양상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인터뷰에 참여한 중장년 1인 가구 12명 중 미혼인 참여자는 6명으로, 이들은 청년기(20대 중반~30대 중반)에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여 현재까지 1인 가구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이 처음 1인 가구를 형성한 이유는 학업 또는 직장 때문이거나 혼자만의 삶을 원해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면서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의 생활을 시작한 사례(참여자 L)도 있었다. 미혼 참여자들이 청년기에 최초로 1인 가구를 형성한 이유는 각기 달랐지만, 이들이 혼자의 삶을 유지하여 현재 중장년 1인 가구로 생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청년기부터 현재까지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고, 부모님이나 지인과 함께 살기보다 혼자만의 생활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미혼 참여자 중 결혼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참여자는 없었으며, 사업이나 타지 근무 등으로 결혼 시기를 놓친 후 지금까지 생활해 왔거나, 결혼할 만큼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 살게 된 건 직장이 너무 멀어서였고요. (중략) 1시간 반이 걸리고 왔다갔다 왕복인데 체력적 소모가 어마어마하고 그때는 일을 한참 할 때라서 시간적 소모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근도 많기 때문에. (중략) 집에서 잠만 자고 비효율적이고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게 됐어요. (중략) (참여자 B, 42세, 여성)

>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렇게까지 막 애써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원래 없었어요. 옛날부터. (중략) 있으면, 잘 맞으면 하는데 없어서 안 하게 된 거죠. 완전 100% 비혼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도 뭐한데 나이에 맞춰서 가고 싶지는 않은 게 항상 있어요. (참여자 B, 42세, 여성)

> 대학 졸업하고부터는 그냥 혼자 살았기 때문에. 대학 졸업 때까지는 부모님 그늘 아래 있었던 거고요. (중략) (결혼 생각은) 있었는데요. 사업하는 게 있어서 때를 놓쳤어요. (그 이후로) 없어졌고 혼자 사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고착화된 거죠. (참여자 K, 53세, 남성)

이와 달리,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했다가 이혼 또는 사별을 경험한 중장년의 경우 1인 가구를 형성하기까지의 과정과 이유가 한층 복잡했다. 결혼 경험이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는 첫째, 자녀의 유무, 둘째, 가족 해체의 원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거쳐 1인 가구로 전환되었다. 인터뷰 참여자 중 이혼한 참여자와 사별한 참여자는 각각 3명씩이었는데, 사별한 참여자는 모두 자녀가 있었고, 이혼한 참여자 중 1명은 자녀가 있고 2명은 자녀가 없었다.

이혼한 참여자 중 자녀가 없는 참여자 C와 참여자 J는 30대 초반에 이혼한 후 각각 10년, 20년 동안 1인 가구 생활을 유지해왔다. 이들이 현재 중장년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의 생활이 아닌 혼자만의 생활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참여자 J는 1인 가구로 생활하게 된 주된 이유에 관한 사전 설문에서 본인의 이혼 때문이 아니라 '혼자 살고 싶어서'를 이유로 꼽았다. 또한, 참여자 C는 원가족과 단절한 지 9~10년이 되었고, 참여자 J는 원가족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는데, 현재 전 배우자와도 교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이 형성한 1인 가구는 가족과는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의미하였다.

배우자랑 같이 살았던 기간은 만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엄마랑 위로 언니가 둘이 있거든요. 연락을 안 한 지 지금 한 10년 됐어요. 2014년이 마지막으로 봤던 시기 같아요. 그 이후로 관계 단절 상태에요. (참여자 C, 42세, 여성)

한편, 이혼한 참여자 중 자녀가 있는 참여자 I의 경우, 전 배우자의 외도와 가출로 인해 이혼한 후 많은 가구형태를 거쳤다. 어머니와 자녀와의 동거, 누나의 가족과 자녀와의 동거, 자녀와 떨어져 혼자 생활, 자녀와의 동거를 거쳐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서 다시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집사람이 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어요. 한 5년 정도 있다가 법원 판결 받았죠. 이혼 판결. (중략) 이혼 이후에 약 3년은 어머니하고 아이랑 같이 세 명이서 살다가 제가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직장 근무 때문에. (중략)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아이의) 고모 집으로 갔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안 좋은 일도 몇 번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제가 저 혼자 살면서 아이가 시설에서 나오면서 제가 책임지자 해서 중2 때부터 고3까지 제가 키웠죠. 혼자서. 그 뒤로 이제 성인 돼서 직장 잡고 독립을 했고. (참여자 I, 51세, 남성)

사별을 경험한 참여자의 1인 가구 형성 배경을 살펴보면, 참여자 E는 약 6년 전 배우자가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참여자 F는 약 30년 전 배우자를 사고로 잃었으며, 참여자 H는 약 7년 전 배우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였다. 참여자 F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자녀들과 생활하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후 혼자 생활하였고, 이후 부모님을 모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인 가구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즉, 참여자 F가 1인 가구로 생활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부모의 사망이었지만, 배우자의 이른 사망과 성인 자녀의 독립이 선행되어 있었다.

참여자 E와 참여자 H는 배우자의 사망 후 경제난을 겪게 되었으며 생계에 전념하기 위해 자녀의 양육을 시어머니, 장모님에게 맡기고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있어 1인 가구의 형성은 자유로움을 위한 선택이 아닌 현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에 가까웠다.

> 와이프가 쉽게 얘기하면 자살을 했죠. (중략) 저는 일을 하느라. 제가 투잡을 하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내아이면 제가 양육을 하겠는데 딸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아이 의견도 중요하고 해서 친할머니랑 같이 살래? 했더니 자기는 외할머니가 편하다고 해서 아이는 현재 장모님이 양육하고 있고 양육비를 제가 매달 보내주고 있고요. (참여자 H, 45세, 남성)

〈표 4-5〉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형성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명)	참여자
혼자 살고 싶어서	25.0 (3)	A, D, J
2.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취업) 때문에	25.0 (3)	B, G, K
3. 배우자와의 사별	16.7 (2)	E, H
4. 본인의 이혼	16.7 (2)	C, I
5.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	16.7 (2)	F, L
계	100.0 (12)	-

자료: 연구진 작성

2. 중장년 1인 가구의 삶의 변화 및 적응 과정

가. 신체·심리적 건강

1) 신체 건강

인터뷰 참여자 중 절반은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전환된 직후, 직전에 비해 신체 건강상태가 나빠졌거나 신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표 4-6〉 참조). 이들이 1인 가구로 전환된 직후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혼자 생활하다 보니 나빠진 생활 습관을 주체하기 어려웠다는 사례(참여자 A)도 있었고, 배우자의 극단적 선택 이후 혼자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음주를 하고 흡연량도 늘어나 건강이 나빠진 사례(참여자 H) 등이 있었다.

>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식사나 생활 습관이 그래도 좀. (중략) 잔소리라도 들으면 어느 정도 나아질 텐데, 혼자 있으니까 한 번 생활습관이 나빠지면 약간 주체가... 안 좋아질 때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마음먹지 않으면. 수면 시간도 그렇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여자 A, 41세, 여성)

1인 가구 생활 초반에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은 참여자 6명 중 4명은 생활 초반과 최근을 비교할 때 최근의 신체 건강상태나 건강관리 수준이 나아졌다고 하여 긍정적 적응 양상을 보였다. 자신만의 생활 습관을 찾게 되면서 건강관리 수준이 오히려 전보다 나아지기도 했고(참여자 A), 힘들었던 과거를 정리하고 적응하면서 다시 건강을 챙기게 되었으며(참여자 H), 1인 가구로 생활하던 중 퇴사를 하면서 퇴사 이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참여자 B, G).

> 회사 다닐 때는 집에 오면 자기 바빴거든요. 눈 뜨면 출근하고 (집에) 오면 자고. 술도 되게 많이 마셔서 체중도 많이 불기도 하고. 쉬면서 조금씩 운동을 하기도 하고 담배는 지금은 아예 3년 정도 안 피고. 술은 거의 안 마시거든요. 술 안 마시면 야식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고. (중략)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괜찮지 않나. (참여자 G, 42세, 남성)

반면, 참여자 F와 참여자 I는 1인 가구로 전환된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하여 신체 건강상태와 건강관리 수준이 나빠졌다고 이야기하였다(〔그림 4-2〕 참조). 이들은 1인 가구로 전환되었을 당시 연령대가 각각 50대 후반과 40대 후반으로, 주로 30대에 1인 가구를 형성한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1인 가구 생활을 늦게 시작한 특성이 있었다. 참여자 F는 현재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가족들 중 고혈압, 뇌경색, 암 환자가 있어 건강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참여자 I는 이혼 후 과도한 음주와 과로가 누적되면서 40대 중반에 신장 투석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를 1인 가구 진입 연령대에 따른 차이로 해석하기에는 40대 후반에 1인 가구 생활을 시작하였고, 신체 건강상태와 건강관리 수준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한 사례(참여자 E)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나, 중장년층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체 건강에 있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생활 습관의 변화에 적응하기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몸이 아무래도 덜 따라주니까 크게 어디 뭐하지는 않지만. 잔병 있으니까. (중략) 고혈압 약도 먹고 엊그제 서울 가서 검사도 받고. 조금씩 조금씩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중략) (건강관리) 잘 못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힘에 부치죠. (참여자 F, 61세, 여성)

한편, 인터뷰 참여자 중 나머지 5명은 1인 가구 전환 직전과 직후, 직후와 최근을 비교할 때 신체 건강상의 변화를 크게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노화에 따른 신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으나, 적응하기 어렵거나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4-6〉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신체 건강 변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나빠졌다	나빠졌다	별 차이 없다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계
건강 상태	1인 가구 직전 vs 직후	0.0 (0)	33.3 (4)	50.0 (6)	8.3 (1)	8.3 (1)	100.0 (12)
	1인 가구 직후 vs 최근	0.0 (0)	16.7 (2)	75.0 (9)	8.3 (1)	0.0 (0)	100.0 (12)
건강 관리	1인 가구 직전 vs 직후	8.3 (1)	41.7 (5)	33.3 (4)	16.7 (2)	0.0 (0)	100.0 (12)
	1인 가구 직후 vs 최근	0.0 (0)	25.0 (3)	33.3 (4)	33.3 (4)	8.3 (1)	100.0 (12)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2]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신체 건강 변화(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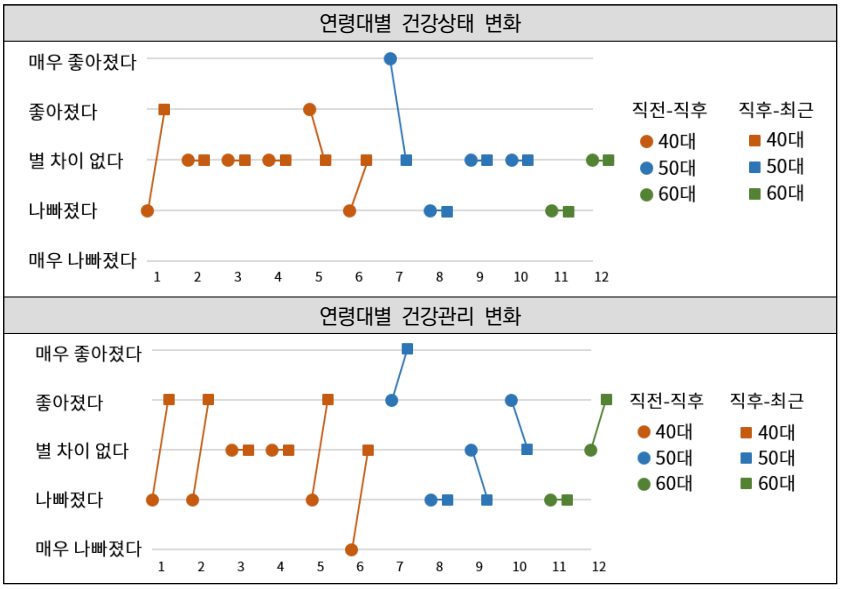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2) 심리적 건강

심리적 건강의 경우, 사전 설문에서 참여자 중 3명은 1인 가구 전환 직후 정서적 상태가 나빠졌다고 하였고, 6명은 전환 직후에 정서적 상태가 더 좋아졌으며 최근에는 비슷하거나 더 나아졌다고 이야기하였으며, 3명은 전환 직후나 최근에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표 4-7〉, 〔그림 4-3〕 참조). 1인 가구 전환 직후 정서적 상태의 악화를 경험한 참여자들(E, F, H)은 각각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사망, 배우자의 극단적 선택 이후로 1인 가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1인 가구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우울감, 절망감, 애도 등 여러 감정을 복합적으로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E는 1인 가구 생활을 시작한 6년 전에 비해 최근 정서적 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는데, 참여자 F는 1인 가구 생활을 시작한 3년 전과 최근을 비교할 때 정서적 상태가 매우 나빠졌다고 하였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직 보내지 못해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참여자 F는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이 약 3년으로 전체 참여자 중 기간이 가장 짧았는데, 가족원의 상실로 인해 1인 가구가 된 경우 혼자 지내면서 부정적인 감정과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가족의 해체에 따라 1인 가구를 형성할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특성이 있고, 특히 초기에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적 접근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엄마를 못 보내고 있으니까. (중략) 익숙해지지 않아요. 자꾸만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밥 안 차린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 (중략) 그래도 있었으면 좋죠. 지금도. 저는 오줌똥 싸도 더럽지 않아요. 그런 일도 해 봤고. 지금도 오줌 싸고 똥 싸고 해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지.
(참여자 F, 61세, 여성)

〈표 4-7〉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정서적 상태 변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나빠졌다	나빠졌다	별 차이 없다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계
1인 가구 직전 vs 직후	0.0 (0)	25.0 (3)	41.7 (5)	33.3 (4)	0.0 (0)	100.0 (12)
1인 가구 직후 vs 최근	8.3 (1)	16.7 (2)	33.3 (4)	41.7 (5)	0.0 (0)	100.0 (12)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3]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정서적 상태 변화(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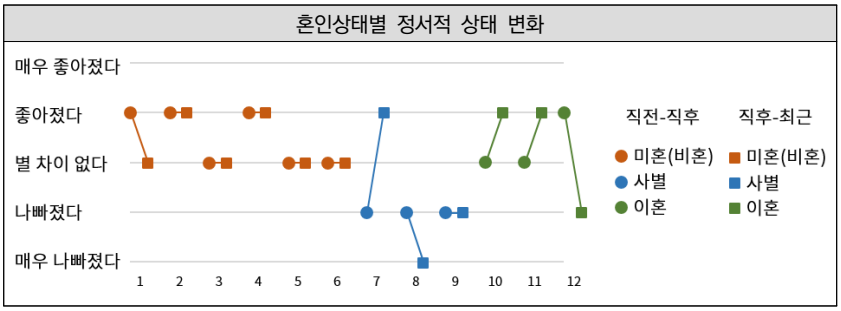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주거 및 경제상태

1) 주거 환경 및 주거 안정성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1인 가구를 형성함과 동시에 기존의 주거지에서 나와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생활을 시작하였다. 1인 가구 전환 후 주거 환경 변화에 대한 사전 설문 결과, 전환 직후 주거 환경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인터뷰 참여자는 총 5명이었다(〈표 4-8〉 참조). 참여자 중 3명은 전환 직후에 주거 환경이 좋아졌고 최근에도 비슷하거나 더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4명은 전환 직후부터 최근까지 주거 환경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4] 참조).

먼저, 1인 가구 전환 직후 주거 환경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참여자 5명 중 3명은 이후 더 나은 주거지로 이사를 하거나(참여자 C, 참여자 E), 자가를 마련하면서(참여자 B) 그때와 비교하여 최근에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참여자 C는 현재는 나아졌지만, 최근 1년 사이 이사를 두 번 하게 되면서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하였다. 참여자 C는 반려동물이 있어 이사할 집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어렵게 새로 구한 집에서 임대인과 문제를 겪게 되어 다시 이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 심화되어 경제활동도 축소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이사에 제약이 많거든요. 작년까지 살던 집에서 월세 계약을 이제 전세로 돌릴 테니까 이사를 나가 달라고 해서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집을 구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집주인 분이 굉장히 갑질, 폭언, 세입자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심해서. 힘든 시기를 몇 주 보내다가 거기에서 더 못 살게 돼서 이사를 한 번 더 했거든요. 짧은 시기에 이사를 연 달아 두 번을 한 거죠. (중략) 다행히 지금 사는 데는 별문제가 없어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고, 그때 집중적으로 좀 많이. (참여자 C, 42세, 여성)

마찬가지로, 참여자 B는 독립 후 처음 거주했던 집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특히 안전에 취약하여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참여자 B는 4년간 월세 형태로 거주하다가 자가를 마련하였는데, 자가 마련과 동시에 삶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 처음 나와서 월세를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집의 컨디션이나 상태가 불안하고. 여자들은 안전한 게 중요한데 그게 조금 불안정하더라고요. (중략) 주거안정성이 제일 불편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해결이 됐어요, 집을 사니까. 집을 사면서 안정성이 확 확보가 되니까. (중략) 돈이, 막 부동산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사를 안 가도 되고. (참여자 B, 42세, 여성)

반면, 참여자 A와 H는 1인 가구 생활 초반에 주거 환경이 나빠진 후 비슷한 주거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청년의 경우 주거 혜택이 많은 데 반해 중장년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주거 혜택은 없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참여자 A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지난 5년간 거주하고 있었으나, 올해 만 40세가 되어 이사를 계획 중이었고 3년 내 자가를 마련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 아파트 살다가 오피스텔로 옮겼으니까 주거 환경은 좀 불편한 점은 있었고. 평수가 작으니까. (중략) 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LH 전세대출. (연령) 끝났죠. 아마 내년까지일 거예요. 당장 내년에 이사를 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 것도 좀 어렵고. (중략) 정부에서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지금 청년 규제를 풀어주기는 했는데,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런 건 좀 그나마 금리가 낮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41세, 여성)

> 주거 부분만 해결이 돼도. 왜 청년 정책들 주거 정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중장년층은 안 하는지 항상 그게 저는 불만이었어요. (참여자 H, 45세, 남성)

〈표 4-8〉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주거 환경 변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나빠졌다	나빠졌다	별 차이 없다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계
1인 가구 직전 vs 직후	16.7 (2)	25.0 (3)	33.3 (4)	16.7 (2)	8.3 (1)	100.0 (12)
1인 가구 직후 vs 최근	0.0 (0)	0.0 (0)	58.3 (7)	25.0 (3)	16.7 (2)	100.0 (12)

자료: 연구진 작성

한편, 주거 환경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응답한 참여자 4명은 현재 비교적 주거에 대한 불안이 낮은 상태였는데, 참여자 F와 K는 보유한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고, 참여자 G는 어머니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참여자 J는 동일한 주택에서 월세로 20년째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주기간 동안 보증금이 1회만 인상되어 현재 주거에 대한 부담은 느끼지 않는 상태였다.

〔그림 4-4〕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주거 환경 변화(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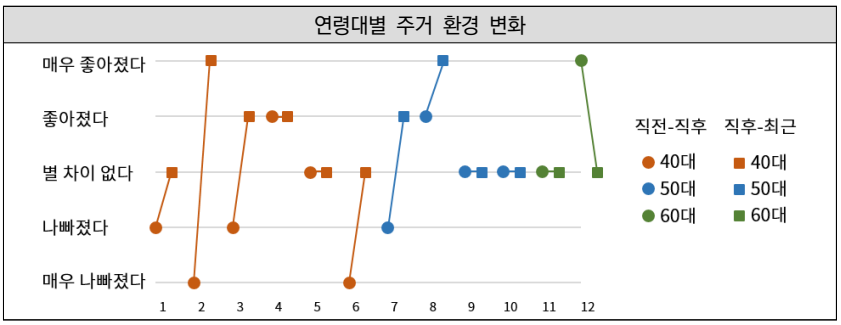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2) 경제상태

인터뷰 참여자들은 1인 가구 전환 후 경제상태의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이들이 경험한 경제상태의 변화는 1인 가구로서의 삶의 영향보다는 개인의 채무 관계, 코로나19 이후 회사 경영난에 따른 퇴사, 번아웃에 따른 퇴사,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불안정한 수입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였다.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직전과 직후, 직후와 최근을 비교할 때 경제상태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절반 이상이었는데(〈표 4-9〉 참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참여자 3명 중 2명(참여자 F, G)은 1인 가구 전환 직후에 비해 최근에 경제상태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5〕 참조).

참여자 F는 이른 사별 후 자녀들과 살다가 자녀들이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던 중 부모님이 모두 치매를 앓게 되어 부모님을 모시다가 다시 1인

가구가 된 경우인데, 1인 가구가 되기 전부터 수입 없이 자녀나 형제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기 때문에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보험 보험료 등 고정비를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었고, 농촌에 거주하다 보니 교통이 불편하여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였다.

> 제가 있는 걸로 쓰고 동생들이나 딸들한테 용돈 받아서 쓰고 그러죠. (중략) 심란하지. 보험 들었던 걸 천만 원 대출받아서 거기(보험)에 넣는 거지. 만기는 돼야 되니까. (중략) 버는 게 없으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써야 되니까,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 들죠. (중략) (경제활동)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이게 시골은 길이 그렇잖아. 날 좋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겨울 같은 때는 못 나가요.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차도 갈 수도 없고 버스도 안 오니까. (참여자 F, 61세, 여성)

참여자 G는 번아웃으로 인해 1년 전에 퇴사하고 현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1인 가구 전환 직후에는 재직하면서 연봉이 상승하여 경제 상태가 나아졌으나, 퇴사 후에는 예·적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 상태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 G는 수입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제 상태가 나빠진 것은 맞지만, 지출이 많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고 하였다. 경제활동을 중단한 지 1년이 지난 참여자 B의 경우, 경제적인 준비를 해둔 상태에서 퇴사했기 때문에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안감은 없다고 하였다.

> 저는 (불안함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처음 그만둘 때도 최소 1년은 쉬어야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쉬었고. (중략)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어요. 제가 소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거의 10년 가까이는 지금 생활 수준대로만 하면 딱히 문제가 없을 정도. (참여자 G, 42세, 남성)

〈표 4-9〉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경제상태(소득수준) 변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나빠졌다	나빠졌다	별 차이 없다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계
1인 가구 직전 vs 직후	8.3 (1)	8.3 (1)	58.3 (7)	16.7 (2)	8.3 (1)	100.0 (12)
1인 가구 직후 vs 최근	16.7 (2)	16.7 (2)	58.3 (7)	8.3 (1)	0.0 (0)	100.0 (12)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5〕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경제상태(소득수준) 변화(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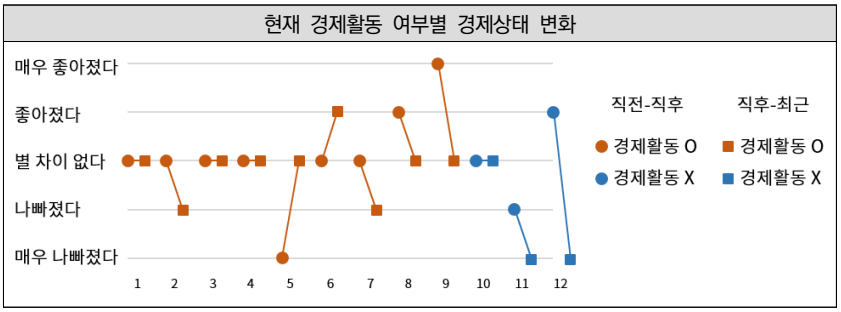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다.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활동

1) 가족관계

사전 설문에서 인터뷰 참여자 대다수는 1인 가구로 전환된 직후부터 최근까지 가족관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표 4-10〉, 〔그림 4-6〕 참조). 주목할 점은 사전 설문에서 가족관계의 상태가 아닌 개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했는데, 원가족과 단절한 지 9~10년이 지난 참여자 C와 원가족과의 단절을 결심한 참여자 J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참여자 C는 원가족과 단절한 기간과 혼자 생활한 기간이 거의 비슷했는데, 단절 전 갈등이 매우 많았고 정서적으로 고통받아 왔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원가족과 연

결되어 있던 시기를 고통의 세월이라고 표현하였다. 모든 가족관계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중장년 1인 가구가 원가족과 단절한 상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개인의 비공식적 지지체계 중 한 축이 부재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 제가 원가족하고 진짜 갈등이 많았거든요. 엄마하고 언니들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정서적인 고통에서 벗어난 어떤 안도감이 제일 컸죠. (중략) 그전까지도 뭔가 관계를 끊으려는 시도는 제가 계속 했었어요. (참여자 C, 42세, 여성)

그 외 가족관계에서 만족도의 변화를 경험한 참여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참여자 E는 1인 가구 전환 직후와 최근 모두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참여자 H는 전환 직후에 만족도가 낮아졌고 최근에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미성년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참여자 E는 자녀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참여자 H는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한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 큰아이가 교환학생 갔다가 정착하게 됐거든요. 북유럽에서는 학비가 무료인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그래서 첫 아이가 교환학생 갔다가 그걸 알고 둘째, 셋째까지 불러들인 거죠. (중략) 둘째하고 셋째는 지금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중략) 셋째한테는 미안하죠. 어릴 때 보냈으니까. 중학교 과정만 마치고 보냈거든요. (중략) 사실은 (셋째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떠본 거예요. 솔직하게 아시다시피 시간 강사 월급은 몇 푼 안 되고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집을 팔았잖아요. 그 대가는 제가 치러야 하는 거니까. (참여자 E, 55세, 여성)

한편, 참여자 B의 경우 사전 설문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인터뷰에서는 독립한 후 부모님과의 사이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저희는 오히려 떨어져서 더 챙기고 이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옛날에는 관심도 없던데 왜 안 오냐고 물어보시고 (웃음) 오히려 관계가 확실히 좋다는 생각을. (참여자 B, 42세, 여성)

〈표 4-10〉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별 차이 없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계
1인 가구 직전 vs 직후	0.0 (0)	16.7 (2)	66.7 (8)	16.7 (2)	0.0 (0)	100.0 (12)
1인 가구 직후 vs 최근	0.0 (0)	8.3 (1)	75.0 (9)	16.7 (2)	0.0 (0)	100.0 (12)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6〕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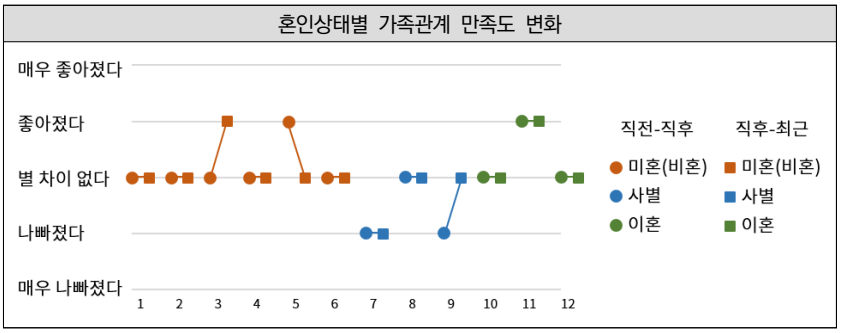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2) 사회적 관계 및 사회활동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사회적 관계와 사회활동 만족도에 있어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참여자는 3명이었고, 그 외 참여자들은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거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표 4-11〉, 〔그림 4-7〕 참조). 참여자 J는 1인 가구 생활을 시작한 30대 초반에는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변화가 없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J는 가정을 꾸린 친구들이 늘어나다 보니 예전보다 교류가 줄어들었지만 나이가 들면 대인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대인관계의 축소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 예전보다는 교류가 줄은 것 같아요. (1인 가구인 친구가) 있기도 한데 아무래도 가족을 꾸리는 사람이 더 많죠. 다들 애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별로 자꾸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중략) 원래 늙으면 늙을수록 대인관계는 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려니 하고 있지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뭐 아쉽다고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먼저 나서서 연락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참여자 J, 51세, 남성)

대체로 사회적 관계와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변화하는 방향이 일치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는데, 참여자 E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1인 가구 전환 이후 최근까지 계속 낮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사회활동 만족도는 초반에는 낮아졌으나 최근에는 높아졌다고 하였다. 인터뷰에서 참여자 E는 주변 지인들에게 본인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였고, 친구들과 만나면 배우자나 자녀, 경제 중심으로 흘러가는 대화 주제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E는 최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취미활동과 교육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새로운 활동을 배우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었다.

> (친구에게) 완전하게 제 속마음을 털어 놓지는 않아요.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중략) 친구들 만나면 남편 이야기. 남편 승진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아이들 승진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그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참여자 E, 55세, 여성)

> (지금 혼자) 사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조금 뭔가를 열심히 해 보려고 해요. 새로운 것들을. 지금은 포토에세이라고 해서 일상생활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다든가.

(중략) AI. 열심히 해요. 시간 날 때마다 그거 배우고 있어요. (중략) 지금 내 상황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주저앉을 것 같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정말 없는 것. 암담한 거죠. (참여자 E, 55세, 여성)

〈표 4-11〉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사회적 관계 및 사회활동 만족도 변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별 차이 없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인 가구 직전 vs 직후	0.0 (0)	8.3 (1)	66.7 (8)	25.0 (3)	0.0 (0)	100.0 (12)
	1인 가구 직후 vs 최근	0.0 (0)	25.0 (3)	41.7 (5)	33.3 (4)	0.0 (0)	100.0 (12)
사회활동 만족도	1인 가구 직전 vs 직후	0.0 (0)	8.3 (1)	58.3 (7)	25.0 (3)	8.3 (1)	100.0 (12)
	1인 가구 직후 vs 최근	0.0 (0)	0.0 (0)	66.7 (8)	16.7 (2)	16.7 (2)	100.0 (12)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7〕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사회적 관계 및 사회활동 만족도 변화(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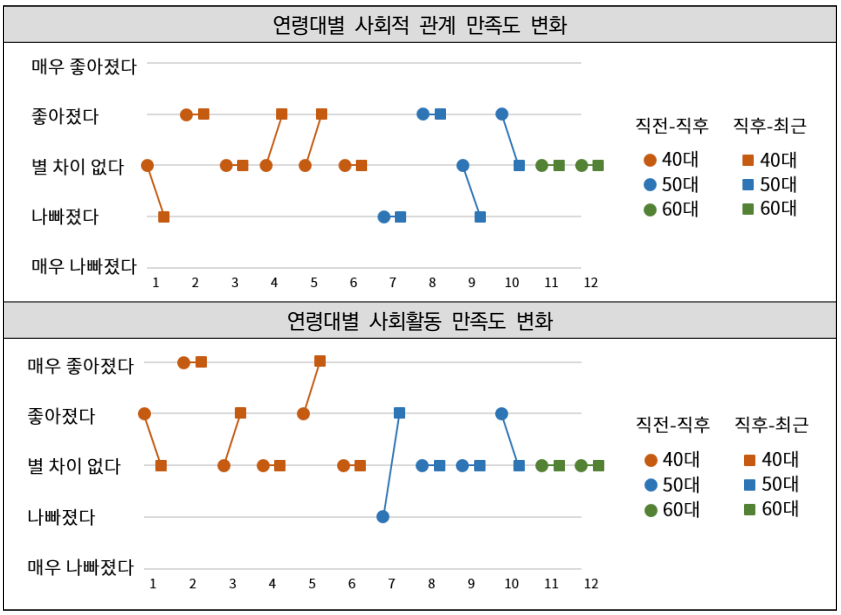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라. 안전

1인 가구 전환 후 안전과 관련된 변화에는 성별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전 설문 결과, 남성 참여자 6명은 모두 1인 가구로 전환한 후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변화를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여성 참여자 중 2명은 1인 가구 전환 직후 안전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였고, 1명은 안전이 더 나아졌다고 하였으며, 3명은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4-12〉, 〔그림 4-8〕 참조). 설문에서 안전은 범죄 노출·위험 정도가 낮고 사고·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제시했는데, 여성 참여자의 응답은 다양하게 갈린 반면, 남성 참여자는 모두 안전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응답한 결과는 여성 1인 가구에게는 안전이 생활 속에서 의식해야 하는 사항이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인 반면, 남성 1인 가구에게는 민감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뷰에서도 여성 참여자들은 이웃과 시선이 마주칠 때의 불안한 마음이나 낯선 사람이 집에 방문할 때의 무서움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남성 참여자들은 범죄 노출이나 주택 보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그쪽(맞은편) 건물에서 사시는 분들이 가끔 옥상에 올라오잖아요. 집에 있는 저하고 그쪽이랑 눈이 마주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피해 버릴 때가 있어요. 마주치면 해코지할 건 아닌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중략) 동네에서 어떤 남자분 같은데 자가용에서 계속 빵빵거리는 것. 계속 그 소리를 울리는 거에요. (중략) 한마디로 말하면 치안이 제일 문제죠. 괜히 그렇잖아요. 괜히 나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참여자 D, 47세, 여성)

> (CCTV를)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너무 젊으니까 뭐를 훔쳐갈까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위가 달아 놓은 거예요. 혹시 누구라도 나 혼자 있을 때 뛰어 들어오면 위

험하다고. (중략) 문 두드리고 그런 것도 (CCTV) 쳐다보고 열어줄 사람은 열어주고. 시골이라도 쓸데없는 사람 많이 와요. 막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무섭지. (참여자 F, 61세, 여성)

〈표 4-12〉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안전에 관한 변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나빠졌다	나빠졌다	별 차이 없다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계
1인 가구 직전 vs 직후	8.3 (1)	8.3 (1)	75.0 (9)	8.3 (1)	0.0 (0)	100.0 (12)
1인 가구 직후 vs 최근	0.0 (0)	8.3 (1)	83.3 (10)	8.3 (1)	0.0 (0)	100.0 (12)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8〕 사전 설문 결과: 1인 가구 전환 후 안전에 관한 변화(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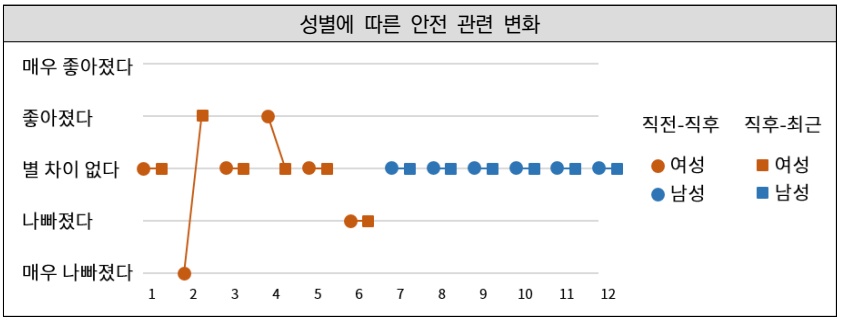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제3절 중장년 1인 가구의 현재 삶의 모습과 욕구

1. 중장년 1인 가구의 현재 삶의 모습

가. 일상생활

인터뷰에 참여한 중장년 1인 가구는 혼자 생활한 기간이 최소 3년부터 최대 30년까지로, 앞에서 제시한 삶의 변화와 적응 과정을 거쳐 현재 자신만의 생활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참여자들은 주로 본인의 근무 형태에 맞추어 생활하고 있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참여자들은 이들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예컨대 회사원인 참여자는 주중 저녁과 주말에 여가생활을 하고, 단시간근로자인 참여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휴무일인 월요일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였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참여자는 농번기에는 12시간 가까이 밖에서 활동하고,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경제활동 미참여자 중 2명은 최근까지 경제활동을 하다가 현재 재정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퇴사 후에도 직장인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참여자도 있었고, 최근 수면이 불규칙해져 생활 자체가 불규칙해진 사례도 있었다.

> 일단은 주중은 출근하고, 퇴근하고는 운동하고, 야근이 많아서 야근할 때는 야근하고, 그리고 보통 주말에는 토일 있으면 토요일 오전에는 제가 못한 일. 병원이나 그런 일 하고 볼일 보고 그리고 토요일에 친구 만나고, 일요일에는 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본집에 가거나. (참여자 A, 41세, 여성)

인터뷰 참여자들은 청소, 빨래, 설거지 같은 가사 활동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공통되게 이야기하였다. 반면, 식생활에서는 매우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는데(〈표 4-13〉, 〔그림 4-9〕 참조), 사전 설문의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종합할 때 크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장을 봐서 음식을 차려 먹는 유형, 둘째, 외식을 하거나 간단히 조리하여 먹는 유형, 셋째, 외식,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 위주로 식사하는 유형, 넷째, 식욕 저하로 하루에 한 끼를 먹거나 대충 식사를 해결하는 유형, 다섯째, 식비 절약을 위해 잘 먹지 않거나 간편식을 섭취하는 유형이 확인되었다. 외식,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식욕 저하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하는 생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이들의 현재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식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혼자 사는 사람이 막 챙겨 먹기는 쉽지 않거든요. 막상 집에 가서 할 게 없으니까 회사에서 오래 야근도 하고 있다가 저녁까지 회사에서 먹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다면 인스턴트나 배달음식이나. 아니면 간혹가다가 해 먹기도 하고 그러죠. (참여자 H, 45세, 남성)

> 물 말아서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먹고 싶으면 김치하고 밥하고. 엄마 돌아가신 뒤로 여기(식탁)에서 안 먹어요. 그냥 밥 하나 김치 하나. (참여자 F, 61세, 여성)

> 지금 (지출을) 많이 줄였어요. 거의 안 먹어요. (중략) 힘들죠 많이. 요즘은 제일 많이 먹는 게 김밥. 짜파게티 이런 거. 그리고 감사하게도 밥을 사 주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많이 얻어먹고 다녀요. (웃음) (참여자 D, 47세, 여성)

〈표 4-13〉 사전 설문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건강추구	1. 건강과 영양가를 고려하여 식품을 구매한다	16.7 (2)	8.3 (1)	58.3 (7)	16.7 (2)	0.0 (0)	100.0 (12)
	2.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한 식단을 하고 있다	25.0 (3)	25.0 (3)	25.0 (3)	25.0 (3)	0.0 (0)	100.0 (12)
	3. 건강식품, 유기농식품이 비싸더라도 구매한다	33.3 (4)	25.0 (3)	3.3 (4)	8.3 (1)	0.0 (0)	100.0 (12)
편의추구	4.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 편이다	25.0 (3)	25.0 (3)	8.3 (1)	33.3 (4)	8.3 (1)	100.0 (12)
	5. 요리하는 것이 귀찮아서 자주 외식 혹은 배달음식을 먹는다	41.7 (5)	33.3 (4)	8.3 (1)	16.7 (2)	0.0 (0)	100.0 (12)
	6. 식사 준비나 식사에 드는 시간을 가능한 아끼는 편이다	25.0 (3)	33.3 (4)	0.0 (0)	25.0 (3)	16.7 (2)	100.0 (12)
경제추구	7. 식품 구매 시 할인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이다	8.3 (1)	8.3 (1)	25.0 (3)	25.0 (3)	33.3 (4)	100.0 (12)
	8. 식품 구매 시 항상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다	8.3 (1)	0.0 (0)	16.7 (2)	41.7 (5)	33.3 (4)	100.0 (12)
	9. 비슷한 제품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다	8.3 (1)	0.0 (0)	8.3 (1)	66.7 (8)	16.7 (2)	100.0 (12)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9] 사전 설문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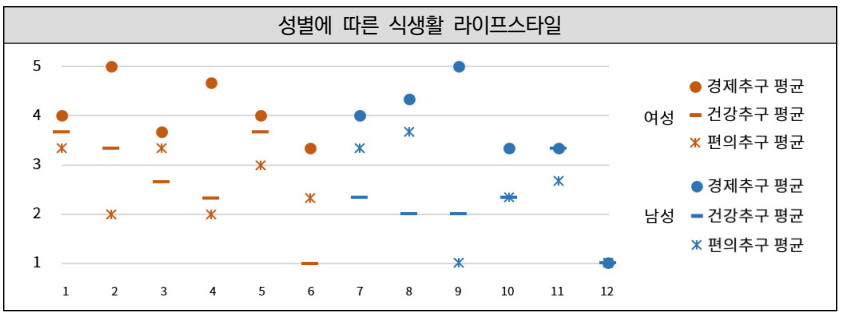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신체·심리적 건강

중장년 1인 가구의 현재 신체·심리적 건강과 관련해서는 신체 건강보다도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 불안감 관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절주, 절연, 운동과 같은 신체 건강을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었으나, 정신건강을 위한 관리는 해법을 찾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 일단은 주기적인 생활을 해요. 제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먹고. (중략)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도 적절하게 도를 지나치지 않을 정도 적당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중략)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부분들은 저도 조금 고민이에요. (중략) 아직까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교화시키면서 나름대로 안정감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을 찾지는 못했어요. (참여자 K, 53세, 남성)

또한, 참여자 중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식욕 저하와 수면 장애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참여자 C)도 있었고, 의도치 않게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참여자 F)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장년 1인 가구가 경험하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와 개입이 필요하다.

> 우울증 제일 큰 증상이 수면 장애랑 식욕 저하거든요. 한 번 떨어지니까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중략) 시기별로 또 경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고립감을 아주 심하게 느낄 때도 있고, 좀 덜 느낄 때도 있고,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C, 42세, 여성)

> (소외감을) 자주 느끼죠. 후회가 막심하고 싫지. 혼자됐으니까 더 싫지. 여기 와서. 시골이니까 여기는. (참여자 F, 61세, 여성)

다. 주거 및 경제활동

1) 주거

인터뷰 참여자들의 현재 주거형태는 다양하였는데, 주거형태별로 다세대주택(빌라) 4명, 단독주택 거주자 2명, 오피스텔 거주자 2명, 아파트 거주자 1명, 임대아파트 거주자 1명, 다가구주택 거주자 1명, 원룸 거주자 1명으로 나타났다(〈표 4-14〉 참조). 또한, 주택의 점유형태는 월세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가 3명, 자가인 경우는 4명에 해당하였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이었으며, 인터뷰 참여자 중 50대 중후반과 60대 참여자들의 점유형태는 전세 또는 자가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 중 월평균 소득수준이 200만 원 미만인 참여자는 3명이었는데 이들은 각각 원룸, 다세대주택(빌라), 다가구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경제상태와 주거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D는 현재 방 하나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수준이 100만 원 미만으로, 참여자 중 주거와 경제상태의 취약성이 높은 편이었는데, 현재 주거 환경이 쾌적하지 않아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다.

>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 집이 건물 자체가 20년 조금 넘은 집인데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화장실 천장에도. 닦아 내고 또 생기면 또 닦고. (중략) 저는 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곰팡이 때문에. (참여자 D, 47세, 여성)

참여자들은 안정적 주거 마련과 주거비 절감을 위해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을 찾아보았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정책을 찾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현재 청년 관련 주거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

일 때도 지금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본인의 현실에 허탈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현재 정책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부럽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청년, 중장년, 노인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였다.

> LH 같은 거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나이가 안 맞거든요. 마흔이 훨씬 넘어서. (중략) 항상 보면 우리 때에는 지원이 없어. 근데 밑에는 다 지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대, 20대 더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힘들게 자랐거든요. (참여자 D, 47세, 여성)

> 제가 청년일 때에는 청년정책이 없었거든요. (중략) 요즘에는 뭐 청년정책, 노인정책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중략) 어느 누구도 40~50대를 위한 정책을 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40~50대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럼 전 국민 다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중략) 게다가 아시겠지만 40~50대가 쪽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40~50대를 위한 정책을 펴버리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했어요. (참여자 J, 51세, 남성)

〈표 4-14〉 개별인터뷰 참여자의 주거형태 및 점유형태

구분	연령대	거주지역	주거형태	점유형태
A	40대	도시(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전세
B	40대	도시(경기 성남시)	아파트	자가
C	40대	도시(서울 관악구)	원룸	월세
D	40대	도시(경기 안산시)	다세대주택(빌라)	월세
E	50대	도시(경기 부천시)	다세대주택(빌라)	전세
F	60대	농촌(충남 부여군)	단독주택	자가
G	40대	도시(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빌라)	전세(어머니 명의 주택)
H	40대	도시(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빌라)	월세
I	50대	도시(경기 성남시)	임대아파트	월세
J	50대	도시(서울 용산구)	다가구주택	월세
K	50대	도시(경기 안양시)	오피스텔	자가
L	60대	농촌(충남 부여군)	단독주택	자가

자료: 연구진 작성

2)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인터뷰 참여자들의 현재 직업 및 직종과 월평균 소득수준은 〈표 4-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크게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성격의 근로자, 자영업자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정규직 근로자(참여자 A, K 등)를 제외하고는 수입의 변동을 경험하다 보니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참여자 C와 D는 각각 하루에 5시간,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였다. 참여자 C는 정신건강 악화로 자발적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희망한 경우였고, 참여자 D는 현재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규직 일자리를 희망하지만 구직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제적으로) 힘들죠. 카드가 아니면 힘들어요. 저는 정식 되려고 면접 보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졌지만. (중략) 알바를 구하는 건 쉬워요. 이제 정식으로 일하는 그게 힘들죠. 저도 4, 5월 달에 다른 데에 면접 보러 다녔어요. 쉴 때. 근데 다 떨어졌죠. (중략) 지금 제 나이대는 공장밖에 없어요. (참여자 D, 47세, 여성)

고액연봉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혼자 살고 생활하고 하는 만큼. 그리고 생활 패턴이 제가 집안에서 생활하는 게 많고 외식도 많이 하는 상황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의식주에 아주 큰 돈이 들어갈 건 없어요. 커뮤니티도 비용이 많이 드는 커뮤니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같이 하는 친목 위주이기 때문에. (참여자 K, 53세, 남성)

다음으로, 프리랜서 성격의 강사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젊은 강사를 선호하는 업계의 분위기나 코로나19 이후 수강생의 감소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였고, 농업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도 수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일관되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 H는 코로나19 이후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하게 된 후 최근 창업

을 하였고 수입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창업을 원해서 선택했다기보다 중장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창업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주거정책과 마찬가지로, 청년 대상의 취·창업 지원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재취업, 전직 측면에서 취약한 중장년을 위한 지원은 없다는 점에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 ○○ 강사들이 수요가 넘쳐요. 그러니까 ○○에서도 되도록이면 나이 어린 친구들을 고용하고 싶어 해요. (중략) 이래저래 자르는 거예요. 아마 저도 올해까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 E, 55세, 여성)

> 지금 40~50대들이 정리 해고 1순위에요. (중략) 저처럼 해고가 된 사람들은 뭔가 본인의 삶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창업인데. 왜냐면 이 나이에 써 주는 데도 없어요. (중략) 모아 놓은 재산도 없는 사람들은 창업도 못 해요.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히려 청년들은 청년창업지원금이 나오는데 중장년층은 안 나와요. (중략) 청년층은 기회가 다양하죠. 업종 전환도 자유로울 수 있는데 중장년은 내가 했던 일. 그쪽 분야에서 일을 못 한다면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참여자 H, 45세, 남성)

정리하면, 중장년 1인 가구가 인식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1인 가구로서의 어려움보다는 중장년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중장년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추가적인 어려움은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 소득을 공유하고 수입 변동의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다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인 타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 결혼하면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댈 그게 있잖아요. 여자분들 특히나 제 주변에도 거의 경제활동은 30대 후반까지 하고 다... 길게 해 봤자 40대까지 이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중략)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중략) 결혼해서 내가 돈을 안 벌고 쉬면 푹 퍼졌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건 내

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되게 심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참여자 B, 42세, 여성)

불편한 점은 혼자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다 내가 다 모든 걸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지 않으면 잘 못 먹는다는 거. 밥을 먹기는 먹지만 다 먹지는 못 하잖아요. (참여자 D, 47세, 여성)

〈표 4-15〉 개별인터뷰 참여자의 경제활동 및 소득수준

구분	연령대	경제활동 여부	직업/직종	월평균 소득수준
A	40대	O	회사원(사무직)	400만 원 이상
B	40대	X (1년 2개월)	- (이전 직업: 회사원)	- (예·적금)
C	40대	O	콜센터 상담원(단시간근로자)	100만 원~200만 원
D	40대	O	사무보조(단시간근로자, 계약직)	100만 원 미만
E	50대	O	대학 시간강사, 학원강사	300만 원~400만 원
F	60대	X	- (이전 직업: 가족인 요양보호사)	- (용돈, 품삯)
G	40대	X (1년)	- (이전 직업: 회사원)	- (예·적금)
H	40대	O	자영업	200만 원~300만 원
I	50대	O	감정평가/배송·물류 겸업	200만 원~300만 원
J	50대	O	스포츠 강사	100만 원 미만
K	50대	O	고용주/회사원 겸업	400만 원 이상
L	60대	O	농업	200만 원~300만 원

자료: 연구진 작성

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현재 인터뷰 참여자들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참여 양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첫째, 관계 형성과 연관된 활동 참여, 둘째, 독립적인 취미·여가활동 참여, 셋째, 강좌·프로그램 기반의 활동 참여, 넷째, 소극적 활동 또는 활동 미참여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 참여자들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부녀회장, 방범대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참여자 F), 정치 관련 사회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며 생활하고 있었다(참여자 I). 두 번째 유형은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에서 활력을 얻고 있었는데,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글쓰기, 공연 관람, 컴퓨터 게임, 유튜브 시청 등의 취미·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취미·여가·교육에 관한 강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형이었다. 대화형 AI, 유튜브, 디자인 플랫폼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며 현재 참여 중인 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던 반면,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평일 낮 프로그램의 수강생 대부분이 노년층이어서 활동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 그런 협회가 있는데 저처럼 50대 이상 중장년층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 주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GPT하고 유튜브하고 미리캔버스 세 가지 공부하고 있어요. (중략) ○○시를 안 떠나는 이유가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략) 내가 시간만 나면 공짜로. 도서관도 많고 도서관마다 다 특색이 다르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참여자 E, 55세, 여성)

> 낮에 강습을 받으려면 다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습받기가 재미가 없어요. (중략) 저는 낮에 시간이 나고 요일이 내가 강습을 받은 날이고 그러면 막 찾아보고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비슷한 또래 남자들은 그 시간엔 거의 없어요. (참여자 J, 51세, 남성)

마지막 유형은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참여자 L은 농사와 관련된 교육을 수강한 경험은 있지만, 그 외 취미활동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 아무것도 안 해요. 취미 없죠. 농사밖에 없으니까. (중략) 시골 사람들 다 그런데 뭐. (참여자 L, 62세, 남성)

마. 비공식적 지지체계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의 원가족 중 현재 살아있는 가족원과 가족과의 교류 정도를 파악하였으며(〈표 4-16〉 참조), 가족의 역할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친구, 이웃, 지인의 존재 여부와 교류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안전 및 정서적 고립 예방과 관련하여, 비공식적 지지체계가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가족과 비(非)가족의 지지체계로 세분화해볼 때, 중장년 1인 가구의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양상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가족과 비가족 체계가 모두 작동하는 유형, 둘째, 가족 중심의 지지체계, 셋째, 비가족 중심의 지지체계, 넷째, 가족과 비가족 체계가 모두 비활성화된 유형이었다. 사회적 고립감에 관한 사전 설문과 인터뷰 내용을 종합한 결과,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6명이었는데, 이들은 원가족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며 지내고 있으며,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친구, 이웃,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농촌 거주자의 경우 비가족 중에서도 이웃과 수시로 교류하며 지내고 있어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었다는 점에서 도시 거주자와 구분되는 특성이 있었다.

> 핫라인을 구축해 놓고 있죠. (중략)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 모집단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중략) 일정 기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중략) 보통 이틀, 삼 일 넘기지 않습니다. 자주 연락을 합니다. 연락이 안 되면 다들 궁금해하기 때문에. 안부를 묻는 정도의 얘기는 평상시에 늘 하기 때문에 소소한 얘기까지 나오죠. 아침에 나 뭐 했다 이런. (중략) (응급수술은) 직계가족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누나가 오겠죠. (참여자 K, 53세, 남성)

다음으로,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양상이 가족 중심으로 나타난 참여자

들은 3명으로, 이들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지인에게 연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거나(참여자 E), 119와 같은 공적 체계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참여자 H). 참여자 E와 H는 사전 설문 결과 사회적 고립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주변의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대인관계의 깊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어 관계적 측면에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표 4-17〉 참조).

> 119 좋잖아요. 굳이.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남한테 폐를 끼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저는 결혼생활 할 때도 제가 아파도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요. (중략) 혼자 된다고 해서 딱히 달라질 건 없고. (참여자 H, 45세, 남성)

마지막으로, 지지체계가 비가족 중심이었던 사례(참여자 D)와 비공식적 지지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사례(참여자 C, J)를 살펴보면, 참여자 D의 경우 가족이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교류가 많지 않았는데, 근처에 위급 시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지인들이 있었다. 반면, 참여자 C와 J는 위급 시 가족, 친구, 이웃, 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도움을 원치 않았고, 아직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경험이 없어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공적 체계 마련에 있어,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기능이 부족한 1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지금까지도 그런 도움을 딱히 청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한 적이 잘 없는 것 같고. 앞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글쎄 아직은 잘 못 느껴서. 동네 친구가 있기는 한데 (중략) 주거지가 가까운 편이긴 한데 위급 상황에 도움을 청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어서. 그렇다고 그럴 필요성에 의해서 관계를 더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성격은 또 아니에요, 제가. (참여자 C, 42세, 여성)

〈표 4-16〉 개별인터뷰 참여자의 가족구성

구분	연령대	혼인상태	원가족			자녀	비고
			생존 부모	생존 형제자매			
A	40대	미혼(비혼)	어머니	1명	여동생	-	-
B	40대	미혼(비혼)	부모	1명	남동생	-	-
C	40대	이혼	어머니	2명	언니	-	단절
D	40대	미혼(비혼)	어머니	1명	오빠	-	-
E	50대	사별	어머니	5명	언니, 오빠	3명	-
F	60대	사별	-	4명	오빠, 여동생	2명	-
G	40대	미혼(비혼)	부모	1명	남동생	-	-
H	40대	사별	부모	-		1명	-
I	50대	이혼	어머니	2명	누나, 남동생	1명	-
J	50대	이혼	부모	1명	형	-	단절 희망
K	50대	미혼(비혼)	부모	1명	누나	-	-
L	60대	미혼(비혼)	-	3명	형, 남동생	-	-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17〉 사전 설문 결과: 사회적 고립감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1.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0.0 (0)	16.7 (2)	41.7 (5)	41.7 (5)	100.0 (12)
2. 지금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41.7 (5)	58.3 (7)	0.0 (0)	0.0 (0)	100.0 (12)
3. 나는 소외감을 자주 느낀다	16.7 (2)	66.7 (8)	8.3 (1)	8.3 (1)	100.0 (12)
4.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	41.7 (5)	33.3 (4)	25.0 (3)	0.0 (0)	100.0 (12)
5. 나는 내가 필요할 때 어울릴 친구가 있다	0.0 (0)	16.7 (2)	75.0 (9)	8.3 (1)	100.0 (12)
6. 주변의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25.0 (3)	50.0 (6)	25.0 (3)	0.0 (0)	100.0 (12)
7. 나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다	25.0 (3)	33.3 (4)	41.7 (5)	0.0 (0)	100.0 (12)
8. 주변에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0.0 (0)	16.7 (2)	66.7 (8)	16.7 (2)	100.0 (12)
9. 나에게는 말을 주고받을 사람이 있다	0.0 (0)	0.0 (0)	91.7 (11)	8.3 (1)	100.0 (12)
10. 나의 대인관계는 사무적이고 깊이가 없다	16.7 (2)	58.3 (7)	16.7 (2)	8.3 (1)	100.0 (12)

자료: 연구진 작성

바. 사회적 인식과 차별에 대한 경험

인터뷰 참여자들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현재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현재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 없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들도 있는 반면, 일부는 지금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을 아직 많이 느끼고 있었고, 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아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 요새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들도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아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사회 분위기이고. (참여자 H, 45세, 남성)

> 회사에서도 나이를 얘기 안 하면 모르지만 나이를 아는 사람들은 왜 (결혼을) 안 할까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르신들은 좀 하시고... 많죠. 저 자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중략) 시선이 저는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참여자 A, 41세, 여성)

다음으로, 중장년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심각한 차별로 여기지는 않았으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다인 가구에 대한 제도적 혜택이 자신들에게는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 중 4명이 주택 청약 시 1인 가구의 불리함에 대해 언급하였고, 주거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4인 가족 기준이 아닌 1인 가구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는 지금 청약이랑 이쪽을 보고 집 사는 걸 보고 있어요. 대출이나. 그런데 소득 기준, 수준이나 우선순위가 항상 이제 다자녀, 아니면 가정 있는 사람. 1인 가족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낮고 정책도 별로 없고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또 차별일 수도 있겠네요. (참여자 A, 41세, 여성)

부양가족이 플러스 5점 이렇게 되고. ○○시 거주 기간 10점. 자녀 뭐 이렇게... 이제는 단독 세대가 많기 때문에 단독 세대 개개인한테 맞는 주택청약제도로 바뀌어야 돼요. (중략) 1인 가구의 경제수준에 맞게끔 조사를 해서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그 사람에 맞는 복지 쪽으로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4인 가족 기준이거든요. 모든 지원이. 바뀔 필요가 있다. (참여자 I, 51세, 남성)

사. 생활에 대한 전반적 인식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걱정되거나 힘든 생활영역이 있는지를 사전 설문을 통해 파악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 11명 중 9명이 건강, 경제, 주거, 정서 및 관계, 안전의 영역 중 1가지라도 걱정되거나 힘든 영역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4-18〉 참조). 참여자들은 가장 걱정되거나 힘든 영역에 대해 6명은 경제를 꼽았고 3명은 건강이라 응답하였다.

〈표 4-18〉 사전 설문 결과: 걱정되거나 힘든 생활영역

(단위: %, 명)

구분	건강	경제	주거	정서 및 관계	안전	계
걱정되거나 힘든 점 있음[1]	72.7 (8)	63.6 (7)	36.4 (4)	45.5 (5)	36.4 (4)	100.0 (11)
가장 걱정되거나 힘든 영역[2]	33.3 (3)	66.7 (6)	0.0 (0)	0.0 (0)	0.0 (0)	100.0 (9)

주: 1) 1명 무응답
2) 모든 생활영역에서 걱정되거나 힘든 점이 없다고 응답한 2명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비록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걱정되거나 힘들거나 불편한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에게 있어 1인 가구 생활의 단점과 취약점은 1인 가구 생활의 장점으로 상쇄되고 있었고, 불안감이나 외로움은 1인 가구 생활의 장점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인식하는 1인 가구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삶의 자유로움과 자율성에 있었다.

> 저는 되게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그런 건 되게 많아요.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하고 뭐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이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건 극한으로 아프거나... 친구는 물론 도와는 주겠지만 가족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B, 42세, 여성)

> 일단은 자유롭고 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제 라이프스타일을 제가 만들고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 (중략) 단점은 아무래도 약간 외로움? (중략) 저는 (외로움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혼자 사는 걸 선택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선 수반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 A, 41세, 여성)

> 약간 20살 때 느꼈던 해방감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쭉 이어져 오는 게 있는데요. 자유로운 부분,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중략) (삶의 만족도는) 70 정도.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해방감이 있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나머지 30%라고 봐야 될 거예요. (참여자 K, 53세, 남성)

그러나 모든 인터뷰 참여자가 삶의 자유로움과 자율성을 큰 장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었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1인 가구가 되어 생활하면서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참여자 F는 현재 생활의 장점을 삶의 자유로움이 아닌, 농촌에 살고 있어 동네 이웃들과 자주 교류하며 지낸다는 관계적 측면에서 찾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중장년 1인 가구의 삶

의 모습과 이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1인 가구 형성의 자발성이 매우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삶의 만족도는) 50점. 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속이 조금 그렇지. 쓸쓸하지. (중략) 장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문 열고 딱 나서면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불러 주고 찾아 주고 하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애. (중략) 포근하다고 해야 되나 시골이니까. 도시는 삭막하잖아요. (참여자 F, 61세, 여성)

2. 중장년 1인 가구의 현재 삶에 관한 정책 욕구

중장년 1인 가구의 현재 삶에 관한 욕구는 앞에서 살펴본 1인 가구 형성 후 삶의 변화와 적응 과정, 현재 삶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는 이들의 좀 더 직접적인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자, 현재까지 생활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 상황이나 순간, 필요한 정책적 지원, 법·제도적 개편의 필요성 등을 질문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정책 욕구는 1인 가구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욕구와 정책 영역별 욕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가. 정책 전반

먼저, 인터뷰 참여자들은 중장년 1인 가구의 이질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집단특성별 수요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집단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을 받아도 만족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좀 더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하였다.

되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1인 가구가 되거든요. (중략) 세대별로 달리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도 들고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중략) 정책을 하면 이걸 만약에

실행에 옮기면 디테일까지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 디테일을 챙기려면 타겟층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상 정책이 있어도...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만족할 수 없고. 이런 게 있거든요. (참여자 B, 42세, 여성)

정부에서 각 국민들한테 입에 맞는 정책을 할 수는 없어요 100%. 그런데 그 그룹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부에서는. 이 그룹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룹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리스트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참여자 I, 51세, 남성)

다음으로, 현재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길 바라면서, 해당 정책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함께 마련되길 희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중에서 지자체의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구독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 있는 참여자(도시 거주, 40대 초반)도 있었으나, 농촌에 거주하는 60대 참여자의 경우 행정이나 은행 업무도 대면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때도 복지 관련 정보는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여 거주지역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장년 대상 지원이) 뉴스에서 있다고 들었는데 깊이는 모르겠고. 찾아본다 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막연하게 주민센터 가서 물어볼 순 없잖아요. (참여자 D, 47세, 여성)

딱 보면 내가 필요한 것. 1인 가구로서. 그다음에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 1인 가구가 유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복지로라고 있어요. 그쪽에 가면 그냥 좀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걸 구분해서 1인 가구 혜택이 이런 것들이 있다. 1인 가구 혜택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먼저 법을 만들어 놓고. 의견 듣고서 만들어야겠죠. (참여자 I, 51세, 남성)

나. 정책 영역별 욕구

1) 주거 및 경제

주거 및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먼저 인터뷰 참여자들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출 기준 완화나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재 전·월세로 거주하거나 현재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1인 가구의 상황이 모두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에 대한 대출 제한 금액, 조건 등이 청년에 비해 엄격하거나 금리 인하 정책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 1인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안 준다는 건...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대출 받을 때 대출이 막힐 뻔했었어요. 제한 금액이 깎이는 바람에. 제가 대출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 100이라 치면, 옛날에는 100이 됐다면, 1인 가구는 그걸 50으로 줄이고 그 혜택을 결혼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그거 되게 어이 없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B, 42세, 여성)

> 저는 임대주택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대출받을 때 그 생각을 딱 했다는 거죠. 실제로 은행 가면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저같이 4대 보험이 안 되고 그러면 대출받으면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거든요. 솔직히 그런 생각 해요. 없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더 뜯어가는구나. (참여자 E, 55세, 여성)

또한, 취약 중장년 1인 가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보다 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자녀 양육비, 교육비, 본인의 생활비 등 고정지출을 제외한 비용 안에서 주거를 구해야 하다 보니 열악한 주거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며 주거비 부담 완화나 안정적 주

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가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있었다가 이렇게 된 친구들을 보면 본인 외에 나가는 지출들이 너무 많아요. 8평짜리 원룸 한 칸도 버거운 친구들도 있어요. (중략)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건 저를 비롯해서 하는 얘기에요. 중장년층 1인 가구들이 삶이 피폐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좀 좋은 환경에서 주거를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중략) 지금 제가 양육비를 매달. 거기에 대출도 나가고 월세 나가고 (중략) 더군다나 학원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나가거든요. (중략) 고정비가 3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1인 생활하면서 생활 자체는 훨씬 더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는 거죠. 나라에서 받는 건 전혀 없고. (중략) 실질적인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보잖아요. 이 사람의 재산은 이 정도 있는데. 실질적인 이 사람의 수입과 지출을 따지는 게 아니라. (참여자 H, 45세, 남성)

한편,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 대안으로서 공유 주거 형태(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현재 공유주택이 청년 또는 노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중장년 대상의 공유주택이 있다면 입주할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도 있었다.

>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략) 지금 젊은 분들 쉐어하우스 같이. 만약에 1인 가구여도 집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 사기는 뭐 하면 쉐어하우스의 서포트라든지. 그게 아예 젊거나 아예 노년만 되는 것 같아요. 의외로 중장년의 서포트가 없어요. 중장년들은 당연히 돈이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한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많거든요. (참여자 B, 42세, 여성)

> 지금 제가 사는 집 근처에 그런 주거 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중략) 청년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주거비도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중략) 고립감을 줄이고 서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교류를 하면서

선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형태의 모델인 것 같아서 중장년한테도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이런 주거 환경이 주어지면 정서적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참여자 C, 42세, 여성)

또한, 참여자 중 일부는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장년뿐만 아니라 모든 1인 가구가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저는 계약은 다 부모님 데려갔어요.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아무래도 어른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서포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1인 가구는 잘 몰라요. 이번에 전세 사기 이런 것도 젊은 분들 많잖아요. (중략) 거래에 있어서 초년생이나 노인도 그럴 수 있고, 1인 가구도 장애인도 의외로 많다고 들었어요. (참여자 B, 42세, 여성)

저는 월세로 살고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남일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가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죠. (중략) 지금은 집주인, 임대인 위주로만 너무 모든 게. 모든 편의가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집주인의 건물주의 어떤 폭언이나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호나 도움 이런 건 받기 어렵고, 억울하면 돈 더 벌어서 비싼 집 가야지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여자 C, 42세, 여성)

2) 일자리 및 사회활동

일자리에 대한 지원에 있어 중장년 1인 가구는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인터뷰 참여자들은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장년 취업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실제 취·창업으로 연결

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중장년이 기존의 경력을 인정받으며 새로 일할 곳을 찾기도 어렵고, 창업 지원이 없어 자본금이 없을 경우 창업도 할 수 없으며,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일자리의 경우도 중장년보다는 청년층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장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저도 처음 창업할 때 모아 놓은 돈이랑 대출로 시작을 했지, 나라에서 혜택받은 게 전혀 없어요. (중략) 내일배움카드 같은 건 전 연령층 다 해당되는 거고 중장년층만 해당되는 게 없고. 제가 쉴 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략) 그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당장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노가다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못 해요. 경쟁률이 너무 세요. 나이 많은 사람 안 써 줘요. (중략)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배워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예 무경력이면 젊은 사람 쓰죠 나이 든 사람 안 써요. 40~50대는 방법이 창업밖에 없어요.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대리운전. 운전경력은 어디 안 가니까. (참여자 H, 45세, 남성)

한편, 스포츠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참여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수강생의 감소로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현재 직업을 유지하는 한 일자리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참여자가 직접적인 정책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장년 1인 가구의 일자리 지원에 있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과 직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뭘 올리기는 했는데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략) 운동 가르치는 사람을 정부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을걸요. (중략) 정부에선 절대 저를 도울 수 없을 거예요. 일거리를. (참여자 J, 51세, 남성)

다음으로, 인터뷰 참여자들은 중장년 1인 가구끼리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가 제공되거나, 중장년이 주 대상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나, 청년 중심이거나 노년층 위주의 활동으로 연령대가 구분되어 있어 어디에도 끼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 교류의 장도 없고. 있으면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다 어린 친구들 위주고, 제가 가기에는 약간 나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니까 낀 세대 같아요. 나이가 아예 많으신 분들 모임 있고, 어린 친구들 모임 있고, 제가 약간 중간에 끼어서 참여할 모임이 없고. (참여자 A, 41세, 여성)

> 어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 내 저거가 없어요. 복지관 가도 어른들 계시면 일단은 어른들부터 다 챙겨 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도 해야지 내 시간이 없어요. 적어. 해 보면 그래. 그런 건 분리가 되도 좋지 않나. (참여자 F, 61세, 여성)

이와 유사하게, 중장년 1인 가구 커뮤니티가 고립감 해소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교류와 소득 창출이 함께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노인 커뮤니티는 되게 지원이 많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방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활성화시키면… 젊은 사람들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되게 창의적이에요. 그게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비즈니스는 사회에 굉장히 좋은… 일의 창출이 될 수도 있고. (중략)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지원방식도 되게 많은데 그걸 창의적으로 생각을 못 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확실히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 (참여자 B, 42세, 여성)

3) 보건의료

인터뷰에서는 위급상황의 대처에 있어 중장년 1인 가구의 취약성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에게 지금까지 긴급 수술이 필요했던 경험이나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했던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재까지 혼자 생활하는 동안 의료기관에서 급히 보호자가 필요했던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직계가족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인터뷰에서 위급상황일 때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참여자 중 일부는 만일을 대비하여 보호자의 범위를 본인이 지정한 대상자까지 넓힐 수 있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안 아파가지고. (중략) 그런 경우에는 가족 제한 풀긴 풀어야 할 것 같아요.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건 생각 못하겠는데 진짜 제가 만일에…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연락되는 사람한테 동의를 받고 할 순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A, 41세, 여성)

> 사고가 나서 부모나 직계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 없었지만 건강검진을 받는데 수면(마취)을 해야 될 경우에. 때로는 병원에 따라서 검진센터에 따라서 보호자를 대동해야 되는 경우. 그런 난감한 경우가 있죠. (중략) 돌발상황에 대해서 가족 외에 누군가가 대처해 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사회정책이 필요하죠. (참여자 K, 53세, 남성)

제4절 중장년 1인 가구의 미래 삶의 모습과 욕구

1. 중장년 1인 가구의 미래 삶의 모습에 대한 인식

가. 1인 가구 지속 의향

사전 설문을 통해 인터뷰 참여자들의 1인 가구 지속 의향을 살펴본 결과(〈표 4-19〉 참조), 참여자 5명은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싶다고 하였고, 6명은 일정 기간 1인 가구를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명은 향후 결혼 여부에 따라 1인 가구 지속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시점에서 언제까지 혼자 살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1인 가구 지속 의향은 향후 결혼 의향과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되었다. 계속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싶다고 응답한 참여자 전원은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1인 가구 지속 기간을 정해두었거나 1인 가구 지속 여부가 결혼 여부에 달려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미래에 결혼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향후 결혼 의향이 없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혼인상태를 살펴본 결과, 이혼 2명, 사별 2명, 미혼 1명으로 가족 해체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 (향후 결혼 생각) 없어요. 아직까지는 1%도 없어요. (중략)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갈지 그쪽이 먼저 갈지 모르는데. 애들한테 또 고통 주잖아. 말도 못 하게 고생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는 밥이나 먹고 쉬었으면 좋겠어. 너무 지쳤어. (중략) 내가 또 아프면 괜히 나 좋자고 했다가 상대방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혼자가 좋아. (참여자 F, 61세, 여성)

반면, 향후 결혼 의향이 있는 참여자들은 결혼의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적절한 결혼 상대가 없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집단과 상대적

으로 결혼에 대한 의지가 더 있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전자에 해당하는 4명은 모두 미혼자였고, 후자에 해당하는 2명은 각각 이혼과 사별을 경험한 참여자였다는 점이었다.

> 결혼을 혹시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나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혼자 살지 않을까? (웃음) (참여자 A, 41세, 여성)

> 5년 이후에는 제가 가정을 꾸릴 계획이 있어요. (중략) 그 안에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시켜 놓고 계산해 보니까 그때 나이 정도면 좋을 때잖아요. (중략) 아이가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어머님이 여든셋이에요. (중략) 아들 한 번 가족 꾸려진 걸 보여주고 싶고.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면 마음이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봐도. 주변에서 이혼한 친구들이 재혼을 다시 한 친구들도 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참여자 I, 51세, 남성)

한편, 사별한 경험이 있고 향후 재혼 생각이 없어 1인 가구 생활을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했던 참여자는 만일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된다면 친구와 함께 생활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만약에 동반자법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제 친구랑 같이 살고 싶거든요. (중략) 같이 살면 의지도 되고 둘이 합치면 주거환경을 크고 아늑한 곳으로 갈 수 있고. 어차피 그 친구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중략) 영국에서 완전히 법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동성이든 이성이든 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살고 있으면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의료보험이든 사회보험이든. 그게 와 진짜 괜찮다 생각했어요. (참여자 E, 55세, 여성)

〈표 4-19〉 사전 설문 결과: 향후 1인 가구 지속 의향

(단위: %, 명)

구분	비율(명)	참여자
기간 제한 없이 상황이 허락한다면 계속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싶다	41.7 (5)	C, E, F, J, K
어느 정도 기간은 1인 가구로 계속 생활하고 싶다 연령(몇 세까지): 50세(B), 55세(I), 69세(D), 70세(H) 기간(몇 년): 5년(A, G)	50.0 (6)	A, B, D, G, H, I
기타: 1인 가구의 지속은 시점과 상관없이 결혼 여부에 달려 있다	8.3 (1)	L
계	100.0 (12)	-

자료: 연구진 작성

나. 노년기 삶의 모습에 대한 인식

인터뷰 참여자의 1인 가구 지속 의향과 별개로, 1인 가구 생활을 지속하여 노년에 접어들었다고 가정할 때 삶의 모습이 어떠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노년기 삶의 모습에 대한 인식은 첫째, 건강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희망하는 삶의 모습, 둘째, 건강이 악화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가정하에 예상되는 삶의 모습, 셋째, 웰다잉에 관한 인식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 대다수는 노년기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연령대가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분포해 있어 노년기 진입까지 적게는 3년, 많게는 24년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노년기 삶의 모습에 대한 인식은 노년기 진입까지의 기간과는 별개로 대다수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현재의 생활이 바쁘고 버거워 미래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하거나, 현재 일자리가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냥 노년에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돈이 많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내가 허덕일 정도만 아니면 되는 그건데. (중략) 특별히 노년을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참여자 B, 42세, 여성)

그때그때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사실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지도 않다 보니까 불안도를 낮추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금에만 집중하고. (중략) 앞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더 좁아지겠지라는 생각을 지금은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노년이 됐을 때가 잘 그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42세, 여성)

(미래에 대한) 생각 안 하죠. (중략) 현실 살기가 팍팍한데 굳이 미래까지. 미래는 일단은 둘째 문제죠. 지금 당장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부분 이거 말고는 생각할 게 없어요. 그 이후에나 여유가. (참여자 H, 45세, 남성)

미리 생각한다는 게 그게 참 어렵죠. (웃음) 생각을 안 해 봤어요 통. 앞으로 살 날도 힘든데 미리 생각한다는 건 어려운 거죠. (참여자 L, 62세, 남성)

1) 건강 유지 시 희망하는 삶의 모습

인터뷰 참여자들은 희망하는 노년의 모습에 대해 막연해하였지만 주로 거주지나 거주방식을 중심으로 미래의 모습을 떠올려 이야기하였다. 그 밖에도 본인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노년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본인이 좋아하거나 꿈꿔왔던 활동을 중심으로 상상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노년기에 희망하는 거주지나 거주방식이 있다고 언급한 참여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참여자 2명은 노년에도 계속 도시에 거주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들은 여가활동을 잘할 수 있고 주변에 지인들이 있는 곳,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

주거 환경에 대한 욕심이 커서 혼자 살게 되면 주거 환경을 좋은 데 잡아서 제가 주변에 여가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동네에서 살고 싶고. 일단은 그때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있는 쪽에서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바램이 있죠. (참여자 A, 41세, 여성)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 혼자서 집 잘 꾸며 놓고 거기에서 어쩌다 한 번씩 근처 동네나 돌고. 뭐 거창하게 귀농한다든가 하는 건 저는 불편해서 못 살아요. 번화한 데에서 살아야 되고. 언제든지 배달 주문할 수 있는 데로. (참여자 H, 45세, 남성)

이와 반대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지역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는데, 시골 지역인 고향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여 살고 싶다고 하거나, 땅을 매입하여 자연 속에 주택을 짓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였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형제·자매들과 모여서 생활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도 있었다.

제가 시골 태생이거든요. 완전 깡촌이에요. 그때 타잔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옛날 영화. (중략) 나무 줄 해서 타고 다니고 나무 위에 집을 짓고. 그게 성장하면서도 꿈이었어요. (중략) 땅 하나 매입해서 통나무집 하나 건설하고 주변에 나무숲이 있고 연못을 만들고 줄 달고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참여자 I, 51세, 남성)

(형제·자매들과) 5층 지어서 쭈르륵 살자. 원래 6층이었는데 한 층 언니가 없어졌으니까 5층으로.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 (참여자 F, 61세, 여성)

한편, 거주지역과 관련하여 이례적인 사례도 있었는데, 참여자 K는 노년기에 북유럽 국가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었다. 해당 참여자는 한국보다 여유로운 삶을 원하고, 북유럽 국가가 더 나은 사회보장 정책을 갖추고 있으며, 출장으로 자주 방문하여 제2의 고향처럼 느끼는 곳이기 때문에 이민을 결심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때부터는 이민 갈 겁니다. 65세 이후가 되겠죠. (중략) 한국이 사회보장 정책이나 노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상대적으로 해외 쪽이 잘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스웨덴이나 덴마크 쪽 정책이 잘되어 있는데 다만 텍스는 세죠. 텍스가 세지만 그만큼 많이 내고 그만큼 보장을 많이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유로운 삶이 좋아요. 한국은 아직까지 바빠요, 사람들이. (참여자 K, 53세, 남성)

다음으로, 노년기에 현재의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생활할 것으로 예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 L은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현재 거주지에서 30년 동안 생활해왔는데. 노인이 된 후에도 같은 지역에서 계속 농사일을 하며 생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밖에도, 노년기에 여행을 다니며 생활하고 싶다는 의견,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견, 활발히 취미활동을 하면서 생활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을) 70 넘어서까지 해야죠. 지금 다 해요. 80 넘은 사람도 하는데. (중략) (농사일 외에) 뭐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봐도. (참여자 L, 62세, 남성)

저는 아마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블로그 활동을 계속 할 거예요. 사진을 찍고 거기에 글을 쓴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주위에 있는 것만 찍었거든요. 조금 더 멀리 가서 찍어 보고 싶어요. 최대한 돈 안 들이고.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일이 블로그 활동이 아닐까 싶어요. (참여자 E, 55세, 여성)

2) 건강 악화 시 삶의 모습

건강 악화 시 삶의 모습에 대한 상상이 어렵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있었기에 이에 대한 문답이 이루어진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정책 욕구에 관한 내용은 후단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참

여자 중에서는 이후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다면 시설이나 노인전용주택(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등)에서 생활할 의향이 있다는 참여자도 있었고, 가능한 자택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참여자도 있었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삶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도 있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인터뷰 참여자 중 자녀가 있는 참여자가 4명이었는데, 자녀에게 부양의 역할을 기대하는 참여자는 없었다는 점이었다.

먼저, 자택을 떠나 시설이나 노인전용주택에서 생활할 의향이 있었던 참여자들의 경우 희망하는 시설 또는 주택의 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한다고 언급한 참여자는 비용을 더 부담하면서 더 나은 시설이나 주택에서 생활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외 참여자들은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면 실버타운 같은 노인전용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 내가 만약에 그런다면 애들한테 짐 될 필요는 없죠. (중략) 오줌, 똥 쌀 때는 가야돼. 내 스스로 보내달라고. (중략) 그때는 더 좋고 나쁘고 없어. 나는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친절해요. 병원은 딱 규칙이 있잖아. 여기는 규칙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많이 저기를 하잖아. 그래서 나쁘지 않아. (참여자 F, 61세, 여성)

> 저는 (실버타운) 선호하는 편이고 근데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세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참여자 A, 41세, 여성)

> 저는 집에서 홈케어를 받는 것보다 실버타운 입주해서. 거기도 커뮤니티잖아요. 그런 커뮤니티에 동참해서 어떤 강제적, 반강제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데서 살고 싶어요. (중략)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를 하겠죠. (참여자 K, 53세, 남성)

다음으로, 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경우를 살펴보면, 자택에서의 계속 거주를 위해 간병보험 가입 등의 준비를 해둔 참여자도

있었던 반면, 거동이 불편하여 자력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다면 삶의 의미가 없으며 어떠한 도움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도 있었다.

> 저는 집에 있고 싶어요. 저 그래서 간병보험 들어 놨어요. 계속 빌라에서 살지 어디에서 살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활하던 곳에서 생활하면서 죽고 싶거든요. (참여자 E, 55세, 여성)

> (실버타운)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노인네들끼리 모여 있으면 더 늙을 것 같은데요. (독립적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죽어야죠. 진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또는 시설 입소) 그런 데 싫어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참여자 J, 51세, 남성)

3) 웰다잉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본인의 죽음 이후 상황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있었고 희망하는 장례 형태, 재산처리 방식을 결정해둔 참여자들도 많았다. 먼저, 인터뷰 참여자 중 10명은 자녀, 조카, 사촌 등 가족이 본인의 의사대로 장례나 재산처리를 진행해 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참여자 중에서는 만일을 대비하여 가족의 연락처를 포함한 유서를 미리 작성해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참여자 중에서도 특히 자녀가 있는 참여자의 경우, 본인의 사후처리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일단은 유산은 저는 미련 없이 다 기부할 생각이고요. 만약 가족이 없다면. 그리고 사후에 처리는 어차피… 사고가 있어서 이상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친척도 많고 사촌도 워낙 많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처리해 주겠지라는 게 있어요. (참여자 B, 42세, 여성)

재산 부분은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유서 지금 써 놨고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처 다 써 놨어요. 그래서 누군가 제 유서를 보면 형한테 연락하도록 돼 있어요. (중략)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게다가 또 혼자 있으니까. 미리 써놔야겠다 싶어서. (참여자 J, 51세, 남성)

그 밖에,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사후처리 방식을 미리 이야기해두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해당 참여자는 현재 부모님과 누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보다는 지인들에게 사후처리 관련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인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그냥 화장하면 좋겠어요. 봉분 필요 없고요. 수목장이라든지 뭐. (중략) 이 부분은 못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유서까진 아직 쓰지 않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얘길 한 적 있습니다. (중략) 가족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니고요. 친구죠. 친구 한 두어 명한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참여자 K, 53세, 남성)

반면, 원가족과 단절한 상태이고 가족을 대체할 지지체계가 부족했던 참여자의 경우, 사후처리에 있어 어느 정도 스스로 준비하고, 장례는 공적 영역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누군가 제 장례를 상주가 돼서 치러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 미리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문서로 남겨 놓는다든지 절차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미리 해 놓는다든지. 지금도 연고 없는 분들은 어떤 공공비용으로 장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뭔가 너무 준비 없이 뒤늦게 발견돼서 건물주를 힘들게 하고 그러기보다는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참여자 C, 42세, 여성)

2. 중장년 1인 가구의 미래 삶을 위한 준비

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사전 설문을 통해 인터뷰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영역과 영역별 현재 준비 여부를 파악하였다(〈표 4-20〉 참조). 설문 결과, 건강, 경제, 대인관계, 여가 중에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4명, 대인관계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명이었다. 앞의 설문문항에서 현재 가장 걱정되거나 힘든 생활 영역으로 건강과 경제의 응답이 많았던 점을 함께 고려해볼 때,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건강과 경제는 노후 생활을 위해 가장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자 현재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걱정되거나 힘든 부분에 해당하였다.

노후준비 여부와 관련해서는 건강과 경제 영역의 경우 인터뷰 참여자 전원이 현재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인관계와 여가 영역의 경우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참여자가 1명씩 있었는데, 앞에서 살펴본 생활영역별 현재 삶의 모습에서 비공식적 지지체계가 부족했던 참여자와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던 참여자가 현재 노후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사전 설문 결과: 노후준비 인식 및 현재 준비 여부

(단위: %, 명)

구분	건강	경제(재무)	대인관계	여가 (교육 포함)	계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영역	58.3 (7)	33.3 (4)	8.3 (1)	0.0 (0)	100.0 (12)
현재 준비 중	100.0 (12)	100.0 (12)	91.7 (11)	91.7 (11)	-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

1) 건강

사전 설문에서 노후 건강을 위한 준비 정도를 파악한 결과(〈표 4-21〉 참조), 앞서 식비를 줄이기 위해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여성 참여자를 제외한 참여자 11명은 노후 건강을 위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스트레스 관리의 경우 건강 체중 유지와 비교할 때 준비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현재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참여자 3명이 모두 남성 참여자였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노후 건강관리의 차이가 드러났다.

제가 병원을 평생 한 번도 안 갔었어요. 감기 걸려도 약을 안 먹고 제가 견디면서 낫고. 주사도 잘 안 맞고.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는 것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신장 때문에 아파서 처음 했어요. (참여자 I, 51세, 남성)

저 같은 경우에는 술담배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은 생각도 있고 그래요. (음주량, 흡연량 관리) 아니요. 전혀. (참여자 J, 51세, 남성)

제가 보니까 스트레스에 몸이 되게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는, 그래서 일도 전환하려고 하는 거고. 전에 했던 일도 좋아서 했는데 스트레스가 세다 보니까, 하면 하겠는데 오래 유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환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고. 건강을 유지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싶진 않지만 건강하게는 살아야 되니까. (웃음) (참여자 B, 42세, 여성)

〈표 4-21〉 사전 설문 결과: 건강 영역 노후준비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노후 건강을 위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0.0 (0)	8.3 (1)	0.0 (0)	83.3 (10)	8.3 (1)	100.0 (12)
노후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0.0 (0)	25.0 (3)	8.3 (1)	66.7 (8)	0.0 (0)	100.0 (12)
노후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다	0.0 (0)	16.7 (2)	33.3 (4)	33.3 (4)	16.7 (2)	100.0 (12)

자료: 연구진 작성

2) 경제

사전 설문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최소 1가지에서 최대 5가지의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으며(〈표 4-22〉 참조), 경제적 노후준비의 정도와 소득 및 재산 수준 간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제적 노후준비 유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참여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개인연금 가입자가 7명, 예·적금 보유자가 6명, 부동산 운용이 5명이었고, 퇴직금/퇴직연금, 주식/채권, 기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참여자가 각각 2명씩이었다.

〈표 4-22〉 사전 설문 결과: 경제 영역 노후준비 정도(복수 응답)

(단위: %, 명)

구분	비율(명)	구분	비율(명)
국민연금	91.7 (11)	1가지	16.7 (2)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58.3 (7)	2가지	16.7 (2)
퇴직금/퇴직연금	16.7 (2)		
예금, 적금	50.0 (6)	3가지	41.7 (5)
부동산 운용	41.7 (5)	4가지	8.3 (1)
주식, 채권	16.7 (2)		
기타	16.7 (2)	5가지	16.7 (2)

자료: 연구진 작성

경제적 노후준비의 가짓수와 관련하여, 현재 1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참여자 2명은 각각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100~2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이었으며 월세 형태로 원룸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 5가지 종류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던 참여자 2명은 모두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명은 월평균 소득수준이 400만 원 이상이고, 다른 1명은 경제적인 준비를 해둔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인터뷰 집단 내 경제적 수준의 차이와 노후준비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그냥 회사에서 가입을 하는 거니까. 제가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그런데 딱히 제가 지금까지의 삶이 순탄치 않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비하고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참여자 C, 42세, 여성)

노후에 연금 갖다가는 생활이 안 될 거고. (중략) 벌 수 있을 때까지 벌다가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면 그렇게 하고. (참여자 H, 45세, 남성)

회사에 직원으로 임원으로 등록된 게 있고 대표로 된 게 있고 몇 개 회사 겸임하다 보니까요. 주로 받는 건 스톡옵션 쪽이 향후 그거죠. 노후준비잖아요. (참여자 K, 53세, 남성)

3) 대인관계

대인관계와 관련된 노후준비에 있어서는, 사전 설문에서 가족과 적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와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모임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표 4-23〉 참조). 설문 결과, 관련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참여자가 1명 있었으며,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참여자

11명 중에서도 1명은 가족과의 유대관계와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활동 참여에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여 대인관계를 위한 준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앞의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유형에서 가족과 비가족 지지체계가 모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유형에 해당하였는데, 현재 대인관계 상태에 대한 불만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서적인 취약성보다는 위급상황의 대처 측면에서 취약성이 더 높은 집단으로 이해되었다.

> 저는 좀 주변을 간결하게 하고 사는 걸 좋아해요. 인간관계도 많이 넓히려고 하지 않고, 스트레스받을 만한 요인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제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을 잘 만들지 않아요. (참여자 C, 42세, 여성)

> 대인관계를 딱히 준비를 하나요? 어차피 대인관계는 나이 들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사람 사귀고 만나고 그러기가 쉽지 않죠. 중요는 하지만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략) 음악회 모임에 나가야지. 독서 모임 나가야지 그런다고 느나요? 저는 낮에 시간이 되니까 낮에 그런 모임 나가봤자 다 할머니만 나와 있고. 대인관계 절대로 늘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무슨 내가 어디 나가야지? 택도 없죠. (또래와의 활동) 굳이 찾고 싶지 않아요. (참여자 J, 51세, 남성)

이와 달리, 가족들과 적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모임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다수 있어 경제적 노후준비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 간 대인관계 영역의 노후준비 정도에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형제들하고 식구들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잘해요. (중략) 누가 가져가도 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자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제가 됐든 자식이 됐든 버리지는 않을 거야. 제가 뒷바라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다들. 내 손 안 거친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참여자 F, 61세, 여성)

〈표 4-23〉 사전 설문 결과: 대인관계 영역 노후준비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가족들과 적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9.1 (1)	0.0 (0)	18.2 (2)	27.3 (3)	45.5 (5)	100.0 (11)
노후의 대인관계를 위해 관련 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8.2 (2)	18.2 (2)	0.0 (0)	45.5 (5)	18.2 (2)	100.0 (11)

자료: 연구진 작성

4) 여가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의 경우, 참여자 중 11명은 현재 노후에 하고 싶은 취미·여가·교육활동이 있거나 노후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4-24〉 참조). 여가 관련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참여자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현재도 노후에도 희망하는 여가활동이 없으며 주변 이웃들도 모두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반면, 그 외 참여자들은 대부분 노후에 하고 싶은 취미·여가·교육활동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현재의 준비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다.

(노후 희망하는 여가활동) 없죠. 노인네 돼서 무슨 활동을 해. 어디 나가서. 집에 지금 고모부가 한 90 됐는데 집에만 있어요. 그냥. 그 양반도. 시골 노인들 다 똑같아요. (참여자 L, 62세, 남성)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나름 잘하는 게 사진 찍고 글쓰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것에 투자하고 싶었어요. (중략) 제 이름으로 에세이 책도 내보고 싶고. (중략) 말은 이렇게 하지만 준비 못 하고 있어요. (참여자 D, 47세, 여성)

뭔가 몰두하고 지금부터 배워서 나이 들어서도 좀 바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걸 떠나서 정신적으로 바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E, 55세, 여성)

〈표 4-24〉 사전 설문 결과: 여가 영역 노후준비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노후에 하고 싶은 취미·여가·교육 활동이 있다	0.0 (0)	0.0 (0)	9.1 (1)	63.6 (7)	27.3 (3)	100.0 (11)
노후의 취미·여가·교육활동을 위해 현재 정보를 찾거나 교육을 받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18.2 (2)	18.2 (2)	18.2 (2)	18.2 (2)	27.3 (3)	100.0 (11)

자료: 연구진 작성

3. 중장년 1인 가구의 미래 삶에 관한 정책 욕구

인터뷰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의 미래 삶에 관한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노년의 모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필요한 지원, 존엄한 죽음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질문하였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의 미래 삶에 관한 정책 욕구는 크게 노인정책에 관한 욕구와 노인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욕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가. 노인정책에 관한 욕구

먼저, 노인 대상 정책 욕구를 살펴보면, 일부 참여자들은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 현재보다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고 보편적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였다.

지금보다는 그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테고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좀 다닐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병원을 다녀야겠죠. (중략) 지금도 병원 가면 무료 진찰해 주잖아요. 그런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참여자 D, 47세, 여성)

일단 노후에는 제일 필요한 게 의료비에요. 무조건. (중략) 의료비 지원은 진짜 나라에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해결해 줘도 노년의 삶은 되게 많이 윤택해질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받는 정도까지도 노년층은 그렇게 의료비 지원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참여자 H, 45세, 남성)

다음으로, 주거와 관련하여 일부 참여자들은 노후에 실버타운에서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비용의 문제로 입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공공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주거 형태를 마련한다면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일부는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형태 자체에 대해 반대하거나, 입주 의향이 없다고 밝혀 참여자들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거기(실버타운)는 비싸다고 얘기하던데. (공공형이 있다면) 저는 갈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100세 인생이니까 한 80에? (참여자 D, 47세, 여성)

좋죠. 저희 할머님이 (실버타운) 생활을 하셨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여가생활도 즐기고. (중략) 워낙 매스컴에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데, 나라에서 그런 부분만 제대로 관리한다고 하면 지금 노년층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H, 45세, 남성)

탁상공론이에요 진짜. 그 정책 자체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주거 생활하는데 생활근거지라는 게 있어요. 집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자가 독립된 생활을 하는데 같이 모여 산다? 그건 개인 사생활도 침범하는 거고 국가에서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여자 I, 51세, 남성)

마지막으로, 노인의 일자리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공급인 것 같아요. 지금 노인 분들 공공일자리 한다고 해도 그게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거나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일을…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일을 하고 적은 급여라도 받아서 근로자로서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참여자 C, 42세, 여성)

> 제가 노후에 60 넘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첫째는 소일거리가 필요해요. (중략)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정책 그 있잖아요. 3시간씩 하는 것. 그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국가에서 노인들을 진짜로 노인 대접이 아니라 노인 취급하는 정책이거든요. 옛날처럼 못 배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유휴인력, 고급인력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체크해서 틈새 정책으로 나가야지 묶어서 하면 정책이 안 된다. 그런 거 바꾸면 좋겠어요. (참여자 I, 51세, 남성)

나. 노인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욕구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먼저, 1인 가구 생활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독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고독감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외로움 담당 부처가 마련된 영국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도 고독사, 고독감의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참여자도 있었다.

> 혼자 살고 나이가 들수록 (고독감이) 많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중략) (고독사를) 정책적으로 끊으려면 그 고독을 줄이는 것부터가 먼저 시작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밖으로 꺼내는 거죠, 한마디로. (중략)

힘들 때 생각해보면 누구한테 얘기라도 하면 낫더라고요.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해결이 될 때도 있다. 그런 심리상담도 좋고. (참여자 B, 42세, 여성)

영국도 고독사 이런 거 문제 많이 돼가지고 정부 지원기관 세웠잖아요. (중략) 우리나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다 생기는 것 같아요. 부서 안에 조그맣게라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A, 41세, 여성)

다음으로, 인터뷰 참여자 다수는 노인 1인 가구의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주기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자 중에서는 현재 독거노인·장애인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고,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1인 가구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나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준다거나 따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A, 41세, 여성)

본인 동의하에 가구주, 세대주의 동의하에 사회 안전망하고 연계된, 경찰서하고 소방서, 관할 병원하고 연계된 어떤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CCTV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연계가 돼서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중략) 지금은 필요 없고요. 나이가 조금 더 들게 되면 어차피 그때도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 K, 53세, 남성)

있으면 설치 해야죠. 사람이 동작 움직이는 대로 센서가 움직인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면 좋죠. (참여자 L, 62세, 남성)

마지막으로, 1인 가구의 존엄한 죽음과 관련하여 일부 참여자들은 장례 및 재산처리에 관한 1인 가구의 자기결정권이 사후에 보장될 수 있도

록 공적 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즉,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후처리에 관한 의사를 조사·관리하고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참여자들 간 의견이 합치되지는 않았는데, 공적 체계가 마련되더라도 사적 영역에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장례와 재산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 프로그램에서) 유언장 작성을 해 봤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쓰여지길 바라는지. (중략) 나를 처리하고 남은 비용은 어디에 기부한다든가… 그런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50대 이상은. 50대 이상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중략) 정부에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에서 관리해서, 일정 나이가 되면 조사를 해서. 50대 지금쯤은 미리 그런 것들을 작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참여자 E, 55세, 여성)

> 1인 가구인데 몇 세 이상 관리가 안 되는, 건강이나 그런 것 위험지대에 놓인 나이대는 후견인제도 그런 거 정책을 해서 몇 세이면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동의서를 미리 받아 둔다든지 나라 차원에서. (참여자 A, 41세, 여성)

> 조카들이 알아서 할테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한테 맡기기는 힘들고. 남이 와서 그런다고 해도 않고, 또. (중략) 조카들이 있어서 걔들한테 맡겨야지. 면사무소는 누구든지 안 할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도. (참여자 L, 62세, 남성)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미래에 중고령층을 구성하는 현재 중장년 1인 가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자, 만 40~64세 중장년 1인 가구 12명을 대상으로 개별인터뷰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개별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그림 4-10〕에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를 통해 현재 중장년 1인 가구의 형성 배경과 적응 과정, 삶의 모습에 있어 다양한 양상과 특성을 확인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중에서는 가족의 해체로 인해 불가피하게 1인 가구가 된 경우도 있지만, 독립된 생활을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었거나, 효율적인 학업·직장생활을 위해 독립한 후 생활에 만족하여 1인 가구를 지속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1인 가구로 전환한 후 경험하는 삶의 변화와 적응 과정에서도 긍정적 양상과 부정적 양상이 혼재하였으며, 현재 삶의 모습과 미래의 삶에 대한 인식도 개인 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주목해 왔던 노인 1인 가구의 모습이 '어쩔 수 없이 쓸쓸히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모습이었다면, 미래의 중고령 1인 가구 집단에는 자발적 선택에 따라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생활의 자율성을 장점으로 여기며 생활하는 집단이 다수 유입될 것임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중고령 1인 가구의 취약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 중고령 1인 가구 집단은 현재의 중고령 1인 가구 집단에 비해 좀 더 다변화된 특성과 욕구를 지닌 집단일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하며, 이들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1인 가구가 그 자체로 정책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혼자 살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문제이나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없도록 법제 및 정책을 재정비하는 것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다만, 주거, 건강, 경제 등 생활영역별 취약 집단에 해당하는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 집단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접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뷰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중장년 1인 가구 집단에 대한 보편적인 위험·장애 요소와 어려움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중장년 1인 가구는 자택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중장년 1인 가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의 수준은 개인의 성향과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기능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과 '뒤늦게 발견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의 현재 비공식적 지지체계는 가족 체계와 비(非)가족 체계가 활성화된 정도에 따라 4가지 유형(가족-비가족 활성화, 가족 중심, 비가족 중심, 가족-비가족 비활성화)으로 구분되었는데, 위험 요소는 동일하지만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기능 정도에 따라 취약성에 차이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족 체계와 비가족 체계가 모두 비활성화된 유형은 원가족과의 단절을 본인이 선택했거나 희망하고 있었고, 원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인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아 관계의 단절과 고립을 어느 정도 선택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위급상황의 대처와 관련한 취약성이 가장 높았다. 비공식적 지지체계가 가족 또는 비가족 중심인 유형은 현재 생활에서의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족 중심 유형 중에서 부모가 지지체계의 주된 역할을 할 경우 부모의 사망 이후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비가족 중심 유형의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하여 직계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상황에서의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장년 1인 가구는 스스로를 청년 1인 가구나 노인 1인 가구와는 달리 '알아서 잘 살아야 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서 이들이 주거, 일자리, 사회활동 등의 생활

영역에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 중에서는 30대에 1인 가구를 형성하여 청년 주거 혜택을 받다가 40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외 인터뷰 참여자들도 청년층과 노년층과 비교할 때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어떤 영역에서도 중장년에 특화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허탈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주택 공급에 있어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 부양가족 수에 대한 청약가점제 등의 정책을 보며, 정책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중장년 1인 가구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셋째, 중장년 1인 가구 집단 내에서도 생활 전반과 구체적인 생활영역별로 개별적인 취약성과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먼저, 생활 전반에 있어서는 가족의 해체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적응 과정에서 더 취약한 특성이 있었다. 이들은 1인 가구 생활 초기에 가족을 잃은 슬픔, 이혼의 상처에 적응해야 함과 동시에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전환된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점에서 적절한 심리·정서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영역별로는 1인 가구 형성 후 적응 과정에서 40대 후반~50대 후반에 1인 가구를 형성한 집단이 청년기부터 1인 가구 생활을 시작한 집단에 비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이 있었다. 또한, 현재 생활하면서 혼자 살기 때문에 대충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 위주로 식사하는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을 하는 집단이 있었으며, 신체 건강 관리에 비해 정신건강 관리에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인 집단도 있었다. 주거에 있어서는 40대 초반~50대 초반의 주거 취약성이 높은 편이었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은 원룸(원룸형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반면, 소득이 높은 집단은 오피스텔에서 자가 또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 소득수준과 주거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수입의 불안정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있었으며, 생계를 온전히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지만, 중장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어 구직·전직,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에 있어서는 중장년층 간 교류를 희망하고 현재 하고 싶은 활동도 있지만 중장년 중심의 활동 플랫폼이 부재하여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희망하는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안전에 있어서는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돌연사 같은 위급상황에 대한 불안은 있지만 주택 보안, 범죄 노출에 대한 불안은 없었던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안전이 생활 속에서 의식해야 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중장년 1인 가구의 노후준비 정도는 현재 생활과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건강, 경제, 대인관계, 여가 영역에 있어 취약성이 드러났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은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취약한 특성을 보였다. 현재 중장년 1인 가구 집단이 생활영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개인 차원의 문제부터 중장년 대상의 정책 부재와 같은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까지 모두 혼재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 시간에 따라 누적되어 향후 이들의 노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시점부터 중장년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통해 중장년 1인 가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관한 다양한 정책 욕구가 도출되었다. 현재 삶에 관한 정책 욕구는 정책 전반에 관한 욕구와 정책 영역별 욕구로 구분되었는데, 정책 전반에 관한 욕구로는 정책 마련 시 중장년 1인 가구의 이질적인 특성과 수요가 고려되고, 관련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영역별로는 주거 및 경제, 일자리 및 사회활동, 보건의료 영역의 정책 욕구가 있었다. 주거 및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출 기준 완화와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욕구, 그리고 주거 지원 시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소득 기준이 아닌 수입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장년 대상의 공유 주거 형태(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주택임대차계약 시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자리 및 사회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중장년에 대한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과 기존 경력이 인정되는 일자리 지원의 필요성이 도출되었고, 중장년이 주 대상에 해당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교류와 소득 창출이 함께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는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의 범위를 직계가족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뷰 참여자 대다수는 지금까지 미래의 삶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나, 현재의 생활이 버거워 미래에 대해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언급하였는데, 노년의 모습이 불투명하지만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 노년층을 위한 정책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정책에 관한 욕구로는 보건의료에 있어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이 현재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하였고, 주거에 있어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확인되었으며, 노인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다음으로, 노인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욕구로는 노인 1인 가구의 고독감 완화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중앙 또는 지자체 단위에 고독사 문제 전담 부서 설치에 관한 욕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노인 1인 가구의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주기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참여자 간 의견이 합치되지는 않았으나 1인 가구의 존엄한 죽음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후처리에 관한 의사를 조사·관리하고 이행함으로써, 공적 체계 안에서 1인 가구의 자기결정권이 사후에도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림 4-10] 개별인터뷰 분석 결과 개요

	1인가구의 형성 및 적응 과정		현재 삶의 모습과 욕구		미래 삶의 모습과 욕구	
	중장년 1인 가구의 다양성					
보편적 취약성 및 어려움	안전	자택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측면에서의 취약성 -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기능 정도에 따른 취약성 차이 : 가족 -비가족 체계 모두 비활성화된 유형의 취약성이 가장 높음				
	제도 및 정책	청년 및 노인 1인 가구와의 비교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생활영역에서의 어려움				
개별적 취약성 및 어려움	생활 전반	비자발적으로 형성된 1인 가구의 취약성	일상생활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	삶 전반	현재 생활이 버거워 미래에 대해 생각할 여력 없음
			건강	정신건강 관리에 취약	노후 준비	현재 생활 영역에서의 취약성이 노후준비에서의 취약성으로 연결되는 특성
	건강	40대 후반~50대 후반에 1인 가구를 형성한 집단이 청년기에 1인 가구를 형성한 집단에 비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특성	주거	40대 초반~50대 초반의 주거 취약성, 소득수준과 주거 간 연관성	웰다잉	생애말기 의사결정 및 웰다잉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가족의 유무가 중요하며, 가족과 비가족 체계가 모두 비활성화된 경우 사적 영역에서의 사후처리에 어려움 존재
			경제 활동	'중장년'으로서 겪는 구직·전직, 창업의 어려움과 수입의 불안정성에 따른 어려움이 '혼자' 생계를 책임짐에 따라 심화되는 양상		
	안전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주택 보안, 범죄 노출 등)에 대한 불안	사회·여가 활동	중장년 중심의 활동 플랫폼 부재		
정책 욕구			정책 전반	중장년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정책 마련	노인 정책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
				정책 정보 제공 창구 마련		
			주거 및 경제	대출 기준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거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주거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소득보다 수입-지출 규모 고려)		
				중장년 대상 공유 주거 형태 마련		노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세분화 필요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호 및 지원 필요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실질적 취·창업 지원	노인 1인 가구 정책	고독감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고독사·고독감 전담 부서 마련 필요성
				기존 경력이 인정되는 일자리 지원의 필요성		
				중장년 중심의 교류의 장 마련		주기적 관리체계 마련(동작 감지 센서, 안부 확인 등)
				커뮤니티(사회적 교류+소득창출)에 대한 지원		
			보건 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보호자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공적 사후처리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료: 연구진 작성

제5장

중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법적·제도적 쟁점 분석

제1절 중고령 1인 가구 관련 법적 쟁점 분석
제2절 중고령 1인 가구 지원 정책 쟁점 분석
제3절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제 5 장 중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법적·제도적 쟁점 분석

제1절 중고령 1인 가구 관련 법적 쟁점 분석

앞의 제3장과 제4장에서 검토한 중고령 1인 가구의 삶의 모습과 욕구에 대한 분석(양적 자료 분석, 중장년 1인 가구의 개별인터뷰(IDI)) 결과, 현재 중장년세대는 중장년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1인 가구로 노년기를 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주거의 안정성, 의료서비스 이용, 고독사(사망 이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에 이 장에서는 주거권 측면, 의료법, 돌봄 및 생애말기 사후처리 측면에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중고령 1인 가구와 주거[12)]

1인 가구의 삶에서 주거의 안정은 이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개별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주택청약 시 1인 가구로서 겪는 어려움이 크며, 주거안정성 보장은 1인 가구 삶의 안정에 직결되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안전성 확보 필요, 주거급여 보장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주거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주거 관련 법을 검토하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주거공급의 안정성과 주거의 질 측면에서 법제를 검토하

12) 장민선(2023). 미래 노인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법적 쟁점: 주거권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함.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공급 측면에서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주거의 질 측면에서는 주거기본법을 검토하였다.

가. 주거공급 측면

1) 주택청약의 가점제도

주택법 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공급의 형태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며, 건설주체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한다.

〈표 5-1〉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기준 및 주택공급 방법 구분

구분			내용
주택의 기준[1]	건설주체	국민주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계량되는 주택으로 1호당(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임대형태	임대주택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됨
공급방법[2]			-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자료: 1) 주택법, 법률 제19117호(2022) - 제2조(정의).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2023) -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공급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상이하다. 즉,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 설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월 납입 횟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한해서 가입기간 및 월 납입 횟수 외에도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이 추가로 해당해야 한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도 국민주택의 일반공급과 유사하지만, 일부 2주택 이상 소유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제가 적용된다. 만약, 동 순위 경쟁 시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며, 85제곱미터 이상에서도 일부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3가지 가점 기준 중 부양가족 수의 비중이 매우 높아 이 기준은 결국 1인 가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5-2〉 민영주택 청약가점

구분	가점제도
가점제 기준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85제곱미터 이하	-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일정한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 우선 적용하여 입주자 선정
85제곱미터 초과	- 입주자 선정시 동순의 경쟁에 있어서는 추첨방식 적용 -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역지구 등에서는 일정 비율의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 우선 적용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2023) - 제2조의 8.

2) 특별공급주택

1인 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특별공급에서도 나타난다. 특별공급은 청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준은 연령 기준에 따라 청년(19~39세)이거나, 다자녀이거나, 혼인을 하여야 가능하며, 무배우 중장년 1인 가구는 특별공급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청년의 경우는 무배우 1인 가구라도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나, 중장년 1인 가구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없어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가 추가되는 형태로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되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중장년 비혼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단독세대주(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3의 2)는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

〈표 5-3〉 특별공급제도 및 대상

구분	가점제도
청년 국민주택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만 19세 이상~2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자에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건설하는 주택의 10%(출산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이 18%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자,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추첨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있어서 건설량의 19% 범위에서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또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없어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추첨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다만, 단독세대주에게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공급 가능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2023) - 제35조의 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이처럼 단독세대주에게도 주택공급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전용면적을 제한하는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내 장기전세임대주택제도가 있다. 장기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4). 장기전세임대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을 적용하지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한다.

민간임대주택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데,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임차인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도 중장년 1인 가구는 일반공급 외에 특별공급 자격에서 제외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청년은 무주택, 연령기준(19~39세), 혼인(비혼), 소득, 자산요건을,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7년 이내), 소득, 자산요건을, 고령자는 무주택, 연령(65세 이상),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민간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장년 1인 가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중장년 무배우 1인 가구의 경우 타 세대에 비해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특별공급을 받더라도 적은 면적만 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민간임대전세의 경우는 지원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

3) 입주자 자격규정

주택공급에 대한 법제에서 '입주자격'의 규정은 "세대"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자격조건 안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즉 세대는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세대원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포함한다. 가구는 비혈연관계도 가능하지만, 세대원은 가족관계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가족 외 동거인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가능하지만 동일 세대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입주자 자격규정의 주요 기준인 무주택 구성원과 세대의 월평균 소득에서도 '세대'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표 5-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세대 관련 정의

구분	내용
세대	- 세대원(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과 혈연, 입양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관계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인 세대주
단독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이며, 1인 가구는 단독세대주를 의미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2023) - 제2조(정의)의 2의 3호.

특히나 세대의 월평균 소득 기준은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1인 가구의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주민등록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별도의 생계를 할 경우, 1인 가구로 분리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받고자 하지만, 소득 기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인별, 세대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하고자 하지만, 주민등록법 제7조에서는 1개의 주민등록지에 1개의 세대만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세대분리신청 민원이 일관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동일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4조 제4항을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세대분리의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 세대분리의 기준설정 등 추가적 고려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5〉 주민등록법 제7조 및 양기대 의원 개정(안)

구분	내용
기존 법[1]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 · 관리 ·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 · 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 · 관리한다. ③ 삭제 〈2016. 5. 29.〉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 · 관리 · 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개정(안)[2]	제7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동일한 거주지에 대하여는 1개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구분된 공간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사유[2]	가족구성 형태의 다양화, 1인 가구의 증가 및 주택청약·복지혜택 등의 사유로 동일 거주지 내에서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확한 관련 기준이 없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대 분리 신청 민원이 상이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대 분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4항 신설).

자료: 1) 주민등록법, 법률 제19228호(2023) -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2) 의안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1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W1U0N1J2A0K1N1J2R9Y4C3B7U4D9에서 2023. 9. 5. 인출.

나. 주거의 질 측면

주거의 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주거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른다.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주거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공표된 이후 변화된 사회적 환경(삶의 질 향상, 경제적 성장,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한 개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아파트의 적정 규모는 32.6㎡(약 9.87평)이지만, 현재 1인 가구의 최저주거 면적은 14㎡로 일본 25㎡, 영국 38㎡(백혜선, 이영환, 박윤재, 최원철, 20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의 상향조정 및 개선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심상정 의원은 2021년 발의안에서 최저주거기준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고, 부부와 자녀 중심의 전통적 표준가구 모델로 설정된 기준을 인구 및 가구구조 등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기준의 충족 또는 미달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 준거를 포함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최저주거기주 미달 가구의 주거이동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는 2022년 7월 최저주거기준의 주거면적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 설정 시 준수사항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신동은 의원의 안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30㎡로 현재의 약 2배 면적이다.

주거 면적 문제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범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고시원, 쪽방 등 1인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는 거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에서 건설되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은 제외된다.

〈표 5-6〉 주거기본법 내 주거의 질 측면에 대한 조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 rowspan="2">주거
기본법</td><td>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u>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u></td></tr>
<tr><td>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td></tr>
<tr><td>최저
주거
기준</td><td>〈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table>
<tr><th>가구원
수(인)</th><th>표준 가구구성[1)]</th><th>실(방) 구성[2)]</th><th>총주거
면적(㎡)</th><th>신동근 의원 개편(안)
면적(㎡)[3)]</th></tr>
<tr><td>1</td><td>1인 가구</td><td>1 K</td><td>14</td><td>30</td></tr>
<tr><td>2</td><td>부부</td><td>1 DK</td><td>26</td><td>40</td></tr>
<tr><td>3</td><td>부부+자녀1</td><td>2 DK</td><td>36</td><td>50</td></tr>
<tr><td>4</td><td>부부+자녀2</td><td>3 DK</td><td>43</td><td>60</td></tr>
<tr><td>5</td><td>부부+자녀3</td><td>3 DK</td><td>46</td><td>70</td></tr>
<tr><td>6</td><td>노부모+부부+자녀2</td><td>4 DK</td><td>55</td><td>-</td></tr>
</table>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 1, 여 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 2, 여 1 또는 남 1, 여 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 1, 여 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 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td></tr>
</table>

자료: 1) 주거기본법, 법률 제18561호(2021).
2)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2011).
3) 의안정보시스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40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Y1X1Q0I0E7N1V9V4K8K3H7A0W0G5에서 2023. 9. 7. 인출.

즉, 현재 법률상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의 질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환경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 주거권은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권이며, 주거지 내에서의 쾌적한 삶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될 필요가 있다.

2. 중고령 1인 가구와 의료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 가구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주요 어려움 중 하나는 '아플 때 대처'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인터뷰 결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1인 가구는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필요할 때 '동의서' 작성의 문제 발생에 따른 우려가 높았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현행 의료법 제24조의 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직계 존·비속 등 원가족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보건복지위원회, 2022). 또한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응급환자의 동행인이 구두로 응급처치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법정대리인이 아닌 동행인은 응급처치 수준에서만 동의가 가능하며, 의료행위 전과정은 법정대리인만 가능하다.

〈표 5-7〉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동의 원칙

설명 상대방(동의의 주체)		설명의 주체	내용	형식
원칙	환자본인	의사 (응급의료 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행위 전(全) 과정	① 서면(수술 등) ② 구두
예외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경우) 응급환자의 동행인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처치	구두
면제·면책	① 설명 동의 절차로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②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③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④ 설명이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 ⑤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애용 등			

주: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와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1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 내용을 이정은(2022)이 정리

자료: 이정은(2022). 노인 환자에 대한 공동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 노년기의 자기결정권 교재개발 연구. 한국 후견신탁연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p. 101. 〈표1〉.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9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성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예: 수술 중 변경사항 발생)에서 수술 설명 및 동의를 구하기 곤란한 경우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하여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국무조정실, 2019. 12. 3.).

또한 국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16512)'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개정안(의안번호 2116512)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원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이에 따라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표 5-8〉 의료법 제24조의 2 개정 발의안

구분	내용
기존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0.]
개정안 신설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중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갈음하여 지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자료: 1) 의료법, 법률 제19421호(2023).
2) 의안정보시스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51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O2A0J6L3J0S1I3T2R4O4V5B7M5Z0에서 2023. 9. 11. 인출.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른 별도의 법정대리인 지정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자와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일이 사전 또는 사후에 법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규정 내에서도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의가 불필요하며, 환자의 법정대리인 및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실질적인 보호자로 볼 수 있는 자의 동의를 구하고 수술 등을 하여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2022).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법정대리인'의 정의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성인은 공식적인 법정대리인이 없으며, 통상 민법에 따라 가족 및 친족 등이 이를 수행한다. 그러나 향후 중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가족 및 친족이 없는 1인 가구가 확대될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대상이 없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9년까지 후견(감독) 접수는 누적 61,693건으로 매우 낮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0). 즉, 현재의 기준으로는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지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현재의 제도상으로 무연고 노인 또는 독거 노인의 경우도 의료행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경우, 응급의료법이 허용하는 예외 상황이 아닌 한 의사는 여전히 환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또는 가족이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포기하는 '가족관계단절(해체)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의료적 결정을 회피하는 경우, 노인 환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절차 개시를 선언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서류상으로나마 가족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는 것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갖는 사회적 분위기, 지자체 내 조직의 성년후견제도 운영 역량 부족, 지자체가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강제할 법적 근거의 부재 등의 문제로 현실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빠른 판단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성년후견제도가 활용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이정은, 2022).

둘째, 의료법 제24조의 2 항목의 모호성이다. 현재 정의되어 있는 법률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병원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조항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증손자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정도로 한정한다(김진욱, 2020. 1. 24.).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법정대리인'의 범위 확대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타 법과의 관계(응급의료법, 장기이식법, 연명의료결정법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

3. 중고령 1인 가구와 생애말기

현재의 중고령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자녀 출산이 보편적이던 시대에 출생한 이들로, 1인 가구로 살아가지만 부모 사후에도 형제자매 등이 각종 법에서 정의하는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래의 1인 가구는 1~2명만을 주로 출산하던 시대에 출생한 이들로 부모 사후 현재의 가족 기준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가족 내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중고령 1인 가구의 생애말기에 발생될 다양한 '자기결정'의 순간에 필요한 결정은 현재의 '가족 중심 법정대리인'에 한정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후견제도'를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생애말기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중 하나인 '연명의료결정', 1인 가구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독사', 1인 가구로 생을 마감

한 이후 발생할 '상속 및 유류분'과 관련된 법안 검토를 통해 '가족'의 범위와 '대리결정'의 문제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가. 후견제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된 후, 민법 개정을 통해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실시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제도가 지니던 한계 – 즉, 피후견인의 권리 제한 및 재산관리에 치중된 후견인의 역할 등 –를 극복하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폭넓은 측면에서 피후견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제도로서 기능한다. 나아가 성년후견제도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후견인을 '친족'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종의 가족제도 중 하나로 인식되던 후견제도의 관점을 전환하였다는 것(신권철, 2013) 역시 성년후견제도가 지니는 의의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의 일종으로, 법정후견은 후견의 성격 및 후견인의 역할 범위 등에 따라 성년후견, 특정후견, 한정후견으로 나누어진다. 법정후견 유형의 다양화는 일률적인 후견 지원이 아닌 피후견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후견의 선택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을 뜻한다.

피후견인의 법정후견 이용은 가정(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며, 본인이나 가족(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청구자로 둘 수 있다. 이후 가정(지방)법원에서 후견개시심판 청구서 등을 검토, 관계인의 진술 청취와 사건 본인에 대한 심문, 피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심판결과를 청구인 및 후견인에게 안내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3). 후견인의 업무에는 재산관리뿐 아니라 의

료행위, 주거지 마련 및 변경 등 일련의 주거 관련 업무,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결정 등과 같은 신상보호와 관련한 행위들이 포함된다. 단, 후견의 종류에 따라 후견인의 업무 및 후견의 지속기한을 달리하는데, 성년후견이 다른 두 후견(특정 및 한정후견)에 비해 후견인의 권리 행사 범위가 더 넓고 후견 지속기한 역시 길다. 다만 유념할 점은 후견인의 역할 확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제철웅, 정민아, 2020). 후견인의 역할 확대의 이면은 피후견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영역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행사범위 측면에서 특정후견이나 한정후견 또는 임의후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성년후견에 치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22)의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 다음 해인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진 후견제도의 누적 접수 건수는 52,301건이나,[13] 제도 시행기간 경과 및 잠재적 후견서비스 이용 수요 등을 고려 시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후견제도 유형별로는 성년후견 82.2%, 한정후견 9.3%, 특정후견 8.2%, 임의후견 0.3%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어(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2), 후견제도의 다양성 역시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나아가 선임된 후견인 비율(2020년 기준)의 경우, 친족 84.6%, 공공후견인 8.9%, 전문가 후견인 3.1% 수준에 그치고 있다(한국법학원, 2020. 2. 26.). 이 같은 결과는 후견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구성원들의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일정 부문 후견 업무가 여전히 가족의 권한으로 인식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

13) 후견사건에 한정하며(미성년후견사건 제외), 후견감독사건은 포함되지 않은 건수임.

〈표 5-9〉 유형별 후견사건 접수 누적 건수(2014~2021)

소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52,301 (100%)	42,999 (82.2%)	4,854 (9.3%)	4,290 (8.2%)	158 (0.3%)

자료: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22).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일본 성년후견 관계 사건의 현황 포함. p. 25.

현재까지 제시한 한계들이 향후 후견제도가 풀어가야 할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 한다면, 내용적 측면에서는 후견인의 임무(권한)와 관련한 한계가 뒤따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에서는 후견인의 임무로 크게 재산관리 및 신상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5-10〉 후견인의 임무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신상결정 등	-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가정법원의 허가 구득) -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를 표할 수 없을 때,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단,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 구득 /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시 사후 허가 청구) -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정법원의 허가 구득)	민법 제947조의 2
재산관리	- 재산 관리(입출금) 및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	민법 제949조

자료: 민법, 법률 제11728호(2013).

이 중 신상결정, 즉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관련한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 실질적인 법적 권한과 실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보건의료적 측면과 관련하여, 민법 제947조의 2항에 따라 일반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결정 대행이 가능한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다만 의료적 침습 행위와 관련하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후견인보다는 직계가족 등과 같은 친족관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이충은, 2019). 나아가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보호자가 진료 요청, 선택진료의 요청 및 변경, 해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보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신권철, 2013; 김상구, 이일학, 2017), 후견인과 보호자 간의 역할 및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 역시 뒤따른다.

또한 민법상으로 후견인은 시설입소 또는 주거변경과 관련한 결정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노인복지법에서는 시설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한 결정을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14]로 규정하고 있는 등(신권철, 2013) 관련 법 간의 역할정리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후견제도의 잠재적 수요층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후견제도의 주요 대상층인 고령자, 이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자립적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사전적 대응 노력 역시 강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후견제도의 근간이 되는 민법에서 부여하는 후견인의 권한 및 역할과 관련 법에서 논의하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의 개념, 역할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후견제도가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친족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을 우선시한다는 문제 등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4) 노인복지법상의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로 규정함(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2021)).

나.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하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제시)은 2016년 제정되었으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를 결정하는 순간에 환자의 의사 확인이 가능한 경우(제17조)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18조)로 구분한다.

먼저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하여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는 의사 1인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진행할 수 있다(제17조 제1호, 제2호). 그러나 환자가 이를 작성하지 않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다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제17조 제3호).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제18조 제2호)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하다. 즉,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의 가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고, 환자의 가족을 통해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결정을 가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지은, 2022).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환자는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거나,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빠지게 되면, 법상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구영신, 2020).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과정에서 법상 가족이 없거나 알 수 없는 이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으나,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대리인 지정제도나 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 결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었다(이지은, 2022). 환자의 의사 확인 또는 추정 과정에 대해 법안에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자(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나 공용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이은영, 이소현, 백수진, 2022). 그러나 아직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와 무관한 제3자가 환자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관한 결정을 대신한다는 법적·윤리적 무게감(구영신, 2020; 이지은, 2022) 등으로 법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5-11〉 연명의료결정법 내 환자의 의사 확인 조항(제17조, 제18조)

내용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2조 제4호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 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 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② 담당의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7.〉

내용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가. 배우자**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7.〉

자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27호(2021).

중고령 1인 가구가 해당될 위험이 높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대리결정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었었다.

구영신(2020)은 이들을 위한 대리결정제도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에서 활용 가능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성년후견인제도와 도입이 논의되는 대리인 지정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세 가지 대안 모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현재 구성인력 및 조직의 객관성 담보 부족, 인프라 부족,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윤리적 적합성 담보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대리결정제의 주체로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둘째, 성년후견인제도는 현재 성년후견인제도 내에서 연명의료의 의료행위 포함 여부에 대한 불분명함,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간과 비용의 소요,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절차 등으로 실효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대리인 지정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대리인이 해당 환

자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환자의 경우 대리인 지정제를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할지 의문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제도나 문화 내에서 적합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면서(이무선, 2018; 구영신, 2020; 이은영 외, 2022; 이지은, 2022), 2023년 2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할 것에 대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의안정보시스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186)). 그러나 해당 안은 계류 중이다. 해당 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의견서(2023a)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 안을 반대하고 있다. 첫째, 대리인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두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하려는 시점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곤란하더라도 미리 작성된 문서에 근거하여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두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에 대한 문제이다. 대리인을 사전 지정할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고, 간호, 간병 인력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두는 방식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는 민법상의 법정대리인과의 충돌문제를 제시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족구조의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가 이미 예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 내에서의 방안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현재 호스피스 신청 시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환자가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은영 외,

2022)을 고려할 때, 본 법 제17조와 제18조의 변경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1인 가구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법안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장사(葬事) 및 고독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고독사예방법)은 2021년 4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고독사'인지에 대한 논의, 즉 고독사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2021년 고독사 예방법 제정 당시 제2조(정의)에서는 "홀로 사는 사람"을 강조하며, 고독사의 대상을 1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1인 가구 외에도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수원 세모녀 사건, 창신동 모자 등)이 발생하면서 2022년 11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3년 개정되었다(의안정보시스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049)). 즉, '고독사'는 1인 가구에 한정되지 않는 '사회적 고립'에 따라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되어, 고독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독사 발생의 주된 위험 대상은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표 5-1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3.〉

자료: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43호(2023).
2) 의안정보시스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04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K2L1J0I3X1C1V0H5U7C4V4Z8F7X5에서 2023. 9. 11. 인출.

그러나 주변인과의 '단절'에 대한 기준과 '임종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의 기간 정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선은애, 2022).

예방적 차원에서의 고독사예방법 외에 생애말기와 관련된 주요 법률 중 하나인 '장사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은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장사(葬事)법에서는 "연고자"를 사망한 자와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즉, '연고자'는 혈연 중심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표 5-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 연고자의 정의

법률	개정안
제2조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제2조 16. 가.~사. (현행과 같음) (신설) 아.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

법률	개정안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 · 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 ·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 · 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을 제공한 사람 자. ----------아목----------

자료: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99호(2023).
2) 의안정보시스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21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3E0Y1X3W0F1H7G2C7L2L0H2Q6P2에서 2023. 9. 14. 인출.

의료법 제17조나 장사법 제2조상으로는 친족이거나 연고자가 아닌 경우 사망신고서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혈연 친족이 아닌 사실적 관계자가 장례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여도 법상 연고자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박준희, 2022).

그러나 '2022년 장사업무안내'에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장사업무안내는 상위법으로부터의 위임이나 재위임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지침에 불과하기에(박준희, 2022),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지원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연고자 규정에 의한 장례진행절차에 대해 임규철(2020)은 '장례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재의 판정(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마940 전원재판부)도 이루어졌다(박준희, 2022에서 재인용). 이에 국회

에서는 연고자의 기준에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을 명시하는 것을 제안(의안정보시스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216)) 하였으나 현재 계류중이다.

해당 안에 대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최근 개정되어 2023년 9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본법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처리)와 유사 조항으로 이 부분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보건복지위원회, 2023b). 즉,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의 범위를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 한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그동안 혈연관계 중심으로 논의되던 '연고자'의 범위를 '다양한 관계를 포함하여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까지로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안	2023. 9. 29. 이후 시행안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 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 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 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 3. 28.〉**

원안	2023. 9. 29. 이후 시행안
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제목개정 2015. 1. 28.]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8., 2023. 3. 28.〉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3. 2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3. 3. 28.〉 ⑥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 3. 28.〉 [제목개정 2015. 1. 28.] [시행일: 2023. 9. 29.] 제12조

자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99호(2023).

물론 앞에서 제안된 제2조 제16항의 개정안과 같이 연고자의 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진일보한 접근이라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우리 사회 저변에 노정되어 있는 혈연 중심의 사고를 일부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 볼 수 있다.

라. 상속 및 유류분

1인 가구의 상속 및 유류분에 대한 논의는 2010년 이후 계속 이어져왔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TF(사공일가)를 통해 1인 가구의 상속 및 유류분과 관련하여 두 가지 법안 개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이다. 이는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이슈화된 것으로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민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이다. 현재의 유류분 제도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등 피상속인의 의사를 불문하고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권리자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형제자매의 경우 1/3)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 상속문화에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기 위해 처음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형제자매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분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에 사공일가 TF에서는 피상속인 유언의 자유를 확대하고 가족 형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를 제안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6. 25.).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즉, 상속의 우선순위는 '혈연' 관계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제시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제1012조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분할을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표 5-15〉 민법 내 상속 관련 법령

내용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내용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료: 민법, 법률 제19098호(2022).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며, 앞에서 언급한 민법 제1000조에서 제시된 상속순위를 바탕으로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다. 즉, 상속은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순위와 민법 제1012조에 따른 유언을 통한 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외 상속에서 고려되는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유류분이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유류분은 유증에 따라 금액 변동이 가능하다. 제111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는 친족상속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는 유언으로 재산처분 내용을 정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일정 범위를 넘는 재산처분은 일정 범위의 친족에 대한 유

류분의 제약을 받는다(최영신 외, 2022). 유류분제도는 앞의 2022년 발표된 사공일가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현재의 사회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민법상 적용되고 있는 상속은 피상속인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친족' 중심의 상속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유언'의 경우도 친족에 대한 유류분의 제약을 받는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혈족의 관계가 간소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재산형성과 부양의 도움을 받지 못한 혈족이 상속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1인 가구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속법제 개편이 필요하다.

4. 소결

1인 가구가 보편적 가구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서 보완이 필요한 중고령 1인 가구 관련 법적 쟁점을 주거권, 의료, 돌봄 및 생애말기 사후처리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권 보장

주택의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의 법제대로라면 중고령 1인 가구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 된다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40~50대의 중장년 1인 가구는 현재 많은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다. 실제 주택청약의 가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부양가족 수'에서 1인 가구는 점수를 거의 받을 수 없기에 청약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청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주된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특별공급주택에서도 자녀가 없는 무

배우 중장년 1인 가구는 제외된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중장년 비혼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가능한 주거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주택을 공급받더라도 전용면적이 제한되는 또 다른 경우는 공공주택특별법 내 장기전세임대주택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하여 장기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타 법의 정의에 따라서도 1인 가구는 주택공급의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주민등록법상 '세대' 규정에 따른 주택공급의 소득 기준으로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분가 시 '세대'에 따라 소득이 산정되어 주택공급 시 소득 기준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정책은 가족을 주택공급의 기본 단위로 전제하며, 출산장려를 방점에 두고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 가구가 보편적 가구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기본적인 안정된 삶을 위한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법제 개편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의 질과 관련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 앞의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코호트인 현재 50대 중장년 1인 가구는 주거의 질이 좋지 않은 환경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의 법제로는 단독세대의 경우 임대주택 제공 시 주거전용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에서는 쪽방이나 고시원 등이 제외되고 있다. 즉, 현재의 법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35조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라 볼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저주거기준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최저주거기준 개정 시 가족 구조의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가 명시된 의료법 제24조의 2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에서의 책임소재 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쟁이 있는 조항이다. 이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입장에서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필요할 때 '동의서' 작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위 조항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 법상으로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법정대리인은 현재의 법적 기준상 직계존·비속이다. 1인 가구 중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작성 가능자의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응급처치 수준에서는 응급환자의 동행인이 구두로 동의가 가능하지만, 이는 응급처치 수준으로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리인 사전지정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대리인 지정의 모호성과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실질적인 보호자로 볼 수 있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수술을 진행하여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현재의 의료법 제24조의 2 항목의 문제는 첫째,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환자 본인의 동의만으로도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내규(보호자 동의서)로 인해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필요한데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이다. 의료법 제24조의 2 항목이 모호하여 현재 다양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은 필요해 보인다. 즉, 법정대리인의 범위 확대와 대리인 사전지정 시 대리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타법과의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등을 고려하여 국민이 의료행위의 책임소재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보장

생애말기에는 다양한 결정의 순간이 발생한다. 현재의 생애말기와 관련하여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가족 중심의 법정대리인'의 한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가족 이외에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은 '후견인 제도'를 통한 후견인 지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후견인 제도는 의료현장 등에서는 친족관계의 동의가 우선되거나, 민법상 시설입소 또는 주거변경 결정권한의 대리권이 후견인에게 부여되지만, 노인복지법상에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 한정하는 등 후견인과 보호자 간의 역할 및 범위가 불명확하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의사결정권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후견인에 대한 민법 내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부양의무자 등의 개념과 역할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할 경우 환자의 가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고, 만약 의사 추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가족이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이 없는 1인 가구가 있을 가능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만약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리결정제도(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통한 결정, 성년후견, 대리인 지정제 등)가 논의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가족구조의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가 이미 예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고려한 법적 개선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의 확대와 함께 우려되는 부분은 고독사와 '무연고자'의 사망에 대한 처리이다. 장사(葬事)법 제12조 제2항의 신설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의 범위를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 한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그동안 혈연관계 중심으로 논의되던 '연고자'의 범위를 '다양한 관계를 포함하여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까지로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제도의 문제이다. 현재의 상속제도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유류분 조항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제한받고 있다. 즉,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으로 재산처분 내용을 정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의 일정 범위를 넘는 재산은 일정 범위의 친족에 대한 유류분으로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친족 간 재산형성의 기여가 점차 낮아지고, 가족구조가 단순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유류분제도에 앞서 피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상속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제2절 중고령 1인 가구 지원 정책 쟁점 분석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형태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부터 1인 가구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견하에 제도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수행된 중고령 1인 가구 지원 정책(조례)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중고령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한계 및 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만 1인 가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 기간이 길지 않고, 특정 생애주기를 구분한 논의 역시 극히 소수로 중고령 1인

가구에 국한한 정책(조례)은 많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서술할 정책 분석 내용은 1인 가구 전반에 대한 정책(조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중 중고령자에 특화된 정책(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1.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내용

가. 관계부처 합동의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중앙정부 단위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최초로 표명한 것은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루어진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으로, 여기에서는 1인 가구의 5대 생활 기반(소득 및 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6. 25.).

구체적으로 소득 및 돌봄 영역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취약 1인 가구의 기본생활 보장, 24시간 케어 및 정신건강 지원 등에 집중하며, 주거 영역에서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유형 주택 활성화 등의 지원 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전 영역에서는 특히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예방 및 위기상황 발생 시의 대응과 관련한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관계망 영역에서는 관계망 강화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고독사 예방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소비 영역에서는 주요 산업별(식품산업, 외식업, 온라인판매업, 생활소비재, 로봇 산업 등)로 1인 가구의 생활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주요 영역별 정책과제를 통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해당 대응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과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선을 통한 생활보장,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돌봄 서비스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가 비교적 생활여건이 취약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전 생애주기를 표방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정책과제가 자립적 생활의 어려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청년, 노년층에 치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부처 간 연계가 필연적인 사업들이 있으나, 사업별로 주관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1인 가구의 욕구에 다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난다.

〈표 5-16〉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주요 영역	정책과제	주요 대상	주관 부서
소득 및 돌봄	-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	-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보건복지부
	- 취약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 재구조화	- 취약계층(청년 등)	
	- 24시간 순회 돌봄 서비스 도입	- 장기요양 수급자 및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수급자(독거노인)	
	-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 전체 1인 가구	
	-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 확대	- 독거노인	
주거	- 청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청년, 고령층 등	- 국토교통부
	-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 전체 1인 가구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및 가구 수요맞춤 공급	- 취약계층(중위소득 130% 이하 등)	
	- 주거급여 분리지급 검토 등	- 청년	
안전	- 여성 등 취약가구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확충	- 취약계층(여성 등)	- 법무부 - 경찰청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시스템 강화	- 전체 1인 가구	

주요 영역	정책과제	주요 대상	주관 부서
사회적 관계망	-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방안 지원	- 전체 1인 가구	- 여성가족부
	- 고독사 예방 노력 강화	- 전체 1인 가구	
소비	- (간편식품산업) 시장활성화 기반 마련 및 고품질화	- 전체 1인 가구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 (외식업) 1인 가구 외식 인프라 구축 지원 및 홍보	- 전체 1인 가구	
	- (생활소비재 및 스마트홈) 1인 가구 관련 상품 개발 지원	- 전체 1인 가구	
	-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 자영업자 온라인 진출 지원	- 전체 1인 가구	
	- (로봇) 청년, 고령층 등을 위한 서비스 로봇 공급 확대	- 전체 1인 가구 (청년, 고령층 집중)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6. 25.).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p. 6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구성함.

나. 중앙부처별 1인 가구 정책 지원

다음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루어진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2020)' 수립 이후 부처별로 수행된 1인 가구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에서 제시한 소관 부처별 주요 과제와 이외 추가적으로 수행 중인 정책과제가 있을 시 이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 여성가족부의 1인 가구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2017년 12월 29일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을 통해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후(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2017. 12. 29.),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서부터 1인 가구를 정책 대상에 포괄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적 흐름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수립에도 이어졌으며, 수립 목표 중 하나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의 여건 보장'에 1인 가구를 가족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시켰다(여성가족부, 2021. 4. 27.). 그러나 중고령 1인 가구에 특정한 내용은 없었으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직·간접적 지원은 〈표 5-17〉과 같다.

〈표 5-17〉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중 1인 가구 지원 내용

세부 영역	주요 과제	관련 부서
(1-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 가족 다양성 관점의 반편견 모니터링 실시 및 홍보 활성화	- 여성가족부,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2-1)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 가족 변화를 반영한 생계비 등 급여 확대 • 가족유형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급여 개선 • 긴급복지급여 확대 및 가족변화를 반영한 지급단위 개선 검토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가족 수요에 맞는 주거 지원 • 취약계층 가족 주거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 환경부
(2-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 통합적 가족서비스 기반 조성 • 지역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능 강화 • 지역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한 가족센터 설치 및 확대 -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3-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	- 지역 공동체 기반의 일상 돌봄 지원 • 1인 가구의 일상적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활성화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여성 1인 가구 등의 안전한 생활여건 마련 • 여성 1인 가구 등 대상 범죄 예방체계 확충 •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시스템 강화	-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자료: 여성가족부(2021. 4. 27.)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구성함.

지원내용 중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은 1인 가구에 대한 직접적 지원 측면이라기보다, 1인 가구를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포함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전반에서 원만히 적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로 인식 개선

또는 인프라 확충(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이하 '가족센터') 및 기능강화와 같은 간접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접적 지원에 해당하는 과제는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급여 개선, 긴급복지급여 확대 및 가족변화를 반영한 지급단위 개선 검토,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와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1인 가구의 일상적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강화, 여성 1인 가구 등을 위한 범죄 예방체계 확충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시스템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경제적 기반 강화와 관련한 정책과제, 여성 1인 가구 등의 안전한 생활여건 마련과 관련한 정책과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정책방안의 연장선이며,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한 과제는 '1인 가구의 일상적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활성화'에 국한된다. 해당 과제에서는 가족센터를 통한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제안한다. 정례화된 정책과제는 아닐지라도 그간 청년, 노년층에 집중되었던 1인 가구와 관련한 서비스를 전 생애주기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내 가족센터(12개소) 확대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긍정적이다(여성가족부, 2021. 10. 7.).

〈표 5-18〉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예시)

생애주기	주요 프로그램
청년	- 사회 진입 예정자 대상 정서, 경제, 생활유지 등 독립생활 준비교육
중장년층	-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자기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관리 교육,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고령층	- 가사,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 기술 교육, 심리상담, 재산, 인생 되돌아보기, 건강한 노년준비 교육

자료: 여성가족부(2021. 4. 27.).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p. 68. 재인용.

여성가족부의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은 기존 1인 가구 지원과 비교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논의되던 1인 가구의 범주를 확장하고 보편적 가족의 하나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기존 1인 가구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고립 방지에 국한되었었다는 점에서, 생애주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주지하였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체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중 1인 가구를 위한 직접적 지원 비중이 여전히 작을 뿐더러 그마저도 취약 1인 가구의 경제적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응방안과 차별성이 적다. 전 생애주기를 표방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한 지점은 주목할 만 하지만, 표준화된 지침 또는 안내가 제시되지 않고 지역 가족센터의 자율성에 따라 사업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정책 운영의 실효성(생애주기별 사업 운영 여부 등)을 가늠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시한 기본계획에서 가족센터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게시되는 사업안내에는 1인 가구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계획-실행 간 정합성 역시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그림 5-1〕 가족센터의 사업운영 및 사업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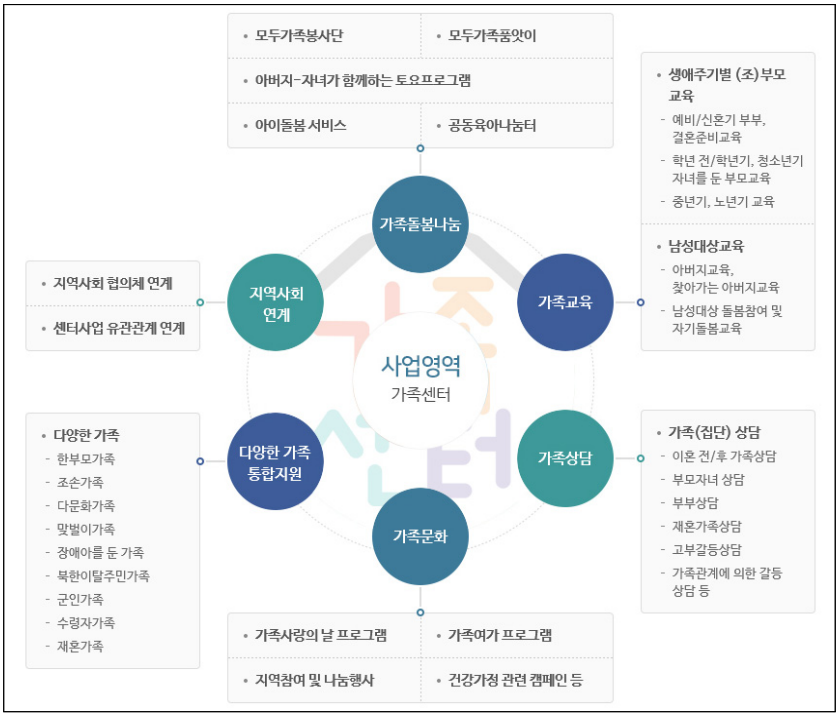

자료: 가족센터(2023). 사업운영 및 사업 영역.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309C339/contents.do에서 2023. 7. 26. 인출.

2) 보건복지부의 1인 가구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1인 가구를 포함시키며, 2023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곧 1인 가구 지원 정책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원 대상 중 하나로 1인 가구를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1인 가구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해당 기본계획 발표 시 논의되었던, 중·장년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일상돌봄 서비스(보건복지부, 2023. 7. 5.)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먼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 해소에 집중한다는 점에서(보건복지부, 2023. 5. 18.), 1인 가구 지원 시 사회적 관계망에 주안점을 두었던 기존의 지원 방안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을 살펴보면(〈표 5-19〉), 고독사 위험군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연결망 강화 등의 기반 구축 사업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사회적 관계망이 단시일 내에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과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이 다르다는 점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 및 연계 지원을 별도로 제시했다. 이 중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춰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 유도, 일상적 돌봄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들의 경우,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위험군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적 개입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노인 위험군은 지역사회 전반에서 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성하에서 정책과제를 모색한다. 기본계획의 방향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 가구를 고립 위험군으로 상정한 접근은 '1인 가구 = 취약계층'이라고 인식하는 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생애주기별 접근 방식과 그간 반복되어 온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서 일상생활 전반과 관련한 서비스 연계·지원으로 서비스 내용을 확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5-19〉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중 1인 가구 지원 내용

추진전략	주요 과제	관련 부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정도 판단	- 위험 정도 판단 도구 개발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 지역 공동체 공간 운영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회관계망 형성	
	- 정보통신기술 활용 연결	

추진전략	주요 과제	관련 부서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중장년 위험군 일상생활 문제 및 관리 지원)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주기적 건강관리 제공 • 중장년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 신설 • 개입거부 중·장년 사회참여 유도 모델 마련 • 조기퇴직 중장년 대상 재취업 지원 강화 • 중장년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강화	-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 의료·건강관리·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 및 제공 •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지체계 구축 • 사전 장례준비를 위한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주: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전략에서 청년, 중장년, 노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 방안을 다루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중장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만 요약함.
자료: 보건복지부(2023. 5. 18.).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7월에 발표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계획(보건복지부, 2023. 7. 5.)'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논의된 중장년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본 계획에서 서비스 이용 대상을 중장년 '1인 가구'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서비스 대상 요건 중 '돌봄자 부재'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중장년 1인 가구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판단되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 중장년층은 연령 또는 소득 기준으로 인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고, 이 같은 제약이 장기간 누적될 시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본 계획을 통해 선제적 차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만 40~64세 중장년층(연령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등에 따라 변동 가능)에게 기본적으로 돌봄 및 가사서비스(돌봄, 가사, 동행지원 등)를 제공하고, 욕구에 따른 특화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할 것으로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7. 5.). 2023년 공모사업을 통해 12개 시도에서 1차 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대상자 선정 및 사업 내용이

다. 우선 사업 대상자 선정이 기존 정책대상 선정과 같이 연령 및 소득 기준에 따른 방식이 아닌, 욕구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표 5-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 기준은 지자체마다 정의하는 '중장년'의 정의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소득 기준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아닌, 욕구에 따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기존의 지원방식과는 차별화된다. 나아가 서비스 이용요건을 돌봄 필요도 및 돌봄 제공자 여부로 설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수요에 따라 이용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기본적인 돌봄 및 가사 지원 이외에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예시로 기재된 식사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맞춤형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 증진 지원 등의 특화서비스 이외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이 소득보장 또는 주거보장 등과 같은 기존 제도의 개선 – 수급 대상의 확대 측면에서 –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본 계획은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서비스 이용은 바우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인부담 차등 지급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표 5-20〉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중 중장년층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사업 대상	- (연령) 만 40~64세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에 따라 연령 기준 변동 가능) 중 돌봄 필요, 돌봄자 부재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돌봄 필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② 돌봄자 부재: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동거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고립 상황에 처한 경우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내용</th></tr>
<tr><td>제공
원칙</td><td colspan="3">-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고독사 고위험군인 경우 우선 제공
-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용한도 외 추가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발생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 비율〉
<table>
<tr><th>기준 중위소득</th><th>기본 서비스</th><th>특화 서비스</th></tr>
<tr><td>기초 수급자, 차상위</td><td>면제</td><td>5%</td></tr>
<tr><td>120% 이하</td><td>10%</td><td>20%</td></tr>
<tr><td>120~160%</td><td>20%</td><td>30%</td></tr>
<tr><td>160% 초과</td><td>100%</td><td>100%</td></tr>
</table></td></tr>
<tr><td>제공
방식</td><td colspan="3">- (지자체) 대상자 선정, 욕구 사정을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바우처 발급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이용자 및 제공기관 간 계약 체결, 바우처 결제</td></tr>
<tr><td rowspan="3">사업
내용</td><td rowspan="2">기본</td><td colspan="2">재가 돌봄 및 가사서비스
① 재가 돌봄 : 돌봄 및 신체, 일상지원 서비스
②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등의 가사서비스
③ 동행 지원 :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보조</td></tr>
<tr><td colspan="2">서비스 제공량(시간)에 따라 서비스 제공 유형 분리
① A형: 월 36시간형(돌봄+가사 모두)
② B형; 월 12시간형(가사만)
③ C형: 월 72시간형(완전히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한 경우, 심한 고립 및 우울을 경험하는 예외적 경우)
④ D형 : 특화서비스만 이용(타 공적 서비스 이용 시)</td></tr>
<tr><td>특화</td><td colspan="2">지역 상황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본인부담+ 최대 2개)
- 아래 제시한 모델 중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공
① 식사/영양관리: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② 병원 동행: 거동 불현 대상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등 지원
③ 심리 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 지원
④ 휴식 지원: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 보호 지원
⑤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⑥ 소셜 다이닝: 생활 요리 교육 및 함께 식사
⑦ 교류 증진 지원: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td></tr>
</table>

주: 자료 중 중장년 지원 대상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자료: 보건복지부(2023. 7. 5.).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다음으로 노인 1인 가구, 즉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이 유일하며 현재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까지 수립된 상태이다. 독거노인의 규모가 늘어나고, 특히 삶의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 독거노인 역시 증가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수립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볼 수 있다.

제2차 대책에서는 예방적 지원과 돌봄 인프라 불충분성 등으로부터 돌봄 사각지대가 지속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독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독거노인 자립 역량 강화, 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의 4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4.). 이 중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이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차원의 간접적 지원이라 한다면, 앞선 세 가지 주요 과제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다수 정책과제가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하여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내 돌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정책 사각지대로 분류될 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사회참여와 관련한 정책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독거노인만을 위한 사업 발굴이라기보다 일자리 사업 연계 시 독거노인 우선 참여,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산 차원에서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연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5-21〉).

독거노인 돌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도입으로 이어졌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가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진 않지만, 서비스의 주요 대상을 고려할 때 독거노인을 위한 주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2023년도 기준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사업 대상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표 5-21〉과 같다. 앞의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일상돌봄 지원서비스와 같이 '돌봄 욕구(또는 필요도)'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직접(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은 유사하다. 다만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앞의 중장년 1인 가구 서비스가 연령 및 소득 기준에서 좀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는 연령 및 소득 기준을 더 보수적으로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표 5-21〉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 및 2023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요약)

구분	분야	정책과제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원 대상 및 서비스 확대 - 잠재/초기 독거노인 예방적 서비스 제공 - 위기취약 독거노인 안전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거주 지원 환경 개선	- 주거 및 돌봄 기능의 융합 등 정주여건 개선 - 지역 돌봄 활성화를 위한 재가서비스 강화
	독거노인 자립 역량 강화	-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임파워먼트 - 독거노인 일자리 참여 확대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개선 - 정책지원 기반 강화 및 사회적 인식개선 -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제고
구분	대상	서비스 내용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등 • 신체적, 정신적 기능저하로 돌봄 필요 노인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구분) ① 중점돌봄군: 신체기능 제한 자 ② 일반돌봄군 :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자	-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 사회참여 •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 •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연계 등 - 특화서비스 - 사후관리서비스 등

주: 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8. 4.).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
2)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 법무부의 1인 가구 지원 정책

법무부에서는 2021년 2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를 구성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하였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22. 1. 27.).

해당 TF는 1인 가구가 현재 당면한 문제뿐 아니라 향후 예견되는 사회적 욕구 해소의 측면에서 기본법(민법, 가족법 등)의 개선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특정 1인 가구(청년 또는 노년 등과 같은 생애주기별 분류)에 대한

논의라기보다, 1인 가구 전반과 관련된 논의로 볼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안은 〈표 5-22〉와 같다.

구체적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는 기존 상속제에서 인정하고 있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권리를 폐지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현재 가족구조 변화의 흐름과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자는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은 현행 법상에서 1인 가구의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 것이 1인 가구의 가족을 구성할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상속권 상실제도, 주거침입죄의 형량 강화 등이 함께 제안되었다.

법무부에서 제안된 기본법 개정 논의는 앞에서 살펴본 부처별 개별 정책에 대한 지원과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세부적인 정책보다는 1인 가구가 당면해 있거나 당면할,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 왔었으나, 보편적 가구형태로서 1인 가구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논의의 재점화가 이루어졌다. 즉,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법·제도의 개선이 연동됨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1인 가구와 관련한 논의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던 것에서 나아가 생애말기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표 5-22〉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의 법제도 개선 주요 내용

개선 법안	주요 내용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 (민법 개정)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 → (2021. 11. 9.)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 25세 이상일 경우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 허용,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 강화 → (2021. 11. 9.)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주: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부 정리함.
자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2022. 1. 27.).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 발표. 법무부 보도자료.

4) 국토부의 1인 가구 지원 정책

주거지원과 관련한 정책은 주택 공급 지원, 주택 기금 마련(대출) 등으로 나뉘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국토교통부, 2022). 다만 해당 계획에서 1인 가구에 한정하여 추진되는 과제는 부재하며, 취약계층에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즉, 1인 가구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경험할 것으로 예견되는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사다리 회복'의 목적으로 포함된 공공분양 공급 확대 과제에서는, 향후 5년간 총 50만 호 이상의 공공분양 공급을 청년층 및 무주택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고령자복지주택(만 65세 이상) 등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주거와 복지서비스(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를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정책들이 1인 가구만을 위한 지원정책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중에서도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의 비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 공급 이외에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대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리빙하우스'에 대한 관련 규제를 정비할 것으로 발표하였다(이예슬, 2023. 2. 23.).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한다.

기존 주거지원 정책이 3~4인 규모의 가족 단위로 구성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관련 정책

들이 청년 또는 노년층에 집중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다. 특히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고, 지역별로 주거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상이하나(박미선, 우지윤, 2021) 아직 해당 생애주기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2. 지자체의 중장년 1인 가구 조례

지자체 단위에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살피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다. 조례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모두 제정 가능하나, 본 고에서는 광역(17개 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는 중앙 단위의 대응방안이 모색된 2020년 이후에 다수 제정되었다. 하지만 중장년과 같이 특정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한 1인 가구 조례는 부재하였다.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1인 가구 조례를 설정한 지역은 총 14개 지역이었고,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취사나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로 상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생활 전반(주거복지(지원), 사회적 관계망, 식생활, 여가생활, 범죄 예방 및 안전, 돌봄 및 건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최근에 조례가 지정된 지자체일수록 지원 규모를 광범위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체 1인 가구가 아닌 사회적 고립 1인 가구(고독사 고위험집단)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방지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1인 가구 조례와는 별개로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를 지정한 곳이 다수였으나,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정의가 지자체마다 상이하였다. 1인 가구를 사

회적 고립 가구로 상정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사회적 고립 가구를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정의(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모든 가구)하는 등 지자체마다 1인 가구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였다. 현재까지 대다수 조례의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자체마다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조례가 갖는 법적 지위의 한계로 보인다.

〈표 5-23〉 광역 지자체 1인 가구 조례

구분	시행 연도	대상자 기준	주요 사업									
			주거 복지 (지원)	사회적 관계	공동 생활 가정 지원	식생활 지원	여가 지원	경제적 지원	안전 지원	돌봄 및 건강	생활 환경 개선	기타[2]
서울	2021	전체 1인 가구	O	O	O	O	O	O	O	O	O	O
부산	2023	전체 1인 가구	O	O		O	O	O	O	O	O	O
대구	-	-										
인천	2022	전체 1인 가구	O	O	O	O	O	O	O	O	O	O
광주	2019	전체 1인 가구	O	O		O	O	O	O	O	O	O
대전	2019	전체 1인 가구	O						O			O
울산	2019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O		O			O	O		O[3]
세종	2021	전체 1인 가구	O	O	O		O		O	O		O
경기	2020	전체 1인 가구	O	O			O		O	O		O
강원	2023	전체 1인 가구	O	O			O		O	O		O
충북	-											
충남	2022	전체 1인 가구	O	O		O		O				O
전북	-											
전남	2020	전체 1인 가구	O	O					O			O
경북	2023	전체 1인 가구	O	O		O	O			O		O
경남	2019	전체 1인 가구	O	O					O			O
제주	2021	전체 1인 가구	O	O		O	O		O	O		O
	2020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O		O			O	O		O[3]

주: 1) 대구, 충북, 전북 지역의 경우 광역 단위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으나,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
2) 기타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연구 진행 등의 간접지원 사업이 해당됨.

3)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 방문 간호 서비스, 정부 지원 사업 및 민간복지 자원 발굴, 연계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됨.

자료: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1)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a).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11000055000029&histNo=004&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2)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b).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26000003003045&histNo=003&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3)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c).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28000023010010&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4)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d).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29000017002017&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5)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e).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30000008004088&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6)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f).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36110107244035&histNo=002&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7)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g).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000042005022&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8)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h).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2000040005044&histNo=002&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9)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i).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4000007001053&histNo=002&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10)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j).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6000023000066&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11)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k).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7000039000037&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12)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l).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8000011007014&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13)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m).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50000008007035&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부가적으로 광역 지자체별 중고령자 지원 조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중고령자'로 검색되는 조례는 부재하였으며, 대다수 조례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제정되어 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표 5-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 단위에서 중장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6개 지역에 불과하였다. 중장년층을 규정하는 하한 연령(만 40세 또는 만 50세) 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하였으며, 대부분 중장년층의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조례가 운영되었다. 중장년층의 경우, 생애주기적으로 경제활동에 주력하는 연령대인만큼 지자체에서도 해당 집단의 취(창)업 연계 및 사회참여 활동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교적 폭넓은 관점에서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경기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자체 단위에서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1인 가구 전반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대다수 지자체가 이에 해당한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높은 편이나, 생애주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세심한 접근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둘째, 중장년층에 대한 별도의 조례 편성 방식이다. 다만 1인 가구에 비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낮고 중장년층의 생활 전반보다는 일자리 지원에 국한하여 이모작지원센터, 중장년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한계가 있다.

〈표 5-24〉 광역 지자체 중장년 지원 조례

구분	시행연도	대상자 기준	지원 영역
서울	2023	(연령) 만 40~65세 미만	일자리 지원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구분	시행연도	대상자 기준	지원 영역
대전	2019	(연령) 만 50~65세 미만	일자리 지원 / 건강 증진 / 문화 및 여가활동
울산	-		
세종	-		
경기	2019	(연령) 만 50~65세 미만	교육 / 사회공헌 활동 / 문화 및 여가 / 건강 증진 /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 / 일자리 지원
강원	-		
충북	2023	(연령) 만 50~65세 미만	일자리 지원
충남	2021	(연령) 만 50~65세 미만 (성별) 여성	일자리 지원
전북	2020	(연령) 만 40~65세 미만	일자리 지원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자료: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1)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n).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11000049000100&histNo=002&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2)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o).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30000008003062&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3)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p).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000043006002&histNo=003&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4)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q).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3000006007041&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5)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r).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4000007001059&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6)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s).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5000038001030&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3. 소결

현재까지 살펴본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지원 내용을 요약한 것은 〈표 5-25〉와 같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진 주요 정책들을 볼 때, 전반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접근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생활 전반 또는 돌봄의 사각지대로 1인 가구를 상정하여 그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보거나,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으로 간주하는 등 부처별로 1인 가구에 대한 접근방식을 달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1인 가구를 취약가구로 인식하는 것이 대다수 정책의 경향성이다.

나아가 생애주기를 구분하여 중고령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특화된 접근을 명확히 선언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정책(서비스)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라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경향이 강하고, 그로 인해 서비스 내용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정책들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해소에 방점을 두거나,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의 생활 여건 개선(소득 지원, 주거 개선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이 같은 정책들 역시도 중고령 1인 가구의 생애사건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측면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주택 공급 확대 -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제정한 상태였으며, 1인 가구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상정하였다. 지원 영역의 경우, 조례 제정연도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 약간씩

의 차이를 두나, 대다수 다방면의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대응과 조치를 마련해 나감을 알 수 있다. 다만 조례의 법적 특성상 구체적인 정책(서비스) 내용이 명시되진 않으며,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운영 내용(방식)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5-25〉 중앙정부 및 광역 지자체의 중고령 1인 가구 지원 정책(요약)

구분	부처별	관련 정책(계획)	1인 가구 접근방식	중고령 지원 여부	주요 서비스 영역
중앙	부처 합동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취약가구+보편적 서비스 대상	△	- 소득, 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여성 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다양한 가족 중 하나로 상정	○	- 돌봄, 건강, 주거, 문화 및 여가, 안전, 사회적 관계망 등
	보건 복지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고립 위험군	○	- 돌봄, 건강, 주거, 문화 및 여가, 안전, 사회적 관계망 등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보편적 서비스 대상	○	- 돌봄, 건강, 사회적 관계망 등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	고립 위험군	△	- 돌봄, 건강, 주거, 문화 및 여가, 안전, 사회적 관계망 등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	보편적 서비스 대상	△	- 생애말기 자기 결정권, 입양 등
	국토 교통부	주택 공급 및 지원 정책	서비스 취약계층	△	- 주거 지원(공급)
지자체	지자체	1인 가구 조례 (14개 광역 지자체 제정)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13)[1]	△	- 돌봄, 건강, 주거, 문화 및 여가, 안전, 사회적 관계망 등
			사회적 고립 취약가구(2)[1]	△	

주: 1) 괄호 안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수를 의미함. 지자체 1곳(제주)에서 관련한 2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괄호의 합이 조례를 지정한 전체 지자체 수(14개)보다 큼.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중고령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을 기반으로 한 삶의 영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정책은 가구를 준거집단으로 설계되고 있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접근방식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 1인 가구에 대한 생애주기별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 가구에 대한 기존 정책은 전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경향이 강하며, 중고령층이 경험하는 생애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부재하다. 생애주기에 따른 접근이 이루어질지라도 청년, 노년 세대와 관련한 정책과제 논의가 주를 이루며, 상대적으로 중고령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적다. 특히 이 같은 정책의 쏠림 현상은 소득 보장, 돌봄, 주택 공급(지원) 등에서 두드러진다. 나아가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더라도, 최근에 제시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의 가구형태가 지속된다고 할 때, 이들이 노년 1인 가구로 진입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누적 불평등 이론(Cumulative disadvantage theory)[15]을 고려할 때, 노년기는 생의 불평등이 축적되는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어, 중장년 시기에 대한 개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아직까지 1인 가구에 대한 접근방식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작되었던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수립 시, 1인 가구를 취약계층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지양해야 함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정책과제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바 있다. 이후 수립된 타 부처의 정책과제들 역시 고립 위험군, 서비스 취약계층 등으로 1인 가구를 인식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이러한 흐름은 시대적 변화 및 1인 가구 형성의 자발성 여부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1인 가구를 보편적 서비스 대상으로 간주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보이며, 이 같은 시도가 향후 확

15)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생애주기를 통해서 축적됨(DiPrete and Eirich, 2006).

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 이는 위의 1인 가구에 대한 접근 방식과 연결되는 것으로, 취약계층 또는 고립집단으로 1인 가구를 간주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 대다수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 소득 보장, 주택 공급(지원)에 치중되어 있다. 이제는 좀 더 선도적인 차원에서 1인 가구의 욕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법무부 TF 활동은 그간 주류로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변화 속도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1인 가구가 보편적 가구형태 중 하나로 인정되어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것에서 나아가, 중고령 1인 가구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인 정책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례로 성년후견제도 중 의사결정지원의 성격이 강한 임의후견제도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 김희경(2023)에 따르면, 중장년 1인 여성가구들은 대다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적 처치나 수술 등과 같은 의료적 결정에 있어서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의 보호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준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74조), 혈족 중심의 가족관계를 근간으로 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법적 개정과 함께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논의, 나아가 1인 가구의 신상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후견인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또한 이들이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웰다잉의 한 축으로 장사지원(관리)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이 같은 측면

에서 시신 인수 및 장례주관자의 범위를 확대(혈족 중심에서 장기적,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 논의(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2023.1.6.)들이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중고령 1인 가구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노년기에 원활히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추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촉구되는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기존과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중고령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해 주요 5개국의 현재 중고령 1인 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인 주안점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주요 4개 영역(주거, 의료 및 돌봄, 정서, 생계지원)별 제도 및 정책 개입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 마련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주요 5개국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선정하였다. 먼저 복지국가 유형과 사회복지제도 운영 이력 등을 고려하여 Esping-Andersen(1990)이 제시한 복지국가 유형 구분에 따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인 미국과 영국,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인 독일,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을 선정하였다. 이들 4개국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더하여 1인 가구를 위한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권에서 우리보다 좀 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을 선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의 제3장과 제4장에서 도출된 중고령 1인 가구의 삶의 주요 이슈들을 반영하여, 주거영역, 의료(돌봄)영역, 정서지원, 생계지원으로 분류하여 주요국의 중고령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1. 주요국의 중고령 1인 가구 규모 및 정책의 주요 특성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요 5개국의 1인 가구 대상 주요 정책 흐름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50세 이상 중고령 1인 가구는 2,532만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68%를 차지하며(Ruggles et al., 2013), 이에 따라 1인 가구 집단 내 이질성도 매우 높은 특성을 갖는다. 미국은 기본적인 공공부조와 사회보장 서비스 외에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1인 가구 지원 정책도 취약계층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성을 중시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남녀 간의 결혼 외에 동성 또는 이성의 1인 가구의 결합을 인정하거나, 사전의료지시 허용 등 존엄한 삶의 마무리 단계까지 개인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 등의 마련을 통해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1인 가구는 주로 '단신세대(単身世帯)'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약 2,10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Statistics of Japan, 2020). 이 중 일본의 50대 이상 중고령 1인 가구는 약 1,000만 가구이다(Statistics of Japan, 2020). 일본의 중고령자를 위한 주요 정책은 1995년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며(内閣府, 2023), 국가가 주도하는 돌봄서비스로 개호보험, 지역포괄지원센터 등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돌봄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 주거지원 서비스, 시범적 성격의 안심생활창조사업(후생노동성 주도)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고령 1인 가구의 경우 주거 및 돌봄 영역 지원에서 '단신가구'로 자격조건이 명시되어 2인의 부부가구 등에 요구되는 부가조건 없이 각종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의 1인 가구는 약 1,700만 가구로 타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체 가구의 40%가 넘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50세 이상의 중고령 1인 가구는 2022년 추정 약 1천만 가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

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3). 독일은 독일연방의 국민이라면 기본권에 입각하여 빈곤, 질병, 실업, 노화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비례하여 사회보험 서비스를 받거나 상황이 어려울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의 중고령 1인 가구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장기요양(수발보험), 주택지원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또는 집단을 중시하기보다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1인 가구가 형성하는 결혼 이외의 생활방식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등 다양한 생활방식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영국의 1인 가구는 총 834만 6천 명으로 전체 2,800만 가구 중 30%를 차지한다. 이 중 45세 이상 중고령 1인 가구는 677만 가구로 1인 가구의 81%를 차지한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3). 현재 영국의 1인 가구 지원의 방향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Bennett & Dixson, 2006). 첫 번째는 빈곤, 불평,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1인 가구가 겪기 쉬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주택정책의 관점에서 1인 가구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은 구매력과 주택수요로 주택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관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자본과 건강 정책 측면에서 1인 가구의 고립되기 쉬운 상황과 이에 따른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자본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이명진, 2019). 이 외에도 영국에서는 1인 가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부부와 가족이 누리는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법안 개정과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스웨덴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480여만 가구 중 1인 가구(Ensamhushall) 비율이 40%를 상회하며, 이 중 50세 이상의 중고령 1인 가구는 약 120만 명에 이른다(Statistikdatabasen, 2023). 스웨덴은 주

요 유럽국(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하게 1인 가구 정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기보다 각종 복지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기본적인 복지제도에 사회부조와 주택수당을 중심으로 1인 가구 정책을 펼치고 있다(이명진, 2019). 또한,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1인 가구의 '비자발적 외로움(ofrivilliga ensamheten)' 해결을 위해 법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2. 주요국의 중고령 1인 가구 관련 정책 및 법제 현황

가. 생활공동체 구성의 다양화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은 성(性)에 국한되지 않는 1인 가구의 결합을 인정하였으며, 국가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2023년 기준 연방법에 따라 동성 간 결혼이 인정되어 일부 주를 제외하고 1인 가구 중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가족 구성이 가능해졌다. 미국은 1996년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DOMA)을 통해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고 보호하여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 결혼보호법(DOMA)에서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 이어 2015년에는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례로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동성 결혼이 인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Larson, 2022). 그리고 마침내 2022년 미국 양당의 초당적 노력으로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이 통과되었다(Bromley-Trujillo, Nolette, 2023).

독일 역시도 민법 1353조에서 혼인은 동성 또는 다른 성별의 두 사람 간 맺어진 공동체로서 규정하였다. 1970년 비혼인 개인 간의 공동체의 결합을 법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인정해왔고, 이후 판례에서 결혼과 유사

한 형태의 동거를 인정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조은희, 2020). 독일은 '등록된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법률(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를 제정하면서, 동성 간의 생활동반자 관계가 일반화되었다. 독일은 1990년대 후반 혼인을 제외한 1인 가구 간의 결합에 대해 법적인 지위를 인정 및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사회적인 갈등과 입법 논의를 거쳐 2001년에 '등록된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법률(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LPartG)'을 제정하고(홍윤선, 2014), 남녀 간의 결혼 이외의 생활방식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하는 데 이르고 있다.

영국은 1인 가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부부와 가족이 누리는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결혼이라는 제도 외에 함께 살고자 하는 개인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한 부부와 결혼하지 않고 동거 중인 커플 간의 법적 구분을 줄이고자 동거 관련 법 체계(legal framework of cohabitation)를 개정하였다. 구체적인 변화 중 하나는 결혼과 동거 상태인 1인 가구들을 동등하게 보는 것인데, 다만 자녀 양육의 관점에서 아이가 있고, 이를 돌보는 사람이 있을 경우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부모'의 자격이 있는지를 강조한다(송효진 외, 2021). 또한 동성 1인 가구 간의 결합에 있어서는 2004년 시민 파트너십 법안(Civil Parnership Act)을 제정하여 동성 커플에게 결혼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2013년 'Marriage Act 2013'을 통해 동성혼은 합법이고, 현재 파트너십 법안에 있는 커플도 결혼으로 전환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송효진 외, 2021).

스웨덴은 1인 가구의 결합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법적 인프라를 오래전부터 갖추고 점차 다양화, 개인화되는 스웨덴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전통적인 결혼 계약 외의 남녀 간, 동성 간의 동거에 대해 1973년 미혼 동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동거법(Cohabitees Act)을 통과시

켜 동거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의 소유와 분할, 처분 등에서 결혼보다 취약한 법적 관계를 보장하고자 하였다(송효진 외, 2021). 또한 남녀 간의 결혼 외에 동성의 1인 가구 간의 결합과 공동생활을 고려하여 1987년에 동성커플의 동거 관계를 인정하였다(Sveriges riksdag, 1987). 1994년에는 공인된 시민 파트너십(Registered Civil Partnership Act)법을 통해 동성 간의 법적 혼인관계가 인정되었으며(Sveriges riksdag, 1994), 후속 법안 통과로 입양(2003년)과 보조적 출산(2005년)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엔 결혼법(Marriage Code)을 개정하여 동성 간의 결혼관계를 공식화하였다(Regeringskansliet, 2013).

이처럼 1인 가구의 결합에 대해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를 반드시 동성 간의 결혼과 이성 간의 결혼이라는 성(性)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로 적용하기보다는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한 생활동반자 형태의 동거로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결혼'이라는 제도에 구속되기보다는 결혼 외에도 개인이 1인 가구로 살아가면서 동반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1인 가구 결합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나. 주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하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1인 가구 주거 지원 정책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자가 보유를 확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주택금융 정책, 주택 관련 규제완화, 소규모 주택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형태의 주거비(임대료) 지원 등

4가지 종류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김윤영, 2017; 정순희, 2019). 이 중 싱글룸 프로그램(Single Room Occupancy(SRO) program)은 취약계층 대상의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3). 이를 통해 중고령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인 비용으로 주거지를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다. 본 제도는 1987년 제정된 매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을 근간으로 하며, 1997년 다가구 주택개혁법(Multifamily Assisted Housing Reform and Affordability Act of 1997)을 통해 주거의 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다. 본 제도는 정부(연방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주도로 지역사회 내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개조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으로 바꾸어 제공한다. 공급자인 건물 소유주는 사회의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하게 되고 정부로부터 임대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혜택이 있다. 수혜자인 1인 가구 이용자는 적정 주거면적과 사생활이 보호되는 주거지를 공급받게 된다.

일본은 2001년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고령자의 주거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1년 개정을 통해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サービス付き高齢者住宅)'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사회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령자 친화적인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23a).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의 입주자 조건은 60세 이상의 1인 가구 또는 부부 가구이므로(国土交通省, 2008) 이를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본 제도는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자체(도도부현)별로 일정 조건(주거면적, 배리어 프리 기준 충족)에 해당하는 주택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기업 또는 각종 복지법인에게 각종 보조금 지원, 세금 혜택, 대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은 중고령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세대 주택(Mehrgenerationenhaus)에서 다른 1인 가구 또는 2인 이상의 가구와 함께 거주하며 공동체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다세대 주택은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형태이다. 거주자의 연령대는 2017년 기준으로 45세 이상이 41%가 넘으며(Miersch, 2018),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혼자 사는 중고령 가구는 점차 건강이 악화되고 지역사회와 가까운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경우, 이웃과 단절되지 않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돌봄과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장민선, 2016). 다세대 주택은 구조 면에서 중고령 1인 가구가 다른 연령대와 함께 상호교류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독일 전역에 530개의 다세대 주택이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3a).

영국의 주거정책은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중 중고령 가구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1인 가구 간 정서교류 측면을 고려한 공동주택인 코하우징, 그리고 돌봄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1인 가구에 적합한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1인 가구 대상 주민세 할인 혜택이 있다. 중고령 1인 가구 중에서 아직 건강 측면에서 개인이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생활 형태(공동주거 형태)의 코하우징의 주거시설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10~40가구 사이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고립을 방지할 수 있다(Community Led Homes, 2018). 또한, 중고령 가구 중 55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긴급서비스 등 돌봄 관련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에 거주가 가능하다(Age UK, 2022). 특히 중고령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방식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므로 관리하기가 쉬운 작은 규모의 보호주택에서 살게 된다. 보호주택에는 도움을 주는 관리 직원이

있고 24시간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며, 공용 커뮤니티 시설에서 주민들끼리 사회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중고령 1인 가구는 한국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의무 납세인 지방(주민)세(Councel Tax)를 25%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청구 시 납부 기준이 최소 2인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청구서를 받을 경우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UK Government, 2023a).

스웨덴의 1인 가구는 기본적인 복지제도에 더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또는 노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 등이 있다. 중고령 1인 가구에 집중해서 보면 공동생활주택인 코하우징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1인 가구의 정서적 외로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하우징은 과거 1930년대 출산과 육아 등 전통적으로 여성이 갖는 육아, 돌봄의 부담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선호되던 주거 형태였으나(Vestbro & Horelli, 2012; Vestbro, 2014), 현재 관점에서는 중고령 1인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이웃들과 공동체 활동을 하며 사회적인 유대를 맺는 데 장점이 있는 주거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스톨프뤼크칸(Stolplyckan)과 페르드크네펜(Färdknäppen)이 있다. 먼저 스톨프뤼크칸(Stolplyckan)은 복도 시스템으로, 140개의 건물이 연결된 임대 단지로서 임대 및 일반 아파트와 식당, 카페, 프로그램실, 여가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다. 공용이용시설에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교류하며 공동체 간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였다(Stolplyckan, 2021). 다음으로 40세 이상 중고령자가 다른 세대와 함께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공간인 페르드크네펜(Färdknäppen)이 있다. 인생 후반기를 맞이한 중고령 1인 가구가 돌봄을 받기보다 직접 주거공간을 관리하고 타인과 쉐어 하우스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건강한 중고령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체이다(Kollektivhuset Färdknäppen, 2023).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스웨덴의 코하우징 형태의 주거시설은 중고령 1인 가

구가 거주할 경우 지속적으로 다른 연령대의 사회 구성원과 관계를 맺고, 주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림 5-2〕 스톨플뤼크칸 내부 지도(좌)와 페르드그네펜 입구 평면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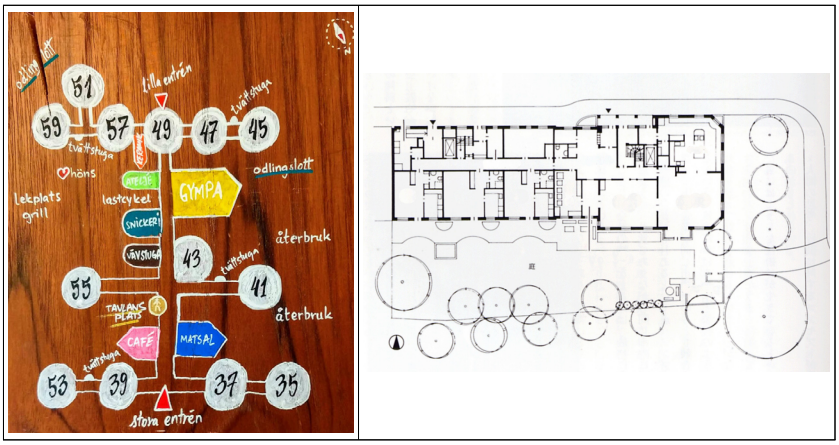

자료: 1) Stolplyckan(n.d.). Gemensamma rum & saker. https://www.stolplyckan.se/lokaler/에서 2023. 7. 30. 인출.
2) Kollektivhuset Färdknäppen(2017). Entrévåningen. https://fardknappen.se/category/om-oss/에서 2023. 7. 23. 인출.

다. 의료 및 돌봄

중고령 1인 가구에게 의료 및 돌봄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앞의 중고령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내용에서 검토하였듯이, 1인 가구는 병원 방문 시의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과 향후 돌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주요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해 환자가 응급 상황 등 중요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 등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대리인이 의료 결정을 내리도록 사전에 의사결정권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다. 1993년 제정된 통일의료결정법(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UHCDA)을 근거로 중고령 1인 가구는 대리인을 통해 본인의 연명치료 결정 등을 포함한 사전의료지시(advance health Care directives)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김보배, 김명희, 2018; 이지은, 2021). 이를 통해 중고령 1인 가구는 만일의 경우 본인에 대한 의료행위 결정을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성인(친구, 친척, 이웃 등 의료진이나 종사자는 제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맡길 수 있다. 본 제도를 통해 중고령 1인 가구는 자기결정권을 갖고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주요 돌봄 정책 중 하나인 지역포괄센터는 지역사회 내 3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한 센터에서 상담을 포함한 종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프라로, 2022년 4월 기준 5,404개소(지소 포함 시 7,409개소)가 마련되어 있다(厚生労働省. 2023b). 지역포괄센터의 주요 4가지 업무는 개호예방 케어매니지먼트, 종합상담, 권리옹호, 포괄적·계속적 케어매니지먼트 업무로 구분된다. 지역포괄센터의 업무는 1인 가구보다는 고령자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1인 가구에 집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23b). 대표적인 사례는 교토의 사회복지법인 녹수회(緑寿会)의 1인 가구 전 세대 방문사업을 들 수 있다(緑寿会, 2023). 이 중 Door-to-Home 프로젝트는 교토시 거주 고령 1인 가구의 정보를 받아 지역포괄센터 직원이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더해 미마모리(모니터링) 활동 추진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교토시 내 위급 상황 시 대피를 원활히 하기 위해 1인 가구 명단을 파악하고 지역 센터 및 복지 기관과 연락처를 공유함으로써 각 세대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며, 소속 지자체에 정보공유를 위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라. 정서

중고령 1인 가구의 정서적 고립 문제는 향후 고독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개입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에서 집중하고 있는 정서적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 가구의 안부 확인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지켜보는 돌봄서비스인 '미마모리(見守り: 지켜봄)서비스'라고 불리는 예방적 성격의 안부 확인 서비스에 중점을 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임덕영, 2020). '미마모리' 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일반 산업 현장 등 다양한 주체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표현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고령자 1인 가구의 모니터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미마모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먼저 지역사회 차원에서 반상회, 지역 내 전문단체 등이 협력하여 고령의 지역주민을 위해 미마모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아오모리시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출퇴근 등 평소 생활에서 이웃의 노인과 지속적으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행동 등 변화가 보일 경우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전문 상담 창구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때, 미마모리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민은 노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과도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의 몇 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青森市役所, 2023)

다음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또는 민영)기관의 미마모리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우편과 가스 등 대부분의 모든 가정과 관련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우체국과 가스회사들이 대표적이다. 일본 우편국은 유료 모니터링 서비스로 직원이 월 1회 방문하는 안전 확인과 매일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郵便局, 2023). 부가적으로 자동응답 형식으로 안부 확인을 받거나, 보안회사와 협약을 맺고 응급 상황 출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가족-노인 청소년부는 2018년부터 고령 1인 가구의 정서적인 외로움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공익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3b). 이 중 전국적 네트워크를 지닌 비영리 재단 Malteser는 정부재원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노년기의 지역사회와의 연결(Miteinander - Füreinander: Kontakt und Gemeinschaft im Alter)'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2020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 독일의 112개 지역에 총 7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Malteser, n.d.). 본 프로젝트에 속한 자원봉사자는 1인 가구 노인에게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안부 확인 서비스, 여가생활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 노인들이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사회적 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표 5-26〉 '함께, 서로를 위해' 프로젝트의 목표

개인적 목표	사회적 목표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감소 또는 예방 - 오랫동안 행복하게 집에서 거주 - 외로움, 사회적 고립에 의해 유발되는 건강 위험 감소 - 사회 생활에 참여	- 외로움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 - 세대 간 관계 강화하기 -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 위험 감소

자료: Malteser(n.d.). Miteinander-Füreinander: Kontakt und Gemeinschaft im Alter. https://www.malteser.de/miteinander-fuereinander.html에서 2023. 7. 30. 인출.

영국은 1인 가구의 정서적 외로움을 국가적 의제로 다루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중앙정부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이른바 외로움 담당 장관(Loneliness minister)제도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외로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초기 보고서에서는 개인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 외에 중앙정부와 고용주, 지역 자원봉사 단체, 공공보건

서비스 체계가 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한 세부전략을 세우고 외로움 대응을 위한 강도 높은 학문적, 실천적, 정책적 기반을 갖추고자 하였다(UK Government, 2023b). 이후 바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맞이하며 외로움을 겪고 고립된 상황에 놓인 취약그룹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과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2023년 기준, 총 3가지 주요 목표를 세우고 코로나19 이후의 외로움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UK Government, 2023b). 첫째는 외로움을 겪는 1인 가구의 낙인감을 줄이는 것이다. 2019년부터 전국 단위로 외로움에 대해 홍보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기에는 외로움 참여 기금(Loneliness Engagement Fund)을 조성하여 개인이 아닌, 외로움에 취약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집단에 15,000파운드에서 50,000파운드의 보조금을 제공하였다(UK Government, 2021).

두 번째 목표는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꾸준한 변화를 보이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1년에 4백만 파운드에 이르는 지역연결기금(Local Connections Fund)을 조성하여 영국 내 다수의 자선단체, 지역사회에 1,700건의 보조금을 배분하여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와 연결되도록 도왔다(UK Government, 2023b).

세 번째 목표는 외로움 대응을 위한 증거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다. 외로움 대응에 대한 다수의 증거기반 실천 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좀 더 객관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생활 실태조사, 영국 통계청의 코로나 기간 동안 지역 특성에 기반한 외로움 분석 결과 제시 등을 통해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출연한 5.5만 파운드의 관계 구축 기금(The Building Connections Fund)을 평가하고, 외로움 극복을 위해 현재까지 정책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자문단 그룹을 형성하였다(UK government, 2022).

이러한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은 단기간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약 10년 전 'The Care Act 2014'라는 영국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외로움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 외로움 대책위원회 등의 설립을 거쳐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실천 영역에서는 40여 개의 자선기관, 사업체, 공공지도자들이 외로움에 관한 행동 위원회(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Loneliness Inquiry)를 형성하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British Red Cross, 2023).

스웨덴 정부 선언문에는 "아무도 혼자 죽지 않아야 합니다(Ingen ska behöva dö ensam)"라는 표현이 있어, 이미 국가적으로 1인 가구의 존엄한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Sveriges riksdag, 2006). 2006년 사회민주당의 카리나 해그(Carina Hägg) 의원이 당시 마리아 라르손 총리에게 의회에서 보낸 서한 이후, 1인 가구의 존엄한 죽음과 비자발적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2010년대에 지속되었고, 2018년 비자발적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Liberalerna, 2018). 그리고 2022년에는 지역의회 차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완화치료가 더욱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역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법 실행이 점차 구체화되는 추세에 있다.

〈표 5-27〉 비자발적 외로움으로 인한 고독에 대처하기 위한 스웨덴의 노력

구분	내용
2006년 11월[1]	스웨덴 의회의 카리나 해그 의원이 마리아 라르손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구체적 대응 마련 요구가 명시됨 (Carina Hägg 의원, Maria Larsson 총리)
2012년 10월[2]	스웨덴 의회에서 죽음을 앞둔 개인이 법적 절차를 거쳐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해 발의함 (Eva Flyborg 의원)
2018년 6월[3]	비자발적 외로움으로 인해 혼자 죽지 않도록 법 개정 제안 1) 의료 관련 법 개정 (환자법,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2) 주택 관련 법 개정 (보호주택, 공동주택 등 지자체의 주거 제공) 3) 사회적 관심 (디지털 기기 활용 지원, 사회활동 지원) 4) 자원봉사자의 활용 (비영리 영역이 주도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Anna Starbrink 의원)
2022년 10월[4]	자유당 지역의회 의원이 임종을 앞둔 환자의 완화치료에 대해 지역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 (Ingeborg Wiksten)

자료: 1) Sveriges riksdag(2006). Död i ensamhet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하여 제시함.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kriftlig-fraga/dod-i-ensamhet_gu1193에서 2023. 8. 16. 인출.
2) Sveriges riksdag(2012). Självbestämmande vid livets slut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하여 제시함.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motion/sjalvbestammande-vid-livets-slut_h002so563/에서 2023. 8. 16. 인출.
3) Liberalerna(2018). L: Ingen ska behöva dö ensam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하여 제시함. https://news.cision.com/se/liberalerna/r/l--ingen-ska-behova-do-ensam,c2536891에서 2023. 8. 16. 인출.
4) Liberalerna(2022). Motion: Ingen ska behöva dö ensam – specialiserad palliativ vård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하여 제시함. https://www.rvn.se/globalassets/_rvn/demokrati-och-insyn/sammantradeshandlingar/motioner/2022-10-14-ingen-ska-behova-do-ensam--specialiserad-palliativ-vard.pdf에서 2023. 8. 16. 인출.

마. 생계지원

영국 정부는 근로 연령층의 취약계층에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으로 불리는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니버설 크레딧은 나이와 가구 구성을 고려하여 4가지의 기본적인 수당 체계에 더하여 부가되는 지원요소가 함께 제공된다. 1인 가구와 2인 동거가구를 25세를 기준으로 금액을 달리하고, 가구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추가요소를 함께 지

원하는 특징이 있다(Turn2us, 2023a).

예를 들면, 근로 연령층인 중고령 1인 가구는 일정 생활수준에 미달하면 월 368.74파운드의 소득 지원을 받게 된다. 2인 가구는 578.82파운드를 받는데, 2인 가구 중 자녀가 있다면 추가 요소인 269.58파운드가 더해져 총 848.40파운드를 지원받는다. 이러한 기본 수당에 추가되는 비용은 자녀 외에 보육비용, 직장에서의 업무수행 능력, 주거비, 돌봄비용, 중증 장애 여부 등이 고려된다. 여기서 중고령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추가요소는 1) 직장에서의 직무 관련 요소인 작업 요소에 대한 제한(LCW), 2) 작업 관련 활동 요소(LCWRA)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경우, 3) 주택 구입 및 모기지 이자 대출 지원 등이다(Turn2us, 2023a). 1인 가구와 2인 이상의 가구 유형별 기본생계비와 추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5-28〉 1인 가구 세부 유형별 지급 시나리오

(단위: 영국 파운드)

항목	25세 미만 1인 가구	25세 이상 1인 가구	25세 이상 2인 가구	25세 이상 2인 부부+ 자녀 1인
기본생계비	292.11	368.74	578.82	578.82
추가요소	-	-	-	269.58
계 (월 생계비)	292.11	368.74	578.82	848.40

자료: 1) Turn2us(2023a). Universal Credit (UC) - How much Universal Credit (UC) will I get?. https://www.turn2us.org.uk/get-support/information-for-your-situation/universal-credit-uc/how-much-universal-credit-uc-will-i-get에서 2023. 9. 27. 인출.
2) Turn2us(2023b). Universal Credit (UC) - Additional Elements of Universal Credit (UC). https://www.turn2us.org.uk/get-support/information-for-your-situation/universal-credit-uc/additional-elements-of-universal-credit-uc에서 2023. 9. 27. 인출.

3. 소결

가. 각국의 대응 방식 및 정책 기조

본 연구에서 검토한 각국의 대응방식 및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를 맞은 주요국은 이에 따르는 각종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신규 법 제정 또는 개정,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정부부서 설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1인 가구끼리의 결합 등에 대해 합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남녀 간 결혼 외의 가족 구조에 대한 법적 인정, 응급상황을 대비한 대리인을 지정한 사전의료 지시 등이 대표적이다. 첫째, 1인 가구의 권리 보장 및 안정적 삶을 위한 신규 법을 발의(논의)하거나 제정(개정)하였다. 1인 가구의 생애를 고려하여 각국은 1인 가구의 삶에 결혼 이외의 공동체 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은 결혼 외의 동거가구에 대해 결혼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도록 승인하여 상속, 입양 등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동성 간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동성의 1인 가구가 서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법안을 새롭게 발의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2018년 스웨덴 자유당은 1인 가구의 비자발적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 개정과 주택보급 등을 요구하는 개혁 법안을 발의하였다. 둘째, 1인 가구를 위한 정부부서를 신설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기구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중고령 1인 가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직을

새로 마련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1인 가구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있다. 셋째, 대리인의 의료적 결정 허용을 통한 1인 가구의 존엄한 죽음을 인정하였다. 중고령 1인 가구는 고연령대에 진입할수록 홀로 건강상 위급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에 유사시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전의료결정을 법제화하여 고령 1인 가구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둘째,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 외에 각국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기존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중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주로 주거 영역에서 나타나며 기존의 가구 형태가 1인 가구로 축소되는 경향에 맞추어 공동생활 주택을 보급하여 지역사회 내 공동체 형성을 돕거나, 기존의 사회시설을 1인 가구에 적합한 주거시설로 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주요국은 사회복지 선진국으로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의 제도에 더하여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의 자체 예산 또는 민간의 보조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1인 가구에게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에너지 비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각국 개입의 특징

중고령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각국의 정책적 개입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구조 내 지원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주요국들은 선진 경제권에 속한 국가로서 장기

간 구축된 사회보장 인프라가 존재한다. 빈곤, 노화, 질병, 실업 등 주요 사회적 위험을 겪을 경우 본인이 가입된 사회보험 제도 안에서 지원받거나,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중고령 1인 가구 역시 이러한 기초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안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받게 된다. 이에 주요국들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구조 내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중점 지원책 마련을 중심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 규모를 고려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보조금 지급 등의 추가적 대응이 진행 중이다.

둘째, 주거지원 중심의 정책을 운영 중이다. 주요국은 중고령 1인 가구의 지원 영역 중 특히 주거지원 영역에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의료·돌봄 지원,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등 타 영역에서의 지원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각국별로 지원하는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고령 1인 가구가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함께 또는 다른 연령대의 주민과 함께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1인 가구의 다양한 결합 형태를 인정하는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각국의 개인은 과거의 가족, 국가 등 집합적 정체성(Beck & Beck-Gersheim, 2002)에 기반하여 자신을 인식하기보다 개방화된 세계 속에서 개별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타인과 연결짓는 개인화된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수 세기에 걸쳐 전통적으로 여겨져 온 남녀 간 결혼을 통한 가구 구성과 자녀 양육 등의 관점에서 가구를 바라보기보다 독신 또는 결혼 외 개인 간에 형성되는 생활공동체 등 삶의 다양성에 기반한 관점에서 가구를 인식하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인프

라를 구축해오고 있다. 본 장에서 다루는 주요국은 이미 70년대부터 동거법,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인정 등 가구 구성과 관련한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진보적 판례를 쌓아오며 법제화를 완료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다. 정책적 함의

주요국의 중고령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한 정책 검토를 기반으로 한 국내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적극적 의제 선정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1인 가구 증가는 개인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전통적인 남녀 간의 결합에 의한 결혼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비혼인 동거 커플, 동성 간 결혼이 각국에서 법제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혼 외 1인 가구 간의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새로운 가족 형태가 2인 이상의 법적 가족 형태로 인정될 경우 상속, 결혼과 유사한 혜택(대출, 세금, 자녀 입양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중고령 1인 가구 돌봄으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각국은 중고령 1인 가구가 응급상황에 놓일 경우에 대비하여 의료결정을 할 수 있는 대리인(성년후견인 등)을 지정하여 사전의료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의 통일의료결정법, 독일 민법상 사전의료지시법 등과 같이 각국의 중고령 1인 가구는 원할 경우 자기결정권을 갖고 유사시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국이 구축한 1인 가구의 사전의료지시와 제도적 장치는 아직 임종 말기의 치료 결정에 대해 대중의 이해도와 인식이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스웨덴에서 비자발적 외로움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의제를 형성하여 장기간 노력을 해 온 것과 같이, 한국도

정책입안자들이 먼저 1인 가구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중고령 1인 가구에 맞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 설계에 있어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 소개된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일 뿐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먼저 구축하고 장기간 실행해온 국가들로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혜택은 대부분 현재 운영 중인 제도 안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생계비 지원에서 영국은 1인 가구의 기초생활비 소요 수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원 기준을 두고 있다. 지급되는 절대 액수 면에서 1인 가구에 지급되는 수당은 2인 이상 가구보다 적지만, 기본적인 생활 수준에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강상태가 있을 경우,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1인 가구 기준에 맞는 추가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지원 기준 금액을 일원화하여 일괄 적용하기보다 개인의 상황에 맞도록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추가수당 또는 대상자 기준을 하향화하는 등의 정교한 정책 마련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셋째, 중고령 1인 가구의 생활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흐름은 기초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서 정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촘촘하게 구축된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서 이웃을 모니터링(미마모리)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로움 극복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설정하고 담당 장관을 임명한 후 정부, 지자체, 비영리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1인 가구의 비자발적 외로움으로 인한 생애 말기의 고독사 문제에 집중하여 사회복지 현장과 정계에서 존엄한 죽음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정서지원 영역의 특징은 자격기준 해당 여부 또는 지원금액의 높고 낮음보다 전문인력과

이용자 간의 접촉이 많으므로 인간관계의 질이 더 중요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와 종사자 간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사전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이 지역포괄센터에서 진행하는 안부 확인 사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인 가구를 방문하는 종사자에 대해 먼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대상자에게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서비스 초기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이용자)에게는 범죄 등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기관의 방문계획이 있을 경우 방문 전에 미리 알리거나 타인에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원 영역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국은 1인 가구 수가 40% 내외로 높은 상황에서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하여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인프라의 변경과 개선을 통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싱글룸 제공 프로그램, 일본의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과 같이 기존의 시설을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국가 관점에서는 예산 절감, 기존의 건물 소유주에게는 각종 보조금 및 세금 혜택, 1인 가구에게는 신속한 주거지 공급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에 스웨덴의 공동주거시설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활동을 추가한다면 정서지원과 주거지원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동주거를 통해 이웃 간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시킨다면 정서지원 영역에서 주목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비자발적 외로움으로 인한 고독사 등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제6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미래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제6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보편화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으로서 중고령 1인 가구를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구형태 중 하나인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정책적 개선방안과 1인 가구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중고령 1인 가구를 재정의하였다. 광의의 개념으로 1인 가구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가 갖는 보편적 욕구에 대한 파악과 함께 집중적 정책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인 가구를 재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한 1인 가구는 '독립된 주거지에서 계속적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무배우 가구'이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따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과정-현재의 삶-미래의 삶의 모습

가.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과 관련하여, 이차자료 분석(제3장)과 개별인터뷰 분석(제4장)을 통해 1인 가구의 형성 배경 및 이유, 직전 가구형태 등 1인 가구 형성 전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2020년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에서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맞게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를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만 40~64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고령 1인 가구의 형성 배경과 이유(자발성)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혼인상태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의 혼인상태는 사별이 53.8%, 별거·이혼이 34.8%, 미혼이 11.4%에 해당하였는데, 미혼의 경우 자발적 이유로 1인 가구를 형성한 비율이 64.7%였던 반면, 별거·이혼의 경우는 13.8%, 사별의 경우는 10.2%로 큰 차이를 보였다(〈표 3-47〉, 〈표 3-49〉 참조). 개별인터뷰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이 확인되었고, 가족 해체를 경험한 집단 중에서도 특히 자녀가 있는 집단은 다양한 가구형태를 경험한 끝에(부부 → 부부+자녀 → 부/모+자녀 → 독신) 1인 가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핵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1인 가구를 형성한 경우가 대다수인 미혼 집단에 비해 1인 가구 형성과정이 복잡하고 적응 과정에서 더 취약한 특성이 있었다.

또한, 중고령 1인 가구 중에서는 이전 동거가족과 물리적으로만 분리되었을 뿐 정서적인 교류를 지속하는 1인 가구도 많았던 반면, 미혼인 중고령자가 원가족과 단절하면서 1인 가구가 되었거나, 이혼과 동시에 이전 배우자와 완전히 단절하였거나, 사별로 친밀한 관계가 소실되어 온전히 혼자가 된 1인 가구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 1인 가구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므로 집단 자체를 취약계층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되, 중고령 1인 가구 집단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고립과 안전에 있어 취약성이 높은 집단이 있으므로 이들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 취약성과 직결되는 특성을 찾아내고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중고령 1인 가구의 과거-현재-미래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중고령 1인 가구의 모습은 다를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과거와 현재의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및 코호트 비교 분석(제3장)을 하였고, 미래 중고령 1인 가구의 삶의 모습, 정책 욕구를 살펴보고자 미래에 중고령층이 되는 현재의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인터뷰(제4장)를 수행하였다.

1)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 변화(과거~현재)

중고령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모든 연령집단(40~80대 이상)에서 미혼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40~50대는 미혼의 비율이 급증하고, 60~70대는 이혼의 비율이 급증하였다는 큰 변화가 확인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주거점유형태는 전세의 비율이 감소하였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집단의 특성에 맞게 정책의 개선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의 특성과 삶의 모습, 이들의 정책 욕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코호트 간 비교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생활영역별로 각각의 연령집단(50대, 60대)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여 과거와 현재의 중고령 1인 가구의 이질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의 50대(1950년대 코호트), 60대(1940년대 코호트)와 비교하여 현재의 50대(1960년대 코호트), 60대(1950년대 코호트)는 총소득, 지출, 순자산이 모두 증가하여 경제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경제활동 참여 비율도 증가한 반면, 계속 근로 가능자 비율은 감소하여 고용의 지속 가능성은 악화된 특성이 있었다. 그 밖에도, 건강과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현재 50~60대에서 외식이 증가한 점, 50대는 사회적 관계망의 존재와 규모가 유지 또는 향상된 반면 60대는 관계망의 규모가 감소한 점, 50~60대에서 자가 보유·점유율과 비지상층 거주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평균 주거면적은 감소하고 필수설비 미달 비율이 증가하여 주거의 질 측면이 악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중고령 1인 가구의 현재 삶의 모습

개별인터뷰를 통해, 중고령 1인 가구 중 중장년 1인 가구의 현재 삶의 모습을 살펴본 결과, 개인이 겪어온 삶의 경험에 따라 현재 삶의 모습, 생활의 만족도,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욕구가 매우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별인터뷰 분석에서 집단 내 이질성과 별개로 중장년 1인 가구 집단이 보편적으로 취약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택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 측면에서 취약했다. 둘째, 청년 및 노인 1인 가구와의 비교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생활영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어려움 외에도 향후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취약집단을 확인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20년도 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 50대 이상 무배우 1인 가구는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아플 때 대처, 가사활동, 경제적 불안, 고립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한 집단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52〉 참조). 개별인터뷰에서도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한

경우에 초기 생활에 적응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데 취약한 특성이 나타나,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제도 마련 및 정책적 접근에 있어 기존에 강조되던 경제적 취약성(빈곤) 외에 1인 가구 형성의 자발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고령 1인 가구의 정서적 고립감, 고독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집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지속적으로 발굴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2020년도 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 50대 이상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에 비해 의미 있는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남성 30.8%, 여성 12.2%)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남성의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의 경우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3) 중고령 1인 가구의 미래 삶의 모습

이차자료 및 개별인터뷰 분석 결과, 현재의 중고령 1인 가구 중에서 앞으로도 1인 가구로 생활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0대 이상 1인 가구의 87.6%가 앞으로도 현재의 생활을 지속하기를 희망하였고(〈표 3-47〉 참조), 개별인터뷰에서도 참여자 12명 중 5명은 기간의 제한 없이, 6명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1인 가구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중고령 1인 가구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현재의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으며, 현재 중고령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이들이 예상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서 중고령 1인 가구가 향후 1인 가구 생활을 유지할 때 걱정되는 부분은 '질병 악화 시 돌봄에 대한 걱정'의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35.8%), 심리적 외로움(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53〉 참조). 개별인터뷰를 통해서는 중장년 1인 가구가 미래의 생활에 있어 돌연사에 대한 두려움, 건강 악화 시 돌봄과 주거의 문제, 생애말기 의사결정과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의 생활이 버거워 미래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중고령 1인 가구가 인식하는 미래 생활의 어려움은 현재의 어려움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현재 생활의 취약성과 연장선상의 문제이며, 미래의 중고령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 생활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법·제도적 쟁점

가. 법·제도에서 중고령 1인 가구 정책 방향의 쟁점

1) 보편적 가구형태로서 1인 가구에 대한 인정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1인 가구가 보편적 가구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1인 가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계획의 세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1인 가구를 취약계층으로 접근하는 것과 함께 간편식품산업, 외식업, 1인 가구 관련 상품개발 지원 등 1인 가구가 느끼는 보편적 욕구에 대한 개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 진행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사공일가)' 논의를 통해 1인 가구가 보편적으로 당면해 있거나 당면할 상황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개입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개입은 1인 가구가 전체 사회구성 가구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매김함을 인정한 결과로 보이며, 이 외에도 1인 가구들이 갖게 되는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고려가 전체 사회정책 내에 녹여져야 할 것이다.

2) 전통적 가구형태에 기반한 정책 대상 선정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복지, 주거, 조세 등)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가구-세대-가족을 중심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주거 및 생계를 공동으로 하는 생활단위'로서 가구(家口)를 기반으로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결정하며, 그 안에는 주민등록법에서 정의하는 세대(世帶)의 기준이 적용된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등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단위'로서(장민선, 2016)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족이 아닌 세대원이 인정되어 가구 및 가족과는 상이한 개념이다. 주민등록법상의 '세대' 개념은 주거공급에서의 '소득 기준'과 연동되어, 1인 가구의 주거공급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주택공급에서도 '혼인과 혈연, 입양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관계'로 세대(世帶)를 정의하고 있다.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은 상이한데, 민법의 가족(家族)은 혈연 또는 혼인으로 형성된 형태를 전제하며,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족을 정의한다. 즉, 정책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가구-세대-가족을 정의하는 일차적 전제는 혼인·혈연·입양이다. 다만, 세대는 가족이 아닌 동거원을 포함하고 있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주변인을 포함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보편적 가구형태로 진입하면서, 가족보다는 개인을 기반으로 한 삶의 영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정책들은 가구-세대-가족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어 단위와 적용기준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3) 1인 가구의 집단 내 이질성(생애주기별 다양성, 동일 출생코호트 내 다양성)에 대한 고려 부족

1인 가구에 대한 기존 정책은 1인 가구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1인 가구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앞의 제3~4장에서 검토한 결과와 같이 현재의 1인 가구는 지난 10년 전의 1인 가구와 매우 상이한 특성을 보이며, 출생코호트 집단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코호트 내에서도 생애과정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1인 가구의 형성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른 욕구도 상이하다. 즉, 생애주기별 욕구의 다양성과 동일 생애주기 안에서 보이는 욕구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도 1인 가구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1인 가구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거나 취약집단 중심의 접근, 일부 세대(청년, 노년)에 집중한 접근 등으로 정책을 운영 중이다.

먼저 생애주기별 욕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정책 사각지대화 문제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정책은 청년과 노년세대 중심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소득보장, 주거보장 등의 기본적 욕구에 해당하는 정책들에서 소외되어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일상돌봄서비스에서 이들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50~60대(50대 81.4%, 60대 91.6%)의 상당수가 향후 1인 가구로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중장년층은 노인 1인 가구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예방적 관점에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선제적 개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수립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 및 연계 지원 정책을 중장년 위험군과 노인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중년층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춰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 유도, 일상적 돌봄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여, 노년기 진입 시 장기적 위험군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것으로, 중장년 1인 가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접근이다.

다음으로 동일 출생코호트 내에서의 욕구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 부족의 문제가 있다. 동일 코호트 내에서도 1인 가구는 1인 가구 형성 전의 가구형태, 혼인상태, 학력, 자가 여부 등에 따라 삶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다. 아직 1인 가구에 대한 접근방식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내 대다수의 과제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선을 통한 생활보장,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돌봄서비스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비교적 생활 여건이 취약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 외에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 주택 공급 및 지원 정책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들에서는 1인 가구의 지원 대상을 '고립위험군'이나 '취약가구'로 한정하거나, '취약계층의 중 하나로 1인 가구를 포함'하는 형태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체 1인 가구가 아닌 사회적 고립 1인 가구(고독사 위험집단)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방지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는 취약계층 외에도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선별적 관점에서의 정책집단이 아니더라도,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집단이 공존한다. 따라서 이들의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다차원적 욕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나. 주요 영역별 법·제도적 쟁점

1) 주거

1인 가구에게 주거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2022)의 '2022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공공분양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층 및 무주택 중장년층의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공공임대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은 1인 가구에 한정한 정책은 아니나, 취약계층에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주거법제에 따르면, 중고령 1인 가구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계획을 통해 '무주택 중장년층'을 정책 대상에 포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의 주거 관련 법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 된다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40~50대의 중장년 1인 가구는 많은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택의 공급과 질 측면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의 공급 측면에서의 쟁점이다. 주택을 공급받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인 주택청약에서 1인 가구는 청약 당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부양가족 수'에서 점수를 받기 어렵다. 또한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특별공급주택 분양 시 중장년 비혼 1인 가구는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에 따른 주택공급 소득 기준으로,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분가 시 '세대'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주거의 질 측면에서도 1인 가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독세대는 임대주택 제공 시 주거전용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에서 쪽방이나 고시원 등은 제외되어 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국에서는 중고령 1인 가구의 주거정책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주요국의 주거지원정책은 ① 기능상태가 양호한 저소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주거 제공(미국 싱글룸 프로그램), ② 고령자 친화적 주택 제공(일본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③ 공동생활 형태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주택(독일 다세대 주택(Mehrgenerationenhaus), 영국의 코하우징, 스웨덴의 코하우징), ④ 돌봄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1인 가구 대상 주택(영국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⑤ 주거 관련 금전적 지원(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형태의 주거비 지원, 영국 주민세 할인, 스웨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 등이 있다. 한국에서도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고령자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 다양한 고령자 주거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55세 이상부터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입소가 가능하며, 스웨덴의 페르드크네펜(Färdknäppen)은 40세 이상의 중고령자가 다른 세대와 함께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공간이다.

이러한 국내외 법제 및 정책 현황 검토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의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 의료 및 돌봄

중고령 1인 가구는 향후 1인 가구로 생활할 때 '질병 악화 시 돌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으며,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서의 의료이용 결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은 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사업이 돌봄에 대한 일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 돌봄의 서비스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돌봄 외의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다. 이에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에서도 24시간 순회 돌봄 서비스 도입,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의 충분성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국외에서도 1인 가구는 돌봄정책 내에서 별도의 개입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포괄센터를 통해 고령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1인 가구 전호방문사업(교토시) 등을 통해 지역 내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욕구를 전수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1인 가구의 수발 부담의 보험료율을 유자녀 가구보다 높게 책정하여, 사회적 돌봄의 부담이 높은 1인 가구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나, 노후에 이들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24조의 2항에 따른 1인 가구의 법령에 따른 의료이용 제한의 문제에 대한 우려는 이미 많은 곳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다. 즉, 갑작스러운 의료상황 발생 시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서 작성'은 법정대리인(직계존·비속)만이 가능하며, 1인 가구 중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작성 가능자의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리인 사전지정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응급처치 수준에 한정하여 환자의 동행인이 구두로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양한 이유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3) 정서

중고령 1인 가구의 정서적 고립 문제는 향후 고독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개입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통해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방안 지원 고독사 예방 노력 강화 등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는 중고령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공동체 공간 운영, 사회관계망 형성, 정보통신기술 활용 연결 등의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조례와 함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안하는 등 정서적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러한 정서지원의 대표적 사례는 영국의 '외로움부' 창설이다. 외로움부는 개인, 가족, 친구, 지역사회 외에 중앙정부와 고용주, 지역 자원봉사단체, 공공보건서비스 체계가 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외로움 대응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정책적 기반을 갖추고자 하였다. 2023년 기준 영국의 외로움부는 ① 외로움을 겪는 1인 가구의 낙인감 감소, ②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속적 지원, ③ 외로움 대응을 위한 증거 기반 확장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에서는 2022년 2월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총리관저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책실을 출범시켰다. 스웨덴 역시 2018년 1인 가구를 위한 의료·주택·사회활동·자원봉사자의 활동 등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된 '비자발적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시계에 따른 정책의 개입은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다. 그러나 1인 가구가 반드시 고독사의 대상은 아닐 수 있으며, 고독사 정책과 1인 가구 정서지원 정책을 동일시하는 접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4) 생애말기

중고령 1인 가구 중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인 무배우 1인 가구 중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고독사 및 장례에 대한 정책 욕구가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노인 고독사 위험군의 사전장례준비를 위한 지원강화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사법에 따라 무연고자 사망의 처리 및 장례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중고령 1인 가구의 생애말기에 대한 논의는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사후 장례절차 및 유산배분 등에 대한 결정권 보장에 대한 이슈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은 다양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하며, 당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대리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하다. 현재 생애말기의 다양한 결정 상황에 대한 결정권은 주로 '가족'이 중심이며, 일부는 후견인 제도를 통하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과 노인복지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의 결정 범위가 상이하여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대리결정제도가 논의 중이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산분배에 있어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음에도 일정 범위를 넘는 재산은 일정 범위의 친족에 대한 유류분으로 제약을 받아, 사후 유산배분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2절 미래 중고령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미래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세부 정책별 개선방안의 기본 전제는 1인 가구이기에 정책적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1인 가구의 보편적 취약성을 고려한 보편적 정책과 중고령 1인 가구에 대한 보편적 정책, 전통적인 취약집단으로서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중고령 1인 가구 중 전통적인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이 혼재되어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정책의 전반적 개편을 통한 효과가 1인 가구에게까지 확대(spill-over)될 수 있으며, 취약집단에 대한 긴급하고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1. 1인 가구의 보편성에 대한 인정 및 사회정책의 재구조화

1인 가구의 보편화가 가시화되고, 정부 차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제도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출산율' 반등이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을 추진전략으로 제안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게 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사회정책 전반에서 1인 가구의 보편성을 인정한 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즉, 사회정책 내에서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중년-노년으로 분리된 1인 가구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구형태로서 1인 가구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전 생애적 관점

에서 세대통합적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정책 수립 시 가구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1인 가구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성별영향평가,[16] 건강영향평가,[17] 환경영향평가[18] 등과 같은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정책의 설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보편성에 대한 인정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는지 사전에 고민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인 가구의 보편화를 고려할 때 현재 전통적 가구형태 중심의 제도설계에 대한 각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1인 가구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정책 내 1인 가구에 대한 보편성이 인정되기 전 과도기적 측면에서 사회정책 및 서비스에 1인 가구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자 없는 1인 가구의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사례들을 제시하여 현재의 제도 내에서의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정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의는 2018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되어 비로소 법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

16) 성별영향평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성별영향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17) 건강영향평가: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이하 '4P'라 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2023a)

18) 환경영향평가: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2023b)

건강가정기본법만으로 1인 가구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의안번호 2103381)가 제기되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즉, 1인 가구와 같은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는 취지의 법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전통적 가구형태에 기반한 기존 사회보장정책의 설계 방향 조정

한국의 많은 사회제도들은 개인이 아닌 가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가족주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이에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기초하여 형성·발전해 온 현행 사회보장체계에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수반하는 위험의 개인화 문제를 제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최현수 외, 2016). 특히 1인 가구가 보편적 가구형태가 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할 때 이제는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사회보장정책의 개인화(송효진 외, 2021)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표적 사회보장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주거 및 생계를 공동으로 하는 생활단위'로서 가구(家口)를 기반으로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결정하며,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친족 중심의 부양의무자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세대(世帶)는 '혼인과 혈연, 입양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보편적 가구형태로 진입하고, 가족보다는 개인을 기반으로 한 삶의 영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정책들은 가구-세대-가족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여전히 '가족주의'에 기반한 사회보장정책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3. 약한 결합관계로서 생활동반자에 대한 제도적 인정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매우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기준 외의 관계에서 가족 같은 기능을 하는 다양한 관계들은 '가족 중심'의 다양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배제되고 있다. 최근에 증가하는 비혼의 1인 가구는 자녀가 없으며, 합계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1984년생 이후(국가지표체계, 2023b) 출생자부터는 형제자매가 적다. 따라서 미래의 비혼 1인 가구는 가족이 없는 온전한 1인 가구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는 혼인과 혈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가족 같은 기능을 하는 타인과의 결합이 새로운 가족형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합에 대한 인정으로 최근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생활동반자 관계'의 시작은 '동성 간의 결합'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으며, 주로 서구권(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는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통과되었다. 이는 법률혼에 있어 동성혼을 인정하고, 법률혼 이외의 비혼동거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적 체계 내에서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송효진 외, 2021). 우리나라에서도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2건 발의된 상태이나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였으며, 오랜 기간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동성혼 중심의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논의는 1989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논의되었으며, 이후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을 고려할 때 성(性)적 관계에 근거한 생활동반자에서 벗어나 1인 가구 간의 돌봄의 욕구에 따른 약한 결합관계로서의 측면에서 '생활동반자 관계'

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활동반자 관계는 향후 돌봄의 욕구가 증가할 중고령 1인 가구에게는 더욱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는 '2008년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을 제정하여 등록 가능한 관계(가정적 관계-domestic relationships / 돌봄관계-caring relationships)를 규정하고, 이들의 관계 계약에 대한 규정 및 이들 사이의 재산이익 조정 및 부양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둘의 차이는 '상호 간 커플 관계 여부'이다. 즉, 동성혼과는 다른 측면에서 '돌봄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동반자 관계 입법과정에 참여하였던 황두영(2020)은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인정은 단순히 동성혼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돌봄의 수요가 많은 노년층이 상호 간 의지하며 지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1인 가구 간 다양한 가족형태의 구성에 대한 인정과 이들을 위한 법적 안전망의 마련이 필요하다.

〈표 6-1〉 호주 빅토리아 주 관계법 내 돌봄관계

등록 가능한 돌봄관계 (registrable caring relationship)	등록 가능한 가정적 관계 (registrable domestic relationship)
- **상대방과 혼인을 하지 않았고, 커플 관계도 아니며, 가족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성인 두 사람**이 상대방의 이익(material benefit)을 위해 가정적 특성(domestic nature)의 지원과 개인적 또는 재정적 헌신(personal or financial commitment)을, 일방이 타방에게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 **등록된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두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 다만, (a) 수수료나 보상(for fee or reward)을 위해; (b) 다른 사람이나 기관(정부나 정부 기관, 법인 또는 자선단체를 포함)을 대신해서, 가정적 지원(domestic support) 및 개인적 돌봄(personal care)을 제공하는 관계는 등록 가능한 돌봄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대방과 결혼을 하지도 않았으나 커플 관계인 성인인 두 사람**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가정적 특성의 지원과 개인적 또는 재정적 헌신을, 일방이 타방에게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 **두 사람의 성별은 상관없으며, 두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 다만 (a) 수수료나 보상(for fee or reward)을 위해; (b) 다른 사람이나 기관(정부나 정부 기관, 법인 또는 자선단체를 포함)을 대신해서, 가정적 지원(domestic support) alc 개인적 돌봄(personal care)을 제공하는 관계는 등록 가능한 가정적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 송효진 외(2021).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376~377의 내용을 연구진이 요약함.

4. 노년기 삶의 안정성을 위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중장년층에 대한 개입

그동안의 1인 가구 정책은 청년과 노년세대 중심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으로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소득보장, 주거보장 등의 기본적 욕구에 해당하는 정책들에서 소외되어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일상돌봄서비스에서 이들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과 노년에 비해 중장년 1인 가구는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집단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의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삶은 누적적(cumulative) 특성을 갖기에 중장년층의 삶은 청년 시기의 삶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미래 노년기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1인 가구의 노년기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장년 1인 가구의 노후생활준비(생애준비)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사회정서적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 내에 고독감, 고립감 등에 대한 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중고령 1인 가구의 집단 내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1인 가구는 ① 발생원인, ② 지속기간, ③ 혼인 경험, ④ 자녀 여부, ⑤ 원가족과의 교류와 같은 '가구' 구성과 관련된 특성과 1인 가구가 갖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⑥ 연령(세대), ⑦ 성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변미리(2015)와 민보경(2023)은 1인 가구를 유형화하였으며, 유형별로 다양한 욕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코호트별, 연령별, 성별, 1인 가구 형성의 자발성 여부 등에 따라 1인 가구는 매우 다양한 특성 및 욕구를 보이고 있음이 도출되었다. 즉, 중고령 1인 가구 집단 내 이질

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욕구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통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1인 가구에 대한 접근방식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약계층 외 1인 가구가 갖는 1인 가구로서의 보편적 취약성에 대한 개입은 사각지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정책구조 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욕구 파악도 쉽지 않다. 1인 가구 중 일부 집단은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관점에서의 정책집단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욕구(정서적 고립 등)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성, 연령, 건강수준, 경제상태, 비공식 지원망 수준, 주거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욕구 파악을 위한 별도의 스크리닝 도구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삶의 기본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욕구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 축소를 경험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에서의 취약성이 높은 집단으로 이들의 취약성에 집중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이들의 일자리, 주거, 정신건강에 대한 집중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6. 존엄한 노후를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

중고령 1인 가구는 곧 노후를 맞이하거나 이미 노년기에 진입한 이들로 존엄한 노후는 이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보장은 헌법에도 명시된 주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관련 법상 제시된 '혈연 및 혼인 관계' 중심의 법정대리인제도에 따라 1인 가구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족구조의 변화로 생애말기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다양한 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리결정권을 보장하는 주요 제도 중 하나인 후견인 제도 내 후견인에 대한 민법 내 권한과 역할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는 1인 가구로 현재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치매 노인이 시설에 입소해야 할 경우 주택처분, 요양시설 입소, 남은 재산처리에 대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며, 재산은 싱가포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요양비 등 필요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한 뒤 후견을 종료한다. 이는 후견인의 역할을 '법적 사무'에 한정한 결과로, 요양시설 입소 후의 돌봄은 후견인의 역할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모든 1인 가구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체화되고 접근성 높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며, 원칙적 의사무능력자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중간 단계의 사람들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형태의 후견제도가 필요하다. 현재의 공공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일반적 차원에서 이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일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갑작스러운 의사무능력 발생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적 대리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 대리권은 누구라도 의사무능력 상태가 초래되기 이전에 장차 의사무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 장애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그 시점에서 자신을 대리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관련 의사표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대행해 줄 자(지속적 대리인)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설사 의사무능력 상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속적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후견의 필요성이 없다(제철웅, 2017). 또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일회적으로 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리권을 허용하여 절차적 복잡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전의료요양지시서의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전의료요양지시서란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노후에 대해 사전에 설계한 것으로,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비해 더 포괄적·일반적인 의료나 요양에 대한 지시를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시작 단계로 정책화를 위해서는 법적 효력 등과 같은 다양한 논쟁거리가 산재해 있다(남가언, 2021. 9.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가구형태를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명의료제도 내 대리결정제도의 법제화와 상속제 내 피상속인의 유산상속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친족에 대한 유류분 제도 완화 등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세부정책별 개선방안

가. 주거정책

주거는 중고령 1인 가구의 삶의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주거가 안정된 중장년 1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삶은 생의 다양한 사건들이 누적된 결과물로 중장년기에 이러한 기반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지원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중장년 1인 가구는 다양한 주거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집단으로 이들에 대한 확대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출산지원 중심의 주거공급정책에서 벗어나 전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주거공급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1인 가구

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주택공급 기준인 주택 분양 기준 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특별공급 분양주택의 주거면적 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전반의 개편, 고시원, 쪽방촌 등 1인 가구 주요 거주지역의 최저주기기준 적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거공간은 생활과 안전의 기능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았다. 1인 가구의 경우 주거지 내에서 발생되는 (긴급)돌봄 상황에서의 대처의 어려움, 높은 고독사 위험, 사회정서적 지지체계의 부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집단으로, 주거지 내에서의 안전(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주거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한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는 중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코하우징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코하우징이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 또는 노년층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에서는 코하우징, 공동주택 등의 1인 가구 주거지원서비스를 중장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코하우징은 단순한 주거공급을 넘어서 돌봄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주거형태로 이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중장년층은 공동생활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장의 욕구가 높으며, 개별 심층인터뷰(IDI) 결과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개인의 개별 생활공간이 보장되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거형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즉, 다양한 형태의 코하우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수발보험 등급 인정자가 포함된 2인 이상의 노인들의 아파트 공유를 급여화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주거모델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기간 연장 및 노인들 간의 교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충남 청양군의 고령자복지주택 모형을 살펴보면, 해당 주택은 한 건물에 독립된

주거 공간, 공유 공간(공유 주방), 여가문화공간, 의료서비스 제공 공간을 모두 갖춘 형태이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주거모형에 대한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나. 의료 및 돌봄

현재의 중고령 1인 가구의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는 아플 때 대처의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별인터뷰 결과에서도 1인 가구의 상당수는 응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특히 가족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료적 처치의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의료행위 시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성년 환자'에 한정되지만, 현재 의료기관들에서는 내규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도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응급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의식이 없는데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로, 이러한 문제는 의료법 제24조의 2항의 개정이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서' 작성 시 현재 법정대리인만을 인정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대리인 사전지정제를 통해 가족 이외의 관계자가 동의하면 의료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리인 선정이 어려운 경우는 '(가칭)공적 후원 센터' 등의 마련을 통해 1인 가구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건강보장을 위한 '1인 가구 건강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1인 가구로 전입 시 전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보건소 관리 대상으로 자동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서비스 제공기관과 대상자가 쌍방으로 확인 가능)하여, 상시적으로 건강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양의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가족 등 비공식적 지지체계로부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중고령 1인 가구의 23.0%만이 비동거 가족이 있는 상황이다. 즉, 중고령 1인 가구는 향후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1인 가구도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본인다움을 계속 추구하도록 할 필요 있다. 일례로 현재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병원동행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며, 서울시는 2022년부터 1인 가구 또는 다인 가구이지만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1인 가구 대상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거주 외에도 1인 가구의 시설/병원 입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1인 가구는 유배우 가구에 비해 병원 입원/시설 입소의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의 시설서비스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미래 노년층인 중장년 1인 가구의 다각적 욕구를 고려할 때, 생애주기와 소득수준 등에 따른 다층적 돌봄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즉,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다각적 욕구를 반영한 다층적 돌봄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영역별로 제공해야 하는 법·제도를 고려하고, 민간 서비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정서지원

중고령 1인 가구의 81.6%는 의미 있는 타자가 있지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의미 있는 타자가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아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았다. 여성은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족 외의 관계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중고령 1인 가구로 생활하며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고립'은 우선순위가 낮았으며, 중장년층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즉, 건강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 부담 같은 생존과 직결되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1인 가구 개인들은 심리정서적 건강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들에 비해 가족 내 비공식적 돌봄체계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견되는 미래 중고령자의 외로움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서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1인 가구의 대부분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느라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정서적 안정과 노후준비와 같이 물리적으로 현재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준비는 1인 가구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국가 차원의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으나, 이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1인 가구와 관련된 지자체의 조례는 상당수가 '고독사' 관련 법령이며, 그 안에 1인 가구의 정책이 포함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1인 가구는 일시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누구나 가능한 가구형태로 고독사와는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서지원은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영국의 외로움부, 일본의 고독고립담당장관, 스웨덴의

비자발적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한 법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개입은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인 가구의 정서적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1인 가구의 전수가 외로움을 경험하거나 정서적으로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1인 가구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책 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위험집단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측정도구로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외로움 지표 및 대상자 선정도구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내에서 개인들 간의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고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의 고됨으로 '고독, 외로움'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중장년 1인 가구의 삶을 고려할 때, TV,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독과 외로움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여 고독의 원인 및 극복 방법 등 정보를 전파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독감을 숨기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하나, 이러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고독이 일반적이고,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방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를 지역사회 정보와 자원의 허브로 활용하여 중고령 1인 가구가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연령을 포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령 1인 가구가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장사 및 사후처리

무연고자의 장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나, 이후 사후처리 과정에서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원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공익법센터[19]를 통해 고독사 이후의 사후처리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해당 사항이 부재하다. 또한 시설거주자의 무연고 사망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잔여재산에 대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에서 사후처리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 내에서 사망할 시에는 별도의 규정이 부재하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지원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산 상속에 있어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삭제되면서 미혼 1인 가구의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존비속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외의 대상에게 유산을 상속하고자 할 경우는 다른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최근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재산을 소유한 자(피상속인)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체결로 재산을 상속할 자(상속인)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탁자의 사후 상속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김다솜, 2023. 4. 19). 유산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자율적 결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19)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2023). 센터소개. https://swlc.welfare.seoul.kr/swlc/index.action에서 2023. 11. 28. 인출.

참고문헌

[국문 자료]

가족센터. (2023). **사업운영 및 사업 영역**.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309C339/contents.do에서 2023. 7. 26. 인출.

강덕구. (2022). 1인 가구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 **인문사회21, 13**(4), 505-518.

강미나, 김혜승, 진정수, 이형찬, 오민준, 유미경, ... 김우미. (2014).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202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43호 (202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1호 (202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4호 (2023).

관계부처 합동. (2020. 6. 25.).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14514&fileSn=3에서 2023. 4. 20. 인출.

구영신. (2020). 무연고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대리 결정 제도 마련 방안. **생명윤리정책연구, 13**(3), 81-106.

국가지표체계. (2023a).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14에서 2023. 5. 31. 인출.

국가지표체계. (2023b). **합계출산율(최근 갱신일 2023. 2. 22.)**.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pop=1&idxCd=5061에서 2023. 10. 12. 인출.

국무조정실. (2019. 12. 3.).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안전과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의결.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download&articleNo=149220&attachNo=117399에서 인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9228호 (20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11호 (2022).

국세청. (n.d.). **1세대의 기준**.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516&bbsId=30659#none에서 2023. 4. 20. 인출.

국토교통부. (2012).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데이터파일]**.

국토교통부. (2021). **주거실태조사(일반자료) 원자료[데이터파일]**.

국토교통부. (2022). **2022년 주거종합계획**.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672에서 2023. 9. 14. 인출.

김다솜. (2023. 4. 19.). 내가 모은 재산, 누구에게 갈까? 1인 가구 유산은... **DAILY POP**.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8404에서 인출.

김보배, 김명희. (2018).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모색.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1**(2), 95-113.

김상구. 이일학. (2017). 의사무능력자를 대신하는 의료결정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 독립환자정신능력대변인 제도의 가능성 탐색. **한국의료법학회지, 25**(1), 117-131.

김석호. (2021). 1인가구 유형별 일상생활과 정책욕구. **1인가구의 다차원적 특성과 유형화: 지원 방향과 전략의 출발점 세미나(2021. 10. 21.)**, 서울: 서울연구원.

김수미. (2016).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과 노후준비**.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광주).

김윤영. (2017).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김은정. (2018). 1인 가구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4**(2), 41-79.

김진욱. (2020. 1. 24.). 동거인도 배우자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는 날이 올까요?.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123_0000898483&cID=10401&pID=10400에서 2023. 9. 11. 인출.

김혜영. (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2014). 유통하는 한국가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5**(2), 255-292.

남가언. (2021. 9. 13.). 신상결정에 관한 의사결정지원 위해 '사전의료요양지시제도' 입법화해야.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72906에서 인출.

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 (2021).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

민법, 법률 제11728호 (2013).

민법, 법률 제19098호 (2022).

민보경. (2023).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국회미래전략 INSIGHT, 74**, 12-15.

박미선, 우지윤. (2021).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박미선, 이재춘, 김근용, 이윤상, 천현숙, 전희정, . . . 야마네 사토코. (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박준희. (2022). 고독사 및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정책적 제언: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 책무성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연구, 25**(4), 1-37.

배건이, 정극원. (2013). **1인 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백혜선, 이영환, 박윤재, 최원철. (2021). **LH형 적정 주거공간 설정 연구**.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22. 1. 27.).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 발표.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6692815&tblKey=GMN에서 인출.

법제처. (2022. 12. 27.). '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874에서 인출.

변미리. (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51-573.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건복지부. (2018. 4.).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344674&seq=5에서 2023. 7. 26. 인출.

보건복지부. (2022). **2022 장사(葬事)업무안내**.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6&list_no=371399&seq=1에서 2023. 9. 14. 인출.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74747&seq=1에서 2023. 7. 26. 인출.

보건복지부. (2023. 5. 18.).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376315&seq=2에서 인출.

보건복지부. (2023. 7. 5.). **일상돌봄서비스사업추진계획**.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377058&seq=3에서 2023. 7. 26. 인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11).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1).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보건복지위원회. (20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2116512 검토의견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O2A0J6L3J0S1I3T2R4O4V5B7M5Z0에서 2023. 9. 11. 인출.

보건복지위원회. (2023a).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2120186 검토의견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M3J0R1Q3P0O1Z6W4V9D5D1Z2I6H9에서 2023. 9. 12. 인출.

보건복지위원회. (2023b).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인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2120216 검토의견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3E0Y1X3W0F1H7G2C7L2L0H2Q6P2에서 2023. 9. 12. 인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0).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 사건의 현황: 일본 성년후견 관련사건의 개황 포함**. 서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2).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 사건의 현황: 일본 성년후견 관계 사건의 현황 포함(제2판)**. 서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3). **후견업무의 흐름_법정후견업무**. http://kscg1.mireene.com/xe/dbgk/6787에서 2023. 9. 8. 인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23). **센터소개**. https://swlc.welfare.seoul.kr/swlc/index.action에서 2023. 11. 28. 인출.

서울연구원. (2022).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110호 (2019).

선은애. (2022).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토지공법연구, 100**, 297-316.

송효진, 황정미, 김수정, 박광동, 김은지, 김영란, . . . 장지영. (2021).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권철. (2013). 성년후견제도의 쟁점과 과제- 답습과 극복. **사회보장법연구, 2** (2), 39-88.

안선영. (2021). **자살 사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고립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여성가족부. (2021. 4. 27.).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86에서 2023. 7. 26. 인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2017. 12. 29.).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5347에서 인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2021. 10. 7.). 폐가를 가족센터로... 2022년 12곳 신규 설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121에서 인출.

여성가족부, 통계청. (2020). **2020년도 가족실태조사 가구대표용 조사표**.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1003086&itmDiv=2&nPage=3&itemId=2002&itemNm=%EC%82%AC%ED%9A%8C%EC%9D%BC%EB%B0%98에서 2023. 4. 25. 인출.

여유진, 오미애, 이원진, 우선희, 이병재, 한겨레, . . . 송지은. (2020). **2020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한국복지패널 종단 분석 및 표본 특성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주연. (2021). **1인 가구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밀키트 선택속성에 대한 기대불일치, 만족, 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유현정, 이아름, 홍유진, 안혜리. (2017).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활용한 1인 가구의 소비생활 특성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48**(2), 277-301.

의료법, 법률 제19421호 (2023).

의안정보시스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049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K2L1J0I3X1C1V0H5U7C4V4Z8F7X5에서 2023. 9. 11.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51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O2A0J6L3J0S1I3T2R4O4V5B7M5Z0에서 2023. 9. 11.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21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3E0Y1X3W0F1H7G2C7L2L0H2Q6P2에서 2023. 9. 14.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40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Y1X1Q0I0E7N1V9V4K8K3H7A0W0G5에서 2023. 9. 7.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1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W1U0N1J2A0K1N1J2R9Y4C3B7U4D9에서 2023. 9. 5.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18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M3J0R1Q3P0O1Z6W4V9D5D1Z2I6H9에서 2023. 9. 12. 인출.

이명진. (2019). 유럽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1**, 16-26.

이무선. (2018).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과제: 환자중심의료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9**(3), 297-325.

이민영. (2016. 9. 28). '혼자 사는 중년' 급증...40·50대 1인 가구 증가율, 전체 평균 웃돌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3114.html에서 인출.

이민홍, 전용호, 김영선, 강은나. (2015).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 보건복지부·동의대학교.

이병호. (2014). 중장년층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중장년층. **보건사회연구, 34**(3), 348-373.

이상명. (2017).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고찰: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17**(4), 1-30.

이성은, 박홍주, 유정민. (2012).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예슬. (2023. 2. 23.). 국토부, 1인가구 주거대안 '코리빙하우스' 관련 규제 정비.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223_0002203257&cID=10401&pID=10400에서 인출.

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함선유, 한겨레. (2021). **1인 가구 사회보장 욕구 및 수급 현황 분석**.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김세진, 남궁은하, 임정미, 김혜수. (2021). **미래 노인 정책 혁신을 위한 종합적 체계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은영, 이소현, 백수진. (2022).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30**(2), 103-126.

이정은. (2022). 노인 환자에 대한 공동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 **노년기의 자기결정권 교재개발 연구**.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이준우, 장민선. (2014).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변화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이지은. (2021). 연명의료결정법상 가족의 대행(代行) - 미국법상 의료결정대행(surrogate decision-makin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50**, 217-247.

이지은. (2022).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결정 대행권자의 범위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5**(3), 323-347.

이충은. (2019). 노인복지제도로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9**(2), 305-330.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10호 (2020).

임규철. (2020).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에 대한 비판적 소고 -자기결정권에서 바라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20**(3), 153-186.

임덕영. (2020). 일본의 안부 확인 서비스: IoT와 사람이 결합된 중층적 케어의 가능성. **국제사회보장리뷰, 12**, 90-103.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a).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11000055000029&histNo=004&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b).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26000003003045&histNo=003&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c).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28000023010010&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d).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29000017002017&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e).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30000008004088&histNo=001&me

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f).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36110107244035&histNo=002&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g).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000042005022&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h).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2000040005044&histNo=002&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i).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4000007001053&histNo=002&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j).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6000023000066&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k).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7000039000037&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l).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8000011007014&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m).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50000008007035&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n).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11000049000100&histNo=002&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o).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30000008003062&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p).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000043006002&histNo=003&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q).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3000006007041&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r).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4000007001059&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s).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5000038001030&histNo=001&menuNm=main에서 2023. 7. 28. 인출.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소득보장, 교육,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3), 1-38.

장민선. (2016). 1인가구 지원에 관한 헌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21**, 447-493.

장민선. (2023). 미래 노인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법적 쟁점: 주거권을 중심으로. 세미나 자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99호 (2023).

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김정석, . . . 진미정.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 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순희. (2019). 미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11**, 37-49.

정인, 강서진. (2019).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서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제철웅. (2017). 성년후견과 지속적 대리: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서 인권존중으로. **법조연구, 66**(2), 76-122.

제철웅, 정민아. (2020). 신상보호 영역에서의 지원의사결정 제도- 영국 정신능력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의생명과학과 법, 23**, 5-36.

조은희. (2020). 법제도에서 다양한 가족의 수용을 위한 개선. **법과 정책, 26**(1), 131-168.

주거기본법, 법률 제18561호 (2021).

주민등록법, 법률 제19228호 (20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2023).

주택법, 법률 제19117호 (2022).

차경욱. (2006). 남성 1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 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53-269.

최영신, 이선형, 김성호, 김민지, 홍윤선, 이준우, . . . 김광현. (2022).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최현수, 오미애, 강은나, 고제이, 전진아, 김혜승, . . . 김솔휘. (2016).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n.d.). **CPI 소비자 물가지수-화폐가치 변화**. https://kostat.go.kr/mondyValueCalc.es?mid=b70302000000에서 2023. 6. 27. 인출.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2011). **사회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2018). 2017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020a). **2020 통계용어**. https://kostat.go.kr/ansk/file/2020_StatisticalTerms.pdf에서 2023. 4. 20. 인출.

통계청. (2020b). 인구주택총조사 이용자보고서.

통계청. (2020c).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2021a).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3. 2. 6. 인출.

통계청. (2021b).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2021c). **사회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2022). **장래가구추계: 가구주의 연령/가구원 수별 추계가구_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6&conn_path=I3에서 2023. 2. 6. 인출.

한국법학원. (2020. 2. 26.). 시행 8년차 접어든 성년후견제도, "문제점 개선하고 컨트롤타워 중심 단일체계 구축해야". **법조·법학계 소식**. https://lawsociety.or.kr/board/legalNews/article/25297에서 2023. 9. 9. 인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2011).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데이터파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2021).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데이터파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성주류화정책제도**. https://www.kwdi.re.kr/center/gia/rule.do에서 2023. 11. 28. 인출.

한지희, 정소이, 박준영. (2011). 1인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거실태 분석.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1**(2), 161-162.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마940 전원재판부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27호 (2021).

홍승아, 성민정, 최진희, 김진욱, 김수진. (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윤선. (2014). 독일의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주요 내용. **최신외국법제정보, 7**, 70-83.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2023a). **건강영향평가 소개**. https://www.eiass.go.kr/hia/intro/introHia.do에서 2023. 11. 28. 인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2023b). **환경영향평가제도안내**. https://www.eiass.go.kr/inform/system/intro.do에서 2023. 11. 28. 인출.

황남희, 유재언, 박은자, 김혜수, 양찬미, 김재호, . . . 이금룡. (2019).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 및 2019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두영. (2020). **외롭지 않을 권리 -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서울: 시사IN북.

[영문 자료]

Age UK. (2022). *Sheltered housing*. Retreived from https://www.ageuk.org.uk/information-advice/care/housing-options/sheltered-housing/ 2023. 7. 30.

Beck, U., & Beck-Gernsheim. E.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Political Consequences*. London: Sage.

Bennett, J., & Dixon, M.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British Red Cross. (2023). *A connected recovery: Findings of the APPG on Loneliness Inquiry*. Retrieved from https://www.redcross.org.uk/about-us/what-we-do/action-on-loneliness/all-party-parliamentary-group-on-loneliness-inquiry/a-connected-recovery#Key%20findings 2023. 7. 30.

Bromley-Trujillo, R., & Nolette, P. (2023). The State of American Federalism 2022-2023: Escalating Culture Wars in the States. *The Journal of Federalism, 53*(3), 325-34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3b). *Older Persons and Demographic Change (In English)*. Retrieved from https://www.bmfsfj.de/bmfsfj/meta/en/older-persons 23. 7. 30.

Community Led Homes. (2018). *What is cohousing?*. Retrieved from https://www.communityledhomes.org.uk/what-cohousing 2023. 7. 30.

DiPrete, T. A. Eirich, G. M. (2006). Cumulative Advantage as a Mechanism for Inequality: A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Devel

op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2*, 271-297. doi: 10.1146/annurev.soc.32.061604.123127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Kollektivhuset Färdknäppen. (2023). *Färdknäppen is a house for people who have reached "the second part of life"*. Retrieved from http://fardknappen.se/in-english-2/ 2023. 7. 23.

Larson, S. J. (2022). Actions for queering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 Society, 54*(1), 145-163.

Levkoff, S. E., Cleary, P. D., Wetle, T. (1987). Differences in the appraisal of health between aged and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2*(1), 114-120. doi: 10.1093/geronj/42.1.114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3). *Dataset Families and household*. Retrieved from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families/datasets/familiesandhouseholdsfamiliesandhouseholds 2023. 7. 30.

Regeringskansliet. (2013). *Family Law*. Retrieved from https://www.government.se/information-material/2013/08/family-law/ 2023. 7. 31.

Ruggles, S., Flood, S., Sobek, M., Brockman, D., Cooper, G., Richards, S., & Schouweiler, M. (2013). *IPUMS USA: Version 13.0 [Data]*. Minneapolis, MN: IPUMS.

Statistics of Japan. (2020). *Population Census / 2020 Population Census / Basic Complete Tabulation on Population and Households*. Retrieved from https://www.e-stat.go.jp/en/stat-search/files?stat_infid=000032142502 2023. 7. 30.

Statistikdatabasen. (2023). *Number of persons by type of household, household status, age and sex. Year 2011 - 2022*. Retrieved from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START__B

E__BE0101__BE0101S/HushallT07/ 2023. 7. 30.

Turn2us. (2023a). *Universal Credit (UC) - How much Universal Credit (UC) will I get?*. Retrieved from https://www.turn2us.org.uk/get-support/information-for-your-situation/universal-credit-uc/how-much-universal-credit-uc-will-i-get 2023. 9. 27.

Turn2us. (2023b). *Universal Credit (UC) - Additional Elements of Universal Credit (UC)*. Retrieved from https://www.turn2us.org.uk/get-support/information-for-your-situation/universal-credit-uc/additional-elements-of-universal-credit-uc 2023. 9. 27.

UK Government. (2021). *Loneliness Engagement Fund*.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neliness-engagement-fund 2023. 8. 15.

UK Government. (2022). *The Building Connections Fund, Part two: Evaluation of the Building Connections Fu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10471/BCF_Part_2_evaluation_report_May_2021.pdf 2023. 9. 27.

UK Government. (2023a). *How Council Tax work*. https://www.gov.uk/council-tax/who-has-to-pay 2023. 9. 27.

UK Government. (2023b). *Tackling Loneliness annual report February 2022: the third year*.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neliness-annual-report-the-third-year/tackling-loneliness-annual-report-february-2022-the-third-year 2023. 8. 15.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3). *SRO Eligibility Requirements*. Retrieved from https://www.hudexchange.info/programs/sro/sro-eligibility-requirements/ 2023. 7. 30.

Vestbro, D. U. (2014). *Cohousing in Sweden,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Retrieved from http://www.kollektivhus.nu/pdf/SwedishCohousi

ng14.pdf 2023. 7. 31.

Vestbro, D. U., & Horelli, L. (2012). Design for gender equality: The history of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Built Environment, 38*(3), 315-335.

[일문 자료]

国土交通省. (2008).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 Retrieved from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3_000005.html 2023. 9. 27.

内閣府. (2023). *高齢社会対策の基本的枠組み*. Retrieved from https://www8.cao.go.jp/kourei/measure/a_3.html 2023. 7. 30.

緑寿会. (2023). *高齢サポート・日ノ岡の全戸訪問事業*. Retrieved from http://ryokujukai.com/hinooka_support/hinooka_support_visit/ 2023. 7. 30.

郵便局. (2023). *郵便局のみまもりサービス*. Retrieved from https://www.post.japanpost.jp/life/mimamori/index.html 2023. 8. 15.

青森市役所. (2023). *地域ぐるみで高齢者の見守りを*. Retrieved from https://www.city.aomori.aomori.jp/koreisha-sien/koreisyamimamori.html 2023. 8. 15.

厚生労働省. (2023a).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について*. Retrieved from https://www.kaigokensaku.mhlw.go.jp/ 2023. 7. 30.

厚生労働省. (2023b).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 Retrieved from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ki-houkatsu/ 2023. 7. 30.

[독문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3a). *Was ist ein Mehrgenerationenhaus?*. Retrieved from https://www.mehrgenerationenhaeuser.de/mehrgenerationenhaeuser/was-ist-ein-mehrgenerationenhaus 2023. 7. 30.

Malteser. (n.d.). *Miteinander-Füreinander: Kontakt und Gemeinschaft im Alter*. Retrieved from https://www.malteser.de/miteinander-fuereinander.html 2023. 7. 30.

Miersch, A. (2018). *Das Bundesprogramm Mehrgenerationenhaus (2017-2020) und Das Anschlussprogramm (ab 2021)*. Retrieved from https://www.zukunftswerkstatt-kommunen.de/fileadmin/user_upload/Werkzeuge/181114_DWK_Webinar_MGH.pdf 2023. 8. 16.

Statistisches Bundesamt. (2023). *Haushalte und Haushaltsmitglieder*. Retrieved from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Haushalte-Familien/Tabellen/1-1-privathaushalte-haushaltsmitglieder.html 2023. 7. 30.

[스웨덴어 자료]

Kollektivhuset Färdknäppen. (2017). *Entrévåningen*. Retrieved from https://fardknappen.se/category/om-oss/ 2023. 7. 23.

Liberalerna. (2018). *L: Ingen ska behöva dö ensam*. Retrieved from https://news.cision.com/se/liberalerna/r/l--ingen-ska-behova-do-ensam,c2536891 2023. 8. 16.

Liberalerna. (2022). *Motion: Ingen ska behöva dö ensam – specialiserad palliativ vård*. Retrieved from https://www.rvn.se/globalassets/_rvn/demokrati-och-insyn/sammantradeshandlingar/motioner/2022-10-14-ingen-ska-behova-do-ensam--specialiserad-palliativ-vard.pdf 2023. 8. 16.

Socialstryelsen. (2022). *Riksnormen för försörjningsstöd*. Retrieved from https://www.socialstyrelsen.se/kunskapsstod-och-regler/omraden/ekonomiskt-bistand/riksnormen 2023. 9. 27.

Stolplyckan. (n.d.). *Gemensamma rum & saker*. Retrieved from https://www.stolplyckan.se/lokaler/ 2023. 7. 30.

Stolplyckan. (2021). *Välkommen till Stolplyckan!*. Retrieved from https://www.stolplyckan.se/ 2023. 7. 30.

Sveriges riksdag. (1987). *Lag (1987:813) om homosexuella sambor*. Retrieved from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lag-1987813-om-homosexuella-sambor_sfs-1987-813/ 2023. 7. 31.

Sveriges riksdag. (1994). *Lag (1994:1117) om registrerat partnerskap*. Retrieved from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lag-19941117-om-registrerat-partnerskap_sfs-1994-1117/ 2023. 7. 31.

Sveriges riksdag. (2006). *Död i ensamhet*. Retrieved from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kriftlig-fraga/dod-i-ensamhet_gu1193 2023. 8. 16.

Sveriges riksdag. (2012). *Självbestämmande vid livets slut*. Retrieved from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motion/sjalvbestammande-vid-livets-slut_h002so563/ 2023. 8. 16.

[부록 1] 개별인터뷰 사전 설문 조사표

「중장년 1인가구의 삶의 모습과 욕구 파악을 위한 개별 인터뷰」 사전 설문

※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1인가구로서의 생활과 관련된 귀하의 과거, 현재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응답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귀하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선택지에 체크(V)해주시면 됩니다.

Ⅰ. 생활 전반

문1. 귀하가 1인가구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의 생활(A 기간)과 직후 1년 동안(B 기간)의 생활에 차이가 있으셨습니까? 또한, 직후 1년 동안(B 기간)에 비해 최근 1년 동안(C 기간)의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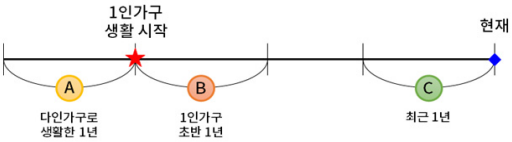

구분	1인가구 직전 1년(A)과 직후 1년(B)의 생활 비교	1인가구 직후 1년(B)과 최근 1년(C)의 생활 비교
(1) 신체 건강상태	☐ 매우 좋아졌다	☐ 매우 좋아졌다
	☐ 좋아졌다	☐ 좋아졌다
	☐ 별 차이 없다	☐ 별 차이 없다
	☐ 나빠졌다	☐ 나빠졌다
	☐ 매우 나빠졌다	☐ 매우 나빠졌다
(2) 신체 건강관리 * 운동, 건강한 음식 섭취, 음주량 조절, 흡연량 조절 등	☐ 건강관리를 매우 잘했다	☐ 건강관리를 매우 잘했다
	☐ 건강관리를 잘했다	☐ 건강관리를 잘했다
	☐ 별 차이 없다	☐ 별 차이 없다
	☐ 건강관리를 못했다	☐ 건강관리를 못했다
	☐ 건강관리를 매우 못했다	☐ 건강관리를 매우 못했다
(3) 주거 환경 * 주거의 쾌적/편리한 정도, 주거 안정성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아도 되는지) 등	☐ 매우 좋아졌다	☐ 매우 좋아졌다
	☐ 좋아졌다	☐ 좋아졌다
	☐ 별 차이 없다	☐ 별 차이 없다
	☐ 나빠졌다	☐ 나빠졌다
	☐ 매우 나빠졌다	☐ 매우 나빠졌다
(4) 경제상태(소득수준) *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거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좋음'을 의미	☐ 매우 좋아졌다	☐ 매우 좋아졌다
	☐ 좋아졌다	☐ 좋아졌다
	☐ 별 차이 없다	☐ 별 차이 없다
	☐ 나빠졌다	☐ 나빠졌다
	☐ 매우 나빠졌다	☐ 매우 나빠졌다
(5) 정서적 상태 * 불안감, 우울감이 낮고 행복도,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좋음'을 의미	☐ 매우 좋아졌다	☐ 매우 좋아졌다
	☐ 좋아졌다	☐ 좋아졌다
	☐ 별 차이 없다	☐ 별 차이 없다
	☐ 나빠졌다	☐ 나빠졌다
	☐ 매우 나빠졌다	☐ 매우 나빠졌다

구분	1인가구 직전 1년(A)과 직후 1년(B)의 생활 비교	1인가구 직후 1년(B)과 최근 1년(C)의 생활 비교
(6) 가족관계 만족도 * 부모, 형제자매, 자녀, 친척 등 가족과의 친밀감 수준, 교류 정도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
	☐ 높아졌다	☐ 높아졌다
	☐ 별 차이 없다	☐ 별 차이 없다
	☐ 낮아졌다	☐ 낮아졌다
	☐ 매우 낮아졌다	☐ 매우 낮아졌다
(7) 사회적 관계 만족도 * 가족 외 친구, 지인, 동료, 이웃과의 친밀감 수준, 교류 정도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
	☐ 높아졌다	☐ 높아졌다
	☐ 별 차이 없다	☐ 별 차이 없다
	☐ 낮아졌다	☐ 낮아졌다
	☐ 매우 낮아졌다	☐ 매우 낮아졌다
(8) 사회활동 만족도 * 여가·문화·학습·취미·종교 등 활동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
	☐ 높아졌다	☐ 높아졌다
	☐ 별 차이 없다	☐ 별 차이 없다
	☐ 낮아졌다	☐ 낮아졌다
	☐ 매우 낮아졌다	☐ 매우 낮아졌다
(9) 안전 * 범죄 노출·위험 정도가 낮고, 사고·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정도	☐ 매우 좋아졌다	☐ 매우 좋아졌다
	☐ 좋아졌다	☐ 좋아졌다
	☐ 별 차이 없다	☐ 별 차이 없다
	☐ 나빠졌다	☐ 나빠졌다
	☐ 매우 나빠졌다	☐ 매우 나빠졌다

II. 1인가구 삶의 경험 및 인식

문2. 귀하가 1인가구로 생활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혼자 살고 싶어서
2)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3)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취업) 때문에
4) 배우자와의 사별
5) 본인의 이혼
6)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취업) 때문에
7)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
8) 자녀의 이혼
9) 부모의 이혼
10) 부모의 직장(취업) 때문에
11) 기타: _____

문3.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아래의 생활 영역 중에서 걱정되거나 힘든 점이 있습니까?
5개 영역 중에서 걱정되거나 힘든 영역이 있다면, 걱정되는 순위를 작성해주십시오.

생활 영역	3-1. 걱정되거나 힘든 점 여부	3-2. 순위 (숫자 기입)
경제	☐ 없다 ☐ 있다 → 3-2 응답	
건강	☐ 없다 ☐ 있다 → 3-2 응답	
주거	☐ 없다 ☐ 있다 → 3-2 응답	
정서 및 관계	☐ 없다 ☐ 있다 → 3-2 응답	
안전	☐ 없다 ☐ 있다 → 3-2 응답	

※ (예시) 경제, 주거, 안전의 3개 영역에 체크할 경우, 3-2 응답란에 걱정되는 순서대로 1~3순위를 기입
(경제: 1순위, 주거: 3순위, 안전: 2순위로 순위를 매기고, 나머지 영역은 빈 칸으로 둠)

문4. 다음은 귀하의 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선택지에 체크(∨)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과 영양가를 고려하여 식품을 구매한다					
(2) 나는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한 식단을 하고 있다					
(3) 나는 건강식품, 유기농식품이 비싸더라도 구매한다					
(4) 나는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 편이다					
(5) 나는 요리하는 것이 귀찮아서 자주 외식 혹은 배달음식을 먹는다					
(6) 나는 식사 준비나 식사에 드는 시간을 가능한 아끼는 편이다					
(7) 나는 식품 구매 시 할인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이다					
(8) 나는 식품 구매 시 항상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다					
(9) 나는 비슷한 제품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다					

문5. 다음은 귀하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선택지에 체크(∨)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2) 지금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3) 나는 소외감을 자주 느낀다				
(4)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				
(5) 나는 내가 필요할 때 어울릴 친구가 있다				
(6) 주변의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7) 나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다				
(8) 주변에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9) 나에게는 말을 주고받을 사람이 있다				
(10) 나의 대인관계는 사무적이고 깊이가 없다				

Ⅲ. 미래 삶의 모습에 대한 인식

문6.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1인가구로 생활하길 희망하십니까?

1) 1인가구로 생활하고 싶지 않다

2)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은 계속 1인가구로 생활하고 싶다 → 만 [ ] 세까지 또는 [ ] 년 동안
※ 두 가지 중 하나만 응답

3) 기간에 제한 없이 상황이 허락한다면 계속 1인가구로 생활하고 싶다

문7. 귀하는 아래의 노후준비 영역 중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1개를 골라 체크(V)해주십시오.

□ 경제(재무)	□ 건강	□ 대인관계	□ 여가(교육 포함)

문8. 귀하는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노후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영역별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8-1. 현재 노후준비 여부	8-2. 노후준비 정도
경제	1) 준비하지 않음 2) 준비 중 → 8-2 응답	경제적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복수 응답**) ① 국민연금 ② 공무원 연금(교직원, 군인 포함) ③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④ 퇴직금/퇴직연금 ⑤ 예금, 적금 ⑥ 부동산 운용 ⑦ 주식, 채권 ⑧ 기타: _____
건강	1) 준비하지 않음 2) 준비 중 → 8-2 응답	
대인관계	1) 준비하지 않음 2) 준비 중 → 8-2 응답	
여가	1) 준비하지 않음 2) 준비 중 → 8-2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노후 건강을 위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후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노후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족들과 적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후의 대인관계를 위해 관련 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노후에 하고 싶은 취미·여가·교육활동이 있다					
노후의 취미·여가·교육활동을 위해 현재 정보를 찾거나 교육을 받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